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주요 노동·경제 지표 분석

2017. 6.



최저임금위원회



목차

C O N T E N T S

I. 심의 관련 주요 지표 1

1. 근로자의 생계비	3
가. '16년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결과	5
나. 2인 이상 가구의 가계소득·지출 분석결과	12
다. 1인 이상 근로자 가구의 실태생계비 분석결과	19
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기준	22
【참고】 노·사 단체 제출 생계비(안)	25
2. 유사근로자의 임금	31
가. 개요	33
나. 임금동향	34
다. 최저임금 미만율	38
라. 임금전망	46
마. 최저임금 영향률	46
바. 임금지표간 상호관련성	48
3. 노동생산성	51
가. 개요	53
나. 노동생산성 동향	54

4. 소득분배율	57
가. 개요	59
나. 소득분배율 동향	60
【참고1】 근로자 임금대비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62
【참고2】 저임금근로자 관련 지표	63
【참고3】 기타 소득분배 관련 지표 동향	66

II. 노동·경제동향 및 전망 73

1. 최근 노동·경제동향	75
가. 경제성장률(실질, GDP 기준)	77
나. 산업생산 및 경기종합지수	78
다. 고용	82
라. 소비자물가	87
마. 임금 및 근로시간(상용근로자 5인 이상)	88
2. 각종 지표에 대한 2017년 전망	105
가. 경제성장률	107
나. 고용관련 지표(취업자 수, 고용률 및 실업률)	107
다. 소비자물가	108
라. 임금상승률	108

III. 최저임금 관련 국제현황 113

1. 주요 국가 최저임금 현황	115
가. 소득수준별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상대격차)	117
나.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국제비교(OECD)	123
다. 최저임금 현황(OECD)	125
라. 국가별 최저임금 적용 및 미만현황	126

2. 외국의 최저임금 관련 최근동향	143
가. OECD 회원국	145
나. 비(非) OECD 회원국	149

[부 표] 최저임금 영향률	153
-----------------------------	------------

[부 록] 최신 노동·경제 지표	187
--------------------------------	------------

1. 고용	189
2. 물가 및 수출입 단가	192
3. 국민소득계정	194
4. 실물경제	196
5. 대외거래	199
6. 통화·금리	206
7. 경기	209
8. 재정	210
9. 해외지표	211

I

심의 관련 주요 지표

1. 근로자의 생계비
2. 유사근로자의 임금
3. 노동생산성
4. 소득분배율

1. 근로자의 생계비

가. '16년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결과

나. 2인 이상 가구의 가계소득·지출
분석결과

다. 1인 이상 근로자 가구의
실태생계비 분석결과

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기준

【참고】 노·사 단체 제출 생계비(안)

1 근로자의 생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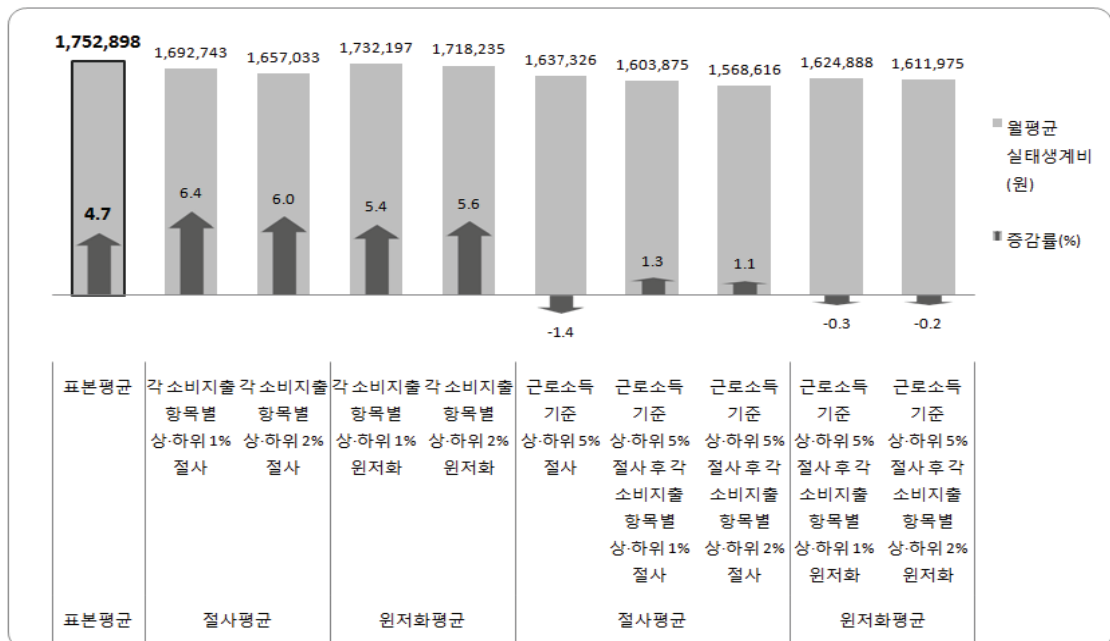
가. '16년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결과¹⁾

(1) 실태생계비 평균(전체 표본평균, 절사 및 원저화평균)

1) '16년 실태생계비 평균

- (표본평균) '16년 중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의 월평균 실태생계비는 1,752,898원으로 전년에 비해 4.7% 증가
- (절사 및 원저화평균) 실태생계비 수준은 각 산출기준별로 1,569~1,732천원으로 표본평균 1,753천원에 비해 낮음
- 전년대비 증감률은 각 산출기준별로 1.1~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근로소득기준 상·하위 5% 절사' 및 '원저화평균'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평균



출처)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최저임금위원회 연구용역, 2017)

1)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최저임금위원회 연구용역, 2017.6)

2) 실태생계비 평균 추이

① 표본평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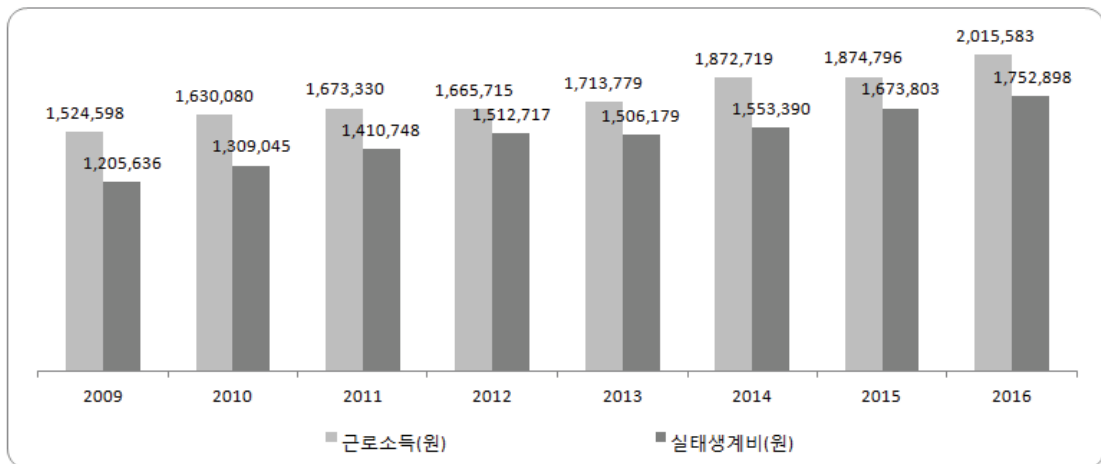
- '09년 이후 실태생계비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

* 연도별 전년대비 증감(천원)

└ 근로소득: ('10)↑105→('11)↑43→('12)↓8→('13)↑48→('14)↑159→('15)↑2→('16)↑141

└ 실태생계비: ('10)↑103→('11)↑102→('12)↑102→('13)↓7→('14)↑47→('15)↑120→('16)↑79

<그림>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표본평균 추이



출처)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최저임금위원회 연구용역, 2011~2015),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최저임금위원회 연구용역, 2016~2017, 명칭변경)

② 산출기준별(표본, 절사 및 원저화평균) 추이

<표>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평균 산출기준별 수준

(단위: 원)

		2012	2013	2014	2015	2016
표본평균		1,512,717	1,506,179	1,553,390	1,673,803	1,752,898
① 절사평균 (각 소비지출 항목별 기준)	1%	1,432,803	1,433,577	1,477,470	1,590,618	1,692,743
	2%	1,409,480	1,396,257	1,442,339	1,562,898	1,657,033
② 원저화평균 (각 소비지출 항목별 기준)	1%	1,482,904	1,479,282	1,519,754	1,643,949	1,732,197
	2%	1,458,682	1,449,049	1,500,898	1,626,511	1,718,235
③ 근로소득 기준 상·하위 5% 절사평균		1,446,989	1,486,081	1,471,178	1,659,978	1,637,326
④ 절사평균(근로소득 기준 상·하위 5% 절사 후 소비지출 항목별)	1%	1,379,815	1,390,791	1,418,301	1,583,856	1,603,875
	2%	1,365,794	1,354,701	1,407,554	1,551,352	1,568,616
⑤ 원저화평균(근로소득 기준 상·하위 5% 절사 후 소비지출 항목별)	1%	1,419,877	1,431,767	1,448,256	1,630,054	1,624,888
	2%	1,402,905	1,420,341	1,442,561	1,614,885	1,611,975

출처)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최저임금위원회 연구용역, 2011~2015),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최저임금위원회 연구용역, 2016~2017, 명칭변경)

<표>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평균 산출기준별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

		2012	2013	2014	2015	2016
표본평균		7.2	-0.4	3.1	7.8	4.7
① 절사평균 (각 소비지출 항목별 기준)	1%	5.7	0.1	3.1	7.7	6.4
	2%	6.8	-0.9	3.3	8.4	6.0
② 원저화평균 (각 소비지출 항목별 기준)	1%	7.2	-0.2	2.7	8.2	5.4
	2%	6.8	-0.7	3.6	8.4	5.6
③ 근로소득 기준 상·하위 5% 절사평균		7.3	2.7	-1.0	12.8	-1.4
④ 절사평균(근로소득 기준 상·하위 5% 절사 후 소비지출 항목별)	1%	5.1	0.8	2.0	11.7	1.3
	2%	7.2	-0.8	3.9	10.2	1.1
⑤ 원저화평균(근로소득 기준 상·하위 5% 절사 후 소비지출 항목별)	1%	6.3	0.8	1.2	12.6	-0.3
	2%	6.4	1.2	1.6	11.9	-0.2

출처)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최저임금위원회 연구용역, 2011~2015),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최저임금위원회 연구용역, 2016~2017, 명칭변경)

<표>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평균 연령별 수준

			2012	2013	2014	2015	2016
실태생계비 수준 (원)	응답자 수	전체	293	284	309	361	376
		29세 이하	49	32	44	75	73
		34세 이하	78	68	80	111	126
		35세 이상	215	216	229	250	250
	소득	전체	1,809,633	1,875,232	2,037,339	2,081,645	2,248,188
		29세 이하	2,040,409	2,716,430	2,613,072	2,645,805	1,902,524
		34세 이하	2,123,108	2,366,186	2,308,868	2,583,404	2,450,835
		35세 이상	1,701,626	1,712,254	1,935,482	1,858,818	2,139,660
	근로소득	전체	1,665,715	1,713,779	1,872,719	1,874,796	2,015,583
		29세 이하	1,981,038	2,638,234	2,395,037	2,474,117	1,788,383
		34세 이하	2,069,206	2,245,706	2,186,950	2,419,975	2,329,770
		35세 이상	1,526,694	1,537,199	1,754,844	1,632,687	1,847,319
	기타소득	전체	143,918	161,453	164,620	206,849	232,605
		29세 이하	59,371	78,196	218,035	171,688	114,141
		34세 이하	53,903	120,480	121,918	163,430	121,065
		35세 이상	174,933	175,055	180,638	226,131	292,340
	생계비	전체	1,512,717	1,506,179	1,553,390	1,673,803	1,752,898
		29세 이하	1,873,899	2,248,263	1,985,366	2,139,615	1,648,234
		34세 이하	1,849,264	1,940,116	1,864,981	2,142,761	1,907,617
		35세 이상	1,396,761	1,362,129	1,436,505	1,465,544	1,670,038
	소비지출	전체	1,288,802	1,275,362	1,305,060	1,411,096	1,461,658
		29세 이하	1,618,423	1,873,968	1,642,165	1,786,905	1,450,750
		34세 이하	1,591,780	1,648,370	1,573,777	1,791,124	1,582,940
		35세 이상	1,184,412	1,151,538	1,204,258	1,242,330	1,396,704
	비소비지출	전체	223,915	230,817	248,330	262,707	291,241
		29세 이하	255,476	374,295	343,201	352,710	197,485
		34세 이하	257,483	291,745	291,204	351,637	324,677
		35세 이상	212,349	210,592	232,247	223,214	273,334

출처)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최저임금위원회 연구용역, 2011~2015),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최저임금위원회 연구용역, 2016~2017, 명칭변경)

<표>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평균 연령별 전년대비 증감률

			2012	2013	2014	2015	2016
실 태 생 계 비 전 년 대 비 증 감 률 (%)	응답자 수	전체	5.3	-3.1	8.8	16.8	4.2
		29세 이하	-26.9	-34.7	37.5	70.5	-2.7
		34세 이하	-35.0	2.8	17.6	38.8	13.5
		35세 이상	-4.9	0.5	6.0	9.2	0.0
	소득	전체	-0.3	3.6	8.6	2.2	8.0
		29세 이하	.4	33.1	-3.8	1.3	-28.1
		34세 이하	0.4	11.4	-2.4	11.9	-5.1
		35세 이상	3.6	0.6	13.0	-4.0	15.1
	근로 소득	전체	-0.5	2.9	9.3	0.1	7.5
		29세 이하	-0.5	33.2	-9.2	3.3	-27.7
		34세 이하	2.0	8.5	-2.6	10.7	-3.7
		35세 이상	4.0	0.7	14.2	-7.0	13.1
	기타 소득	전체	1.1	12.2	2.0	25.7	12.5
		29세 이하	-24.0	31.7	178.8	-21.3	-33.5
		34세 이하	-38.1	123.5	1.2	34.0	-25.9
		35세 이상	0.3	0.1	3.2	25.2	29.3
	생계비	전체	7.2	-0.4	3.1	7.8	4.7
		29세 이하	15.7	20.0	1.7	7.8	-23.0
		34세 이하	13.4	4.9	-3.9	14.9	-11.0
		35세 이상	8.8	-2.5	5.5	2.0	14.0
	소비 지출	전체	8.0	.0	2.3	8.1	3.6
		29세 이하	16.5	15.8	2.4	8.8	-18.8
		34세 이하	15.8	3.6	-4.5	13.8	-11.6
		35세 이상	8.8	-2.8	4.6	3.2	12.4
	비소비 지출	전체	3.2	3.1	7.6	5.8	10.9
		29세 이하	10.9	46.5	-8.3	2.8	-44.0
		34세 이하	0.6	13.3	-0.2	20.8	-7.7
		35세 이상	9.3	-0.8	10.3	-3.9	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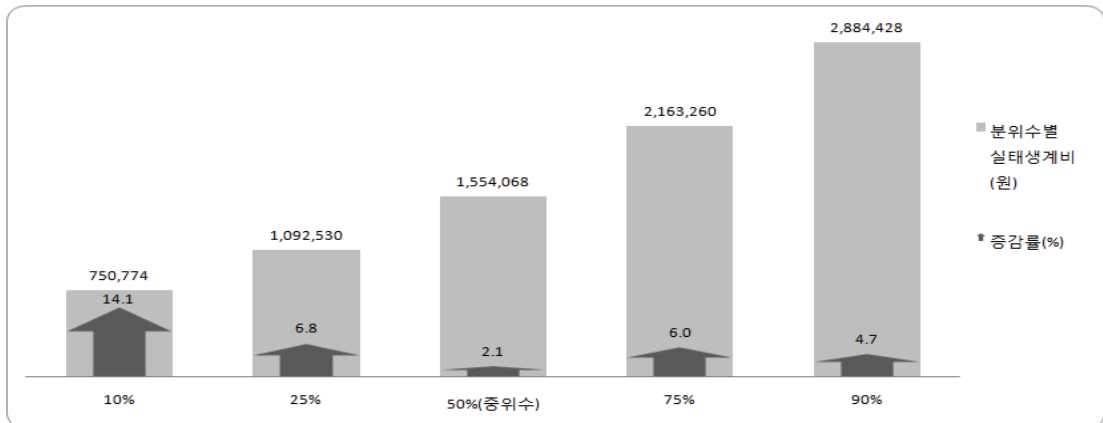
출처)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최저임금위원회 연구용역, 2011~2015),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최저임금위원회 연구용역, 2016~2017, 명칭변경)

(2) 분위수별 실태생계비

1) '16년 분위수별 실태생계비

- '16년 중위수(50%) 실태생계비는 전년대비 2.1% 증가

<그림> 비혼 단신근로자 분위수별 실태생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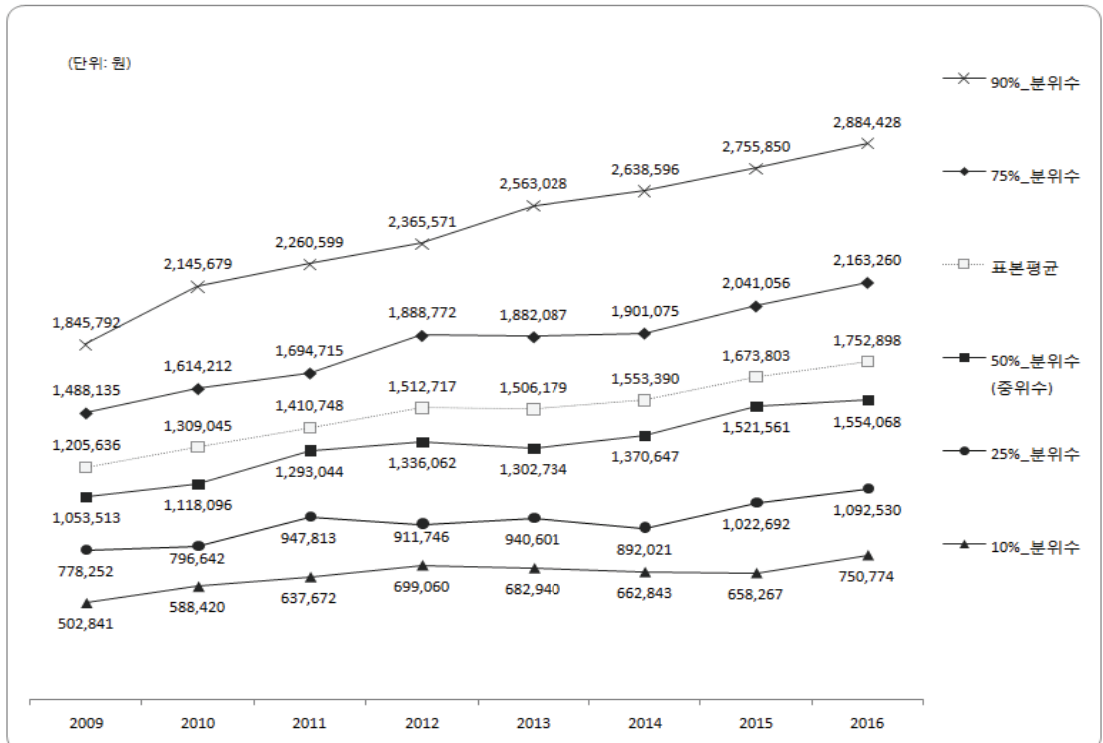


출처)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최저임금위원회 연구용역, 2017)

2) 분위수별 실태생계비 추이

- '09년 이후 분위수별 실태생계비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이나 '11년 이후 25% 분위수는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12년 이후 감소 추세이던 10% 분위수가 '16년에 증가

<그림> 비혼 단신근로자 분위수별 실태생계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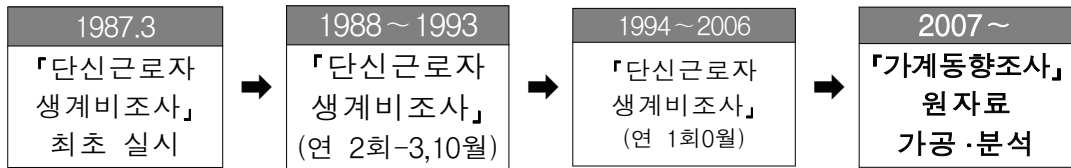
출처)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최저임금위원회 연구용역, 2011~2015),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최저임금위원회 연구용역, 2016~2017, 명칭변경)

<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개요 >

1. 목적

- 비혼 단신근로자의 실태생계비를 산출하여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2007년도부터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 원자료를 가공·분석

2. 연혁



- 2006년도까지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조사』를 매년 실시, 실태생계비 산출
 -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조사』는 1987년 3월에 처음 시작되어 1988~1993년까지는 3월과 10월 기준으로 연간 2회, 1994년부터 2006년까지는 10월 기준 연간 1회 조사로 실시
- 2007년부터 조사를 중지하고,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가공·분석하여 산출
- 2016년 1차 생계비전문위원회('16.4월)에서 연구용역 제목을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에서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으로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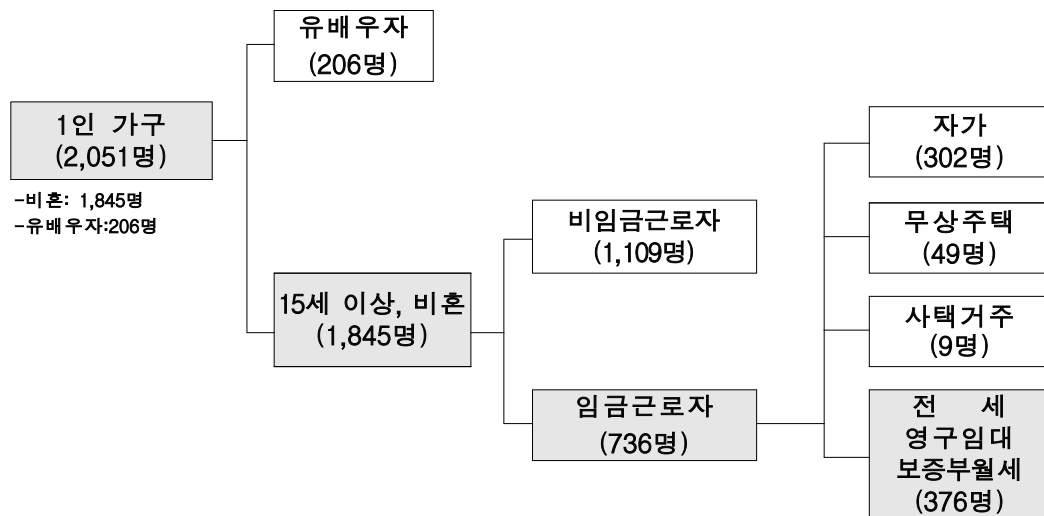
3. 실태생계비 통계작성 관련 논의

- ① 주요 논의대상
 - 그 동안 실태생계비 작성의 분석대상에 대한 논의는 연령 제한 여부, 근로자 국한 여부, 미혼 국한 여부 등
- ② (1987년~2006년)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조사결과 산출
 - 1987~1989년의 3년간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실태생계비를 제공한 바 있음
 - 1990년부터 29세 이하 미혼 단신근로자 가구로 국한하여 산출
- ③ (2007년 이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가공·분석 산출
 - 2007년부터 실태생계비 산출 연령 구분으로 **29세 이하, 34세 이하, 전 연령** 등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결함(2008년도 제2차 생계비전문위원회)
 - 합리적인 생계비 지표 산출 방안을 논의하여 이상치 제거 방안으로 전 연령 기준 각 소비지출 항목별 상·하위 1%, 2%에 대한 절사 및 원저화 평균 실태생계비를 제시하기로 의결함(2009년도 제3차 생계비전문위원회)
 - 2016년 1차 생계비전문위원회('16.4.21)에서 연구용역 제목을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에서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으로 변경

4. 산출내용

① 산출대상

- 15세 이상 비혼 단신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가, 무상주택, 사택 거주자는 제외
- 2016년 연간 『가계동향조사』자료에서 전체 가구는 8,947가구, 2인 이상 가구는 6,896가구, 1인 가구는 2,051가구이며, 분석대상이 되는 전 연령의 비혼 단신근로자는 376명



② 산출 대상 변수

- “15세 이상 비혼 단신근로자(자가, 무상주택, 사택 거주자는 제외)”의 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 및 생계비 항목(소비지출+비소비지출)에 대한 월 평균액
 - ↳ 소비지출: ①식료품·비주류음료, ②주류·담배, ③의류·신발, ④주거·광열·수도, ⑤가정용품·가사서비스, ⑥보건, ⑦교통, ⑧통신, ⑨오락·문화, ⑩교육, ⑪음식·숙박, ⑫기타
 - ↳ 비소비지출: 조세, 사회보장분담금, 기타 등

③ 산출지표

- (연령별) 전 연령, 29세 이하 및 34세 이하 비혼 단신근로자에 대한 소득 내역, 소비지출 내역별 실태생계비 수준과 증감률 등
- (산출기준별) 실태생계비 지표 산출방안 논의결과에 따른 추가 실태생계비 지표분석 결과
 - ↳ 근로소득 기준 상하 5%를 제외한 실태생계비 수준 및 증감률
 - ↳ 각 소비지출 12대 항목별 상하 1%, 2% 절사 및 원저화 실태생계비 수준 및 증감률
 - ↳ 분위수별 실태생계비 수준 및 증감률

나. 2인 이상 가구의 가계소득·지출 분석결과²⁾

(1) 소득동향

- 2016년 연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39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0.6% 증가(실질기준 0.4% 감소)
-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1.0%) 증가, 공적연금 및 기초연금 등 수급자 확대로 이전소득(2.1%) 등이 증가
- 재산소득(-18.4%)은 감소

<표> 전체가구 가구당 월평균 소득 (단위: 천원, %)

구 분	2015년(연간)		2016년(연간)		
	금액	증감률	금액	구성비	증감률
○ 소 득	4,373.1	1.6	4,399.2	100.0	0.6
- 경 상 소득	4,221.8	1.6	4,269.8	97.1	1.1
• 근로소득	2,918.6	1.6	2,948.1	67.0	1.0
• 사업소득	845.9	-1.9	858.7	19.5	1.5
• 재산소득	19.7	0.1	16.1	0.4	-18.4
• 이전소득	437.6	9.4	446.9	10.2	2.1
- 비경상소득	151.3	1.6	129.3	2.9	-14.5

출처) 가계동향조사(통계청, 2016 연간가계동향 보도자료 중 발췌)

(2) 소비지출 동향

- 2016년 연간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55만원으로 전년대비 0.5% 감소(실질기준 1.5% 감소)
- 교통(-4.3%), 식료품(-1.3%), 주거·수도·광열(-1.6%) 등이 주로 감소
 - * 유가하락으로 주거용 및 운송기구 연료비 하락, 곡물수요 감소 등에 기인
- 기타상품·서비스(2.4%), 음식·숙박(1.4%), 가정용품·서비스(3.9%) 등이 주로 증가

2) 가계동향조사(통계청, 연간 가계동향 보도자료 및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표> 전체가구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단위: 천원, %)

구 분	2015년(연간)		2016년(연간)		
	금액	증감률	금액	구성비	증감률
소 비 지 출	2,563.1	0.5	2,549.7	100.0	-0.5
식료품 · 비주류음료	354.0	0.8	349.4	13.7	-1.3
주류 · 담배	33.1	18.8	34.8	1.4	5.3
의류 · 신발	161.9	-4.4	158.0	6.2	-2.4
주거 · 수도 · 광열	277.5	4.8	273.1	10.7	-1.6
가정용품 · 가사서비스	105.2	0.4	109.2	4.3	3.9
보 건	174.4	3.6	177.2	7.0	1.6
교통	321.6	-3.7	307.7	12.1	-4.3
통신	147.7	-1.7	144.0	5.6	-2.5
오락 · 문화	149.9	2.1	149.7	5.9	-0.2
교육	283.3	-0.4	282.1	11.1	-0.4
음식 · 숙박	339.5	1.4	344.4	13.5	1.4
기타 상품 · 서비스	215.1	0.4	220.2	8.6	2.4

출처) 가계동향조사(통계청, 2016 연간가계동향 보도자료 중 발췌)

(3) 비소비지출 동향

- 2016년 연간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81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0.2% 증가
 - 가입자 증가 및 보험료 인상으로 연금(4.2%) 및 사회보험료(3.8%) 지출이 각각 증가하였고, 경상조세도 (3.4%) 증가
 - 가구간이전(-4.3%) 지출이 감소하였고, 이자율 하락으로 이자비용 (-2.7%)도 감소

<표> 전체가구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 (단위: 천원, %)

구 분	2015년(연간)		2016년(연간)		
	금액	증감률	금액	구성비	증감률
비소비지출	810.2	0.7	811.7	100.0	0.2
경 상 조 세	138.5	2.0	143.3	17.6	3.4
비경상조세	16.9	9.5	15.5	1.9	-8.4
연 금	125.1	2.4	130.3	16.1	4.2
사 회 보 험	128.7	3.7	133.6	16.5	3.8
이 자 비 용	83.6	-5.9	81.3	10.0	-2.7
가구간이전지출	212.4	0.2	203.2	25.0	-4.3
비영리단체로 이전	104.9	-1.1	104.5	12.9	-0.4

출처) 가계동향조사(통계청, 2016 연간가계동향 보도자료 중 발췌)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주요 노동·경제 지표 분석

<표>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연간, 2인 이상)

(단위: 명, 세,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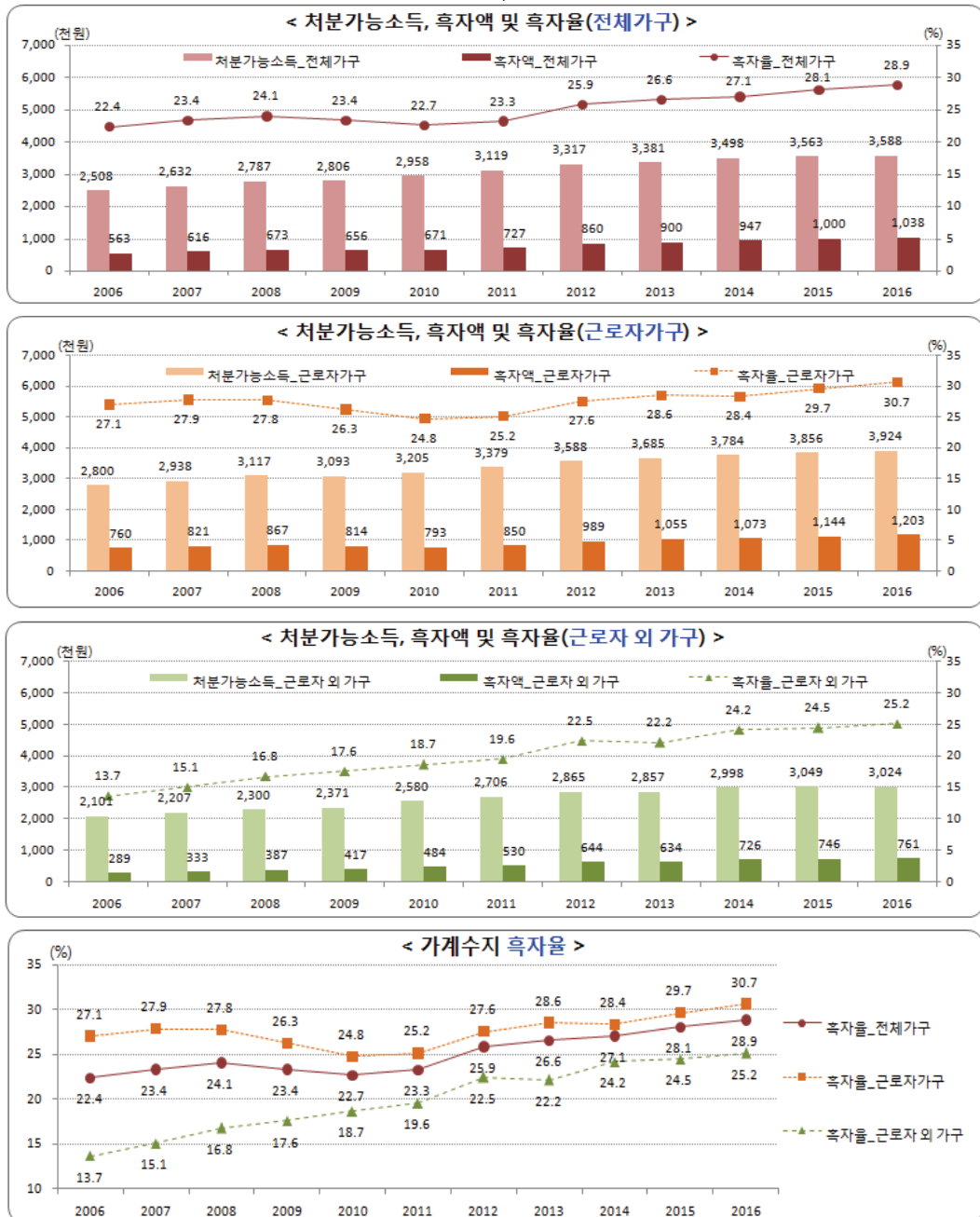
가구 구분	가계수지 항목별	2012	증감률	2013	증감률	2014	증감률	2015	증감률	2016	증감률
전체 가구	가구원 수	3.27	-0.3	3.25	-0.6	3.21	-1.5	3.17	-1.2	3.13	-1.3
	가구주 연령	49.23	0.5	49.66	0.9	49.93	0.5	50.59	1.3	51.26	1.3
	가구분포	100.00	0.0	100.00	0.0	100.00	0.0	100.00	0.0	100.00	0.0
	소득	4,076,876	6.1	4,161,833	2.1	4,302,352	3.4	4,373,116	1.6	4,399,190	0.6
	경상소득	3,934,716	6.2	4,024,733	2.3	4,153,513	3.2	4,221,829	1.6	4,269,843	1.1
	근로소득	2,688,793	7.7	2,763,009	2.8	2,871,670	3.9	2,918,640	1.6	2,948,143	1.0
	사업소득	854,185	1.6	857,510	0.4	862,181	0.5	845,897	-1.9	858,727	1.5
	재산소득	20,946	28.8	20,314	-3.0	19,681	-3.1	19,705	0.1	16,084	-18.4
	이전소득	370,792	5.3	383,900	3.5	399,982	4.2	437,587	9.4	446,888	2.1
	비경상소득	142,160	4.3	137,100	-3.6	148,839	8.6	151,287	1.6	129,347	-14.5
	가계지출	3,216,894	3.3	3,261,590	1.4	3,355,512	2.9	3,373,302	0.5	3,361,396	-0.4
	소비지출	2,457,441	2.7	2,480,725	0.9	2,551,057	2.8	2,563,092	0.5	2,549,731	-0.5
	비소비지출	759,453	5.1	780,865	2.8	804,454	3.0	810,211	0.7	811,665	0.2
근로자 가구	가구원 수	3.38	-0.1	3.37	-0.1	3.31	-1.8	3.27	-1.2	3.24	-0.9
	가구주 연령	46.13	1.0	46.42	0.6	46.50	0.2	47.16	1.4	47.98	1.8
	가구분포	62.63	2.0	63.28	1.0	63.61	0.5	63.70	0.1	62.63	-1.7
	소득	4,447,094	5.9	4,568,793	2.7	4,704,293	3.0	4,785,259	1.7	4,867,817	1.7
	경상소득	4,308,866	6.1	4,431,487	2.8	4,554,989	2.8	4,627,211	1.6	4,738,235	2.4
	근로소득	3,838,020	6.2	3,956,788	3.1	4,071,575	2.9	4,101,468	0.7	4,216,016	2.8
	사업소득	190,882	3.2	195,383	2.4	185,262	-5.2	195,783	5.7	187,133	-4.4
	재산소득	15,703	21.8	12,962	-17.5	14,776	14.0	14,686	-0.6	11,498	-21.7
	이전소득	264,262	5.2	266,354	0.8	283,376	6.4	315,275	11.3	323,588	2.6
	비경상소득	138,228	1.0	137,306	-0.7	149,304	8.7	158,048	5.9	129,581	-18.0
	가계지출	3,458,447	3.3	3,514,244	1.6	3,631,274	3.3	3,640,881	0.3	3,665,118	0.7
	소비지출	2,598,969	2.8	2,630,247	1.2	2,710,615	3.1	2,711,431	0.0	2,721,263	0.4
	비소비지출	859,478	4.9	883,997	2.9	920,658	4.1	929,450	1.0	943,856	1.5
근로자 외 가구	가구원 수	3.11	-1.0	3.05	-1.7	3.02	-0.9	2.99	-1.2	2.93	-1.9
	가구주 연령	54.42	0.3	55.25	1.5	55.91	1.2	56.62	1.3	56.75	0.2
	가구분포	37.37	-3.2	36.72	-1.7	36.39	-0.9	36.30	-0.2	37.37	2.9
	소득	3,456,472	5.6	3,460,574	0.1	3,599,647	4.0	3,649,845	1.4	3,613,651	-1.0
	경상소득	3,307,724	5.4	3,323,829	0.5	3,451,620	3.8	3,510,421	1.7	3,484,696	-0.7
	근로소득	762,946	5.9	705,930	-7.5	773,899	9.6	842,890	8.9	822,859	-2.4
	사업소득	1,965,733	4.3	1,998,465	1.7	2,045,623	2.4	1,986,785	-2.9	1,984,494	-0.1
	재산소득	29,733	37.5	32,984	10.9	28,256	-14.3	28,515	0.9	23,773	-16.6
	이전소득	549,312	7.1	586,451	6.8	603,842	3.0	652,233	8.0	653,571	0.2
	비경상소득	148,749	9.8	136,744	-8.1	148,027	8.3	139,424	-5.8	128,955	-7.5
	가계지출	2,812,105	2.5	2,826,225	0.5	2,873,403	1.7	2,903,727	1.1	2,852,279	-1.8
	소비지출	2,220,272	2.0	2,223,075	0.1	2,272,106	2.2	2,302,771	1.3	2,262,200	-1.8
	비소비지출	591,834	4.1	603,150	1.9	601,297	-0.3	600,956	-0.1	590,079	-1.8

출처) 가계동향조사(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4) 가계수지 지표(흑자율, 평균소비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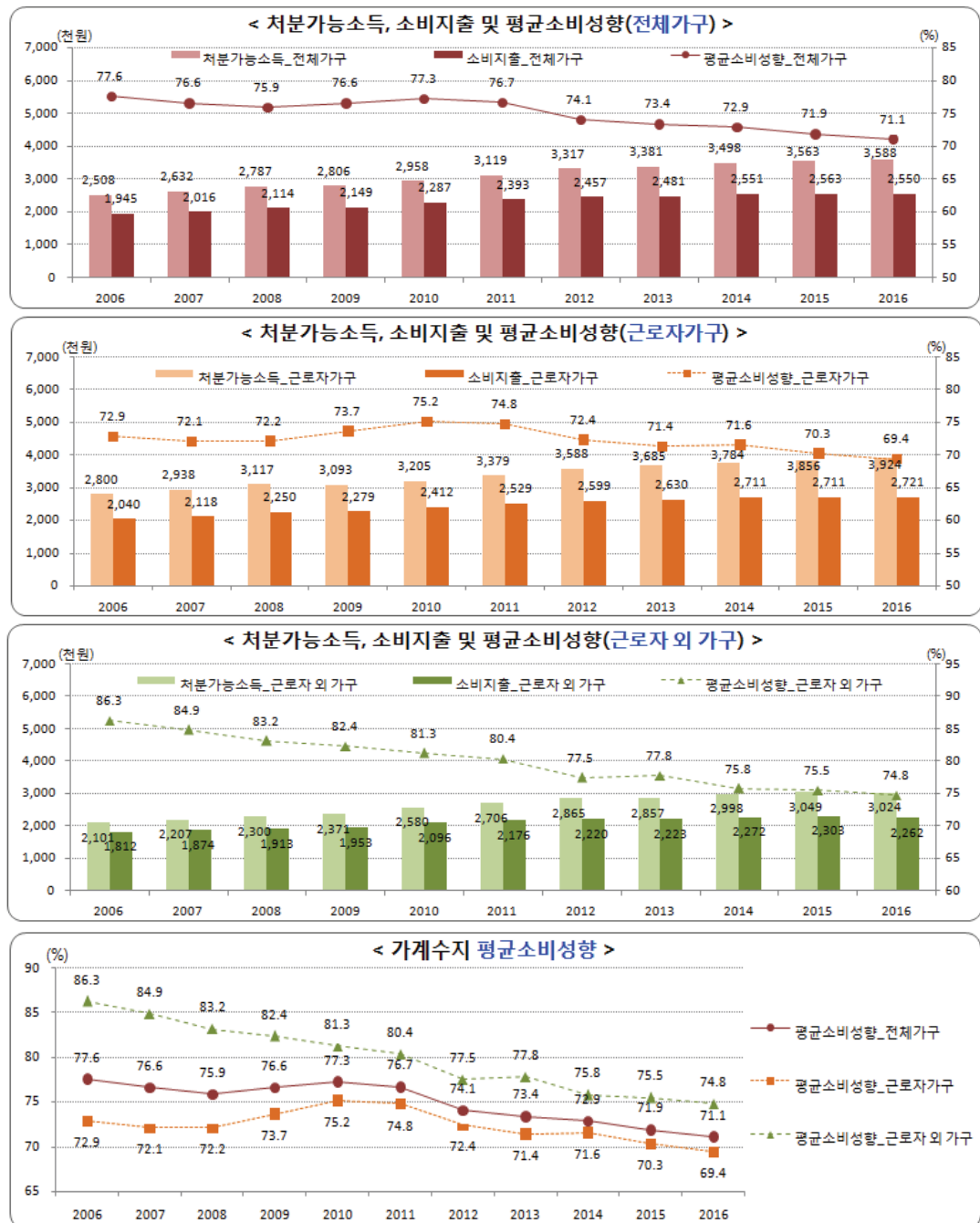
- 2016년 가구의 흑자율(=흑자액/처분가능소득)은 28.9%로 0.9%p 상승,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은 71.1%로 0.9% 하락
- 2016년 연간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가계소득-비소비지출)은 358만 8천으로 0.7% 증가, 이중 소비지출을 제외한 흑자액(=처분가능소득-소비지출)은 103만 8천원으로 3.8% 증가

<그림> 처분가능소득, 흑자액 및 흑자율



출처) 가계동향조사(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그림> 처분가능소득, 소비지출 및 평균소비성향



출처) 가계동향조사(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표>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지표(연간, 2인 이상) (단위: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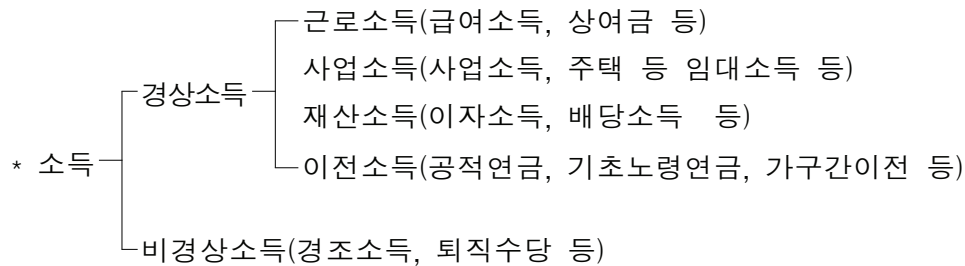
항목	시점	소득 (A)	가계지출	소비 지출 (B)	비소비 지출 (C)	처분 가능소득 (A-C)	증 감 률	흑자액 (A-C-B)	증 감 률	흑자율 (A-C-B) /(A-C) ×100	증 감	평균 소비성향 B/(A-C) ×100	증 감
전 체 가 구	2006	3,038,307	2,475,298	1,945,017	530,281	2,508,026	4.3	563,009	5.9	22.4	0.3	77.6	-0.3
	2007	3,200,005	2,583,685	2,015,909	567,776	2,632,230	5.0	616,320	9.5	23.4	1.0	76.6	-1.0
	2008	3,390,738	2,718,046	2,114,217	603,829	2,786,908	5.9	672,692	9.1	24.1	0.7	75.9	-0.7
	2009	3,432,021	2,775,560	2,149,184	626,375	2,805,646	0.7	656,461	-2.4	23.4	-0.7	76.6	0.7
	2010	3,631,713	2,960,892	2,286,874	674,018	2,957,695	5.4	670,820	2.2	22.7	-0.7	77.3	0.7
	2011	3,841,586	3,114,946	2,392,666	722,280	3,119,306	5.5	726,641	8.3	23.3	0.6	76.7	-0.6
	2012	4,076,876	3,216,894	2,457,441	759,453	3,317,422	6.4	859,982	18.4	25.9	2.6	74.1	-2.6
	2013	4,161,833	3,261,590	2,480,725	780,865	3,380,968	1.9	900,243	4.7	26.6	0.7	73.4	-0.7
	2014	4,302,352	3,355,512	2,551,057	804,454	3,497,898	3.5	946,841	5.2	27.1	0.4	72.9	-0.4
	2015	4,373,116	3,373,302	2,563,092	810,211	3,562,906	1.9	999,814	5.6	28.1	1.0	71.9	-1.0
	2016	4,399,190	3,361,396	2,549,731	811,665	3,587,526	0.7	1,037,794	3.8	28.9	0.9	71.1	-0.9
근 로 자 가 구	2006	3,406,365	2,646,432	2,040,336	606,096	2,800,269	5.6	759,932	9.1	27.1	0.9	72.9	-0.9
	2007	3,589,469	2,768,843	2,117,762	651,081	2,938,388	4.9	820,626	8.0	27.9	0.8	72.1	-0.8
	2008	3,811,962	2,945,343	2,250,490	694,853	3,117,109	6.1	866,619	5.6	27.8	-0.1	72.2	0.1
	2009	3,805,120	2,990,827	2,278,633	712,194	3,092,926	-0.8	814,293	-6.0	26.3	-1.5	73.7	1.5
	2010	3,965,336	3,171,900	2,411,762	760,138	3,205,198	3.6	793,436	-2.6	24.8	-1.6	75.2	1.6
	2011	4,198,582	3,348,239	2,529,152	819,087	3,379,495	5.4	850,343	7.2	25.2	0.4	74.8	-0.4
	2012	4,447,094	3,458,447	2,598,969	859,478	3,587,616	6.2	988,647	16.3	27.6	2.4	72.4	-2.4
	2013	4,568,793	3,514,244	2,630,247	883,997	3,684,795	2.7	1,054,549	6.7	28.6	1.1	71.4	-1.1
	2014	4,704,293	3,631,274	2,710,615	920,658	3,783,635	2.7	1,073,020	1.8	28.4	-0.3	71.6	0.3
	2015	4,785,259	3,640,881	2,711,431	929,450	3,855,809	1.9	1,144,378	6.7	29.7	1.3	70.3	-1.3
	2016	4,867,817	3,665,118	2,721,263	943,856	3,923,961	1.8	1,202,698	5.1	30.7	1.0	69.4	-1.0
근 로 자 외 가 구	2006	2,525,752	2,236,977	1,812,276	424,701	2,101,050	2.1	288,775	-4.5	13.7	-0.9	86.3	0.9
	2007	2,659,192	2,326,572	1,874,476	452,096	2,207,096	5.0	332,620	15.2	15.1	1.3	84.9	-1.3
	2008	2,770,222	2,383,209	1,913,469	469,740	2,300,482	4.2	387,013	16.4	16.8	1.8	83.2	-1.8
	2009	2,867,047	2,449,586	1,953,163	496,423	2,370,624	3.0	417,461	7.9	17.6	0.8	82.4	-0.8
	2010	3,122,076	2,638,560	2,096,098	542,462	2,579,613	8.8	483,515	15.8	18.7	1.1	81.3	-1.1
	2011	3,274,255	2,744,200	2,175,764	568,436	2,705,819	4.9	530,055	9.6	19.6	0.8	80.4	-0.8
	2012	3,456,472	2,812,105	2,220,272	591,834	2,864,638	5.9	644,367	21.6	22.5	2.9	77.5	-2.9
	2013	3,460,574	2,826,225	2,223,075	603,150	2,857,423	-0.3	634,348	-1.6	22.2	-0.3	77.8	0.3
	2014	3,599,647	2,873,403	2,272,106	601,297	2,998,350	4.9	726,244	14.5	24.2	2.0	75.8	-2.0
	2015	3,649,845	2,903,727	2,302,771	600,956	3,048,889	1.7	746,118	2.7	24.5	0.3	75.5	-0.3
	2016	3,613,651	2,852,279	2,262,200	590,079	3,023,572	-0.8	761,372	2.0	25.2	0.7	74.8	-0.7

출처) 가계동향조사(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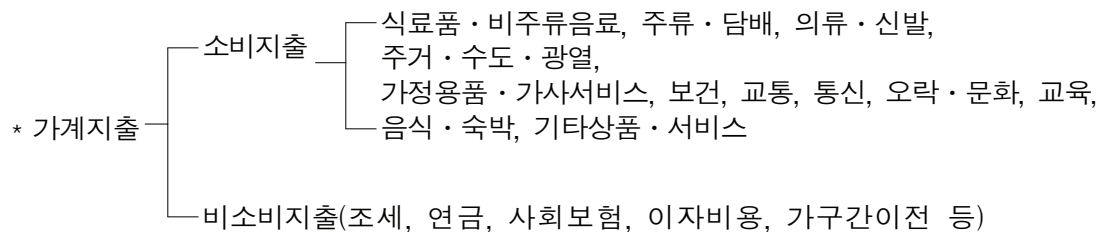
< 가계수지 지표 >

□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결과로서 산출

- **소득**: 가구가 생산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일체의 현금 및 현물, 자본투자의 대가 및 타가구나 경제주체로부터 경상적 이전 및 기타 비경상적 활동으로 부터의 소득 포함



- **가계지출**: 가계를 운영하기 위해 소비하는 상품과 서비스 구입에 대한 대가로 지출한 소비지출과,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등 국민으로서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 및 가구 또는 비영리 단체 등에 대가없이 지출하는 금액의 합인 비소비지출로 구성



- **처분가능소득**[=소득 - 비소비지출]: 가구의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차감한 금액
- **흑자액**[=처분가능소득-소비지출]: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차감한 금액

소득		
비소비지출	소비지출	흑자액
	처분가능소득	

- **흑자율**[=(흑자액/처분가능소득)*100]: 처분가능소득에서 흑자액이 차지하는 비율
-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100]: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

다. 1인 이상 근로자 가구의 실태생계비 분석결과³⁾

(1) 근로자 가구의 표본평균 및 산출기준별 실태생계비 현황

1) 근로자 가구 전체 실태생계비 평균

- '16년 중 전체(1인 이상)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실태생계비는 3,066,325원으로 전년에 비해 2.1% 증가

<표> 1인 이상 근로자 가구의 표본평균, 절사 및 원저화평균 실태생계비('16년)
(단위: 원, %)

구 분		실태생계비 평균	증감률
표본평균		3,066,325	2.1%
절사평균 (각 소비지출 항목 기준)	1%	2,975,560	2.6%
	2%	2,921,769	2.3%
원저화 평균 (각 소비지출 항목 기준)	1%	3,038,756	2.3%
	2%	3,019,209	2.2%
근로소득 기준 상·하 5% 절사평균		2,920,105	1.4%
절사평균 (근로소득 5% 절사 후 소비지출 항목별)	1%	2,848,536	2.1%
	2%	2,799,134	1.8%
원저화 평균 (근로소득 5% 절사 후 소비지출 항목별)	1%	2,895,257	1.5%
	2%	2,877,350	1.5%

출처)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최저임금위원회 연구용역, 2017)

2) 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실태생계비 평균

<표> 근로자가구의 가구원 수별 표본평균, 절사 및 원저화평균 실태생계비('16년)
(단위: 원, %)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	
		생계비	증감률	생계비	증감률	생계비	증감률	생계비	증감률
표본평균		1,800,565	6.8%	2,515,002	-7.1%	3,638,408	5.8%	4,239,077	4.5%
절사평균 (각 소비지출 항목 기준)	1%	1,730,278	7.7%	2,476,222	-3.3%	3,526,240	5.6%	4,109,125	3.9%
	2%	1,697,100	7.5%	2,417,326	-3.9%	3,475,421	6.1%	4,033,306	3.0%
원저화 평균 (각 소비지출 항목 기준)	1%	1,774,113	7.0%	2,503,624	-5.8%	3,609,067	5.9%	4,201,218	4.2%
	2%	1,762,288	7.2%	2,484,533	-5.2%	3,583,390	5.8%	4,178,639	3.9%
근로소득 기준 상·하 5% 절사평균		1,746,192	4.6%	2,396,046	-7.7%	3,468,282	8.1%	4,043,119	2.6%
절사평균 (근로소득 5% 절사 후 소비지출 항목별)	1%	1,687,383	5.6%	2,355,789	-5.6%	3,377,716	7.7%	3,952,100	3.1%
	2%	1,656,285	5.7%	2,290,705	-6.1%	3,323,452	7.5%	3,897,727	2.7%
원저화 평균 (근로소득 5% 절사 후 소비지출 항목별)	1%	1,725,397	5.0%	2,383,570	-7.1%	3,434,097	7.7%	4,013,625	2.5%
	2%	1,711,201	5.0%	2,359,278	-6.2%	3,410,112	7.4%	4,001,275	2.5%

출처)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최저임금위원회 연구용역, 2017)

3)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최저임금위원회 연구용역, 2017.6)

<표> 근로자가구의 가구원 수별 실태생계비 표본평균 추이

(단위: 원, %)

		2014	2015	증감률	2016	증감률
전체	응답자 수	1,822	1,782	-	1,623	-
	소득	3,756,402	3,721,204	-0.9%	3,752,947	0.9%
	근로소득	3,318,848	3,250,647	-2.1%	3,331,334	2.5%
	기타소득	437,554	470,556	7.5%	421,613	-10.4%
	생계비	3,048,514	3,003,147	-1.5%	3,066,325	2.1%
	소비지출	2,553,433	2,515,547	-1.5%	2,555,919	1.6%
	비소비지출	495,081	487,601	-1.5%	510,405	4.7%
1인 가구	응답자 수	340	397	-	421	-
	소득	2,098,710	2,164,065	3.1%	2,352,510	8.7%
	근로소득	1,901,839	1,917,108	0.8%	2,089,737	9.0%
	기타소득	196,871	246,958	25.4%	262,773	6.4%
	생계비	1,586,266	1,686,405	6.3%	1,800,565	6.8%
	소비지출	1,323,492	1,418,516	7.2%	1,498,891	5.7%
	비소비지출	262,774	267,889	1.9%	301,674	12.6%
2인 가구	응답자 수	433	443	-	388	-
	소득	3,555,941	3,571,451	0.4%	3,364,713	-5.8%
	근로소득	3,010,099	2,969,668	-1.3%	2,834,445	-4.6%
	기타소득	545,842	601,784	10.2%	530,268	-11.9%
	생계비	2,744,183	2,707,573	-1.3%	2,515,002	-7.1%
	소비지출	2,268,998	2,247,601	-0.9%	2,113,047	-6.0%
	비소비지출	475,185	459,973	-3.2%	401,955	-12.6%
3인 가구	응답자 수	489	450	-	371	-
	소득	4,200,352	4,451,727	6.0%	4,456,594	0.1%
	근로소득	3,589,613	3,786,862	5.5%	3,974,049	4.9%
	기타소득	610,739	664,865	8.9%	482,545	-27.4%
	생계비	3,363,173	3,437,488	2.2%	3,638,408	5.8%
	소비지출	2,823,977	2,865,940	1.5%	2,991,168	4.4%
	비소비지출	539,196	571,548	6.0%	647,241	13.2%
4인 이상 가구	응답자 수	560	492	-	443	-
	소득	4,691,013	4,648,893	-0.9%	4,845,494	4.2%
	근로소득	4,288,909	4,223,020	-1.5%	4,384,459	3.8%
	기타소득	402,104	425,873	5.9%	461,034	8.3%
	생계비	4,012,777	4,055,062	1.1%	4,239,077	4.5%
	소비지출	3,377,440	3,416,180	1.1%	3,559,391	4.2%
	비소비지출	635,337	638,882	0.6%	679,685	6.4%

출처)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최저임금위원회 연구용역, 2017)

(2) 근로자 가구의 분위수별 실태생계비

<표> 근로자가구의 가구원 수별 분위수별 실태생계비('16년)

(단위: 원, %)

구분	전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	
	생계비	증감률	생계비	증감률	생계비	증감률	생계비	증감률	생계비	증감률
표본평균	3,066,325	2.1%	1,800,565	6.8%	2,515,002	-7.1%	3,638,408	5.8%	4,239,077	4.5%
10%	1,146,084	-1.9%	761,868	11.6%	1,204,297	-8.1%	1,856,349	5.1%	2,157,046	-5.2%
25%	1,737,015	0.0%	1,109,364	7.0%	1,554,256	-9.2%	2,402,798	1.1%	2,906,116	4.7%
50%(중위수)	2,644,432	0.4%	1,576,859	1.4%	2,167,303	-10.4%	3,179,395	5.5%	3,628,149	0.7%
75%	3,917,441	3.8%	2,228,523	9.0%	3,111,038	-5.3%	4,249,521	7.7%	5,149,297	0.6%
90%	5,410,000	2.0%	3,011,631	9.3%	4,360,267	-3.5%	6,055,969	13.2%	6,949,534	6.1%

출처)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최저임금위원회 연구용역, 2017)

< 가구원 중 소득자수 비율(근로자 가구, 가계동향조사)¹⁾ >

시점	전체 가구원 수별 비율(%)						가구원 중 소득자 수 ²⁾ 비율(%)						
	합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합계	0인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2015	100.00	17.94	21.72	24.25	29.23	6.86	100.00	-	57.56	35.99	5.10	1.33	0.02
2016	100.00	19.02	22.15	25.05	26.78	7.00	100.00	-	57.20	35.45	6.31	1.04	0.00

주 1) 가계동향조사(통계청) 결과 중 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산출한 결과임

* 근로자 가구: 가구주 직업이 임금근로자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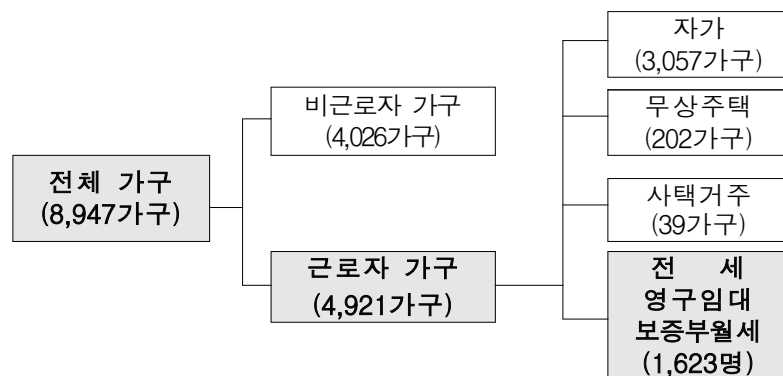
* 가구원 중 소득자 수: 가구원 중 종사상 지위가 취업자(근로자, 자영업자)인 경우

출처) 가계동향조사(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원자료)

< 근로자 가구의 실태생계비 분석 >

① 산출대상

-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자가, 무상주택, 사택 거주자는 제외
- 2016년 연간 『가계동향조사』자료에서 전체 가구는 8,947가구, 이 중 근로자 가구는 4,921가구이며, 이 중 자가(3,057가구), 무상주택(202가구), 사택(39가구를 제외한 1,623가구 자료 분석



② 산출 대상 변수 및 지표: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과 동일

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기준⁴⁾

□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15년 7월 이후 적용)

- '15.7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생계급여* 28%,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 이하에게 해당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방식으로 전환·확대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기준: ('15) 중위소득의 28%→('16) 29%→('17) 30%

<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기준

(단위: 원)

연도	맞춤형 급여 지급기준 ¹⁾							최저임금 (월환산) ²⁾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³⁾	
	급여종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5 ⁴⁾ '15.7월 이후	최저생계비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1,166,220	분 위 수	10% 658,267
	기준중위소득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784,870			25% 1,022,692
	생계급여	437,454	744,855	963,582	1,182,309	1,401,037	1,619,764			50% 1,521,561
	의료급여	624,935	1,064,078	1,376,546	1,689,013	2,001,481	2,313,948			75% 2,041,056
	주거급여	671,805	1,143,884	1,479,787	1,815,689	2,151,592	2,487,494			90% 2,755,850
	교육급여	781,169	1,330,098	1,720,682	2,111,267	2,501,851	2,892,435			표본평균 1,673,803
'16	기준중위소득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1,260,270	분 위 수	10% 750,774
	생계급여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25% 1,092,530
	의료급여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50% 1,554,068
	주거급여	698,677	1,189,640	1,538,978	1,888,317	2,237,656	2,586,994			75% 2,163,260
	교육급여	812,415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3,008,132			90% 2,884,428
										표본평균 1,752,898
'17	기준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1,352,230	-	
	생계급여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의료급여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주거급여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교육급여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주 1) 급여별 중위소득 대비 최저보장수준: 생계-29%, 의료-40%, 주거-43%, 교육-50%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5년 28%→'16년 29%, →'17년 30%

2) 월환산액=시간급×209시간

3)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가공·분석하여 전연령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임

4) 최저생계비: '15.1~6월

4) 보건복지부(보도자료-각년도,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기준 변경 >

○ ('15.6월 이전) 최저생계비 100% 이하 → ('15.7월 이후) 중위소득 일정비율 이하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기준 비교(보건복지부) >

	최저생계비(~'15.6월)	기준 중위소득('15.7월~)
정의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주요 내용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공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중위소득 수치 및 가구소득 증가율 반영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

현 행(~'15.6)			개 편 후('15.7~)		
선정기준	최대 급여수준(내용)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	
최저 생계비	최저생계비의 80%수준 현금급여 (현물급여 등 제외)	생계	중위소득 28%*	중위소득 30%	
	필수의료서비스의 낮은 본인부담률 (현물급여)	주거	중위소득 43%	지역별 기준임대료	
	수업료, 교과서대 등 (현물급여)	의료	중위소득 40%	현행과 동일	
		교육	중위소득 50%	현행과 동일	

* 생계급여는 기초법 부칙 제5조에 따라 '17년까지 중위 30%로 단계적 인상기로 함

○ 중위소득 결정의 의의

- 그간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되어온 “최저생계비”를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개편하여 상대적 빈곤개념 도입
-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산정(법 제6조의2제1항)
-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으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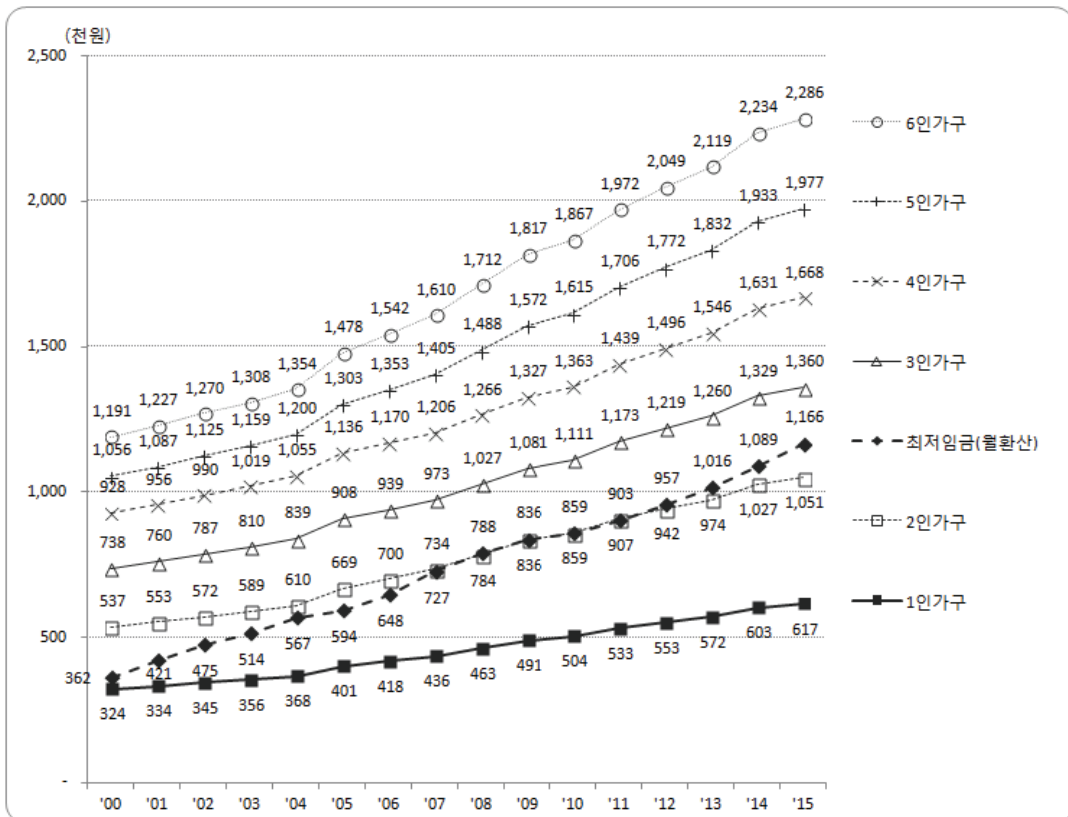
○ 기준 중위소득 결정방식

- 통계자료: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구소득 통계 중 조사의 대표성, 과거자료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
- 증가율
 - 소득값으로 사용하는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 자체의 과거 증가율을 적용
 - 급여 수준의 안정성 및 최근 중위소득의 반영 필요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
- 장기 증가율 적용 시 안정성 증가, 단기 증가율 적용 시 최근 경향 반영 가능

< (참고) 최저생계비('15.6월까지 적용, '15.7월부터 산출중단)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규정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결정의 근거
- 매년 9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연도 최저생계비를 결정·공표(가구원수별)
 - 국민의 소득 및 지출수준, 물가 등이 최저생계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매 3년마다 계측조사 실시

<그림> 최저생계비 추이



주) 최저임금(월환산)

: (~2004년 이전) 월환산액=시간급×226시간 / (2005년 이후~) 월환산액=시간급×209시간

【참고】 노·사 단체 제출 생계비(안)⁵⁾

가. 노·사 단체 제출 생계비(안) 요약

	근로자 위원 생계비(안)	사용자 위원 생계비(안)
산출 근거	① 비혼 단신노동자 생계비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가공·분석하여 산출한 실태생계비 기준 - 전 연령층 비혼 단신노동자 생계비에 2018년도 최저임금 적용시점 감안하여 2017년 물가상승률 예측치 (1.9%)⁶⁾ 반영하여 산정 ② 가구생계비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가공·분석하여 산출한 실태생계비 기준 - 복수의 가구원을 가진 가구형태를 고려하여 2인이상 가구 생계비에 2018년도 최저임금 적용시점 감안하여 2017년 물가상승률 예측치 반영하여 산정	①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 최저임금위원회의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에서 하위 25% 계층의 소득이 2017년 최저임금 (월환산액 1,352,230원/209시간 기준)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생계비 산정 - 2016년 하위 25% 계층의 실태생계비에 2017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1.9%, 한국은행)를 반영하여 산정
산출 결과	① 비혼 단신노동자 생계비 ⇒ 1,786,203원 $= 1,752,898 + (1,752,898 \times 1.9\%)$ ② 가구생계비 (2인, 3인, 4인이상 가구) ⇒ 2인 가구 2,562,787원 $= 2,515,002 + (2,515,002 \times 1.9\%)$ ⇒ 3인 가구 3,707,538원 $= 3,638,408 + (3,638,408 \times 1.9\%)$ ⇒ 4인이상 가구 4,319,619원 $= 4,239,077 + (4,239,077 \times 1.9\%)$	① 비혼 단신노동자 생계비 ⇒ 1,113,288원 $= 1,092,530 \times 1.019\%$

5) 2017년 2차 생계비전문위원회('17.6.22.)에 노·사 양측에서 제출한 내용임

6) 한국은행의 「2017년 경제전망(수정)」(2017.4.13) 사용

나. 근로자 위원 생계비(안)

2018. 1. 1 ~ 2018. 12. 31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생계비관련 노동자위원 단일안

2017년 6월 22일

1. 노동자위원 의견

○ 1988년 최저임금법 제정 이래 현재까지 ‘미혼단신노동자 생계비’만을 최저임금 심의의 기초자료로 삼았으나, 많은 노동자들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는 객관적 현실을 반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가구 내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10명 중 7~8명은 가구주나 배우자로서 기타 가구원인 경우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¹⁾ 것을 보더라도 최저임금 노동자들 대부분을 보조소득원이라 폄하하는 것은 그릇된 주장임.

○ 특히, 최저임금 이하 또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최저임금노동자의 상당수가 외벌이로 다수 가구원의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맞벌이의 경우에도 가계 전체 소득이 대단히 낮아 다수 가구원의 생계를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단신 가구뿐만 아니라 가구원 규모에 따른 가구별 생계비를 최저임금 심의 결정 시 주요 기준으로 삼아,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에 부합된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노동자위원이 제시하는 생계비를 최대한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아울러, 이를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반영하는 메커니즘 마련은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검토하여야 할 문제임²⁾.

1) 최저임금이 기계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오상봉, 2015)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가 가구 내에서 가구주인 경우는 43.61%, 배우자인 경우는 34.08%, 기타 가구원인 경우는 22.30%였으며,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39.51%는 가구주, 40.66%는 배우자, 19.82%만이 기타 가구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최저임금제 목적인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에 가장 부합하는 것일 수 있지만, 적절한 표준생계비 산정과 합리적 실태생계비 재측 방안 마련이 쉽지 않은 과제임을 감안하면, 가구원 수를 고려한 생계비를 최저임금 심의자료로 제시하되,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충분한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 이에, 노동자위원회는 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적용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이 되는 생계비로 비혼 단신노동자 1,786,203원과 2인 가구 2,562,787원, 3인 가구 3,707,538원, 4인이상 가구 4,319,619원을 제시함.

2. 추계기준 및 근거

(1) 비혼 단신노동자 생계비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가공·분석하여 산출한 실태생계비 기준
- 전 연령층 비혼 단신노동자 생계비에 2018년도 최저임금 적용시점 감안하여 2017년 물가상승률 예측치(1.9%)³⁾ 반영하여 산정

(2) 가구생계비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가공·분석하여 산출한 실태생계비 기준
- 복수의 가구원을 가진 가구형태를 고려하여 2인 이상 가구 생계비에 2018년도 최저임금 적용시점 감안하여 2017년 물가상승률 예측치 반영하여 산정

3. 생계비 추계

(1) 비혼 단신노동자 생계비

$$\bullet 1,752,898 + (1,752,898 \times 1.9\%) = 1,786,203 \text{원}$$

(2) 가구생계비

$$\bullet 2\text{인 가구: } 2,515,002 + (2,515,002 \times 1.9\%) = 2,562,787 \text{원}$$

$$\bullet 3\text{인 가구: } 3,638,408 + (3,638,408 \times 1.9\%) = 3,707,538 \text{원}$$

$$\bullet 4\text{인이상 가구: } 4,239,077 + (4,239,077 \times 1.9\%) = 4,319,619 \text{원}$$

3) 한국은행의 「2017년 경제전망(수정)」(2017.4.13) 사용

다. 사용자 위원 생계비(안)

1 사용자위원 생계비(안)

■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시 고려할 생계비는 1,113,288원

-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생계비 산정 시 소득수준이 최저임금(월환산액 기준)과 유사한 근로자의 생계비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

⇒ 최저임금위원회의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에서 하위 25% 계층의 소득이 2017년 최저임금(월환산액 1,352,230원/209시간 기준)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생계비 산정

- 2018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사용자위원 생계비(안)은 1,113,288원

※ 2016년 하위 25% 계층의 생계비에 2017년 물가상승률 전망치 1.9%를 반영하여 산정

$$\begin{aligned} & \text{최임위, 2016년 하위 25\% 계층의 실태생계비}^1) \\ & \times [1 + \text{2017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1.9\%, \text{한국은행})^2] \\ & = 1,092,530\text{원} \times 1.019 \\ & = \underline{1,113,288\text{원}} \end{aligned}$$

주 : 1. 최저임금위원회,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보고서, 2017.6

2. 한국은행 2017년 경제전망(수정), 2017.4

2 생계비 산정을 위한 고려 요인

■ 생계비 산정은 비혼 단신근로자 전체가 아닌 최저임금 대상 계층의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를 바탕으로 검토되어야 함.

○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생계비 산정 시 소득수준이 최저임금과 유사한 근로자의 생계비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

- 최저임금제의 목적은 소득 평준화가 아닌 저소득층 보호
 ※ 최저임금법 제1조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 목적으로 한다.”
- 따라서 비혼 단신근로자 전체의 평균치보다는 최저임금 수준에 해당하는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기초로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것이 타당

○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의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에서 제시하는 실태생계비(1,752,898원, 전연령 기준)는 고소득층 근로자까지 포함하고 있어, 최저임금 심의에 적합한 생계비가 과대 추계된 상황

- 근로소득 계층별 분포(10분위 기준)에서 8분위에 속한 근로자의 근로소득 평균치는 2,541,415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월 환산액 1,352,230원, 209시간 기준)보다 88% 가량 높음.
- 생계비는 소득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표로 소득수준이 높은 근로자들이 많이 포함될수록 왜곡된 결과를 도출

<표 1. 2016년 비혼 단신근로자 소득계층별 근로소득 분포>

(단위 : 명, 천원)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응답자수	37	38	37	38	38	37	38	37	38	38
근로소득	176	578	943	1,291	1,519	1,760	2,139	2,541	3,084	4,493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보고서, 2017.6

※ 따라서 합리적인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서는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자료 중 소득이 최저임금과 가장 유사한 계층의 생계비를 심의에 활용할 필요

3 합리적 생계비 산정 방안

■ 최저임금에 가장 근접한 소득 수준인 하위 25% 계층의 생계비를 최저임금 심의에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

- 최저임금(월 환산액 기준)과 가장 유사한 소득수준인 하위 25% 계층의 2016년 월평균 소득은 1,287,685원, 월평균 근로소득은 1,055,493원으로 나타남.

⇒ 하위 25% 계층의 소득(1,287,685원)이 올해 최저임금(월환산액 1,352,230원/209시간 기준)과 가장 유사한 수준

< 표 2. 2016년 하위 25% 계층의 소득 및 생계비(전연령 기준) >

구분	소득	근로소득	생계비
하위 25%	1,287,685원	1,055,493원	1,092,530원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보고서, 2017.6

-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의 취지를 고려해서도 하위 25% 계층의 생계비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
- 저임금근로자의 생계보장이라는 명분 하에 임금을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최저임금제의 특성을 감안할 때, 생계비는 하위 25% 계층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유사근로자의 임금

가. 개요

나. 임금동향

다. 최저임금 미만을

라. 임금전망

마. 최저임금 영향률

바. 임금지표간 상호관련성

2 유사근로자의 임금⁷⁾

가. 개요

(1) 유사근로자의 개념

- ‘유사근로자의 임금’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 현재 합의된 기준은 현재 없으며, 최저임금 수급자들을 별도로 조사하는 통계 또한 존재하지 않음
-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계자료들을 사업체규모, 연령, 성, 학력 등의 세부 특성별로 분석한 후 이를 기초로 최저임금 심의 시 ‘유사근로자의 임금’을 가늠

(2) 임금 관련 주요 통계

- 현재 가용한 임금에 관한 주요 조사통계들은 <표>과 같음

<표> 임금 관련 주요 통계현황

조사명칭	조사기관	조사대상	조사유형	특징	
				장점	단점
사업체 노동력조사	고용노동부	5인 이상 민간 전산업	표본조사	- 월별조사로 시의성 확보	- 근로자들의 다양한 인적 특성 분석불가
임금결정 현황조사	고용노동부	100인 이상 민간 전산업	전수조사	- 수시조사로 시의성 높음	- 조사범위가 협소하고, 연초 임금타결률 저조로 자료의 대표성이 낮음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1인 이상 전체 가구	표본조사	- 가구의 소득 조사	- 사업체 특성이나 인별 임금에 대한 분석불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고용노동부	1인 이상 민간 전산업	표본조사	- 민간부문의 임금, 근로시간 상세조사	- 정부부문 임금근로자 제외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통계청	1인 이상 전체 가구	표본조사	- 모든 임금근로자 조사	- 임금 및 근로시간 상세 내역 미조사

7)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최저임금위원회 연구용역, 2017.6)

나. 임금동향

(1) 사업체의 임금

1) 사업체노동력조사(매월조사 기준)

- '16년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민간부문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의 시간당 정액급여(=월 정액급여/월 소정근로시간)은 전년대비 4.1% 증가
- '16년 시간당 임금총액(=월 임금총액/월 총근로시간)은 전년대비 4.7% 증가

<표> 사업체노동력조사 시간당 정액급여 상승률 추이

(단위: 원, %)

		2014	2015	2016
전 체		16,210 (4.1)	16,597 (2.4)	17,285 (4.1)
규 모 별	5-9인	12,765 (4.5)	13,176 (3.2)	13,792 (4.7)
	10-29인	14,754 (4.4)	15,165 (2.8)	15,812 (4.3)
	30-99인	16,369 (5.8)	16,561 (1.2)	17,013 (2.7)
	100-299인	16,628 (0.6)	16,755 (0.8)	17,717 (5.7)
	300인이상	20,892 (6.5)	21,717 (3.9)	22,411 (3.2)
산 업 별	B.광업	16,872 (-0.3)	17,692 (4.9)	18,482 (4.5)
	C.제조업	15,381 (3.8)	15,842 (3.0)	16,546 (4.4)
	D.전기가스업	26,489 (5.1)	26,911 (1.6)	28,317 (5.2)
	E.폐기물환경	14,604 (5.7)	14,916 (2.1)	15,722 (5.4)
	F.건설업	16,630 (7.0)	17,598 (5.8)	18,344 (4.2)
	G.도소매업	16,523 (4.5)	16,904 (2.3)	17,653 (4.4)
	H.운수업	13,775 (6.4)	14,316 (3.9)	15,163 (5.9)
	I.숙박음식업	10,167 (3.4)	10,444 (2.7)	10,953 (4.9)
	J.정보서비스	21,824 (1.7)	22,012 (0.9)	22,916 (4.1)
	K.금융보험업	24,027 (3.7)	24,630 (2.5)	25,854 (5.0)
	L.부동산임대	11,452 (7.6)	11,893 (3.8)	12,555 (5.6)
	M.기술서비스	23,710 (4.7)	24,361 (2.7)	25,413 (4.3)
	N.사업지원	10,272 (1.1)	10,521 (2.4)	11,021 (4.8)
	P.교육서비스	20,886 (4.2)	21,346 (2.2)	22,066 (3.4)
	Q.보건복지	13,865 (3.2)	14,114 (1.8)	14,687 (4.1)
	R.예술여가	14,530 (4.5)	15,156 (4.3)	15,886 (4.8)
	S.기타서비스	12,802 (3.4)	13,076 (2.1)	13,734 (5.0)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각년도

2)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매년 6월조사 기준)

- '16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민간부문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시간당 통상임금(=월통상임금/월소정근로시간)은 전년대비 6.4% 증가
- '15.6월 월력 상 근로일수의 증가로 시간당 통상임금이 전년대비 감소한 바 있으며, '16년 시간당 통상임금 증가율은 이에 대한 반등효과가 포함되어 있음
- '16년 시간당 임금총액(=월 임금총액/월 총근로시간)은 전년대비 4.2% 증가

<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시간당 통상임금 상승률 추이

(단위: 원, %)

		2014		2015		2016	
전 체		13,975	(2.6)	13,193	(-5.6)	14,038	(6.4)
규 모 별	1-4인	10,535	(1.2)	10,160	(-3.6)	10,676	(5.1)
	5-9인	12,731	(2.9)	12,069	(-5.2)	12,799	(6.1)
	10-29인	13,864	(-0.5)	13,023	(-6.1)	14,137	(8.6)
	30-99인	14,600	(3.1)	13,529	(-7.3)	14,597	(7.9)
	100-299인	15,281	(0.1)	14,289	(-6.5)	15,302	(7.1)
	300인이상	20,453	(5.9)	19,911	(-2.7)	20,340	(2.2)
산 업 별	A.농림어업	14,405	(-1.1)	13,547	(-6.0)	14,263	(5.3)
	B.광업	14,714	(3.5)	14,928	(1.5)	16,061	(7.6)
	C.제조업	14,190	(7.1)	13,437	(-5.3)	14,281	(6.3)
	D.전기가스업	23,288	(1.0)	22,359	(-4.0)	22,810	(2.0)
	E.폐기물환경	13,485	(1.9)	13,173	(-2.3)	13,708	(4.1)
	F.건설업	16,116	(4.5)	15,122	(-6.2)	16,529	(9.3)
	G.도소매업	12,281	(4.7)	11,626	(-5.3)	12,494	(7.5)
	H.운수업	13,067	(2.0)	12,868	(-1.5)	13,306	(3.4)
	I.숙박음식업	8,000	(-1.2)	7,796	(-2.6)	8,372	(7.4)
	J.정보서비스	18,929	(-2.4)	17,548	(-7.3)	18,560	(5.8)
	K.금융보험업	19,849	(-4.5)	17,237	(-13.2)	19,445	(12.8)
	L.부동산임대	10,249	(3.7)	9,665	(-5.7)	10,961	(13.4)
	M.기술서비스	19,663	(1.7)	18,216	(-7.4)	19,203	(5.4)
	N.사업지원	11,960	(7.2)	11,588	(-3.1)	12,443	(7.4)
	P.교육서비스	19,944	(5.8)	19,250	(-3.5)	18,405	(-4.4)
	Q.보건복지	11,579	(-0.8)	11,097	(-4.2)	11,701	(5.4)
	R.예술여가	11,126	(1.2)	10,693	(-3.9)	11,196	(4.7)
	S.기타서비스	10,749	(0.7)	10,051	(-6.5)	10,794	(7.4)

<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근로일수, 근로시간, 통상임금

(단위: 일, 시간, 천원, %)

	2012	2013	2014	2015	2016
월 소정근로일수(일)	20.4	19.7	19.6	21.2	20.6
증가율(%)	(-3.5)	(-3.3)	(-0.8)	(8.1)	(-2.8)
월 소정근로시간(시간)	162.0	156.0	154.3	166.6	161.5
증가율(%)	(-4.1)	(-3.7)	(-1.1)	(7.9)	(-3.1)
월 통상임금(천원)	1,984	2,063	2,101	2,155	2,239
증가율(%)	(5.3)	(4.0)	(1.8)	(2.6)	(3.9)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 각년도

(2) 임금결정현황조사(협약임금 인상률)

- '16년 「임금결정현황조사」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체의 임금총액은 전년대비 3.3% 인상

<표> 협약임금 상승률 추이

(단위: %)

	2014	2015	2016
전 체	4.1	3.7	3.3
민간부문	4.2	3.7	3.3
공공부문	1.9	3.3	3.4

자료: 통계청, KOSIS.

(3)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가구의 임금근로자 임금)

- '16년 8월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 따르면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4.2% 상승

<표>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시간당 임금 상승률 추이

(단위: 원, %)

		2014		2015		2016	
전 체		12,533	(2.2)	12,918	(3.1)	13,464	(4.2)
규 모 별	1-4인	7,593	(3.0)	8,131	(7.1)	8,249	(1.5)
	5-9인	9,721	(3.4)	10,035	(3.2)	10,420	(3.8)
	10-29인	12,006	(2.5)	12,258	(2.1)	12,703	(3.6)
	30-99인	14,162	(2.3)	14,554	(2.8)	14,879	(2.2)
	100-299인	15,294	(0.1)	15,785	(3.2)	16,815	(6.5)
	300인이상	20,409	(1.0)	20,669	(1.3)	21,909	(6.0)

		2014		2015		2016	
산업별	A.농림어업	7,702	(13.3)	7,486	(-2.8)	7,569	(1.1)
	B.광업	14,199	(9.1)	15,219	(7.2)	17,692	(16.2)
	C.제조업	13,950	(6.0)	14,653	(5.0)	15,152	(3.4)
	D.전기가스업	22,652	(4.8)	22,024	(-2.8)	22,655	(2.9)
	E.폐기물환경	12,952	(9.5)	12,635	(-2.4)	13,614	(7.7)
	F.건설업	12,067	(1.6)	12,463	(3.3)	12,935	(3.8)
	G.도소매업	10,290	(2.4)	10,507	(2.1)	10,863	(3.4)
	H.운수업	12,614	(2.5)	12,759	(1.2)	12,848	(0.7)
	I.숙박음식업	6,692	(2.7)	7,116	(6.3)	7,554	(6.2)
	J.정보서비스	16,880	(0.5)	16,768	(-0.7)	18,076	(7.8)
	K.금융보험업	17,743	(-0.3)	19,129	(7.8)	19,376	(1.3)
	L.부동산임대	9,964	(12.8)	10,068	(1.0)	10,672	(6.0)
	M.기술서비스	18,820	(4.4)	18,228	(-3.1)	19,437	(6.6)
	N.사업지원	8,494	(1.8)	9,038	(6.4)	9,507	(5.2)
	O.공공행정	15,980	(1.9)	16,571	(3.7)	17,782	(7.3)
	P.교육서비스	15,629	(0.0)	16,019	(2.5)	16,803	(4.9)
	Q.보건복지	10,447	(-1.1)	10,681	(2.2)	11,238	(5.2)
	R.예술여가	9,564	(-1.8)	10,198	(6.6)	10,731	(5.2)
	S.기타서비스	9,171	(-3.3)	9,865	(7.6)	9,784	(-0.8)
	T.가구내활동	5,217	(-3.2)	5,131	(-1.6)	5,861	(14.2)
	U.국제외국	17,238	(17.7)	18,004	(4.4)	18,310	(1.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4) 가계동향조사(근로자가구의 소득)

- '16년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인 이상 비농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전년대비 2.8% 증가

<표> 가계동향조사 월평균 소득 상승률 추이

(단위: 천원, %)

	2014		2015		2016	
경상소득	4,555	(2.8)	4,627	(1.6)	4,738	(2.4)
근로소득	4,072	(2.9)	4,101	(0.7)	4,216	(2.8)

자료: 통계청, KOSIS.

다. 최저임금 미만을

(1) 최저임금 미만을 추이

1)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

- '15년 심의에서 '16년 최저임금을 5,580원에서 6,030원으로 인상할 경우 '16년에 임금인상이 필요한 근로자수의 비율인 영향률은 18.2%로 예상하였고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를 이용하여 2016년 8월 기준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실제로 최저임금(시간당 6,030원)을 못 받는 미만 근로자 비율을 산정한 미만율은 13.6%임
- '01~'16년의 최저임금 미만율을 살펴보면, 최저임금 미만율은 대체적으로 '09년까지 상승하였다가 '12년까지 하락하였고, '13년 이후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표> 최저임금 미만율 전체 추이(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천명, %)

조사기간	'06.8	'07.8	'08.8	'09.8	'10.8	'11.8	'12.8	'13.8	'14.8	'15.8	'16.8
임금근로자수(A)	15,351	15,882	16,103	16,479	17,048	17,510	17,734	18,240	18,776	19,312	19,627
미만근로자수(B)	1,442	1,891	1,747	2,104	1,958	1,899	1,699	2,086	2,270	2,222	2,664
미만율(B/A)	9.4	11.9	10.8	12.8	11.5	10.8	9.6	11.4	12.1	11.5	13.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각년 8월 원자료

2)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준

- '15년 심의에서 '16년 최저임금을 5,580원에서 6,030원으로 인상할 경우 '16년에 임금인상이 필요한 근로자수의 비율인 영향률은 8.7%로 예상하였고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이용하여 2016년 6월 기준으로 민간부문 임금근로자 중에서 실제로 최저임금(시간당 6,030원)을 못 받는 미만 근로자 비율을 산정한 미만율은 7.3%임

- 자료의 시계열적 일관성이 유지되는 '07~'16년의 최저임금 미만율을 살펴보면, '10년 이후 '12년까지 하락하였으나 '13년 이후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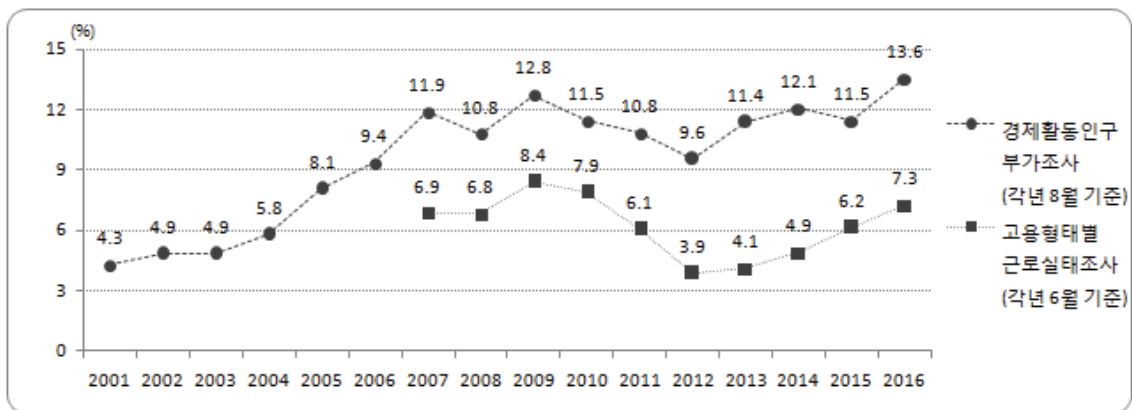
<표> 최저임금 미만율 전체 추이(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단위: 천명, %)

조사기간	'07.6	'08.6	'09.6	'10.6	'11.6	'12.6	'13.6	'14.6	'15.6	'16.6
임금근로자수(A)	10,864	10,867	11,214	11,889	12,588	12,971	13,471	13,962	14,670	15,354
미만근로자수(B)	750	744	947	941	767	506	558	687	915	1,126
미만율(B/A)	6.9	6.8	8.4	7.9	6.1	3.9	4.1	4.9	6.2	7.3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각년 6월 원자료

<그림> 최저임금 미만율 추이



주: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중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경제 활동인구부가조사」, 각년 8월 원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각년 6월 원자료

(2) 최저임금 미만을 특성별 동향

1)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

- 지난 3년간 최저임금 미만을 특성별로 살펴보면, 영세규모, 일용, 여성, 19세 이하 및 60세 이상, 농림어업·숙박 및 음식점업·가구내 활동 근로자일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최저임금 미만을 특성별 동향(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단위: %)

	2014	2015	2016	산업분류(9차)	2014	2015	2016
전 체	12.1	11.5	13.6	A.농림어업	42.9	37.9	46.2
				B.광업	2.6	0.0	0.0
1-4인	28.9	27.9	33.6	C.제조업	5.2	4.7	6.0
5-9인	16.7	15.3	17.9	D.전기가스업	0.5	0.5	1.3
10-29인	9.8	9.2	11.5	E.폐기물환경	4.8	2.9	3.1
30-99인	5.1	5.3	6.0	F.건설업	6.3	5.8	8.2
100-299인	2.9	3.2	4.0	G.도소매업	16.6	16.4	18.8
300인이상	1.9	1.7	1.4	H.운수업	10.1	9.3	11.7
상용	2.5	2.5	3.3	I.숙박음식업	34.2	35.2	35.5
임시	26.6	26.9	32.1	J.정보서비스	1.2	2.5	1.5
일용	40.1	34.4	38.8	K.금융보험업	1.5	2.4	4.2
남성	7.4	7.6	9.0	L.부동산임대	20.5	19.8	22.7
여성	18.2	16.6	19.4	M.기술서비스	2.4	1.6	3.0
19세이하	54.0	53.9	53.0	N.사업지원	20.8	18.1	21.7
20-24세	23.1	22.8	25.0	O.공공행정	12.9	11.5	12.6
25-29세	5.5	6.2	6.9	P.교육서비스	5.4	4.8	7.0
30-39세	4.0	4.1	5.1	Q.보건복지	12.9	12.3	15.2
40-49세	6.5	5.9	7.4	R.예술여가	21.8	17.8	21.9
50-54세	10.6	9.7	11.2	S.기타서비스	21.5	19.2	24.7
55-59세	14.3	12.5	15.2	T.가구내활동	55.4	57.1	62.2
60세이상	43.1	37.0	41.9	U.국제외국	0.0	0.0	0.0

주 :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중을 의미함
(최저임금미만율=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수/전체 근로자수×1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각년 8월 원자료

2)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준

- 지난 3년간 최저임금 미만을 특성별로 보면, 영세규모, 비정규직, 여성, 19세 이하 및 60세 이상,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 및 임대업 근로자일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최저임금 미만율 특성별 동향(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준)

(단위: %)

	2014	2015	2016	산업분류	2014	2015	2016
전 체	4.9	6.2	7.3	A.농림어업	4.1	4.3	6.5
				B.광업	1.1	3.9	3.1
1-4인	10.5	13.0	16.9	C.제조업	2.1	2.8	3.2
5-9인	3.7	5.3	5.8	D.전기가스업	0.1	0.1	0.2
10-29인	3.5	4.4	4.4	E.폐기물환경	0.9	2.6	2.7
30-99인	3.2	3.9	3.9	F.건설업	1.2	2.0	2.7
100-299인	2.7	3.2	3.9	G.도소매업	7.0	8.8	10.7
300인이상	0.7	1.0	0.9	H.운수업	11.4	11.6	13.0
정규직	2.7	3.7	4.3	I.숙박음식업	10.0	11.1	17.1
비정규직	10.7	12.6	15.2	J.정보서비스	0.8	1.2	2.2
남성	4.0	4.8	5.5	K.금융보험업	10.8	15.6	13.7
여성	6.2	8.3	10.0	L.부동산임대	18.9	18.2	16.5
19세이하	14.2	16.6	23.8	M.기술서비스	0.7	1.4	2.0
20-24세	6.8	8.5	12.0	N.사업지원	3.6	4.8	5.4
25-29세	3.1	3.8	4.8	P.교육서비스	3.7	5.1	8.1
30-39세	2.8	3.7	4.3	Q.보건복지	2.0	4.2	4.2
40-49세	4.3	5.4	6.3	R.예술여가	13.4	11.5	15.7
50-54세	5.1	6.7	8.0	S.기타서비스	6.8	10.7	12.3
55-59세	6.6	7.9	8.8				
60세이상	13.1	14.5	14.4				

주 :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중을 의미함
(최저임금미만율=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수/전체 근로자수×100)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각년 6월 원자료

(3) 시간당 임금계층별 근로자 분포

<표> 시간당 임금계층별 근로자 분포

(단위: 천명, %)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준			
	해당 근로자수	단순 비율	누적 근로자수	누적 비율	해당 근로자수	단순 비율	누적 근로자수	누적 비율
6030원 미만	2,664	13.6	2,664	13.6	1,126	7.3	1,126	7.3
6030원 이상 6100원 미만	37	0.2	2,700	13.8	120	0.8	1,245	8.1
6100원 이상 6200원 미만	201	1.0	2,901	14.8	98	0.6	1,343	8.7
6200원 이상 6300원 미만	100	0.5	3,001	15.3	132	0.9	1,475	9.6
6300원 이상 6400원 미만	238	1.2	3,239	16.5	86	0.6	1,562	10.2
6400원 이상 6500원 미만	83	0.4	3,323	16.9	78	0.5	1,640	10.7
6500원 이상 6600원 미만	140	0.7	3,462	17.6	181	1.2	1,821	11.9
6600원 이상 6700원 미만	81	0.4	3,543	18.1	85	0.6	1,905	12.4
6700원 이상 6800원 미만	86	0.4	3,630	18.5	89	0.6	1,994	13.0
6800원 이상 6900원 미만	38	0.2	3,668	18.7	129	0.8	2,123	13.8
6900원 이상 7000원 미만	652	3.3	4,320	22.0	79	0.5	2,202	14.3
7000원 이상 7100원 미만	53	0.3	4,374	22.3	192	1.3	2,394	15.6
7100원 이상 7200원 미만	195	1.0	4,568	23.3	236	1.5	2,630	17.1
7200원 이상 7300원 미만	77	0.4	4,645	23.7	162	1.1	2,792	18.2
7300원 이상 7400원 미만	86	0.4	4,730	24.1	105	0.7	2,897	18.9
7400원 이상 7500원 미만	300	1.5	5,030	25.6	104	0.7	3,001	19.5
7500원 이상	14,597	74.4	19,627	100.0	12,353	80.5	15,354	100.0
전 체	19,627	100.0	19,627	100.0	15,354	100.0	15,354	100.0
6030원 미만			2,664	13.6			1,126	7.3
6030원 이상			16,963	86.4			14,229	92.7
전 체			19,627	100.0			15,354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2016년 8월 원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6년 6월 원자료

(4)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분포

1)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

- 최저임금(6,030원) 미만 근로자 비율을 살펴보면 영세규모, 일용, 여성, 19세 이하 및 60세 이상, 고졸이하, 농림어업·숙박 및 음식점업·가구내 활동 근로자일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분포(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단위: 천명, %)

		근로자수(A)	구성비율	미만자수(B)	구성비율	발생비율(B/A) (미만율)
전 체		19,627	100.0	2,664	100.0	13.6
규모	1-4인	3,531	18.0	1,187	44.6	33.6
	5-9인	3,510	17.9	628	23.6	17.9
	10-29인	4,425	22.5	510	19.2	11.5
	30-99인	3,763	19.2	226	8.5	6.0
	100-299인	1,961	10.0	78	2.9	4.0
	300인이상	2,435	12.4	35	1.3	1.4
종사상 지위	상용	12,966	66.1	428	16.1	3.3
	임시	5,196	26.5	1,667	62.6	32.1
	일용	1,464	7.5	569	21.4	38.8
성	남성	11,008	56.1	993	37.3	9.0
	여성	8,619	43.9	1,671	62.7	19.4
연령	19세이하	257	1.3	136	5.1	53.0
	20-24세	1,377	7.0	344	12.9	25.0
	25-29세	2,155	11.0	150	5.6	6.9
	30-39세	4,720	24.1	240	9.0	5.1
	40-49세	4,900	25.0	362	13.6	7.4
	50-54세	2,247	11.4	251	9.4	11.2
	55-59세	1,815	9.2	277	10.4	15.2
학력	60세이상	2,154	11.0	903	33.9	41.9
	고졸이하	10,020	51.1	2,255	84.6	22.5
	초 대 졸	2,814	14.3	168	6.3	6.0
산업	대졸이상	6,793	34.6	242	9.1	3.6
	A.농림어업	129	0.7	60	2.2	46.2
	B.광업	18	0.1	0	0.0	0.0
	C.제조업	3,913	19.9	233	8.8	6.0
	D.전기가스업	87	0.4	1	0.0	1.3
	E.폐기물환경	90	0.5	3	0.1	3.1
	F.건설업	1,462	7.5	119	4.5	8.2
	G.도소매업	2,228	11.4	419	15.7	18.8
	H.운수업	768	3.9	90	3.4	11.7
	I.숙박음식업	1,481	7.5	526	19.8	35.5
	J.정보서비스	714	3.6	11	0.4	1.5
	K.금융보험업	770	3.9	33	1.2	4.2
	L.부동산임대	389	2.0	88	3.3	22.7
	M.기술서비스	954	4.9	29	1.1	3.0
	N.사업지원	1,221	6.2	264	9.9	21.7
	O.공공행정	1,014	5.2	128	4.8	12.6
	P.교육서비스	1,480	7.5	104	3.9	7.0
	Q.보건복지	1,809	9.2	275	10.3	15.2
	R.예술여가	264	1.3	58	2.2	21.9
	S.기타서비스	767	3.9	190	7.1	24.7
	T.가구내활동	54	0.3	33	1.3	62.2
	U.국제외국	17	0.1	0	0.0	0.0

주 :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중을 의미함
(최저임금미만율=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수/전체 근로자수×1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2016년 8월 원자료

2)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준

- 최저임금(6,030원) 미만 근로자 비율을 살펴보면 영세규모, 비정규직, 여성, 19세 이하 및 60세 이상, 고졸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부동산 임대업 근로자일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분포(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준)

(단위: 천명, %)

		근로자수(A)	구성비율	미만자수(B)	구성비율	발생비율(B/A) (미만율)
전 체		15,354	100.0	1,126	100.0	7.3
규모	1-4인	4,077	26.6	690	61.3	16.9
	5-9인	2,036	13.3	119	10.5	5.8
	10-29인	2,895	18.9	128	11.4	4.4
	30-99인	2,661	17.3	103	9.2	3.9
	100-299인	1,739	11.3	68	6.0	3.9
	300인이상	1,947	12.7	18	1.6	0.9
고용 형태	정규직	11,102	72.3	479	42.5	4.3
	비정규직	4,253	27.7	647	57.5	15.2
성	남성	9,037	58.9	497	44.1	5.5
	여성	6,317	41.1	629	55.9	10.0
연령	19세이하	176	1.1	42	3.7	23.8
	20-24세	962	6.3	116	10.3	12.0
	25-29세	1,629	10.6	78	6.9	4.8
	30-39세	3,898	25.4	169	15.0	4.3
	40-49세	4,147	27.0	260	23.1	6.3
	50-54세	1,741	11.3	138	12.3	8.0
	55-59세	1,438	9.4	126	11.2	8.8
	60세이상	1,362	8.9	197	17.5	14.4
학력	고졸이하	7,513	48.9	811	72.0	10.8
	초 대 졸	2,339	15.2	108	9.6	4.6
	대졸이상	5,502	35.8	207	18.4	3.8
산업	A.농림어업	36	0.2	2	0.2	6.5
	B.광업	14	0.1	0	0.0	3.1
	C.제조업	3,630	23.6	115	10.2	3.2
	D.전기가스업	64	0.4	0	0.0	0.2
	E.폐기물환경	76	0.5	2	0.2	2.7
	F.건설업	1,186	7.7	32	2.9	2.7
	G.도소매업	1,983	12.9	212	18.8	10.7
	H.운수업	734	4.8	95	8.5	13.0
	I.숙박음식업	1,117	7.3	191	17.0	17.1
	J.정보서비스	501	3.3	11	1.0	2.2
	K.금융보험업	699	4.6	96	8.5	13.7
	L.부동산임대	399	2.6	66	5.8	16.5
	M.기술서비스	915	6.0	19	1.6	2.0
	N.사업지원	1,037	6.8	56	5.0	5.4
	P.교육서비스	777	5.1	63	5.6	8.1
	Q.보건복지	1,380	9.0	58	5.2	4.2
	R.예술여가	215	1.4	34	3.0	15.7
	S.기타서비스	592	3.9	73	6.5	12.3

주 :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중을 의미함
(최저임금미만율=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수/전체 근로자수×100)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6년 6월 원자료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

- 다양한 인적특성을 조사하는 인별(人別)조사이며, 조사표본수가 풍부하고 통계적 대표성이 비교적 높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고용노동부)와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통계청)를 이용하여 최저임금 미만율, 영향률을 분석
- 비록 두 조사 모두 일정 시점에서 최저임금 미만율 및 미만근로자의 임금실태를 파악하는데 약간의 한계는 있지만, 이를 시계열적으로 비교하거나 인적·사업체별 특성을 파악하는 데는 여전히 매우 유용함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개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고용노동부)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통계청)
조사 대상	조사형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체조사	전체 가구조사
	조사부문	민간부문 임금근로자	전체 임금근로자
	모집단('16년)	15,354천명	19,627천명
조사주기		연간 1회	연간 1회
조사기준		6월	3개월 평균(6~8월)
임금 구성내역		- 정액급여 · 통상임금(기본급, 통상적 수당) · 기타수당 - 초과급여 - 특별급여	- 임금총액
근로시간 구성내역		- 소정 실근로시간 - 초과 실근로시간 - 휴일 실근로시간	- 평상 근로시간
유의사항		① 최저임금법 비적용자 중 공무원(정부소속 일반근로자 포함, 가사사용인은 제외되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적용제외근로자가 포함) ② 임금이 천원단위로 기재되어 최저임금 미만여부 판단에 한계가 있지만,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유사한 「기본급+통상적 수당」을 계산할 수 있음. ③ 동일한 기간(월)의 임금과 근로시간을 토대로 계산 ④ 임금 및 근로시간은 인사담당자가 임금대장을 토대로 작성	① 최저임금법 비적용대상(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공무원, 가사사용인, 적용제외근로자 등)이 포함 ② 임금이 만원단위로 기재되어 최저임금 미만여부 판단에 한계가 있고 최저임금 미산입 임금(초과근로수당, 상여금 등)까지도 포함 ③ 시간급은 동일한 기간의 임금과 근로시간을 토대로 계산해야 하나 조사대상 기간이 불일치(임금은 3개월 기준, 근로시간은 1주 기준) ④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이 응답자의 기억에 의존하거나 가구원의 대리응답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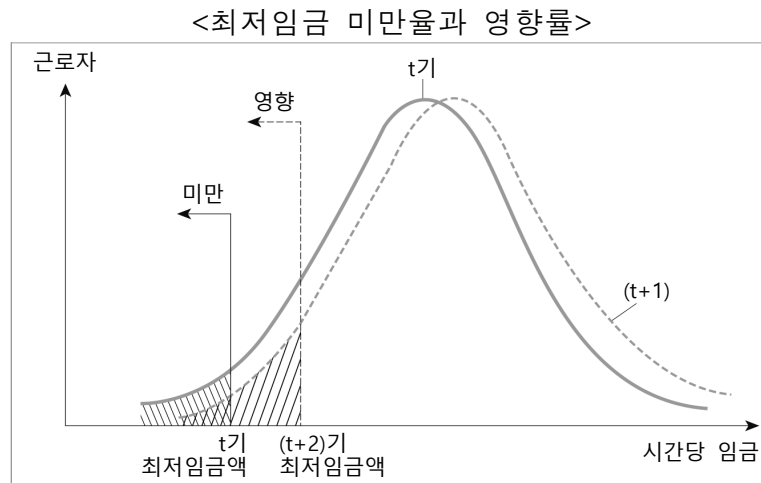
라. 임금전망

- '17년 임금총액 기준 명목 임금상승률 예측치 : 3.5%
- 한국노동연구원의 '명목 임금상승률 예측치'는 대내외 경제환경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여 매년 4월 초 「노동리뷰」에 발표함

마. 최저임금 영향률

< 최저임금 영향률 >

- 최저임금 영향률이란 당년도에 심의한 최저임금을 차년도에 적용할 경우 차년도 최저임금 위반을 면하기 위해 임금 인상이 되어야 할 근로자 수 비율의 추정치



- 최저임금 영향률은 미만율과는 다른 개념임. 영향률은 최저임금 변경(인상)으로 인해 임금 인상이 필요한 근로자 규모의 추정치이며, 미만율은 실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규모의 결과치임
-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특정연도의 최저임금 영향률이 최저임금 미만율보다 높게 나타나게 되며, 그간 통계도 대체로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다만, 최저임금 영향률은 실적치가 아닌 예측치이기 때문에 통계적 편차가 발생할 수 있고, 다음을 유의해야 함
 - ① 임금상승률 예측치가 낮을수록 임금분포의 우측 이동 정도가 작기 때문에 최저임금 영향률은 높게 도출됨.
 - ② 최저임금 영향률을 산정함에 있어 최저임금 적용제외자(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정신·신체장애자)와 감액적용자(3개월 미만 수습근로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자료의 제약 상 이들을 별도로 제외하여 추정할 수가 없음.
- ※ 다른 국가에서도 이들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 영향률을 추정함.

(1)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를 통한 '18년 최저임금 영향률은 '16년 8월 기준 시간당 임금총액에 '17년 임금상승률 예측치(3.5%)를 결합하여 '17년 전체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과 근로자수의 분포를 추정한 후, '17년에 심의하여 '18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액에 따라 '18년에 임금인상이 되어야 할 근로자수 비율을 추정한 것임.
- 시급별 최저임금 영향률은 <부표 1> 참조
-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서 조사된 정보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시간당 임금(hourly wage rate)을 산출
 - 시간당 임금 = 평상 월 평균임금 / 월 평균 근로시간
 - 분석자료의 제약 상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출할 수 없음

(2)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고용형태근로실태조사를 통한 '18년 최저임금 영향률은 '16년 6월 기준 시간당 통상임금에 '17년 임금상승률 예측치(3.5%)를 결합하여 '17년 전체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과 근로자수의 분포를 추정한 후, '17년에 심의하여 '18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액에 따라 '18년에 임금인상이 필요한 근로자수의 비율을 추정한 것임.
- 시급별 최저임금 영향률은 <부표 1> 참조
- 최저임금 산입임금은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을 합친 통상임금과 유사하기 때문에,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 조사된 정보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시간당통상임금(hourly wage rate)을 산출
 - 시간당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 실근로시간

바. 임금지표*간 상호관련성

* 최저임금 영향률 및 미만율, 임금전망치 및 실적치, 최저임금

□ 최저임금 영향률과 미만율

1) 최저임금 영향률

- “최저임금 영향률”은 전년도에 조사된 시간당 임금액에 금년 임금 상승률 전망치를 결합하여 금년 시간당 임금액과 근로자 수의 분포(이하 “임금분포”)를 추정한 후 내년에 새로이 적용될 최저임금액에 따라 임금인상이 필요한 근로자 수의 비율을 추정한 것임

— < (예시) 최저임금 영향률 예측 > —

- 임금분포 형태 동일 유지,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정해져 있다고 가정하면,
⇒ 임금상승률 전망치가 높을수록 최저임금 영향률은 낮아짐
- 임금분포 형태 동일 유지, 임금상승률 전망치가 정해져 있다고 가정하면,
⇒ 내년도 최저임금액이 높을수록 최저임금 영향률은 높아짐

2) 두 지표 간 관계

- 최저임금액 미만인 근로자들의 임금이 모두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추정한 “최저임금 영향률”은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근로자 비율이 되지만, 모든 근로자의 실제 임금인상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율”이 발생

3) 두 지표 간 차이

- “최저임금 영향률”과 “최저임금 미만율” 간에는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주요 원인들은 다음과 같음
 - 첫 번째, 임금상승률 전망치와 실적치 간의 차이로 인하여 임금분포가 이동하는 정도와 방향의 차이가 발생
 - 두 번째, 임금상승률 전망치를 결합하여 추정한 내년의 임금분포와 실제로 이루어진 분포 간의 차이가 발생

4) 두 지표 간 시차

- 적용년도 기준으로 보면 “최저임금 영향률”은 적용년도 전년에 산출되며, 최저임금 미만율은 적용년도 다음 해에 산출되므로 적용년도에 대한 추정치와 실적치 간 2년의 시차가 존재
- 두 지표가 모두 산출되는 시점인 적용년도 다음 해 이후 비교가 가능

<표> 임금인상률 전망치, 협약임금 및 명목임금 인상률 실적치 추이

(단위: %)

적용 년도 기준	최저임금 영향률 및 미만율								최저 임금 인상률
	경제활동부가조사 기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준				
	영향률	임금인상률 (명목임금)		미만율	영향률	임금인상률 (협약임금)		미만율	
		심의 시 전망치 ¹⁾	실적치 ²⁾			심의 시 전망치 ³⁾	실적치 ⁴⁾		
2009	13.1	6.0	2.6	12.8	5.1	6.0	2.6	8.4	6.1
2010	15.9	-1.0	6.8	11.5	8.3	1.8	4.8	7.9	2.8
2011	14.2	5.0	1.0	10.8	9.7	4.2	5.1	6.1	5.1
2012	13.7	5.5	5.3	9.6	10.2	5.2	4.9	3.9	6.0
2013	14.7	5.0	3.9	11.4	8.5	5.9	3.6	4.1	6.1
2014	14.5	4.5	2.5	12.1	6.5	5.3	10.1	4.9	7.2
2015	14.6	5.2	3.5	11.5	6.0	10.3	4.7	6.2	7.1
2016 ⁵⁾	18.2	4.5	3.8	13.6	8.7	5.3	4.2	7.3	8.1

주 1)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상승률 전망치(노동리뷰, 각년도, KLI)

2)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임금총액(사업체노동력조사, 각년도, 고용노동부)

3), 4)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협약임금(임금결정현황조사-통상임금 기준, 각년도, 고용노동부)

* '09년 영향률 산출 시에는 한국노동연구원 전망치를 사용

* 협약임금 인상률은 100인 이상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하고, 타결률도 10%미만으로 대표성이 떨어지므로 '16년도부터는 노동연구원 전망치를 사용하기로 함(제1차 임금수준전문위원회 '16.5.19)

5) 최저임금 영향률 및 미만율 예시(2016년)

- 2016년 “최저임금 영향률”(예: 18.2%, 8.7%): 2016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2015년에 심의할 때, 2014년에 조사된 임금분포에 2015년 임금인상률 전망치를 결합하여 2015년 임금분포를 추정한 후 2016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따라 2016년에 임금인상이 필요한 근로자수의 비율을 추정한 것임.

- 2016년 “최저임금 미만율”(예:13.6%, 7.3%): 2016년에 조사된 결과를 이용하여 2017년에 2016년 임금분포를 구하여 2016년에 적용된 최저임금에 따른 2016년의 실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수의 비율을 산출한 것임.

3. 노동생산성

가. 개요

나. 노동생산성 동향

3 노동생산성⁸⁾

가. 개요

(1) 노동생산성의 개념

1) 정의 및 의미

- 생산성은 생산과정에 투입된 노동, 자본 등 요소투입(input)과 산출(output)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투입요소 1단위가 산출한 생산량(또는 부가가치)로 정의
 - 대표적인 국가통계로 노동투입량에 대한 생산량의 비율인 '(물적) 노동생산성'과 노동투입량에 대한 (불변) 부가가치의 비율인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이 있음.
- 노동생산성의 증가는 인적자본의 향상, 자본집약도의 제고, 기술혁신 등 3가지의 요인으로 분해될 수 있음
 - 기술혁신은 노동, 자본 등 단일 요소 생산성 측정에는 포함되지 않는 기술, 노사, 경영체제, 법·제도 등이 반영되기 때문에 총요소생산성 증가라고도 함

2) 작성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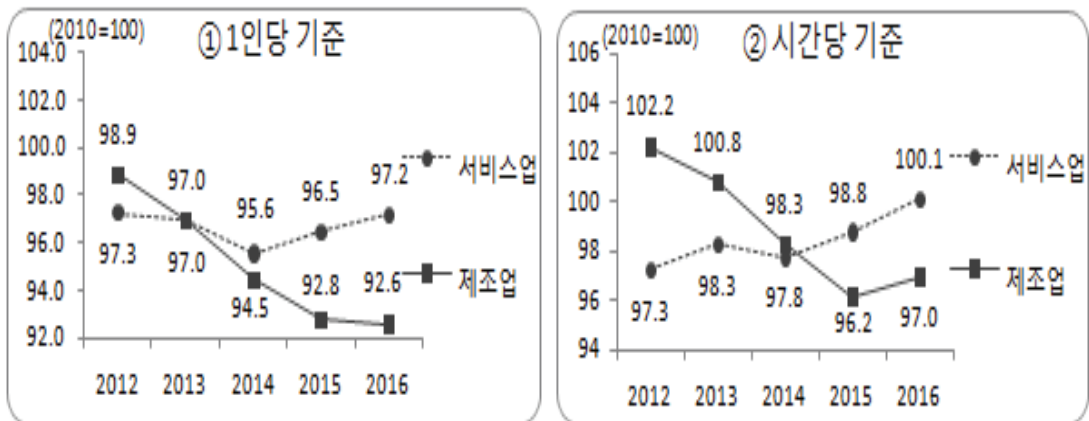
- 한국생산성본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계청, 한국은행, 고용노동부 통계를 가공·작성
 - ① 물적 기준 노동생산성, ② 불변부가가치 기준 노동생산성을 매분기 제조업(및 광업, 전기·가스 및 수도업)을 중심으로 작성
 - ① 물적 노동생산성은 노동투입량에 대한 총생산량(Gross Output)의 비율, ② 불변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은 노동투입량에 대한 순생산량(Net Output) 즉 부가가치(Value Added)의 비율임

8) 출처: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최저임금위원회 연구용역, 2017.6)

나. 노동생산성 동향

(1) 물적 기준 노동생산성($= \frac{\text{산출량(산업생산지수)}}{\text{노동투입량(취업자} \times \text{취업시간)}}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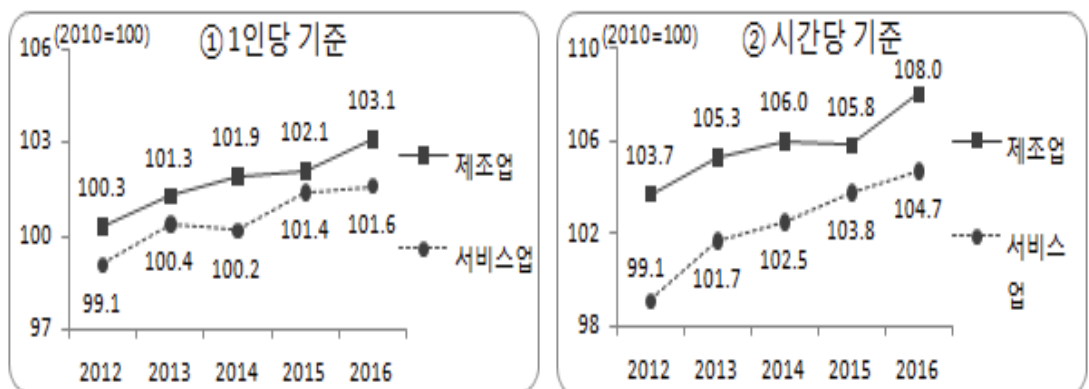
<그림-9> 물적 기준 노동생산성 추이



- '16년 제조업 전체 근로자의 물적 노동생산성은 인당 기준으로 전년 대비 0.3% 하락하고, 시간당 기준으로 전년대비 0.8% 상승
- '16년 서비스업 전체 근로자의 물적 노동생산성은 인당 기준으로 전년대비 0.7% 상승하고, 시간당 기준으로 전년대비 1.3% 상승

(2) 불변 부가가치 기준 노동생산성($= \frac{\text{산출량(불변 GDP지수)}}{\text{노동투입량(근로자수} \times \text{근로시간)}} \times 100$)

<그림-10> 불변 부가가치 기준 노동생산성 추이



- '16년 제조업 전체 근로자의 불변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은 인당 기준으로 전년대비 1.0% 상승하고, 시간당 기준으로 전년대비 2.1% 상승
- '16년 서비스업 전체 근로자의 불변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은 인당 기준으로 전년대비 0.3% 상승하고, 시간당 기준으로 전년대비 0.8% 상승

<표> 노동생산성 지수 및 증가율 추이

(단위: 2010=100, %)

		물적 노동생산성				불변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1인당		시간당		1인당		시간당	
제 조 업	2012	98.9	(-2.5)	102.2	(-0.4)	100.3	(-1.6)	103.7	(0.6)
	2013	97.0	(-1.9)	100.8	(-1.3)	101.3	(1.0)	105.3	(1.6)
	2014	94.5	(-2.6)	98.3	(-2.5)	101.9	(0.6)	106.0	(0.6)
	2015	92.8	(-1.8)	96.2	(-2.1)	102.1	(0.2)	105.8	(-0.1)
	2016	92.6	(-0.3)	97.0	(0.8)	103.1	(1.0)	108.0	(2.1)
서 비 스 업	2012	97.3	(-2.3)	97.3	(-2.8)	99.1	(-0.6)	99.1	(-1.2)
	2013	97.0	(-0.3)	98.3	(1.0)	100.4	(1.3)	101.7	(2.6)
	2014	95.6	(-1.5)	97.8	(-0.5)	100.2	(-0.2)	102.5	(0.8)
	2015	96.5	(1.0)	98.8	(1.1)	101.4	(1.2)	103.8	(1.3)
	2016	97.2	(0.7)	100.1	(1.3)	101.6	(0.3)	104.7	(0.8)

주: 전체 근로자 기준

자료: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 통계DB」, www.kpc.or.kr

산업통상자원부, www.motie.or.kr

(3) 국제비교

<표>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단위: 달러)

	한 국	덴 마 크	프 랑 스	독 일	이탈리아	일 본	스페인	영 국	미 국	OECD평균
2011	30.8	60.5	59.0	57.5	47.5	39.6	45.0	47.2	62.1	45.5
2012	29.9	61.6	59.1	57.8	47.3	40.0	45.9	46.9	62.2	45.6
2013	31.5	62.1	60.0	58.3	47.8	40.8	46.5	46.9	62.3	46.1
2014	31.2	63.1	60.5	58.5	47.8	40.8	46.7	47.0	62.5	46.4
2015	31.8	63.4	60.8	59.0	47.7	41.4	46.8	47.7	62.9	46.8
2016	-	63.1	61.6	59.7	47.4	-	47.3	47.5	-	-

주: 1) 노동생산성=전산업 GDP/총근로시간

2) 2010년 구매력평가기준(USD PPPs)의 불변가격(constant prices) 기준임

자료: OECD, <http://stats.oecd.org/>, 2017. 5.18 현재

4. 소득분배율

가. 개요

나. 소득분배율 동향

【참고1】 근로자 임금대비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참고2】 저임금근로자 관련 지표

【참고3】 기타 소득분배 관련 지표 동향

4 소득분배율⁹⁾

가. 개요

(1) 소득분배율의 개념

1) 정의

- 소득분배율이란 총소득이 균일하게 분배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대표적으로 분위수 배율, 지니계수 등이 있음

2) 작성개요

- 최저임금위원회의 소득분배율은 2008년 이후 다음의 ①과 ②지표에 따라 산출하여 왔으며, 2015년 제3차 전원회의에서 ③의 지표를 추가하기로 의결

① 하위 10%번째 근로자의 임금률(P10) ÷ 하위 50%번째 근로자의 임금률(P50, 중위값)

② 최저임금액 시급 ÷ 하위 50%번째 근로자의 임금률(P50, 중위값)

③ 최저임금액 시급 ÷ 근로자 임금률의 평균값(mean)

- 이들 지표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및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산출

※ 임금률 = 시간당 통상임금, 단 자료의 제약 상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자료는 ‘시간당 임금총액’을 활용

※ P10/P50 지수가 클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낮음을 의미

9) 출처: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최저임금위원회 연구용역, 2017)

나. 소득분배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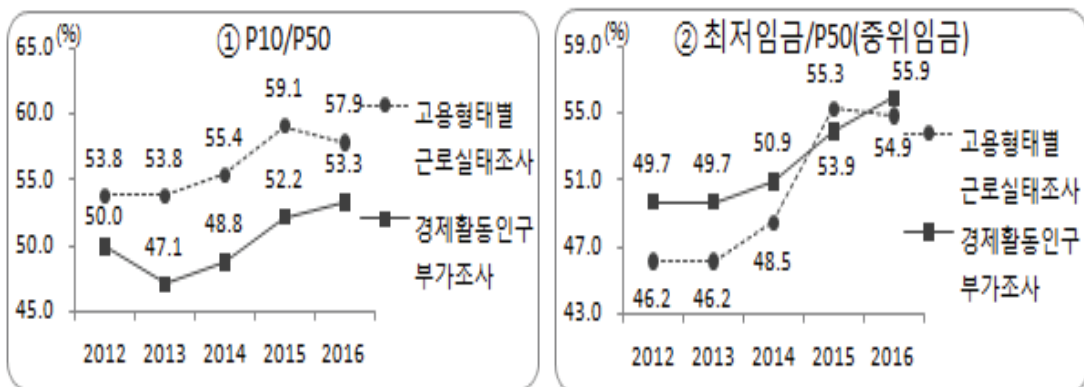
① 하위 10%번째 근로자의 임금률(P10) ÷ 하위 50%번째 근로자의 임금률(P50, 중위값)

-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2016년 6~8월 중 임금근로자 근로소득 하위 10%번째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5,757원으로 50%번째 임금 10,794원 대비 53.3% 수준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6년 6월 중 임금근로자 근로소득 하위 10%번째 근로자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6,364원으로 50%번째 임금 10,982원 대비 57.9% 수준

② 최저임금액 시급 ÷ 하위 50%번째 근로자의 임금률(P50, 중위값)

-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2016년 6~8월 중 임금근로자 근로소득 하위 50%번째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 10,794원 대비 최저임금 시급 (6,030원)의 상대적 수준은 55.9%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6년 6월 중 임금근로자 근로소득 하위 50%번째 근로자의 시간당 통상임금 10,982원 대비 최저임금 시급 (6,030원)의 상대적 수준은 5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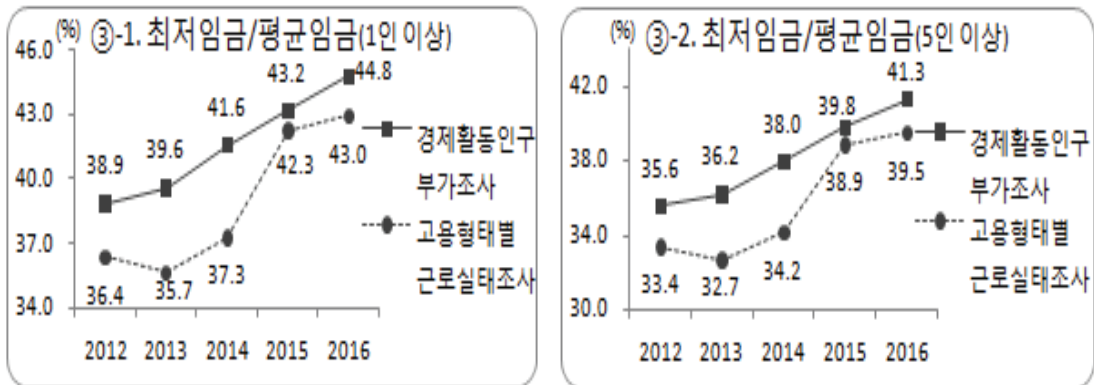
<그림> 소득분배율 추이(P10/P50, 최저임금/중위임금)



③ 최저임금액 시급 ÷ 근로자 임금률의 평균값(mean)

-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2016년 6~8월 중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 평균값 13,464원(5인 이상: 14,608원) 대비 최저임금 시급(6,030원)의 상대적 수준은 44.8%(5인 이상: 41.3%)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6년 6월 중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통상임금 평균값 14,038(5인 이상:15,254원) 대비 최저임금 시급(6,030원)의 상대적 수준은 43.0%(5인 이상: 39.5%)

<그림> 소득분배율 추이(최저임금/평균임금)



<표> 소득분배율 지표 추이

(단위: %, 원/시간)

		①	②	③	p10	p50	p90	mean	최저 임금
		p10 /p50	최임 /p50	최임 /mean	(하위 10%)	(중위값)	(상위 10%)	(평균값)	
		(%)			(원/시간)				
경제 활동 인구 부가 조사	2011	48.9	50.0	38.4 (35.0)	4,221	8,635	21,382	11,259 (12,338)	4,320
	2012	50.0	49.7	38.9 (35.6)	4,605	9,211	23,026	11,764 (12,882)	4,580
	2013	47.1	49.7	39.6 (36.2)	4,605	9,786	23,026	12,263 (13,415)	4,860
	2014	48.8	50.9	41.6 (38.0)	4,989	10,234	23,026	12,533 (13,695)	5,210
	2015	52.2	53.9	43.2 (39.8)	5,411	10,362	23,602	12,918 (14,019)	5,580
	2016	53.3	55.9	44.8 (41.3)	5,757	10,794	25,041	13,464 (14,608)	6,030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	2011	53.6	48.2	37.7 (34.1)	4,804	8,957	20,887	11,474 (12,659)	4,320
	2012	53.8	46.2	36.4 (33.4)	5,336	9,920	22,788	12,585 (13,728)	4,580
	2013	53.8	46.2	35.7 (32.7)	5,667	10,526	24,803	13,617 (14,880)	4,860
	2014	55.4	48.5	37.3 (34.2)	5,951	10,750	25,750	13,975 (15,244)	5,210
	2015	59.1	55.3	42.3 (38.9)	5,964	10,097	24,018	13,193 (14,343)	5,580
	2016	57.9	54.9	43.0 (39.5)	6,364	10,982	25,012	14,038 (15,254)	6,030

주 : ()는 5인 이상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각년 8월 원자료, 시간당 임금총액 기준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각년 6월 원자료, 시간당 통상임금 기준

【참고1】 근로자 임금대비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¹⁰⁾

(단위: 원,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고용노동부)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통계청)			
		평균값		중위값		평균값		중위값	
		상대적 수준 ¹⁾	상대적 수준	상대적 수준	상대적 수준				
시간당 임금총액(원)	1인 이상	16,697	36.1	12,500	48.2	13,464	44.8	10,794	55.9
	5인 이상	18,536	32.5	14,205	42.4	14,608	41.3	11,513	52.4
시간당 통상임금(원)	1인 이상	14,038	43.0	10,982	54.9	-		-	
	5인 이상	15,254	39.5	12,119	49.8	-		-	
최저임금(원)		6,030							

주: 각각의 임금에 대한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임(2016년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2016년 8월 원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6년 6월 원자료

10)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최저임금위원회 연구용역, 2017.6)

【참고2】 저임금근로자 관련 지표¹¹⁾

가. 저임금근로자의 개념

(1) 정의

□ 저임금근로자(low wage earner)는 크게 ‘절대적 기준’과 ‘상대적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음

①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절대적 기준

※ 법정 최저임금 미만자 등, 최저임금 미만 통계로 대체

②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상대적 기준

※ OECD 기준 : 전체근로자 중위임금(median wage)의 2/3 미만자, 국제적으로 가장 흔히 통용되는 지표

(2) 작성개요

○ 전체근로자 중위임금(median wage)의 2/3 미만자를 ‘저임금근로자’로 정의한 후 지표들을 산출

- 이들 지표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및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산출

나. 저임금근로자 동향

(1)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 2016년 6~8월 중 저임금근로자(자신의 시간당 임금이 전체 근로자 시간당 임금 중위값(10,794)의 2/3미만인 근로자)는 4,568천명이며,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23.3% 수준

(2)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준

○ 2016년 6월 중 저임금근로자(자신의 시간당 임금이 전체 근로자 시간당 임금 중위값(10,982원)의 2/3미만인 근로자)는 2,810천명이며,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18.3% 수준

11)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최저임금위원회 연구용역, 2017.6)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주요 노동·경제 지표 분석

<표> 상대적 저임금 근로자 분포(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2016년 8월 기준)

(단위: 천명, %)

		근로자수(A)	구성비율	저임금 근로자수(B)	구성비율	발생비율(B/A) (저임금근로자 비율)
규모	1-4인	3,531	18.0	1,799	39.4	50.9
	5-9인	3,510	17.9	1,122	24.6	32.0
	10-29인	4,425	22.5	938	20.5	21.2
	30-99인	3,763	19.2	465	10.2	12.4
	100-299인	1,961	10.0	171	3.7	8.7
	300인이상	2,435	12.4	73	1.6	3.0
종사상 지위	상용	12,966	66.1	1,167	25.5	9.0
	임시	5,196	26.5	2,614	57.2	50.3
	일용	1,464	7.5	787	17.2	53.8
성	남성	11,008	56.1	1,683	36.8	15.3
	여성	8,619	43.9	2,885	63.2	33.5
연령	19세이하	257	1.3	179	3.9	69.6
	20-24세	1,377	7.0	583	12.8	42.3
	25-29세	2,155	11.0	361	7.9	16.8
	30-39세	4,720	24.1	469	10.3	9.9
	40-49세	4,900	25.0	761	16.7	15.5
	50-54세	2,247	11.4	473	10.3	21.0
	55-59세	1,815	9.2	502	11.0	27.7
	60세이상	2,154	11.0	1,240	27.1	57.5
학력	고졸이하	10,020	51.1	3,706	81.1	37.0
	초 대 졸	2,814	14.3	364	8.0	12.9
	대졸이상	6,793	34.6	498	10.9	7.3
전체(2016년)		19,627	100.0	4,568	100.0	23.3
전체(2015년)		19,312	100.0	4,136	100.0	21.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2016년 8월 원자료

<표> 상대적 저임금 근로자 구성비율 및 발생비율 추이(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단위: 천명, %)

		구성비율			발생비율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규모	1-4인	40.0	39.9	39.4	50.6	45.7	50.9
	5-9인	24.5	24.1	24.6	33.7	29.3	32.0
	10-29인	20.2	20.3	20.5	22.1	19.5	21.2
	30-99인	10.1	10.3	10.2	12.6	11.4	12.4
	100-299인	3.3	3.4	3.7	8.2	7.5	8.7
	300인이상	1.9	2.0	1.6	3.8	3.4	3.0
종사상 지위	상용	23.0	23.1	25.5	8.6	7.6	9.0
	임시	57.6	57.8	57.2	51.1	46.8	50.3
	일용	19.4	19.0	17.2	58.2	51.4	53.8
성	남성	34.6	35.5	36.8	14.7	13.5	15.3
	여성	65.4	64.5	63.2	36.4	31.6	33.5
연령	19세이하	4.7	4.7	3.9	81.1	75.2	69.6
	20-24세	13.4	13.6	12.8	44.6	40.7	42.3
	25-29세	6.8	7.2	7.9	15.1	14.1	16.8
	30-39세	11.5	10.3	10.3	10.8	8.8	9.9
	40-49세	18.8	17.0	16.7	17.4	14.3	15.5
	50-54세	11.1	10.4	10.3	23.3	19.6	21.0
	55-59세	10.3	10.3	11.0	30.0	24.8	27.7
	60세이상	23.5	26.7	27.1	61.6	56.5	57.5
학력	고졸이하	82.0	82.3	81.1	38.0	34.2	37.0
	초 대 졸	8.8	8.1	8.0	14.2	11.9	12.9
	대졸이상	9.2	9.6	10.9	6.7	6.1	7.3
전체		100.0	100.0	100.0	24.1	21.4	23.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각년 8월 원자료

<표> 상대적 저임금 근로자 분포(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16년 6월 기준)

(단위: 천명, %)

		근로자수(A)	구성비율	저임금 근로자수(B)	구성비율	발생비율(B/A) (저임금근로자 비율)
규모	1-4인	4,077	26.6	1,436	51.1	35.2
	5-9인	2,036	13.3	370	13.2	18.2
	10-29인	2,895	18.9	405	14.4	14.0
	30-99인	2,661	17.3	327	11.6	12.3
	100-299인	1,739	11.3	206	7.3	11.8
	300인이상	1,947	12.7	66	2.3	3.4
고용형태	정규직	11,102	72.3	1,353	48.1	12.2
	비정규직	4,253	27.7	1,458	51.9	34.3
성	남성	9,037	58.9	1,204	42.8	13.3
	여성	6,317	41.1	1,606	57.2	25.4
연령	19세이하	176	1.1	113	4.0	64.5
	20-24세	962	6.3	344	12.3	35.8
	25-29세	1,629	10.6	218	7.8	13.4
	30-39세	3,898	25.4	409	14.5	10.5
	40-49세	4,147	27.0	620	22.1	15.0
	50-54세	1,741	11.3	325	11.6	18.7
	55-59세	1,438	9.4	306	10.9	21.3
	60세이상	1,362	8.9	474	16.9	34.8
학력	고졸이하	7,513	48.9	2,060	73.3	27.4
	초 대 졸	2,339	15.2	307	10.9	13.1
	대졸이상	5,502	35.8	443	15.8	8.1
전체(2016년)		15,354	100.0	2,810	100.0	18.3
전체(2015년)		14,670	100.0	2,847	100.0	19.4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6년 6월 원자료

<표> 상대적 저임금 근로자 구성비율 및 발생비율 추이(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단위: 천명, %)

		구성비율			발생비율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규모	1-4인	46.4	48.3	51.1	38.0	34.1	35.2
	5-9인	12.9	13.2	13.2	21.7	18.9	18.2
	10-29인	16.3	15.2	14.4	19.2	15.8	14.0
	30-99인	13.3	12.9	11.6	17.4	14.9	12.3
	100-299인	7.8	7.6	7.3	15.4	13.6	11.8
	300인이상	3.4	2.8	2.3	5.6	4.3	3.4
고용형태	정규직	51.2	49.2	48.1	15.6	13.3	12.2
	비정규직	48.8	50.8	51.9	38.8	34.9	34.3
성	남성	42.2	42.0	42.8	15.8	13.8	13.3
	여성	57.8	58.0	57.2	31.1	27.5	25.4
연령	19세이하	4.7	4.2	4.0	71.4	62.9	64.5
	20-24세	12.5	12.4	12.3	41.6	37.6	35.8
	25-29세	9.1	8.5	7.8	17.4	15.2	13.4
	30-39세	17.2	16.2	14.5	13.7	12.0	10.5
	40-49세	23.1	22.7	22.1	18.8	16.1	15.0
	50-54세	11.2	11.2	11.6	22.6	19.4	18.7
	55-59세	8.8	9.5	10.9	25.7	21.9	21.3
	60세이상	13.3	15.2	16.9	41.7	36.6	34.8
학력	고졸이하	75.3	73.9	73.3	33.2	29.0	27.4
	초 대 졸	11.6	11.8	10.9	16.4	14.8	13.1
	대졸이상	13.0	14.3	15.8	8.4	7.9	8.1
전체		100.0	100.0	100.0	22.0	19.4	18.3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각년 6월 원자료

【참고3】 기타 소득분배 관련 지표 동향

가. 국민계정을 이용한 소득분배 지표(노동소득 분배율)

<표>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단위: 십억원, %)

	피용자보수	노동소득 분배율(A)	노동소득 분배율(B)
1990	86,291	56.8	43.6
2000	260,585	57.8	41.0
2005	401,450	61.2	43.6
2010	536,350	59.4	42.4
2011	570,367	59.9	42.8
2012	599,309	60.9	43.5
2013	629,400	61.7	44.0
2014	661,406	62.8	44.5
2015	698,570	63.2	44.7
2016p	736,136	64.0	45.0

주: 1) 2010년 기준년 계열임.

2) 노동소득분배율(A)=(피용자보수+대외순수취피용자보수)/요소비용국민소득×100.

3) 노동소득분배율(B)=피용자보수/국내총생산×100, 「2016 KLI 노동통계」에서 재인용.

4) p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 (참고) 노동소득분배율 >

- 노동소득분배율이란 국민소득 중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다른 요소소득과 대비한 노동소득의 상대적 크기를 측정하는 데 주로 사용됨
- 노동소득분배율은 분모의 국민소득을 국내총생산으로 산정하는 경우(B)와 요소비용 국민소득(국내총생산-순생산 및 수입세)으로 제한하는 경우(A)가 있음. 한국은행은 현재 요소비용 국민소득을 사용하고 있음

나. 가계동향조사(통계청)을 이용한 소득분배 지표

<표> 소득분배 지표(가계동향조사)

(단위: %)

		전국가구 (1인 및 농가포함)		전국가구 (2인 이상 비농가)		도시근로자가구 (2인 이상 비농가)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상대 빈곤율	'12	17.6	14.6	14.3	12.2	14.4	12.1
	'13	17.8	14.6	14.3	11.7	14.5	11.8
	'14	17.9	14.4	13.7	11.0	13.5	10.8
	'15	18.6	13.8	14.5	10.4	14.2	10.4
	'16	19.5	14.7	15.6	11.1	15.4	11.0
지니 계수	'12	0.338	0.307	0.311	0.285	0.310	0.285
	'13	0.336	0.302	0.308	0.280	0.307	0.280
	'14	0.341	0.302	0.309	0.278	0.308	0.277
	'15	0.341	0.295	0.307	0.270	0.305	0.269
	'16	0.353	0.304	0.318	0.279	0.317	0.278
5분위 배율	'12	7.51	5.54	5.79	4.69	5.76	4.67
	'13	7.59	5.43	5.72	4.55	5.70	4.56
	'14	8.08	5.41	5.75	4.45	5.67	4.42
	'15	8.24	5.11	5.75	4.22	5.67	4.20
	'16	9.32	5.45	6.37	4.49	6.27	4.46

주) 시장소득 = 경상소득 - 공적이전소득,

가처분소득 = 경상소득(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공적비소비지출

자료 : 가계동향조사(통계청 국가통계 포털, <http://kosis.kr>)

< 소득분배지표(가계동향조사) >

○ 상대빈곤율

-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총인구에 차지하는 비율(OECD 기준)

○ 지니계수

- 소득 순으로 인구의 누적분포와 소득누적비율의 로렌츠곡선을 이용하여 소득분배균등선(45°선)과 로렌츠곡선 사이의 면적비율로 구해지며,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낮고 1에 가까울수록 분배가 불평등함을 의미함

○ 5분위배율

- 5분위배율은 전체 표본가구의 소득수준을 오름차 순으로 정렬한 다음 상위 20%에 위치한 가구의 평균소득을 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을 의미함.

* 소득5분위배율 = 상위 20%의 평균소득/하위 20%의 평균소득

< 가계동향조사의 소득 구성과 범주 >

-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에서 소득 관련 구성과 범주는 다음과 같음
 - 총소득 = 경상소득 + 비경상소득(경조소득이나 퇴직금 등)
 - ↳ 경상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 시장소득 = 경상소득 - 공적이전 소득(공적연금 및 기타 사회보장수혜금액 등)
 - 가처분소득 = 경상소득 - 공적 비소비지출(경상조세와 사회보장부담금(공적 연금 및 기타 사회보험 납부액))
- 소득분배지표 작성에 이용하는 소득자료는 가구원 수가 다르면 후생수준 유지에 필요한 소득이 다른 점을 반영하여 조정한 균등화 소득(가구별 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주는 OECD 방식)을 이용하여 산출

<표> 가계조사의 소득 구성과 범주

			구성 내역
소득	경상 소득	근로소득	가구주, 배우자, 기타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가구주, 배우자, 기타 가구원의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기타 재산소득
		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공적연금, 기타 사회보장수혜), 사적이전소득
	비경상소득		경조소득, 퇴직금 및 연금일시금, 기타 비경상소득
총소득			경상소득+비경상소득
경상소득			근로소득+사업 및 부업소득+재산소득+공 · 사적이전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공적이전소득
가처분소득			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공적비소비지출

주: 공적이전소득: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혜금, 세금환급금 등
 공적비소비지출: 경상조세, 연금, 사회보장 등

다. 소득분배지표의 국제비교(OECD)

(1) 소득불평등도 추이

1) 시장소득 기준

<표> 소득불평등도 추이 : 시장소득 기준(Gini before taxes and transfers)

	2009	2010	2011	2012	2013
호주	-	0.469	-	0.460	-
오스트리아	0.507	0.498	0.498	0.496	0.497
벨기에	0.479	0.483	0.487	0.487	0.493
캐나다	0.444	0.447	0.438	-	-
칠레	0.536	-	0.532	-	-
체코	0.451	0.454	0.461	0.458	0.467
덴마크	0.408	0.429	0.431	-	-
에스토니아	0.479	0.488	0.484	0.484	0.513
핀란드	0.477	0.485	0.483	0.486	-
프랑스	0.493	0.505	0.512	-	-
독일	0.493	0.492	0.506	-	-
그리스	0.508	0.528	0.555	0.571	0.572
헝가리	-	-	-	-	-
아이슬랜드	0.384	0.399	0.406	0.399	0.388
아일랜드	0.580	0.579	0.568	0.581	0.574
이스라엘	0.499	0.501	0.481	-	-
이탈리아	0.496	0.507	0.509	0.514	0.516
일본	0.488	-	-	0.488	-
한국	0.345	0.341	0.342	0.338	-
라트비아	0.520	0.534	0.530	0.518	0.512
룩셈부르크	0.480	0.469	0.482	0.501	0.482
멕시코	-	-	-	-	-
네덜란드	0.417	0.421	-	0.424	-
뉴질랜드	0.454	-	0.453	-	-
노르웨이	0.417	0.408	0.409	-	-
폴란드	0.471	0.473	0.468	0.469	0.469
포르투갈	0.520	0.525	0.540	0.545	0.563
슬로바키아	0.437	0.434	0.420	0.415	0.432
슬로베니아	0.452	0.456	0.461	0.472	0.471
스페인	0.487	0.506	0.506	0.511	0.526
스웨덴	0.444	0.441	0.435	-	-
스위스	0.372	-	0.368	-	-
터키	-	0.477	0.474	-	-
영국	0.519	0.523	-	-	-
미국	0.499	0.499	0.508	0.506	-

주: 1) 시장소득 기준 불평등도는 조세 및 이전소득 적용 이전의 Gini계수를 의미함

2) 2016년 라트비아의 OECD가입으로 자료 추가됨

자료: OECD.StatExtracts(<http://stats.oecd.org/>, 2017.5.26. 자료 기준임)

2) 가처분소득 기준

<표> 소득불평등도 추이 : 가처분소득 기준(at disposable income, post taxes and transfers)

	2009	2010	2011	2012	2013
호주	-	0.334	-	0.324	-
오스트리아	0.289	0.280	0.282	0.276	0.280
벨기에	0.269	0.264	0.266	0.262	0.261
캐나다	0.320	0.319	0.316	-	-
칠레	0.510	-	0.503	-	-
체코	0.258	0.258	0.256	0.252	0.259
덴마크	0.238	0.252	0.253	-	-
에스토니아	0.309	0.317	0.323	0.326	0.355
핀란드	0.260	0.265	0.265	0.261	-
프랑스	0.293	0.303	0.309	-	-
독일	0.288	0.286	0.293	-	-
그리스	0.331	0.337	0.335	0.340	0.343
헝가리	0.272	-	-	0.290	-
아이슬랜드	0.266	0.245	0.250	0.252	0.240
아일랜드	0.312	0.298	0.300	0.302	0.307
이스라엘	0.373	0.376	0.377	-	-
이탈리아	0.315	0.321	0.326	0.329	0.324
일본	0.336	-	-	0.330	-
한국	0.314	0.310	0.311	0.307	-
라트비아	0.362	0.355	0.361	0.355	0.360
룩셈부르크	0.277	0.270	0.276	0.298	0.279
멕시코	-	0.466	-	0.482	-
네덜란드	0.283	0.283	-	0.278	-
뉴질랜드	0.324	-	0.323	-	-
노르웨이	0.245	0.249	0.250	-	-
폴란드	0.306	0.307	0.303	0.300	0.301
포르투갈	0.341	0.345	0.341	0.341	0.344
슬로바키아	0.263	0.262	0.261	0.249	0.268
슬로베니아	0.247	0.246	0.245	0.251	0.255
스페인	0.333	0.339	0.340	0.334	0.345
스웨덴	0.269	0.269	0.273	-	-
스위스	0.298	-	0.289	-	-
터키	0.411	0.417	0.412	-	-
영국	0.345	0.341	-	-	-
미국	0.379	0.380	0.389	0.389	-

주: 1) 가처분소득 기준 불평등도는 조세 및 이전소득 적용 이후의 Gini계수를 의미함

2) 2016년 라트비아의 OECD가입으로 자료 추가됨

자료: OECD.StatExtracts(<http://stats.oecd.org/>, 2017.5.26. 자료 기준임)

(2) 상대빈곤율 추이

1) 시장소득 기준

<표> 상대빈곤율 추이 : 시장소득 기준(Poverty rate before taxes and transfers, Poverty line 50%)

	2009	2010	2011	2012	2013
호주	-	0.273	-	0.260	-
오스트리아	0.328	0.326	0.318	0.318	0.318
벨기에	0.319	0.326	0.325	0.330	0.333
캐나다	0.255	0.260	0.246	-	-
칠레	0.236	-	0.225	-	-
체코	0.269	0.283	0.291	0.283	0.289
덴마크	0.233	0.244	0.247	-	-
에스토니아	0.319	0.325	0.313	0.309	0.335
핀란드	0.316	0.326	0.319	0.322	-
프랑스	0.340	0.347	0.350	-	-
독일	0.321	0.323	0.329	-	-
그리스	0.300	0.326	0.358	0.381	0.376
헝가리	-	-	-	-	-
아이슬랜드	0.202	0.215	0.216	0.212	0.194
아일랜드	0.426	0.439	0.414	0.421	0.405
이스라엘	0.280	0.280	0.279	-	-
이탈리아	0.305	0.321	0.323	0.332	0.337
일본	0.320	-	-	0.328	-
한국	0.172	0.173	0.173	0.165	-
라트비아	0.355	0.359	0.331	0.325	0.318
룩셈부르크	0.307	0.312	0.310	0.316	0.314
멕시코	-	-	-	0.274	-
네덜란드	0.244	0.249	-	0.258	-
뉴질랜드	0.249	-	0.247	-	-
노르웨이	0.253	0.238	0.239	-	-
폴란드	0.287	0.283	0.280	0.291	0.286
포르투갈	0.313	0.299	0.327	0.354	0.369
슬로바키아	0.293	0.286	0.280	0.275	0.266
슬로베니아	0.277	0.287	0.293	0.303	0.306
스페인	0.330	0.339	0.342	0.358	0.382
스웨덴	0.280	0.278	0.265	-	-
스위스	0.144	-	0.147	-	-
터키	-	0.224	0.223	-	-
영국	0.313	0.319	-	-	-
미국	0.274	0.284	0.284	0.283	-

주: 1) 시장소득 기준 상대빈곤율은 조세 및 이전소득 적용 이전의 시장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에 있는 가구비중임

2) 2016년 라트비아의 OECD가입으로 자료 추가됨

자료: OECD.StatExtracts(<http://stats.oecd.org/>, 2017.5.26. 자료 기준임)

2) 가처분소득 기준

<표> 상대빈곤율 추이 : 가처분소득 기준(Poverty rate after taxes and transfers, Poverty line 50%)

	2009	2010	2011	2012	2013
호주	-	0.144	-	0.138	-
오스트리아	0.097	0.089	0.090	0.095	0.090
벨기에	0.094	0.096	0.092	0.096	0.092
캐나다	0.123	0.119	0.117	-	-
칠레	0.184	-	0.178	-	-
체코	0.059	0.065	0.059	0.052	0.061
덴마크	0.064	0.060	0.060	-	-
에스토니아	0.107	0.116	0.116	0.115	0.153
핀란드	0.074	0.074	0.075	0.066	-
프랑스	0.075	0.079	0.080	-	-
독일	0.095	0.088	0.087	-	-
그리스	0.130	0.143	0.152	0.152	0.155
헝가리	0.068	-	-	0.104	-
아이슬랜드	0.065	0.062	0.059	0.061	0.049
아일랜드	0.088	0.091	0.094	0.083	0.088
이스라엘	0.209	0.209	0.209	-	-
이탈리아	0.120	0.130	0.127	0.128	0.131
일본	0.160	-	-	0.161	-
한국	0.153	0.149	0.152	0.146	-
라트비아	0.148	0.141	0.138	0.139	0.147
룩셈부르크	0.079	0.072	0.082	0.083	0.080
멕시코	-	0.204	-	0.214	-
네덜란드	0.074	0.072	-	0.078	-
뉴질랜드	0.119	-	0.098	-	-
노르웨이	0.075	0.075	0.077	-	-
폴란드	0.113	0.111	0.111	0.106	0.107
포르투갈	0.120	0.113	0.119	0.130	0.138
슬로바키아	0.077	0.078	0.083	0.083	0.082
슬로베니아	0.086	0.093	0.088	0.098	0.096
스페인	0.150	0.140	0.148	0.140	0.160
스웨덴	0.087	0.091	0.097	-	-
스위스	0.095	-	0.103	-	-
터키	0.193	0.192	0.192	-	-
영국	0.099	0.100	-	-	-
미국	0.165	0.174	0.171	0.174	-

주: 1) 가처분소득 기준 상대빈곤율은 조세 및 이전소득 적용 이후의 가처분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인 가구비중임

2) 2016년 라트비아의 OECD가입으로 자료 추가됨

자료: OECD.StatExtracts(<http://stats.oecd.org/>, 2017.5.26. 자료 기준임)

II

노동·경제동향 및 전망

1. 최근 노동·경제동향
2. 각종 지표에 대한 2017년 전망

1. 최근 노동·경제동향

가. 경제성장률(실질, GDP 기준)

나. 산업생산 및 경기종합지수

다. 고용

라. 소비자물가

마. 임금 및 근로시간
(상용근로자 5인 이상)

1 최근 노동·경제동향

가. 경제성장률(실질, GDP 기준)

- (연간 기준) '16년 중 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2.8% 성장
- (분기 기준) '17.1분기에는 전기대비 1.1%, 전년동기대비 2.9% 성장

<표> 경제성장률 최근동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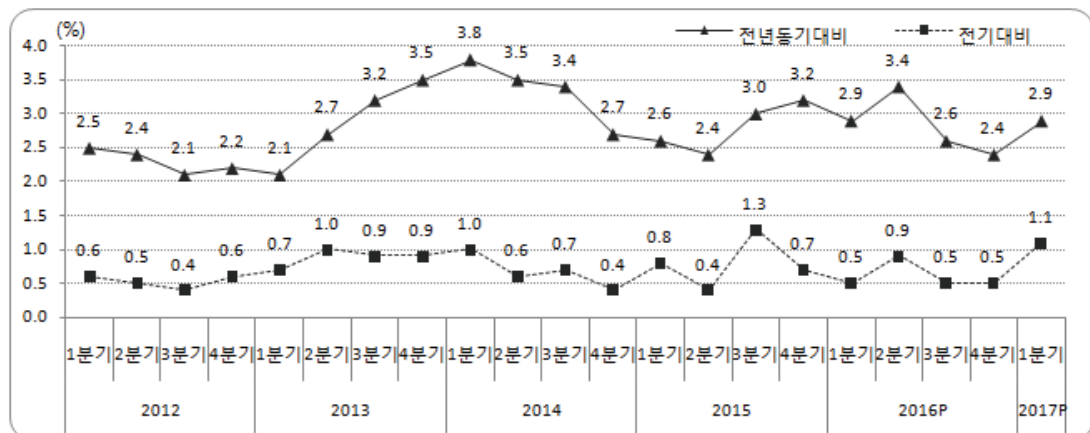
	연간 기준					분기 기준									
						전기대비					전년동기대비				
						'16				'17	'16				'17
	'12	'13	'14	'15	'16 ^o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p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p
국내총생산 (실질성장률)	2.3	2.9	3.3	2.8	2.8	0.5	0.9	0.5	0.5	1.1	2.9	3.4	2.6	2.4	2.9

주 1) p는 잠정치

2) 전기대비 증감률은 계절조정계열 기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은 원계열 기준

출처) 국민소득통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그림> 분기별 경제성장률('12~'17)



< (참고) 국민소득통계 >

- ① **작성목적:** 한 나라의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 따라서 동 통계는 경제정책의 수립 및 평가와 각종 경제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
- ② **작성기관:** 한국은행
- ③ **작성체계:** 국민소득통계 및 국민계정은 국민경제 전체의 모든 경제적 거래를 대상으로 하므로 기업체, 통계청, 한국은행, 정부 및 각종 단체 등에서 작성하는 다양한 실물 및 금융통계 등을 기초자료로 이용

나. 산업생산 및 경기종합지수

(1) 전산업생산지수

- (연간 기준) '16년 산업생산지수는 113.3로서 3.0% 증가
- (분기 기준) '17.1분기에는 전기대비는 1.3% 증가, 전년동기대비는 3.9% 증가

<표> 전산업생산지수 최근동향 (단위: %, 201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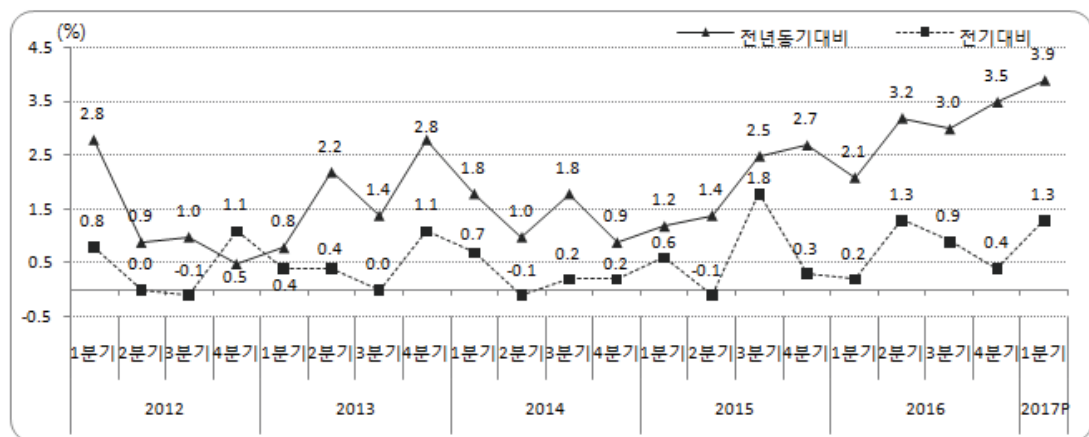
	연간 기준 (원지수 기준)					분기 기준									
						전기대비 (계절조정지수 기준)					전년동기대비 (원지수 기준)				
						'16		'17			'16		'17		
	'12	'13	'14	'15	'16 ^p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p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p
전산업생산지수	104.6	106.4	107.9	110.0	113.3	111.4	112.9	113.9	114.3	115.8	108.7	113.2	112.0	119.1	112.9
증감률	1.3	1.7	1.4	1.9	3.0	0.2	1.3	0.9	0.4	1.3	2.1	3.2	3.0	3.5	3.9

주1) p는 잠정치

2) 농림어업 제외 수치임

출처) 산업동향,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그림> 분기별 전산업생산지수 증감률('12~'17)



< (참고) 전산업생산지수 >

- ① 작성목적: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의된 산업들의 생산활동을 종합하여 지수로 작성한 것으로, 전체 산업생산활동의 단기동향을 파악하고, 주요 정책 수립에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작성
- ② 작성기관: 통계청
- ③ 작성체계: 전산업생산지수 및 5개 계열지수(농림어업,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 공공행정)의 원지수와 계절조정지수

(2) 경기종합지수(동행 · 선행 · 후행종합지수)

1) 동행종합지수

○ (동행종합지수) '17.3월 기준 전월대비 0.5% 상승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17년 3월 기준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3p 상승

<표> 동행종합지수 최근동향

(단위: %, p)

	'16년												'17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p	3월 ^p
동행종합지수 ²⁾ (2010=100)	119.3	119.5	119.6	119.9	120.5	121.0	121.6	122.1	122.2	122.2	122.6	123.2	123.8	124.1	124.7
전월비(%)	0.0	0.2	0.1	0.3	0.5	0.4	0.5	0.4	0.1	0.0	0.3	0.5	0.5	0.2	0.5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³⁾	100.1	100.0	99.9	99.9	100.1	100.2	100.5	100.6	100.4	100.2	100.3	100.5	100.7	100.7	101.0
전월차(p)	-0.3	-0.1	-0.1	0.0	0.2	0.1	0.3	0.1	-0.2	-0.2	0.1	0.2	0.2	0.0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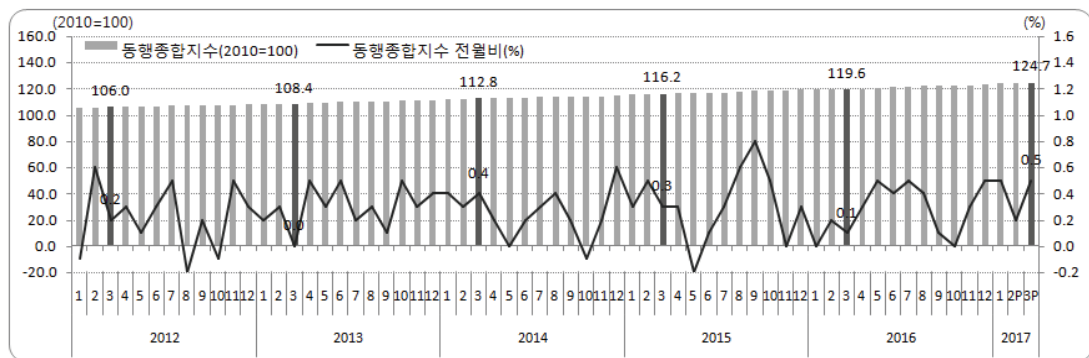
주 1) p는 잠정치

2) 구성지표의 비경기적요인(계절요인 및 불규칙요인)을 제거하여 종합한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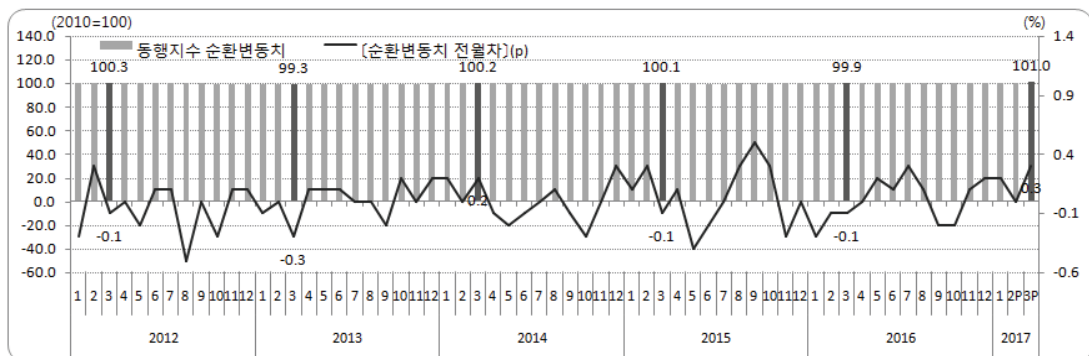
3) 동행종합지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지표로 현재 경기국면 및 전환점 파악에 이용

출처) 산업동향,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그림> 월별 동행종합지수 및 전월비('12~'17)



<그림-16> 월별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및 전월차('12~'17)



2) 선행종합지수

○ (선행종합지수) '17.3월 기준 전월대비 0.2% 상승

-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17년 3월 기준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1p 하락

<표> 선행종합지수 최근동향

(단위: %, p)

	'16년												'17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p	3월 ^p
선행종합지수 ²⁾ (2010=100)	122.7	122.8	123.1	123.7	124.2	124.5	125.0	125.8	126.5	127.0	127.5	128.1	128.6	129.3	129.7
전월비(%)	0.1	0.1	0.2	0.5	0.4	0.2	0.4	0.6	0.6	0.4	0.4	0.5	0.4	0.5	0.3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³⁾	100.1	99.7	99.7	99.8	99.8	99.8	99.9	100.1	100.3	100.5	100.5	100.6	100.7	100.9	100.8
전월차(p)	-0.3	-0.4	0.0	0.1	0.0	0.0	0.1	0.2	0.2	0.2	0.0	0.1	0.1	0.2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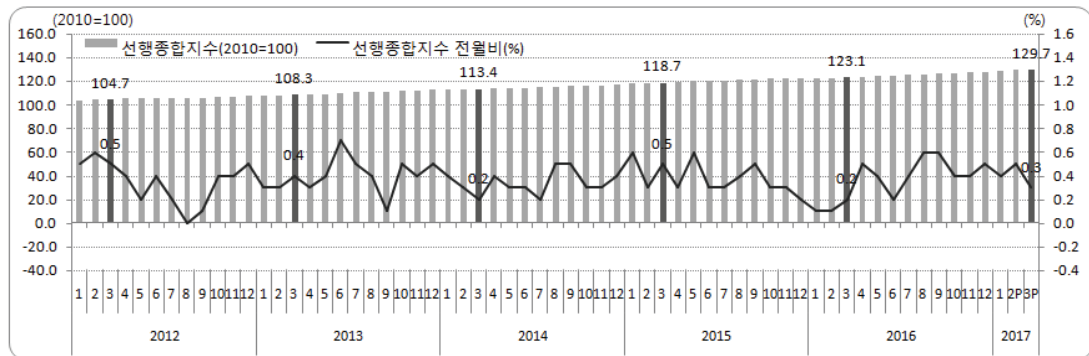
주 1) p는 잠정치

2) 구성지표의 비경기적요인(계절요인 및 불규칙요인)을 제거하여 종합한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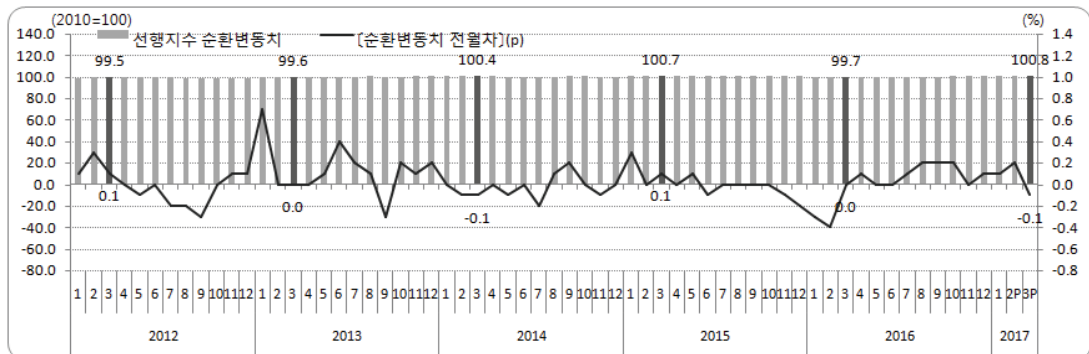
3) 선행종합지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지표로 향후 경기국면 및 전환점 예측에 이용

출처) 산업동향,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그림> 월별 선행종합지수 및 전월비('12~'17)



<그림> 월별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및 전월차('12~'17)



3) 후행종합지수

- (후행종합지수) '17.3월 기준 전월대비 0.3% 상승

<표> 후행종합지수 최근동향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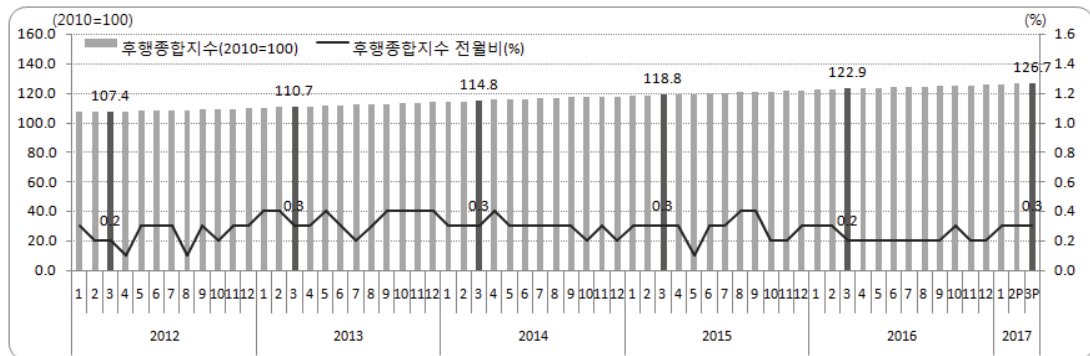
	'16년												'17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p	3월 ^p
후행종합지수 ²⁾ (2010=100)	122.2	122.6	122.9	123.1	123.4	123.7	123.9	124.2	124.5	124.9	125.2	125.5	125.9	126.3	126.7
전월비(%)	0.3	0.3	0.2	0.2	0.2	0.2	0.2	0.2	0.2	0.3	0.2	0.2	0.3	0.3	0.3

주 1) p는 잠정치

2) 구성지표의 비경기적요인(계절요인 및 불규칙요인)을 제거하여 종합한 지표

출처) 산업동향,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그림> 월별 후행종합지수 및 전월비('12~'17)



< (참고) 경기종합지수 >

① **작성목적:** 생산, 소비, 고용, 금융, 무역, 투자 등 경제부문별로 경기대응성이 양호한 경제지표들을 선정한 후, 이를 가공·종합하여 작성한 종합경기지표로 경기변동의 국면 및 전환점과 속도 및 진폭 측정에 주로 활용

② **작성기관:** 통계청

③ **작성체계**

① **선행종합지수:** 경기의 단기동향을 예측하기 위해 재고순환, 소비자기대지수, 수출입물가비율, 코스피지수, 국제원자재가격지수, 건설수주액, 장단기금리차, 기계류내수출하지수 등을 종합하여 작성

② **동행종합지수:** 경기의 현재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광공업생산지수, 구인구직비율, 수입액, 서비스업생산지수, 소매판매액지수, 건설기성액, 내수출하지수 등을 종합하여 작성

③ **후행종합지수:** 선,동행지수를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해 도시가계소비지출, 상용근로자수, 생산자재고지수, 소비재수입액, 회사채유통수익률 등을 종합하여 작성

다. 고용¹²⁾

(1) 15세 이상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 (15세 이상 인구) '16년 43,416천명으로 전년대비 0.9% 증가, '17.1분기 43,633천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0.8% 증가
 - ㄴ (경제활동인구) '16년 27,247천명으로 전년대비 1.2% 증가, '17.1분기 27,082천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4% 증가
 - ㄴ (취업자) '16년 26,235천명으로 전년대비 1.2% 증가, '17.1분기 25,915천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4% 증가
 - ㄴ (실업자) '16년 1,012천명으로 전년대비 3.7% 증가, '17.1분기 1,167천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2% 증가
 - ㄴ (비경제활동인구) '16년 16,169천명으로 전년대비 0.4% 증가, '17.1분기 16,552천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0.1% 감소

<표> 15세 이상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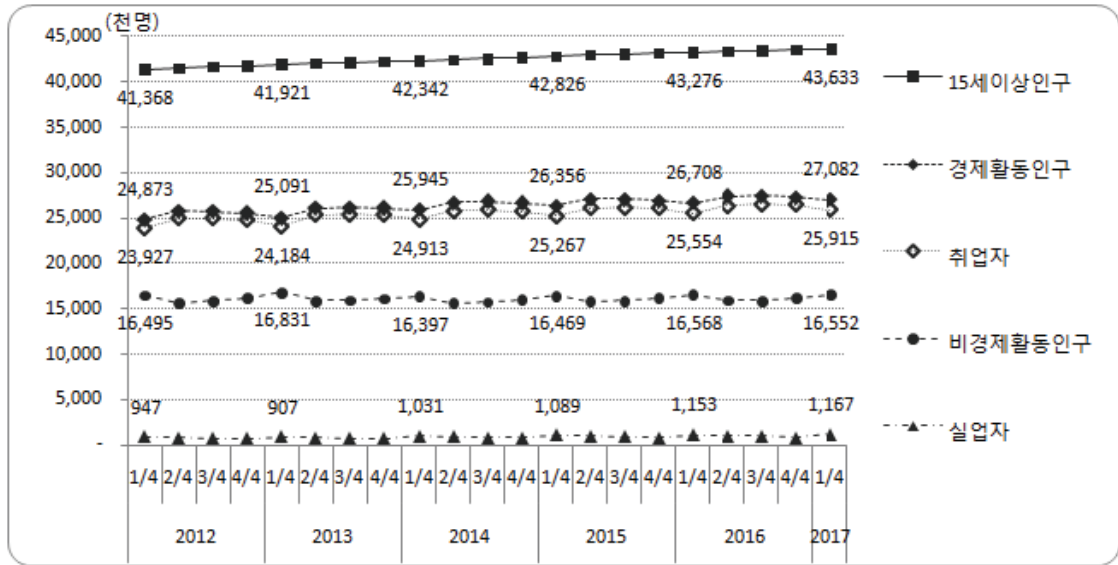
구분	시점		15세 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증감률 ¹⁾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연간 기준		'12	41,582	1.3	25,501	1.6	24,681	1.8	820	-4.1	16,081	0.8
		'13	42,096	1.2	25,873	1.5	25,066	1.6	807	-1.6	16,223	0.9
		'14	42,513	1.0	26,536	2.6	25,599	2.1	937	16.1	15,977	-1.5
		'15	43,017	1.2	26,913	1.4	25,936	1.3	976	4.2	16,105	0.8
		'16	43,416	0.9	27,247	1.2	26,235	1.2	1,012	3.7	16,169	0.4
분기 기준	'16	1/4	43,276	1.1	26,708	1.3	25,554	1.1	1,153	5.9	16,568	0.6
		2/4	43,385	1.0	27,415	1.0	26,387	1.1	1,028	-1.3	15,970	0.9
		3/4	43,465	0.9	27,539	1.4	26,554	1.2	985	6.0	15,926	0.0
		4/4	43,537	0.8	27,327	1.3	26,446	1.2	881	4.3	16,210	0.1
	'17	1/4	43,633	0.8	27,082	1.4	25,915	1.4	1,167	1.2	16,552	-0.1

주 1) 증감률은 전년대비 증감률임

출처)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12)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그림> 분기별 15세 이상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12~'17)



< (참고) 주요 용어 >

- 경제활동: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수입이 있는 일을 행함을 뜻하며, 수입이 있더라도 다음의 활동은 경제활동으로 보지 않음
 - 법률에 위배되는 비생산적인 활동(예: 도박, 매춘 등)
 - 법률에 의한 강제노역 및 봉사활동
 - 경매, 경륜, 증권, 선물 등 투자활동
- 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의 합계
 - *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15세이상인구) × 100
- 취업자
 -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 동일가구 내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하여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 * 고용률(%) = (취업자 ÷ 15세이상인구) × 100
- 실업자: 조사대상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
 - *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 비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자

(2)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및 실업률

- **(경제활동참가율)** '16년 62.8%로 전년대비 0.2%p 증가, '17.1분기 62.1%로 전년동분기대비 0.4%p 증가
- **(고용률)** '16년 60.4%로 전년대비 0.1%p 증가, '17.1분기 59.4%로 전년동분기대비 0.3%p 증가
- **(실업률)** '16년 3.7%로 전년대비 0.1%p 증가, '17.1분기 4.3%로 전년동분기와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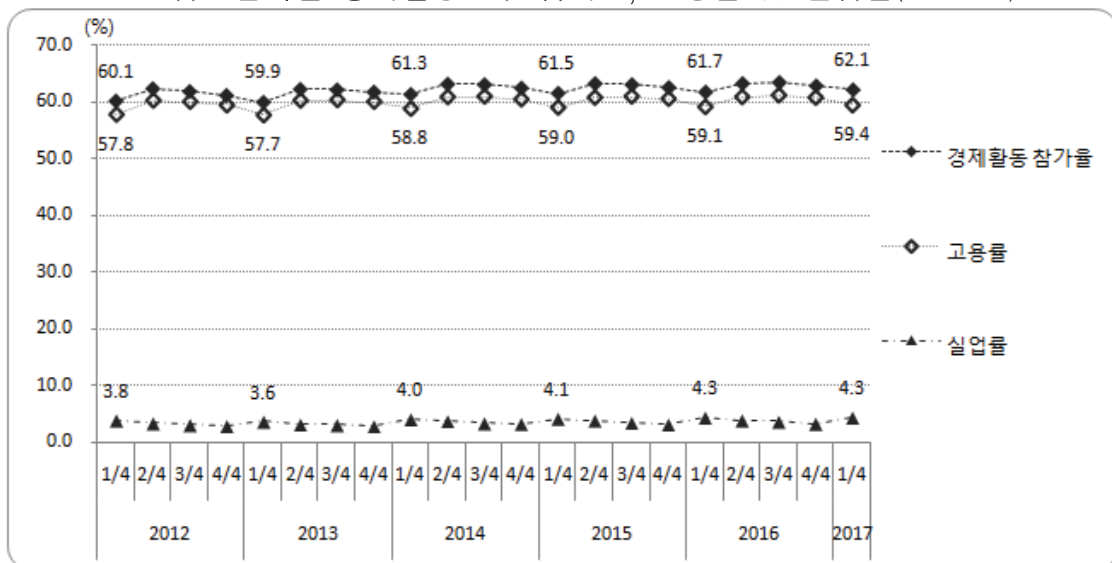
<표> 경제활동인구 참가율, 고용률 및 실업률 (단위: %)

구분	시점		경제활동인구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증감 ¹⁾		증감		증감
연간 기준		'12	61.3	0.2	59.4	0.3	3.2	-0.2
		'13	61.5	0.2	59.5	0.1	3.1	-0.1
		'14	62.4	0.9	60.2	0.7	3.5	0.4
		'15	62.6	0.2	60.3	0.1	3.6	0.1
		'16	62.8	0.2	60.4	0.1	3.7	0.1
분기 기준	'16	1/4	61.7	0.2	59.1	0.1	4.3	0.2
		2/4	63.2	0.0	60.8	0.1	3.8	0.0
		3/4	63.4	0.4	61.1	0.2	3.6	0.2
		4/4	62.8	0.3	60.7	0.2	3.2	0.1
	'17	1/4	62.1	0.4	59.4	0.3	4.3	0.0

주) 증감은 전년대비 증감임

출처)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그림> 분기별 경제활동인구 참가율, 고용률 및 실업률('12~'17)



(3)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현황

- (임금근로자) '16년 19,546천명으로 전년대비 1.6% 증가, '17.1분기 19,383천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0% 증가
- (비임금근로자) '16년 6,689천명으로 전년대비 0.3% 감소, '17.1분기 6,532천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2.6% 증가
- '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그 중 무급가족종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

<표>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현황(연간) (단위: 천명, %)

종사상지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취업자	24,681	1.8	25,066	1.6	25,599	2.1	25,936	1.3	26,235	1.2
임금근로자	17,712	1.8	18,195	2.7	18,743	3.0	19,230	2.6	19,546	1.6
상용근로자	11,097	4.1	11,713	5.5	12,156	3.8	12,588	3.6	12,974	3.1
임시근로자	4,988	0.0	4,892	-1.9	5,032	2.9	5,086	1.1	5,104	0.4
일용근로자	1,627	-6.9	1,590	-2.3	1,555	-2.2	1,556	0.1	1,469	-5.6
비임금근로자	6,969	1.8	6,872	-1.4	6,857	-0.2	6,706	-2.2	6,689	-0.3
자영업자	5,718	2.2	5,651	-1.2	5,652	0.0	5,563	-1.6	5,570	0.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549	2.9	1,510	-2.5	1,550	2.7	1,581	2.0	1,561	-1.3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169	2.0	4,141	-0.7	4,102	-0.9	3,982	-2.9	4,009	0.7
무급가족종사자	1,251	-0.2	1,221	-2.4	1,205	-1.3	1,144	-5.1	1,119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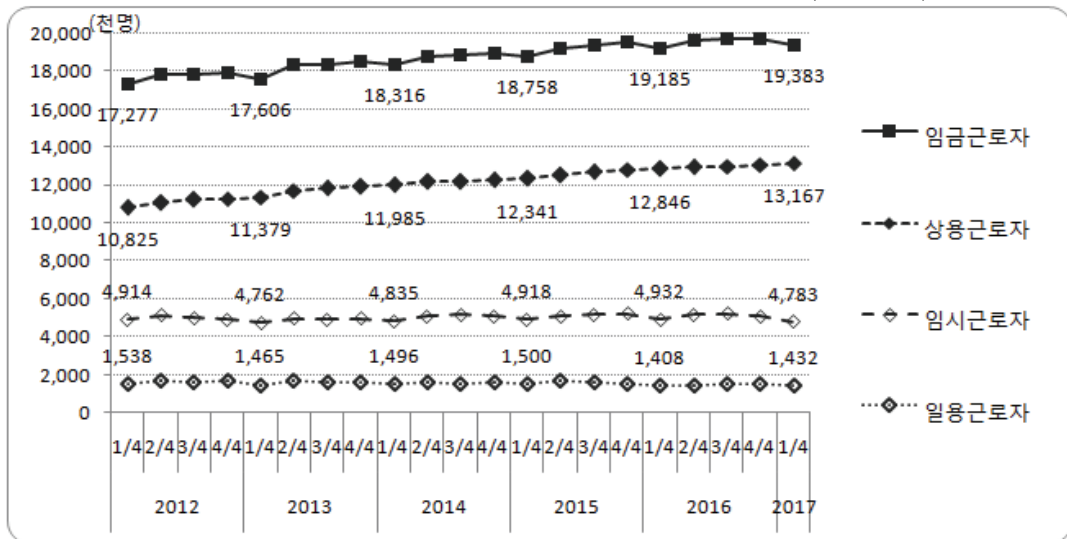
<표>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현황(분기) (단위: 천명, %)

종사상지위별	'16.1분기		'16.2분기		'16.3분기		'16.4분기		'17.1분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취업자	25,554	1.1	26,387	1.1	26,554	1.2	26,446	1.2	25,915	1.4
임금근로자	19,185	2.3	19,619	2.0	19,684	1.5	19,697	0.8	19,383	1.0
상용근로자	12,846	4.1	12,965	3.7	13,002	2.5	13,082	2.1	13,167	2.5
임시근로자	4,932	0.3	5,186	2.4	5,199	0.9	5,099	-2.0	4,783	-3.0
일용근로자	1,408	-6.1	1,469	-11.2	1,482	-5.0	1,516	0.3	1,432	1.7
비임금근로자	6,369	-2.2	6,768	-1.5	6,870	0.5	6,748	2.1	6,532	2.6
자영업자	5,368	-1.7	5,607	-1.2	5,675	0.9	5,630	2.6	5,538	3.2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506	-4.1	1,557	-3.8	1,587	0.0	1,593	2.8	1,572	4.4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3,862	-0.8	4,050	-0.1	4,088	1.3	4,037	2.4	3,966	2.7
무급가족종사자	1,001	-4.3	1,160	-2.9	1,195	-1.4	1,119	-0.2	994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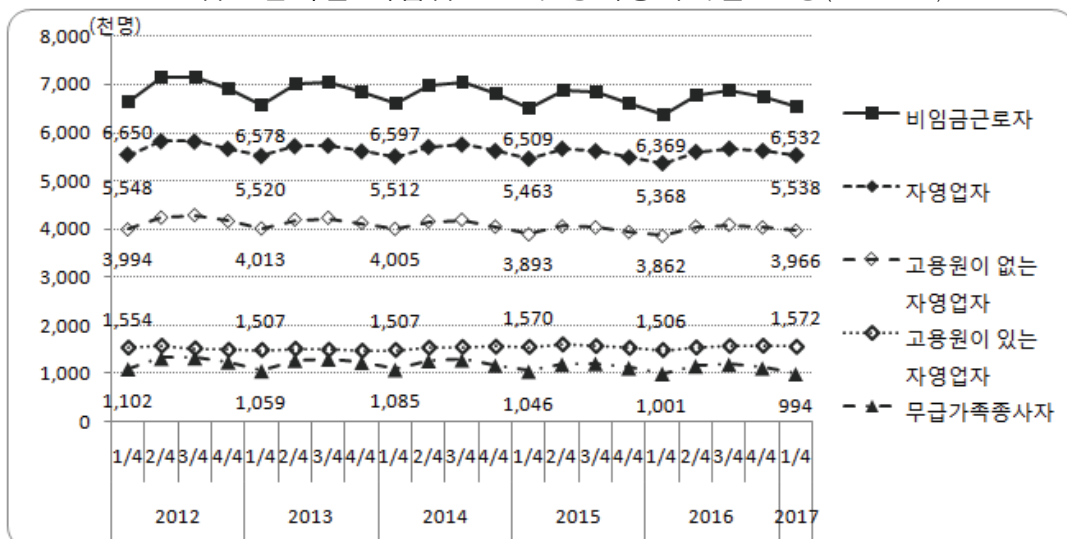
주 1) 증감률은 전년대비 증감률임

출처)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그림> 분기별 임금근로자 종사상지위별 현황('12~'17)



<그림> 분기별 비임금근로자 종사상지위별 현황('12~'17)



< (참고) 경제활동인구조사 >

- ① 작성목적: 국민의 경제활동 즉, 국민의 취업, 실업 등과 같은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 제공
- ② 작성기관: 통계청
- ③ 조사대상: 표본조사구내에 상주하는 매월 15일 현재 만 15세 이상인 자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1,647개 표본조사구를 추출하고, 표본조사구내 3만 3천가구를 조사(가구 추출률 0.2%)
 - 현역군인, 사회복무요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의무경찰 등 제외
- ④ 조사대상 및 시기: 조사는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일요일~토요일)을 조사대상주간으로 하며, 그 다음 주간에 조사를 실시

라. 소비자물가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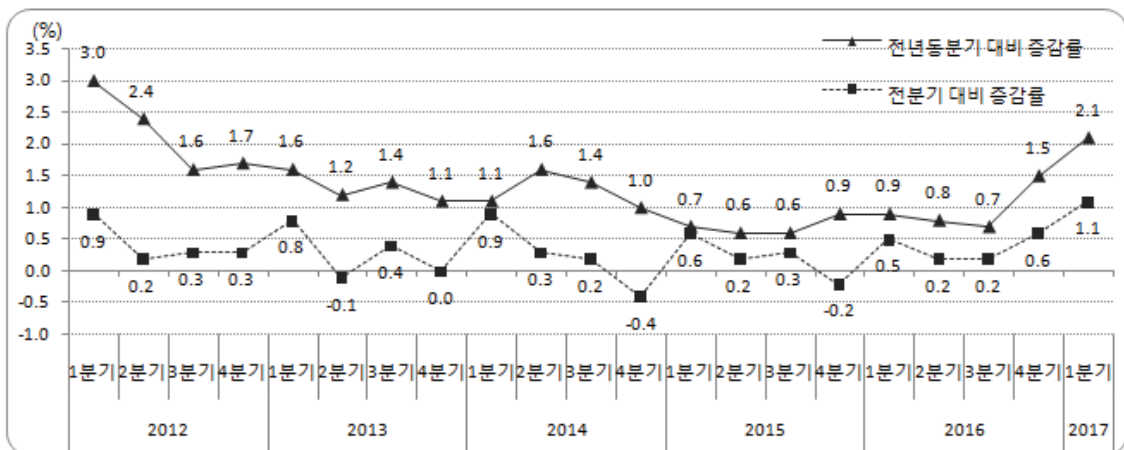
- (연간 기준) '16년 소비자물가지수는 100.97로서 1.0% 상승
- (분기 기준) '17.1분기 소비자물가지수는 102.66로서 1.1% 상승

<표-42> 소비자물가지수 최근동향 (단위: %, 2015=100)

	연간 기준					분기 기준									
						전분기대비					전년동분기대비				
						'16				'17	'16				'17
	'12	'13	'14	'15	'16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소비자물가지수	96.79	98.05	99.30	100.00	100.97	100.59	100.78	100.97	101.54	102.66	100.59	100.78	100.97	101.54	102.66
증감률	2.2	1.3	1.3	0.7	1.0	0.5	0.2	0.2	0.6	1.1	0.9	0.8	0.7	1.5	2.1

출처)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그림> 분기별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12~'17)



< (참고) 소비자물가지수 >

- 작성목적:**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조사하여 소비자물가지수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정부 재정, 금융정책의 기초자료로 이용하고, 가계수지, 국민소득계정 등 다른 경제지표의 디플레이터로 사용
- 작성기관:** 통계청
- 조사대상 및 시기**
 - 대표품목: 소비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 481개 품목
 - 조사대상처: 약 26,000개 소매점포 및 서비스업체, 약 10,500개 임대가구를 대상으로 가격조사
 - 조사기간: 농축수산물 및 석유류(초·중·순 1일씩), 공업제품(3일), 서비스부문(2일)
- 조사항목:** 지정된 품목(조사규격)의 실제 거래가격

13) 소비자물가조사(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마. 임금 및 근로시간(상용근로자 5인 이상)¹⁴⁾

(1) 임금동향

- (전체 임금총액) '16년 중 월평균 3,425천원으로 전년대비 3.8% 증가, '17.1분기 중 월평균 3,624천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2.5% 증가
- └ (상용근로자 임금총액) '16년 중 월평균 3,623천원으로 전년대비 3.8% 증가, '17.1분기 중 월평균 3,809천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2.1% 증가
- └ (정액급여) '16년 중 월평균 2,838천원으로 전년대비 3.3% 증가, '17.1분기 중 월평균 2,911천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3.0% 증가
- └ (초과급여) '16년 중 월평균 225천원으로 전년대비 3.8% 증가, '17.1분기 중 월평균 219천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0.7% 증가
- └ (특별급여) '16년 중 월평균 560천원으로 전년대비 6.7% 증가, '17.1분기 중 월평균 679천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0% 감소
- └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6년 중 월평균 1,469천원으로 전년대비 3.1% 증가, '17.1분기 중 월평균 1,520천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5.6% 증가

<표> 내역별 임금동향

(단위: 천원, %)

구분	시점		전체 임금총액		상용근로자 임금총액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임시일용 근로자 임금총액	
			증감률 ¹⁾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연간 기준		'12	2,995	5.3	3,178	5.3	2,470	5.5	181	1.0	527	5.8	1,293	6.4
		'13	3,111	3.9	3,299	3.8	2,578	4.4	184	1.7	537	1.8	1,377	6.5
		'14	3,190	2.5	3,378	2.4	2,660	3.2	201	9.3	516	-3.7	1,387	0.7
		'15	3,300	3.5	3,490	3.3	2,749	3.3	216	7.4	525	1.6	1,424	2.7
		'16	3,425	3.8	3,623	3.8	2,838	3.3	225	3.8	560	6.7	1,469	3.1
분기 기준	'16	1/4	3,534	5.3	3,729	5.3	2,826	3.9	217	4.6	686	11.9	1,439	2.1
		2/4	3,221	2.9	3,406	2.9	2,811	3.2	231	3.0	363	0.5	1,450	3.0
		3/4	3,466	3.5	3,667	3.6	2,838	3.3	218	2.2	611	5.7	1,474	3.4
		4/4	3,480	3.4	3,689	3.4	2,876	2.7	232	5.4	582	6.6	1,508	3.9
	'17	1/4	3,624	2.5	3,809	2.1	2,911	3.0	219	0.7	679	-1.0	1,520	5.6

주 1)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14) 사업체노동력조사(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대상,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http://laborstat.moel.go.kr>

(2) 근로시간 동향

- (전체 근로시간) '16년 중 월평균 171.0시간으로 전년대비 0.9% 감소, '17.1분기 중 월평균 170.4시간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7% 증가
- └ (상용근로자 근로시간) '16년 중 월평균 176.9시간으로 전년대비 0.8% 감소, '17.1분기 중 월평균 175.4시간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6% 증가
- └ (소정실근로시간) '16년 중 월평균 164.2시간으로 전년대비 0.8% 감소, '17.1분기 중 월평균 163.8시간으로 전년동분기대비 2.1% 증가
- └ (초과근로시간) '16년 중 월평균 12.7시간으로 전년대비 0.8% 감소, '17.1분기 중 월평균 11.7시간으로 전년동분기대비 4.9% 감소
- └ (임시일용근로자 근로시간) '16년 중 월평균 112.8시간으로 전년대비 1.6% 감소, '17.1분기 중 월평균 112.8시간으로 전년동분기대비 0.3% 감소

<표> 내역별 근로시간 동향

(단위: 시간, %)

구분	시점		전체 근로시간		상용근로자 근로시간		소정 실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		임시일용 근로자 근로시간	
			증감률 ¹⁾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연간 기준		'12	174.3	-1.1	179.9	-1.2	167.2	-0.8	12.8	-5.9	122.3	-0.2
		'13	172.6	-1.0	178.1	-1.0	165.6	-1.0	12.5	-2.3	122.5	0.2
		'14	171.4	-0.7	177.1	-0.6	164.1	-0.9	12.9	3.2	117.0	-4.5
		'15	172.6	0.7	178.4	0.7	165.6	0.9	12.8	-0.8	114.6	-2.1
		'16	171.0	-0.9	176.9	-0.8	164.2	-0.8	12.7	-0.8	112.8	-1.6
분기 기준	'16	14	167.6	-0.2	172.7	-0.1	160.4	0.1	12.3	-2.4	113.1	-1.7
		24	171.6	-0.9	178.0	-1.1	164.9	-1.0	13.1	-2.2	110.9	0.5
		3/4	169.0	-2.4	174.5	-2.2	162.1	-2.3	12.3	-2.4	115.1	-2.7
		4/4	175.7	-0.1	182.4	0.1	169.4	-0.1	13.0	1.6	112.1	-2.7
	'17	1/4	170.4	1.7	175.4	1.6	163.8	2.1	11.7	-4.9	112.8	-0.3

주 1)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3) 규모별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연간)

1) 규모별 임금동향

<표> 규모별·내역별 임금동향('12~'16년)

(단위: 천원, %)

시점		전체 임금총액		상용근로자 임금총액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임시일용 근로자 임금총액	
			증감률 ¹⁾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12	5인 이상 전체	2,995,471	5.3	3,178,160	5.3	2,469,814	5.5	181,290	1.0	527,056	5.8	1,292,739	6.4
	5~9인	2,125,952	5.4	2,295,404	5.0	2,055,289	4.8	49,228	9.1	190,887	5.9	1,214,483	11.8
	10~29인	2,525,462	6.0	2,710,985	5.8	2,298,526	5.7	111,775	3.2	300,685	7.8	1,318,549	1.7
	30~99인	2,904,045	6.4	3,046,481	6.4	2,442,296	6.0	221,236	5.3	382,949	9.5	1,269,663	9.6
	100~299인	3,255,213	7.8	3,354,537	7.7	2,549,898	7.8	257,548	3.9	547,090	9.4	1,595,152	16.6
	300인 이상	4,289,856	3.3	4,423,894	3.5	2,964,772	4.3	274,502	-3.9	1,184,621	3.4	1,208,540	0.1
'13	5인 이상 전체	3,110,992	3.9	3,298,667	3.8	2,577,842	4.4	184,292	1.7	536,533	1.8	1,377,238	6.5
	5~9인	2,218,597	4.4	2,389,207	4.1	2,132,528	3.8	59,308	20.5	197,370	3.4	1,371,332	12.9
	10~29인	2,625,402	4.0	2,814,676	3.8	2,395,418	4.2	120,055	7.4	299,202	-0.5	1,427,489	8.3
	30~99인	3,007,456	3.6	3,144,525	3.2	2,546,318	4.3	218,239	-1.4	379,969	-0.8	1,249,645	-1.6
	100~299인	3,380,871	3.9	3,483,899	3.9	2,677,603	5.0	262,199	1.8	544,096	-0.5	1,591,056	-0.3
	300인 이상	4,446,866	3.7	4,583,214	3.6	3,092,816	4.3	270,082	-1.6	1,220,316	3.0	1,218,622	0.8
'14	5인 이상 전체	3,189,995	2.5	3,377,970	2.4	2,660,111	3.2	201,445	9.3	516,414	-3.7	1,387,123	0.7
	5~9인	2,255,779	1.7	2,433,775	1.9	2,199,354	3.1	60,653	2.3	173,768	-12.0	1,235,588	-9.9
	10~29인	2,724,572	3.8	2,931,338	4.1	2,481,687	3.6	136,685	13.9	312,966	4.6	1,443,527	1.1
	30~99인	3,145,326	4.6	3,258,337	3.6	2,656,624	4.3	227,624	4.3	374,089	-1.5	1,516,569	21.4
	100~299인	3,333,964	-1.4	3,442,875	-1.2	2,670,487	-0.3	282,560	7.8	489,827	-10.0	1,451,400	-8.8
	300인 이상	4,678,408	5.2	4,826,509	5.3	3,271,741	5.8	315,818	16.9	1,238,950	1.5	1,353,590	11.1
'15	5인 이상 전체	3,300,091	3.5	3,489,618	3.3	2,748,504	3.3	216,427	7.4	524,686	1.6	1,424,393	2.7
	5~9인	2,366,310	4.9	2,539,305	4.3	2,286,023	3.9	59,922	-1.2	193,359	11.3	1,259,005	1.9
	10~29인	2,843,136	4.4	3,062,761	4.5	2,576,540	3.8	145,674	6.6	340,547	8.8	1,431,969	-0.8
	30~99인	3,233,651	2.8	3,351,142	2.8	2,715,944	2.2	247,451	8.7	387,746	3.7	1,659,058	9.4
	100~299인	3,377,218	1.3	3,486,538	1.3	2,705,936	1.3	291,548	3.2	489,054	-0.2	1,546,213	6.5
	300인 이상	4,849,460	3.7	5,016,705	3.9	3,437,816	5.1	348,807	10.4	1,230,082	-0.7	1,328,761	-1.8
'16	5인 이상 전체	3,424,726	3.8	3,622,732	3.8	2,838,170	3.3	224,728	3.8	559,834	6.7	1,469,100	3.1
	5~9인	2,450,262	3.5	2,634,026	3.7	2,369,468	3.7	64,305	7.3	200,253	3.6	1,239,701	-1.5
	10~29인	2,951,617	3.8	3,182,826	3.9	2,667,561	3.5	160,116	9.9	355,149	4.3	1,489,293	4.0
	30~99인	3,340,960	3.3	3,461,753	3.3	2,774,800	2.2	269,043	8.7	417,910	7.8	1,770,213	6.7
	100~299인	3,553,541	5.2	3,668,131	5.2	2,825,925	4.4	308,683	5.9	533,522	9.1	1,666,917	7.8
	300인 이상	4,959,343	2.3	5,130,569	2.3	3,518,561	2.3	330,575	-5.2	1,281,433	4.2	1,310,508	-1.4

주 1) 증감률은 전년대비 증감률임

2) 규모별 근로시간 동향

<표> 규모별·내역별 근로시간 동향('12~'16년)

(단위: 시간, %)

시점		전체 근로시간		상용근로자 근로시간		소정 실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		임시일용 근로자 근로시간	
			증감률 ¹⁾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12	5인 이상 전체	174.3	-1.1	179.9	-1.2	167.2	-0.8	12.8	-5.9	122.3	-0.2
	5~9인	171.5	-1.2	180.8	-1.1	176.9	-1.2	4.0	8.1	121.3	-0.1
	10~29인	172.3	-1.2	180.2	-1.5	171.3	-1.4	8.9	-2.2	121.0	-1.5
	30~99인	179.1	-0.5	183.3	-0.8	166.5	-0.2	16.7	-6.2	131.3	5.5
	100~299인	179.5	-0.9	182.8	-0.8	164.2	-0.7	18.6	-2.1	124.2	-2.4
	300인 이상	171.0	-1.7	173.6	-1.5	157.4	-0.5	16.2	-11.0	111.2	-3.9
'13	5인 이상 전체	172.6	-1.0	178.1	-1.0	165.6	-1.0	12.5	-2.3	122.5	0.2
	5~9인	169.2	-1.3	178.9	-1.1	174.5	-1.4	4.4	10.0	121.2	-0.1
	10~29인	171.5	-0.5	178.8	-0.8	169.5	-1.1	9.2	3.4	125.5	3.7
	30~99인	176.6	-1.4	180.8	-1.4	164.6	-1.1	16.1	-3.6	123.4	-6.0
	100~299인	177.4	-1.2	180.3	-1.4	162.0	-1.3	18.3	-1.6	127.3	2.5
	300인 이상	169.9	-0.6	172.5	-0.6	157.6	0.1	14.9	-8.0	107.7	-3.1
'14	5인 이상 전체	171.4	-0.7	177.1	-0.6	164.1	-0.9	12.9	3.2	117.0	-4.5
	5~9인	166.8	-1.4	176.9	-1.1	172.3	-1.3	4.6	4.5	108.8	-10.2
	10~29인	170.3	-0.7	178.1	-0.4	168.2	-0.8	9.9	7.6	122.0	-2.8
	30~99인	175.5	-0.6	178.6	-1.2	162.3	-1.4	16.3	1.2	130.7	5.9
	100~299인	176.6	-0.5	179.7	-0.3	160.6	-0.9	19.1	4.4	122.1	-4.1
	300인 이상	168.9	-0.6	172.2	-0.2	156.6	-0.6	15.6	4.7	93.8	-12.9
'15	5인 이상 전체	172.6	0.7	178.4	0.7	165.6	0.9	12.8	-0.8	114.6	-2.1
	5~9인	168.1	0.8	177.8	0.5	173.5	0.7	4.4	-4.3	105.8	-2.8
	10~29인	171.4	0.6	179.8	1.0	169.9	1.0	9.9	0.0	117.3	-3.9
	30~99인	177.4	1.1	180.7	1.2	164.0	1.0	16.8	3.1	132.0	1.0
	100~299인	176.6	0.0	179.6	-0.1	161.5	0.6	18.1	-5.2	126.0	3.2
	300인 이상	169.7	0.5	173.7	0.9	158.3	1.1	15.4	-1.3	86.9	-7.4
'16	5인 이상 전체	171.0	-0.9	176.9	-0.8	164.2	-0.8	12.7	-0.8	112.8	-1.6
	5~9인	166.6	-0.9	176.3	-0.8	171.8	-1.0	4.5	2.3	102.5	-3.1
	10~29인	170.2	-0.7	179.1	-0.4	168.7	-0.7	10.4	5.1	113.7	-3.1
	30~99인	177.2	-0.1	180.5	-0.1	163.1	-0.5	17.4	3.6	134.8	2.1
	100~299인	174.4	-1.2	177.3	-1.3	159.5	-1.2	17.8	-1.7	127.1	0.9
	300인 이상	166.9	-1.6	170.8	-1.7	157.0	-0.8	13.7	-11.0	85.5	-1.6

주 1) 증감률은 전년대비 증감률임

(4) 산업별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1) 산업별 임금동향

<표> 산업별·내역별 임금동향('12년)

(단위: 천원, %)

시점	전체 임금총액		상용근로자 임금총액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임시일용 근로자 임금총액	
		증감률 ¹⁾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5인 이상 전체	2,995,471	5.3	3,178,160	5.3	2,469,814	5.5	181,290	1.0	527,056	5.8	1,292,739	6.4
광업	3,469,640	4.9	3,575,003	4.4	2,673,320	4.8	308,273	3.5	593,411	3.3	1,380,718	12.3
제조업	3,220,594	6.1	3,286,179	6.0	2,294,361	5.7	344,365	1.3	647,453	9.9	1,387,799	7.8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387,731	-1.7	5,492,727	-1.3	3,924,301	2.9	345,507	4.4	1,222,920	-14.1	1,062,371	-9.0
하수·폐기물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2,654,123	6.7	2,734,245	6.7	2,229,498	5.1	235,159	11.3	269,588	17.0	1,003,247	5.0
건설업	2,272,615	4.2	2,735,589	3.5	2,488,359	4.1	43,437	-12.9	203,794	1.1	1,546,057	5.5
도매및소매업	3,122,341	6.1	3,249,019	5.3	2,597,980	5.5	85,918	8.6	565,121	3.7	1,080,057	9.9
운수업	2,589,051	8.2	2,625,590	8.1	2,033,816	8.0	222,314	9.2	369,460	8.5	1,824,217	4.9
숙박 및 음식점업	1,738,495	5.2	2,024,716	5.7	1,771,476	8.1	109,969	-12.3	143,271	-5.2	764,647	-0.7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851,065	4.3	3,990,429	4.9	3,334,914	6.4	80,470	7.6	575,045	-3.6	1,321,178	5.5
금융및보험업	4,988,116	4.6	5,139,135	4.5	3,573,485	5.1	99,994	0.4	1,465,656	3.6	1,312,211	10.0
부동산업 및 임대업	2,194,079	8.8	2,220,667	8.1	1,931,459	6.2	42,522	2.8	246,686	26.9	1,082,688	8.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111,929	6.3	4,213,186	5.9	3,528,509	5.0	59,614	1.5	625,063	11.6	1,452,360	4.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789,203	5.3	1,872,134	5.1	1,623,220	5.5	100,534	5.1	148,380	0.8	1,006,819	7.9
교육서비스업	3,123,039	4.6	3,565,688	5.6	3,092,191	5.1	53,244	7.3	420,253	9.2	1,072,538	8.0
보건업및사회 복지서비스업	2,608,498	4.7	2,684,918	3.4	2,182,654	3.8	136,882	6.9	365,383	-0.3	1,095,518	23.9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2,211,374	3.8	2,817,085	3.6	2,267,354	4.4	168,582	3.0	381,149	-1.0	797,708	-1.2
협회및단체수리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228,442	2.0	2,471,033	4.4	2,119,969	5.0	83,806	-17.9	267,258	8.7	740,976	-7.7

주 1) 증감률은 전년대비 증감률임

<표> 산업별·내역별 임금동향('13년)

(단위: 천원, %)

시점	전체 임금총액		상용근로자 임금총액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임시일용 근로자 임금총액	
		증감률 ¹⁾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5인 이상 전체	3,110,992	3.9	3,298,667	3.8	2,577,842	4.4	184,292	1.7	536,533	1.8	1,377,238	6.5
광업	3,556,573	2.5	3,670,062	2.7	2,793,129	4.5	292,135	-5.2	584,798	-1.5	1,557,551	12.8
제조업	3,371,371	4.7	3,440,168	4.7	2,402,915	4.7	346,782	0.7	690,471	6.6	1,374,215	-1.0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542,420	2.9	5,622,821	2.4	4,030,237	2.7	346,863	0.4	1,245,720	1.9	1,310,064	23.3
하수·폐기물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2,742,982	3.3	2,825,651	3.3	2,351,541	5.5	238,078	1.2	236,032	-12.4	943,419	-6.0
건설업	2,414,477	6.2	2,889,695	5.6	2,609,711	4.9	47,587	9.6	232,397	14.0	1,736,483	12.3
도매및소매업	3,168,003	1.5	3,288,709	1.2	2,679,568	3.1	93,180	8.5	515,961	-8.7	1,108,533	2.6
운수업	2,731,605	5.5	2,798,140	6.6	2,148,449	5.6	241,325	8.6	408,366	10.5	1,396,300	-23.5
숙박 및 음식점업	1,772,354	1.9	2,070,223	2.2	1,863,436	5.2	75,473	-31.4	131,314	-8.3	801,564	4.8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936,132	2.2	4,078,609	2.2	3,450,157	3.5	87,516	8.8	540,936	-5.9	1,173,309	-11.2
금융및보험업	5,057,579	1.4	5,193,377	1.1	3,693,890	3.4	102,008	2.0	1,397,479	-4.7	1,270,804	-3.2
부동산업 및 임대업	2,269,288	3.4	2,295,275	3.4	2,019,847	4.6	44,525	4.7	230,903	-6.4	1,231,069	13.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242,629	3.2	4,344,482	3.1	3,651,982	3.5	61,205	2.7	631,296	1.0	1,396,309	-3.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882,729	5.2	1,953,643	4.4	1,699,680	4.7	101,297	0.8	152,666	2.9	1,203,147	19.5
교육서비스업	3,261,110	4.4	3,689,031	3.5	3,225,849	4.3	57,926	8.8	405,257	-3.6	1,041,156	-2.9
보건업및사회 복지서비스업	2,661,753	2.0	2,744,366	2.2	2,234,799	2.4	141,607	3.5	367,959	0.7	1,060,533	-3.2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2,326,067	5.2	2,939,688	4.4	2,350,717	3.7	174,455	3.5	414,517	8.8	851,371	6.7
협회및단체수리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226,196	-0.1	2,479,593	0.3	2,167,731	2.3	81,369	-2.9	230,493	-13.8	688,353	-7.1

주 1) 증감률은 전년대비 증감률임

<표> 산업별·내역별 임금동향('14년)

(단위: 천원, %)

시점	전체 임금총액		상용근로자 임금총액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임시일용 근로자 임금총액	
		증감률 ¹⁾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5인 이상 전체	3,189,995	2.5	3,377,970	2.4	2,660,111	3.2	201,445	9.3	516,414	-3.7	1,387,123	0.7
광업	3,480,231	-2.1	3,589,002	-2.2	2,750,187	-1.5	308,472	5.6	530,343	-9.3	1,353,046	-13.1
제조업	3,505,897	4.0	3,570,059	3.8	2,476,303	3.1	388,626	12.1	705,131	2.1	1,439,486	4.7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553,594	0.2	5,612,973	-0.2	4,174,628	3.6	335,155	-3.4	1,103,190	-11.4	1,539,236	17.5
하수·폐기물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2,811,776	2.5	2,905,747	2.8	2,454,927	4.4	221,803	-6.8	229,016	-3.0	984,407	4.3
건설업	2,496,551	3.4	3,028,212	4.8	2,752,228	5.5	61,278	28.8	214,706	-7.6	1,812,566	4.4
도매및소매업	3,206,051	1.2	3,321,379	1.0	2,777,486	3.7	95,635	2.6	448,258	-13.1	1,051,804	-5.1
운수업	2,804,531	2.7	2,866,565	2.4	2,223,210	3.5	244,012	1.1	399,342	-2.2	1,343,314	-3.8
숙박 및 음식점업	1,784,850	0.7	2,172,211	4.9	1,942,964	4.3	95,190	26.1	134,057	2.1	822,883	2.7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904,990	-0.8	4,039,213	-1.0	3,474,445	0.7	111,720	27.7	453,047	-16.2	1,121,043	-4.5
금융및보험업	5,233,974	3.5	5,314,895	2.3	3,810,710	3.2	115,554	13.3	1,388,631	-0.6	1,380,751	8.7
부동산업 및 임대업	2,322,523	2.3	2,350,891	2.4	2,157,576	6.8	53,513	20.2	139,802	-39.5	1,266,666	2.9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418,760	4.2	4,484,220	3.2	3,798,418	4.0	65,335	6.7	620,467	-1.7	1,476,899	5.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923,960	2.2	2,004,725	2.6	1,719,584	1.2	118,193	16.7	166,948	9.4	1,080,067	-10.2
교육서비스업	3,374,567	3.5	3,709,134	0.5	3,316,756	2.8	62,336	7.6	330,041	-18.6	1,119,137	7.5
보건업및사회 복지서비스업	2,699,561	1.4	2,772,773	1.0	2,282,258	2.1	136,349	-3.7	354,166	-3.7	1,066,152	0.5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2,398,211	3.1	2,862,956	-2.6	2,393,132	1.8	194,431	11.5	275,393	-33.6	884,251	3.9
협회및단체수리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248,959	1.0	2,509,282	1.2	2,201,911	1.6	74,729	-8.2	232,642	0.9	696,910	1.2

주 1) 증감률은 전년대비 증감률임

<표> 산업별·내역별 임금동향('15년)

(단위: 천원, %)

시점	전체 임금총액		상용근로자 임금총액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임시일용 근로자 임금총액	
		증감률 ¹⁾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5인 이상 전체	3,300,091	3.5	3,489,618	3.3	2,748,504	3.3	216,427	7.4	524,686	1.6	1,424,393	2.7
광업	3,676,351	5.6	3,793,870	5.7	2,904,985	5.6	303,284	-1.7	585,601	10.4	1,308,199	-3.3
제조업	3,616,631	3.2	3,671,757	2.8	2,571,170	3.8	410,604	5.7	689,983	-2.1	1,597,361	11.0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856,223	5.4	5,913,989	5.4	4,289,691	2.8	318,141	-5.1	1,306,157	18.4	1,826,233	18.6
하수·폐기물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2,945,346	4.8	3,028,148	4.2	2,526,818	2.9	236,319	6.5	265,012	15.7	1,002,965	1.9
건설업	2,591,209	3.8	3,240,406	7.0	2,933,514	6.6	91,913	50.0	214,979	0.1	1,871,583	3.3
도매및소매업	3,291,962	2.7	3,397,174	2.3	2,855,129	2.8	101,828	6.5	440,217	-1.8	1,076,458	2.3
운수업	2,951,855	5.3	3,006,245	4.9	2,320,555	4.4	251,628	3.1	434,062	8.7	1,394,526	3.8
숙박 및 음식점업	1,823,545	2.2	2,235,380	2.9	2,025,128	4.2	94,930	-0.3	115,322	-14.0	814,750	-1.0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4,011,822	2.7	4,154,984	2.9	3,561,471	2.5	119,908	7.3	473,604	4.5	1,185,200	5.7
금융및보험업	5,488,311	4.9	5,580,308	5.0	3,928,507	3.1	116,213	0.6	1,535,588	10.6	1,591,742	15.3
부동산업 및 임대업	2,477,699	6.7	2,505,484	6.6	2,270,317	5.2	60,450	13.0	174,717	25.0	1,357,583	7.2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561,374	3.2	4,628,852	3.2	3,948,975	4.0	63,818	-2.3	616,060	-0.7	1,511,732	2.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2,002,462	4.1	2,096,821	4.6	1,783,259	3.7	126,398	6.9	187,164	12.1	1,088,334	0.8
교육서비스업	3,483,160	3.2	3,857,553	4.0	3,411,038	2.8	61,314	-1.6	385,200	16.7	1,128,592	0.8
보건업및사회 복지서비스업	2,771,640	2.7	2,847,015	2.7	2,349,978	3.0	162,678	19.3	334,358	-5.6	1,055,325	-1.0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2,512,096	4.7	2,989,518	4.4	2,508,377	4.8	213,319	9.7	267,822	-2.7	914,962	3.5
협회및단체수리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325,548	3.4	2,589,661	3.2	2,256,935	2.5	86,462	15.7	246,264	5.9	694,753	-0.3

주 1) 증감률은 전년대비 증감률임

<표> 산업별·내역별 임금동향('16년)

(단위: 천원, %)

시점	전체 임금총액		상용근로자 임금총액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임시일용 근로자 임금총액	
		증감률 ¹⁾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5인 이상 전체	3,424,726	3.8	3,622,732	3.8	2,838,170	3.3	224,728	3.8	559,834	6.7	1,469,100	3.1
광업	3,795,836	3.3	3,914,846	3.2	3,016,292	3.8	340,409	12.2	558,145	-4.7	1,213,154	-7.3
제조업	3,754,827	3.8	3,806,650	3.7	2,659,017	3.4	423,516	3.1	724,117	4.9	1,715,010	7.4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6,330,072	8.1	6,382,040	7.9	4,431,590	3.3	335,158	5.3	1,615,293	23.7	2,051,688	12.3
하수·폐기물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3,117,563	5.8	3,217,909	6.3	2,656,963	5.2	253,026	7.1	307,920	16.2	1,039,002	3.6
건설업	2,673,093	3.2	3,397,529	4.8	3,037,732	3.6	107,822	17.3	251,975	17.2	1,927,263	3.0
도매및소매업	3,427,718	4.1	3,539,467	4.2	2,949,853	3.3	106,843	4.9	482,771	9.7	1,105,049	2.7
운수업	3,102,253	5.1	3,152,700	4.9	2,430,678	4.7	263,632	4.8	458,390	5.6	1,412,337	1.3
숙박 및 음식점업	1,880,902	3.1	2,321,901	3.9	2,099,756	3.7	100,077	5.4	122,067	5.8	834,963	2.5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4,146,022	3.3	4,278,743	3.0	3,694,091	3.7	108,789	-9.3	475,862	0.5	1,263,611	6.6
금융및보험업	5,712,172	4.1	5,806,651	4.1	4,090,155	4.1	123,226	6.0	1,593,270	3.8	1,659,672	4.3
부동산업 및 임대업	2,616,517	5.6	2,649,070	5.7	2,375,465	4.6	71,413	18.1	202,192	15.7	1,511,092	11.3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816,741	5.6	4,887,000	5.6	4,068,686	3.0	71,435	11.9	746,878	21.2	1,719,128	13.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2,076,877	3.7	2,179,249	3.9	1,866,879	4.7	135,181	6.9	177,188	-5.3	1,075,821	-1.1
교육서비스업	3,555,876	2.1	4,010,343	4.0	3,508,423	2.9	64,490	5.2	437,431	13.6	1,106,240	-2.0
보건업및사회 복지서비스업	2,859,762	3.2	2,941,562	3.3	2,417,432	2.9	172,550	6.1	351,581	5.2	1,065,419	1.0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2,618,025	4.2	3,114,512	4.2	2,605,309	3.9	213,594	0.1	295,608	10.4	957,015	4.6
협회및단체수리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477,407	6.5	2,733,219	5.5	2,344,399	3.9	103,396	19.6	285,424	15.9	720,170	3.7

주 1) 증감률은 전년대비 증감률임

2) 산업별 근로시간 동향

<표> 산업별·내역별 근로시간 동향('12년)

(단위: 시간, %)

시점	전체 근로시간		상용근로자 근로시간		소정 실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		임시일용 근로자 근로시간	
	증감률 ¹⁾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5인 이상 전체	174.3	-1.1	179.9	-1.2	167.2	-0.8	12.8	-5.9	122.3	-0.2
광업	185.3	-0.9	188.9	-1.4	167.5	-2.2	21.4	4.4	115.1	13.2
제조업	186.4	-2.2	188.0	-2.3	162.5	-1.6	25.5	-6.9	142.0	1.8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75.5	-0.9	176.8	-0.6	162.4	-0.1	14.4	-5.9	123.0	-12.1
하수·폐기물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184.8	-0.8	188.6	-0.7	172.6	-0.6	16.1	-1.8	105.3	-1.8
건설업	152.5	-0.9	172.6	-1.1	169.8	-1.0	2.8	-9.7	121.0	-0.7
도매및소매업	174.5	-0.3	176.9	-0.5	170.8	-0.8	6.0	3.4	137.3	0.1
운수업	181.7	0.1	183.9	-0.1	170.8	-0.8	13.1	10.1	135.9	-1.0
숙박 및 음식점업	186.6	0.2	204.9	1.3	196.7	2.9	8.2	-26.1	124.3	-5.9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63.9	-0.4	166.0	-0.2	161.6	-0.1	4.4	-6.4	126.9	3.3
금융및보험업	163.4	-0.1	165.1	-0.2	160.6	-0.1	4.5	-4.3	122.9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3.4	-0.4	194.1	-1.0	191.4	-0.8	2.7	-10.0	163.8	12.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5.3	-0.5	166.2	-0.7	162.6	-0.4	3.6	-12.2	141.9	0.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73.1	0.6	177.3	-0.1	168.1	-0.1	9.1	0.0	133.6	9.1
교육서비스업	151.1	-1.2	165.4	-0.6	161.6	-0.7	3.9	5.4	84.8	0.5
보건업및사회 복지서비스업	174.8	0.7	176.7	-0.2	168.7	-0.4	8.0	3.9	138.1	15.8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158.1	0.6	186.3	0.4	172.3	1.1	13.9	-7.9	92.2	-1.2
협회및단체수리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8.9	-2.7	182.5	-0.7	176.4	-0.2	6.1	-14.1	85.9	-10.8

주 1) 증감률은 전년대비 증감률임

<표> 산업별·내역별 근로시간 동향('13년)

(단위: 시간, %)

시점	전체 근로시간		상용근로자 근로시간		소정 실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		임시일용 근로자 근로시간	
	증감률 ¹⁾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13 5인 이상 전체	172.6	-1.0	178.1	-1.0	165.6	-1.0	12.5	-2.3	122.5	0.2
광업	180.6	-2.5	184.8	-2.2	165.0	-1.5	19.8	-7.5	107.7	-6.4
제조업	185.0	-0.8	186.7	-0.7	162.1	-0.2	24.6	-3.5	135.0	-4.9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73.4	-1.2	174.0	-1.6	159.9	-1.5	14.1	-2.1	138.3	12.4
하수·폐기물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182.0	-1.5	185.8	-1.5	170.2	-1.4	15.5	-3.7	100.8	-4.3
건설업	152.7	0.1	170.7	-1.1	167.9	-1.1	2.8	0.0	127.1	5.0
도매및소매업	173.4	-0.6	175.6	-0.7	169.5	-0.8	6.1	1.7	135.7	-1.2
운수업	177.8	-2.1	179.7	-2.3	165.9	-2.9	13.8	5.3	139.3	2.5
숙박 및 음식점업	177.3	-5.0	195.6	-4.5	189.5	-3.7	6.2	-24.4	117.7	-5.3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63.0	-0.5	165.3	-0.4	160.7	-0.6	4.6	4.5	118.8	-6.4
금융및보험업	162.7	-0.4	164.0	-0.7	159.4	-0.7	4.6	2.2	125.2	1.9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1.5	-1.0	192.2	-1.0	189.7	-0.9	2.5	-7.4	164.1	0.2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3.9	-0.8	164.9	-0.8	161.2	-0.9	3.7	2.8	136.0	-4.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72.3	-0.5	176.4	-0.5	167.3	-0.5	9.0	-1.1	133.2	-0.3
교육서비스업	150.6	-0.3	165.2	-0.1	161.0	-0.4	4.2	7.7	75.0	-11.6
보건업및사회 복지서비스업	172.0	-1.6	174.0	-1.5	166.3	-1.4	7.7	-3.8	133.0	-3.7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158.0	-0.1	182.4	-2.1	169.0	-1.9	13.4	-3.6	99.5	7.9
협회및단체수리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7.5	-0.8	181.0	-0.8	175.1	-0.7	5.9	-3.3	85.7	-0.2

주 1) 증감률은 전년대비 증감률임

<표> 산업별·내역별 근로시간 동향('14년)

(단위: 시간, %)

시점	전체 근로시간		상용근로자 근로시간		소정 실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		임시일용 근로자 근로시간	
		증감률 ¹⁾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14 5인 이상 전체	171.4	-0.7	177.1	-0.6	164.1	-0.9	12.9	3.2	117.0	-4.5
광업	179.4	-0.7	182.9	-1.0	163.0	-1.2	20.0	1.0	110.3	2.4
제조업	185.4	0.2	186.9	0.1	161.0	-0.7	25.9	5.3	138.5	2.6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70.5	-1.7	170.9	-1.8	157.6	-1.4	13.3	-5.7	145.2	5.0
하수·폐기물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177.8	-2.3	181.8	-2.2	168.1	-1.2	13.7	-11.6	101.1	0.3
건설업	148.5	-2.8	168.8	-1.1	165.5	-1.4	3.3	17.9	122.4	-3.7
도매및소매업	172.3	-0.6	174.2	-0.8	168.1	-0.8	6.1	0.0	135.7	0.0
운수업	173.1	-2.6	174.8	-2.7	161.4	-2.7	13.4	-2.9	133.5	-4.2
숙박 및 음식점업	175.2	-1.2	198.9	1.7	191.1	0.8	7.8	25.8	116.1	-1.4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61.9	-0.7	164.3	-0.6	159.2	-0.9	5.2	13.0	111.5	-6.1
금융및보험업	163.4	0.4	163.9	-0.1	158.6	-0.5	5.2	13.0	141.5	13.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0.1	-0.7	191.0	-0.6	188.4	-0.7	2.5	0.0	158.3	-3.5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3.3	-0.4	164.2	-0.4	160.2	-0.6	3.9	5.4	123.9	-8.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71.9	-0.2	176.7	0.2	167.4	0.1	9.4	4.4	121.5	-8.8
교육서비스업	152.0	0.9	163.8	-0.8	158.8	-1.4	5.0	19.0	72.8	-2.9
보건업및사회 복지서비스업	169.6	-1.4	171.9	-1.2	164.6	-1.0	7.3	-5.2	117.1	-12.0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158.9	0.6	178.1	-2.4	164.7	-2.5	13.4	0.0	96.7	-2.8
협회및단체수리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2.9	-2.7	176.6	-2.4	172.0	-1.8	4.6	-22.0	81.2	-5.3

주 1) 증감률은 전년대비 증감률임

<표> 산업별·내역별 근로시간 동향('15년)

(단위: 시간, %)

시점	전체 근로시간		상용근로자 근로시간		소정 실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		임시일용 근로자 근로시간	
	증감률 ¹⁾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15 5인 이상 전체	172.6	0.7	178.4	0.7	165.6	0.9	12.8	-0.8	114.6	-2.1
광업	179.2	-0.1	183.0	0.1	164.2	0.7	18.8	-6.0	103.1	-6.5
제조업	186.3	0.5	187.5	0.3	162.3	0.8	25.3	-2.3	140.0	1.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70.8	0.2	171.1	0.1	159.4	1.1	11.7	-12.0	151.5	4.3
하수·폐기물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177.8	0.0	181.4	-0.2	169.4	0.8	11.9	-13.1	94.1	-6.9
건설업	147.4	-0.7	171.2	1.4	166.7	0.7	4.5	36.4	121.1	-1.1
도매및소매업	172.9	0.3	175.1	0.5	168.9	0.5	6.2	1.6	126.6	-6.7
운수업	173.9	0.5	175.2	0.2	162.1	0.4	13.0	-3.0	137.3	2.8
숙박 및 음식점업	175.3	0.1	200.8	1.0	193.9	1.5	6.8	-12.8	113.0	-2.7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64.3	1.5	167.0	1.6	161.8	1.6	5.2	0.0	111.5	0.0
금융및보험업	164.3	0.6	164.6	0.4	159.5	0.6	5.1	-1.9	149.1	5.4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2.8	1.4	193.5	1.3	190.9	1.3	2.5	0.0	165.2	4.4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4.9	1.0	165.8	1.0	162.1	1.2	3.7	-5.1	122.6	-1.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73.2	0.8	178.8	1.2	169.5	1.3	9.3	-1.1	118.7	-2.3
교육서비스업	151.5	-0.3	164.9	0.7	159.8	0.6	5.1	2.0	67.0	-8.0
보건업및사회 복지서비스업	171.5	1.1	174.1	1.3	166.5	1.2	7.6	4.1	113.5	-3.1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160.6	1.1	179.7	0.9	165.5	0.5	14.2	6.0	96.8	0.1
협회및단체수리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3.7	0.5	177.6	0.6	172.6	0.3	5.0	8.7	77.7	-4.3

주 1) 증감률은 전년대비 증감률임

<표> 산업별·내역별 근로시간 동향('16년)

(단위: 시간, %)

시점	전체 근로시간		상용근로자 근로시간		소정 실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		임시일용 근로자 근로시간	
		증감률 ¹⁾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16 5인 이상 전체	171.0	-0.9	176.9	-0.8	164.2	-0.8	12.7	-0.8	112.8	-1.6
광업	179.0	-0.1	183.2	0.1	163.2	-0.6	20.0	6.4	86.9	-15.7
제조업	184.5	-1.0	185.7	-1.0	160.7	-1.0	25.0	-1.2	135.6	-3.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67.5	-1.9	167.7	-2.0	156.5	-1.8	11.2	-4.3	150.4	-0.7
하수·폐기물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177.1	-0.4	181.0	-0.2	169.0	-0.2	12.0	0.8	95.0	1.0
건설업	145.7	-1.2	170.7	-0.3	165.6	-0.7	5.1	13.3	119.9	-1.0
도매및소매업	171.4	-0.9	174.0	-0.6	167.1	-1.1	6.8	9.7	118.5	-6.4
운수업	172.3	-0.9	173.4	-1.0	160.3	-1.1	13.1	0.8	138.3	0.7
숙박 및 음식점업	172.3	-1.7	198.7	-1.0	191.7	-1.1	7.0	2.9	109.8	-2.8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63.3	-0.6	165.8	-0.7	161.2	-0.4	4.7	-9.6	108.1	-3.0
금융및보험업	162.8	-0.9	163.2	-0.9	158.2	-0.8	5.0	-2.0	147.0	-1.4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1.2	-0.8	191.9	-0.8	189.2	-0.9	2.8	12.0	166.2	0.6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3.3	-1.0	164.0	-1.1	160.1	-1.2	3.9	5.4	129.3	5.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71.7	-0.9	177.6	-0.7	169.4	-0.1	8.2	-11.8	113.2	-4.6
교육서비스업	148.5	-2.0	163.6	-0.8	159.0	-0.5	4.6	-9.8	66.9	-0.1
보건업및사회 복지서비스업	169.7	-1.0	172.4	-1.0	164.6	-1.1	7.8	2.6	109.1	-3.9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159.7	-0.6	177.2	-1.4	164.0	-0.9	13.2	-7.0	101.3	4.6
협회및단체수리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3.6	-0.1	176.5	-0.6	170.7	-1.1	5.7	14.0	74.9	-3.6

주 1) 증감률은 전년대비 증감률임

(5) 명목임금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간의 변동추이 비교

- 지난 '89년 이후 2016년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9.6%로 명목 임금총액 상승률(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기준) 8.1%보다 1.5%p 높음

<표> 명목임금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간 변동추이 (단위: %, %p)

	명목임금 인상률(상용근로자, 임금총액 기준)				최저임금 인상률 (C)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A)	차이 (C-A)	상용근로자 5인 이상 ¹⁾ (B)	차이 (C-B)	
1989	21.1	5.2			26.3
1990	18.8	-3.8			15
1991	17.5	1.3			18.8
1992	15.2	-2.4			12.8
1993	12.2	-3.6			8.6
1994	12.7	-4.7			8.0
1995	11.2	-3.4			7.8
1996	11.9	-2.9			9.0
1997	7.0	2.8			9.8
1998	-2.5	8.6			6.1
1999	12.1	-9.4			2.7
2000	8.0	-3.1	8.0	-3.1	4.9
2001	5.6	11.0	5.1	11.5	16.6
2002	11.6	1.0	11.2	1.4	12.6
2003	9.4	-1.1	9.2	-0.9	8.3
2004	6.5	3.8	6.0	4.3	10.3
2005	6.4	6.7	6.6	6.5	13.1
2006	5.6	3.6	5.7	3.5	9.2
2007	5.9	6.4	5.6	6.7	12.3
2008	4.1	4.2	4.4	3.9	8.3
2009	2.1	4.0	2.2	3.9	6.1
2010	6.5	-3.7	6.4	-3.7	2.8
2011	-0.6	5.7	-0.9	6.0	5.1
2012	5.6	0.4	5.3	0.7	6.0
2013	3.7	2.4	3.8	2.3	6.1
2014	2.9	4.3	2.4	4.8	7.2
2015	3.3	3.8	3.3	3.8	7.1
2016	3.9	4.2	3.8	4.3	8.1
연 평균	'89~'16	8.1	1.5	-	9.6
	('89~'96)	(15.1)	(-1.8)	-	(13.3)
	('97~'16)	(5.4)	(2.8)	-	(8.1)
	('05~'16)	(4.1)	(3.5)	(4.1)	(7.6)

주 1) 상용근로자 5인 이상은 1999년부터 조사가 이루어졌음(1998년 이전에는 상용근로자 10인 이상에 대해서만 조사)

< (참고) 사업체노동력조사 >

- ① **작성목적:** 매월 노동수요측(사업체)의 관점에서 임금 및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노동정책의 기초자료 활용 및 경기전망 등을 위한 경기지표 생산
- ② **작성기관:** 고용노동부
- ③ **조사대상 및 시기**
 - 조사대상: 비농 전 산업(정부기관 포함, 농림어업,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은 제외)의 종사자 1인 이상 약 25,000개 표본사업체
 - 조사기간: 매월 급여계산기간 대상으로 매월 조사
- ④ **조사항목:** 임금 및 근로시간

◆ 주요 용어 ◆

- 종사상 지위
 - 상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또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임금근로자
 - 임시·일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직 또는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
- 임금총액(세금공제 전 임금): 정액급여 + 초과급여 + 특별급여
 - 정액급여: 근로계약,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미리 정한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 기타수당(연차수당 포함)으로 지급한 총액
 - 초과급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수당으로 지급한 총액
 - 특별급여: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 소급분, 학자금(대출금 제외)등으로 지급한 총액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임금이 지급된 근로자'전체의 소정 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음)의 총계
 - 초과근로시간: 임금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이외의시간(연장 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에 실제로 근로한 시간(초과수당 지급을 위하여 산정한 시간이 아님)의 총계

2. 각종 지표에 대한 2017년 전망

가. 경제성장률

나. 고용관련 지표
(취업자 수, 고용률 및 실업률)

다. 소비자물가

라. 임금상승률

2 각종 지표에 대한 2017년 전망¹⁵⁾

가. 경제성장률

- 각 기관별로 2.6~2.7% 수준으로 예상을 하여 전년도('16년) 2.8%에 비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

* 경제성장률 실적치(%): ('12) 2.3 → ('13) 2.9 → ('14) 3.3 → ('15) 2.8 → **('16) 2.8^p**

<표> 기관별 경제성장률 전망치

(단위: %)

	한국은행	정부 (관계부처합동)	KDI	LG 경제연구원	IMF	OECD
경제성장률	2.6	2.6	2.6	2.6	2.7	2.6
전망시점	'17.4월	'16.12월	'17.4월	'17.4월	'17.4월	'16.11월

나. 고용관련 지표(취업자 수, 고용률 및 실업률)

- (취업자 수 증감) 각 기관별로 26~28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여 전년도('16년) 30만명 증가보다 낮은 수준일 것으로 전망

* 취업자 수 증감 실적치(만명): ('12) 44 → ('13) 39 → ('14) 53 → ('15) 34 → **('16) 30**

- (고용률-15세 이상) 각 기관별로 60.5~60.6% 수준으로 예상을 하여 전년도('16년) 60.4%에 비해서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

- (고용률-15~64세) 각 기관별로 66.5~66.6% 수준으로 예상을 하여 전년도('16년) 66.1%에 비해서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

* 고용률 실적치(전체,%): ('12) 59.4 → ('13) 59.5 → ('14) 60.2 → ('15) 60.3 → **('16) 60.4**

↳ 15~64세(%): ('12) 64.2 → ('13) 64.4 → ('14) 65.3 → ('15) 65.7 → **('16) 66.1**

15) 한국은행-『2017년 경제전망 수정('17.4.)』, 기획재정부-『2017년 경제정책방향('16.12.)』, KDI-『KDI경제전망('17.4.)』, KLI-『2016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7년 전망-노동리뷰 2016년 12월호』, 『2016년 임금동향과 2017년 임금전망-노동리뷰 2017년 4월호』, LG경제연구원-『2017년 경제전망('17.4.)』, IMF-『World Economic Outlook('17.4.)』, OECD-『OECD Economic Outlook('16.11.)』

- (실업률) 각 기관별로 3.8~3.9% 수준으로 예상을 하여 전년도('16년) 3.7%에 비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실업률 실적치(%): ('12) 3.2 → ('13) 3.1 → ('14) 3.5 → ('15) 3.6 → **('16) 3.7**

<표> 기관별 고용관련 지표 전망치

(단위: 만명, %)

	한국은행	정부 (관계부처합동)	KDI	KLI	LG 경제연구원	IMF	OECD
취업자수 증감	28	26	-	28	27	-	-
고용률 ¹⁾	60.6 (66.6)	- (66.5)	-	60.5 (-)	-	-	-
실업률	3.8	3.9	3.8	3.9	3.8	3.8	3.8
전망시점	'17.4월	'16.12월	'17.4월	'16.12월	'17.4월	'17.4월	'16.11월

주 1) 15세 이상, ()내는 15~64세

다. 소비자물가

- 각 기관별로 1.5~1.9% 수준으로 예상을 하여 전년도('16년) 1.0%에 비해서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

* 물가상승률 실적치(%): ('12) 2.1 → ('13) 1.3 → ('14) 1.3 → ('15) 0.7 → **('16) 1.0**

<표> 기관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단위: %)

	한국은행	정부 (관계부처합동)	KDI	LG 경제연구원	IMF	OECD
물가상승률	1.9	1.6	1.8	1.8	1.8	1.5
전망시점	'17.4월	'16.12월	'17.4월	'17.4월	'17.4월	'16.11월

라. 임금상승률

- 한국노동연구원에서 3.5% 수준으로 예상을 하여 전년도('16년) 3.8%에 비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타 기관은 임금예측 없음)

* 임금상승률 실적치(%): ('12) 5.3 → ('13) 3.9 → ('14) 2.5 → ('15) 3.5 → **('16) 3.8**

< (참고) 임금상승률 전망(한국노동연구원)¹⁶⁾ >

1. 2017년 경제지표 전망

2016년은 저유가 기조가 지속되면서 수익성이 괜찮은 산업을 중심으로 임금상승을 견인함으로써 실질경제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의 실질임금상승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국내외 여러 기관들에서 발표하는 2017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15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2%대의 저성장을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은행은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2016년 10월)보다 0.3%p 낮춘 2.5%(2017년 1월)로 수정 제시하였다. 한국은행은 2017년에는 유가 등 국제원자재가격이 상승하고 추경예산집행 등 정부의 경기활성화 대책은 상방리스크로 작용하겠지만 정치적 혼란에 따른 경제심리의 회복이 지연되고, 가계부채 부담, 대외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인한 하방리스크가 혼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에는 IMF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16년 10월보다 0.4%p 하락시킨 2.6%로 조정하여 발표하였다.

〈표 6〉 2017년 경제전망

(단위 : %)

		2016			2017p		
		상반	하반p	연간p	상반	하반	연간
한국은행 (2017. 1)	GDP	3.0	2.5	2.7	2.4	2.6	2.5
	민간소비	2.7	2.1	2.4	1.9	1.9	1.9
	설비투자	-3.6	-1.5	-2.6	3.0	2.0	2.5
	건설투자	10.3	11.5	10.9	5.9	3.0	4.3
	상품수출	0.1	1.7	0.9	2.9	2.0	2.4
	상품수입	0.7	2.5	1.6	4.3	0.5	2.3
	소비자물가	0.9	1.1	1.0	1.8	1.7	1.8
한국노동연구원 (2016. 12)	취업자증가율	1.2			1.1p		
	실업률	3.7			3.9p		

주 : p는 전망치임.

자료 : 한국은행, 「2017년 경제전망」 보도자료(2017. 1).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노동리뷰」 2016년 12월호.

여기에서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지수증가율은 금융위기 이후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그림 11 참조). 2017년 경제성장률이 2016년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저유가로 인한 소비자물가 하락효과는 사라지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대를 벗어나 예년 수준을 회복해 간다면 실질임금의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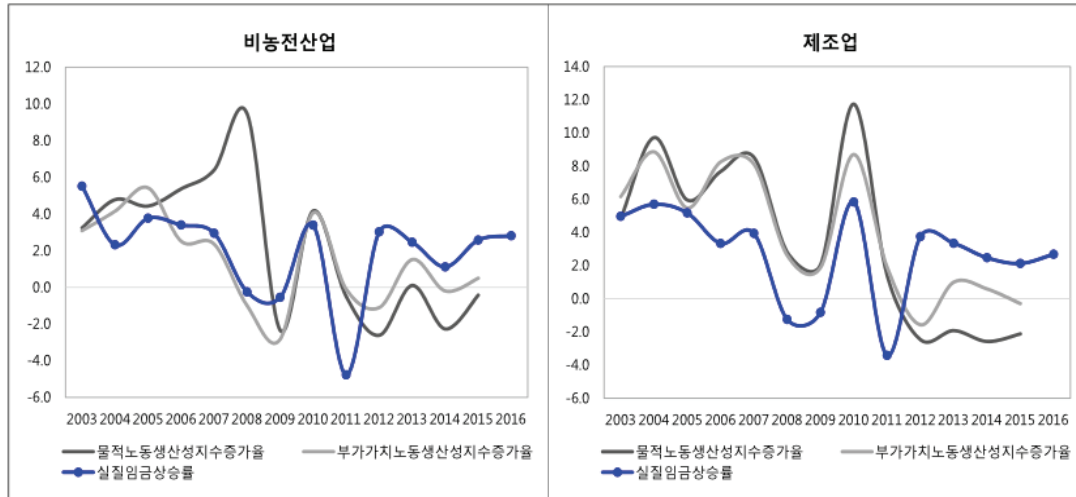
임금상승률은 경기적인 환경 이외에도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직접적인 교섭을 통해 결정되므로 노사관계 요인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은 최근

16) KLI-『2016년 임금동향과 2017년 임금전망(17.4.)-노동리뷰 2017년 4월호』

< (참고) 임금상승률 전망(한국노동연구원) >

[그림 11] 노동생산성지수증가율과 실질임금상승률 추이(1인당 기준)

(단위 : %)



주 : 노동생산성지수증가율은 모두 1인당 기준임. 부가가치노동생산성지수는 비농전산업 실질GDP지수 ÷ 취업자수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 임금총액 기준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http://laborstat.moel.go.kr/>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 통계 DB』, 각 연도.

몇 년 동안 3~4%대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상용직 정액급여증가율의 흐름과 흡사하다. 2016년 협약임금과 상용직 정액급여 모두 3%대 초반의 상승률을 보였다.

2. 2017년 임금전망

국민경제 전체로 볼 때 임금상승률을 국민경제생산성 상승률로 측정되는 노동생산성 상승률과 일치시키면 근로자의 기여분만큼 임금상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득분배도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노동소득분배율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생산성 증가에 상응하는 이론임금상승률은 실질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의 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⁶⁾ 이 경우 2017년 경제 및 노동시장 전망치, 즉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한국은행 2.5%) 및 물가상승률 전망치(1.8%), 그리고 취업자증가율 전망치(한국노동연구원 1.1%)가 예상대로 실현될 경우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는 임금상승률은 약 3.2% 수준으로 계산된다.

6) 완전경쟁시장 및 1차 동차 생산함수를 가정하고 이윤극대화 조건과 노동소득분배율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생산성 임금제에 근거한 이론임금인상률은 '실질경제성장률 + 소비자물가상승률 - 취업자증가율'로 산출될 수 있다.

그러나 국민경제 생산성에 근거한 임금인상률은 실제 임금상승률과 어느 정도 괴리가 있게 마련이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론임금인상률은 생산성 이외에 노동시장의 여건, 노사 관계, 사회적 분위기 등 임금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7년의 경제성장률은 2016년에 비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간소비의 위축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1인당 노동생산성지수증가율은 2010년 이후 일정한 범위 안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실질임금상승률도 큰 변동 없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2017년 임금상승률도 2016년 실적치보다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6년 임금상승을 이끈 저유가와 건설업은 2017년에 유가수준이 높아지고 건설업의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임금상승률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17년 최저임금인상률(7.3%)은 전체 임금인상률(3.8%)보다 높은 수준이며, 2017년 공무원임금인상률이 전년대비 0.5%p 상승한 3.5%인 점 등이 임금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2017년 임금상승률은 전년보다는 소폭 하락한 3.5%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III

최저임금 관련 국제현황

1. 주요 국가 최저임금 현황
2. 외국의 최저임금 관련 최근동향

1 주요 국가 최저임금 현황

가. 소득수준별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상대격차)

나.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국제비교(OECD)

다. 최저임금 현황(OECD)

라. 국가별 최저임금 적용 및
미만현황

1 주요 국가 최저임금 현황

가. 소득수준별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상대격차)

< 유의사항 및 산출방법 >

❖ (유의사항)

- 각 국가의 최저임금 차이를 비교하는 경우 국가마다 ①최저임금 산입 범위의 차이, ② 최저임금 적용단위 (시급, 일환산 또는 월환산)의 차이 ③ 적용년도와 1인당 GNI 산출년도간의 차이 등이 있어 정확한 국가 간 비교에 한계가 있으나,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

-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에 상여금이나 현물급여를 포함하지 않아 상여금이나 현물급여를 포함한 국가군에 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상대적으로 작음

❖ (산출방법)

① 각 국가의 최저임금액을 원화로 환산

② 우리나라 최저임금액 대비 각 국가별 최저임금액의 비율[A] 산출

- 외국의 최저임금 산정기준(시(時), 일(日), 월(月))에 따라 우리나라의 현행 최저임금 시급, 일환산(시급×8시간), 월환산(1일 8시간 주5일 근로하는 경우에 유급주휴를 포함한 월 209시간을 곱함) 금액과 비교

* 우리나라 최저임금액을 “100”으로 보았을 때 각 국가별 최저임금의 수준을 의미

③ 우리나라 1인당 GNI 대비 각 국가별 1인당 GNI의 비율[B] 산출

* 우리나라 1인당 GNI를 “100”으로 보았을 때 각 국가별 1인당 GNI의 수준을 의미

④ 상대격차[A/B] 산출

* 100 이상이면 1인당 GNI를 감안했을 때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높음을 의미

※ 각 주재 대사관 등을 통해 입수한 외국의 최저임금 수준 등의 자료를 가지고 원화로 환산하고 해당국의 1인당 GNI와 비교하여 최저임금의 상대적 격차를 산정

(1) 1인당 GNI 1만 불 미만

<표> 국가별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비교(1인당 GNI 1만 불 미만)

국 가	적용연도	산정기준	원화 환산		1인당GNI		상대 격차 (A/B, 지수)
			최저임금액 (원)	비율A (한국=100,%)	(15,\$)	비율B (한국=100,%)	
캄보디아	'17.1~	월	171,896	12.7	1,070	3.9	326.1
파라과이	'16.6~'17.5	월	392,901	29.1	4,190	15.3	190.4
베트남	'17.1~	월	185,378	13.7	1,990	7.2	189.1
인도네시아	17.1~'17.12	월	282,764	20.9	3,440	12.5	166.9
필리핀	'16.6~	일	11,033	21.3	3,550	12.9	164.8
터키	'17.1~	월	544,787	40.3	9,950	36.2	111.1
대한민국	'17.1~'17.12	시급(일환산) 【월환산】	6,470(51,760) 【1,352,230】	100.0	27,450	100.0	100.0
태국	'17.1~	일	9,996	19.3	5,720	20.8	92.7
남아프리카공화국	'17.2~	월	272,665	20.2	6,080	22.1	91.0
루마니아	'17.2~	월	399,475	29.5	9,510	34.6	85.3
중국	'16.9~	월	308,957	22.8	7,900	28.8	79.4
콜롬비아	'17.1~	월	248,648	18.4	7,140	26.0	70.7
브라질	'17.1~	월	334,344	24.7	9,990	36.4	67.9
우즈베키스탄	'16.10~	월	43,435	3.2	2,160	7.9	40.8
멕시코	'17.1~	일	4,559	8.8	9,710	35.4	24.9

주 1) 환율(2017.1.1.~5.24 기간 평균 최종고시 기준)1\$=1,123.50원, 1€=1,262.48원

2) '국가명' 기준 가나다 순으로 정렬

3) OECD 국가는 국가 명에 음영 표시

출처: 최저임금액(해당국 주재 대사관), 1인당 GNI(세계은행, <http://worldbank.org>)

(2) 1인당 GNI 1~2만 불 미만

<표> 국가별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비교(1인당 GNI 1~2만 불 미만)

국 가	적용연도	산정기준	원화 환산		1인당GNI		상대 격차 (A/B, 지수)
			최저임금액 (원)	비율A (한국=100,%)	(15,\$)	비율B (한국=100,%)	
대한민국	'17.1~'17.12	시급(일환산) 【월환산】	6,470(51,760) 【1,352,230】	100.0	27,450	100.0	100.0
아르헨티나	'17.1~	월	556,382	41.1	12,450	45.4	90.7
폴란드	'17.1~	월	561,301	41.5	13,310	48.5	85.6
헝가리	'17.1~	월	501,362	37.1	12,970	47.2	78.5
칠레	'17.7~12	월	455,018	33.6	14,100	51.4	65.5
체코	'17.1~	월	491,868	36.4	18,150	66.1	55.0
말레이시아	'16.7~	월	254,136	18.8	10,570	38.5	48.8
러시아연방	'17.7~	월	150,729	11.1	11,720	42.7	26.1

주 1) 환율(2017.1.1.~5.24 기간 평균 최종고시 기준)1\$=1,123.50원, 1€=1,262.48원

2) '국가명' 기준 가나다 순으로 정렬

3) OECD 국가는 국가 명에 음영 표시

출처: 최저임금액(해당국 주재 대사관), 1인당 GNI(세계은행, <http://worldbank.org>)

[3] 1인당 GNI 2~4만 불 미만

<표> 국가별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비교(1인당 GNI 2~4만 불 미만)

국 가	적용연도	산정기준	원화 환산		1인당GNI		상대 격차 (A/B, 지수)
			최저임금액 (원)	비율A (한국= 100,%)	(15,\$)	비율B (한국= 100,%)	
대한민국	'17.1~'17.12	시급(일환산) 【월환산】	6,470(51,760) 【1,352,230】	100.0	27,450	100.0	100.0
일본	'16.10~'17.9	시	8,200	126.7	38,840	141.5	89.6
이스라엘	'17.1~	월	1,519,534	112.4	35,770	130.3	86.2
그리스	'13.1~	월	823,189	60.9	22,810	83.1	73.3
대만	'17.1~	월	767,117	56.7	23,131	84.3	67.3
포르투갈	'17.1~	월	670,346	49.6	20,470	74.6	66.5
스페인	'17.1~	월	851,712	63.0	28,380	103.4	60.9

주 1) 환율(2017.1.1.~5.24 기간 평균 최종고시 기준)1\$=1,123.50원, 1€=1,262.48원

2) '국가명' 기준 가나다 순으로 정렬

3) OECD 국가는 국가 명에 음영 표시

출처: 최저임금액(해당국 주재 대사관), 1인당 GNI(세계은행, <http://worldbank.org>)

[4] 1인당 GNI 4만 불 이상

<표> 국가별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비교(1인당 GNI 4만 불 이상)

국 가	적용연도	산정기준	원화 환산		1인당GNI		상대 격차 (A/B, 지수)
			최저임금액 (원)	비율A (한국= 100,%)	(15,\$)	비율B (한국= 100,%)	
뉴질랜드	'17.4~	시	12,473	192.8	40,020	145.8	132.2
프랑스	'17.1~	시	11,746	181.5	40,710	148.3	122.4
호주	'17.7~	시	15,000	231.8	60,050	218.8	106.0
대한민국	'17.1~'17.12	시급(일환산) 【월환산】	6,470(51,760) 【1,352,230】	100.0	27,450	100.0	100.0
독일	'17.1~	시	10,639	164.4	45,790	166.8	98.6
영국	'17.4~	시	9,904	153.1	43,700	159.2	96.2
아일랜드	'17.1~	시	11,132	172.1	52,550	191.4	89.9
캐나다	'16.10~	시	9,606	148.5	47,250	172.1	86.3
벨기에	'16.6~'17.5	월	1,843,667	136.3	44,510	162.1	84.1
네덜란드	'17.1~6	월	1,867,340	138.1	48,850	178.0	77.6
미국	'09.7~	시	8,145	125.9	55,980	203.9	61.7

주 1) 환율(2017.1.1.~5.24 기간 평균 최종고시 기준)1\$=1,123.50원, 1€=1,262.48원

2) '국가명' 기준 가나다 순으로 정렬

3) OECD 국가는 국가 명에 음영 표시

출처: 최저임금액(해당국 주재 대사관), 1인당 GNI(세계은행, <http://worldbank.org>)

(5) 국가별 1인당 GNI 대비 최저임금 상대격차

<표> 국가별 1인당 GNI 대비 최저임금 상대격차

국 가	적용연도	산정기준	원화 환산		1인당GNI		상대 격차 (A/B, 지수)
			최저임금액 (원)	비율A (한국=100,%)	(‘15,\$)	비율B (한국=100,%)	
캄보디아	‘17.1~	월	171,896	12.7	1,070	3.9	326.1
파라과이	‘16.6~’17.5	월	392,901	29.1	4,190	15.3	190.4
베트남	‘17.1~	월	185,378	13.7	1,990	7.2	189.1
인도네시아	17.1~’17.12	월	282,764	20.9	3,440	12.5	166.9
필리핀	‘16.6~	일	11,033	21.3	3,550	12.9	164.8
뉴질랜드	‘17.4~	시	12,473	192.8	40,020	145.8	132.2
프랑스	‘17.1~	시	11,746	181.5	40,710	148.3	122.4
터키	‘17.1~	월	544,787	40.3	9,950	36.2	111.1
호주	‘17.7~	시	15,000	231.8	60,050	218.8	106.0
대한민국	‘17.1~’17.12	시급(일환산) 【월환산】	6,470(51,760) 【1,352,230】	100.0	27,450	100.0	100.0
독일	‘17.1~	시	10,639	164.4	45,790	166.8	98.6
영국	‘17.4~	시	9,904	153.1	43,700	159.2	96.2
태국	‘17.1~	일	9,996	19.3	5,720	20.8	92.7
남아프리카공화국	‘17.2~	월	272,665	20.2	6,080	22.1	91.0
아르헨티나	‘17.1~	월	556,382	41.1	12,450	45.4	90.7
아일랜드	‘17.1~	시	11,132	172.1	52,550	191.4	89.9
일본	‘16.10~’17.9	시	8,200	126.7	38,840	141.5	89.6
캐나다	‘16.10~	시	9,606	148.5	47,250	172.1	86.3
이스라엘	‘17.1~	월	1,519,534	112.4	35,770	130.3	86.2
폴란드	‘17.1~	월	561,301	41.5	13,310	48.5	85.6
루마니아	‘17.2~	월	399,475	29.5	9,510	34.6	85.3
벨기에	‘16.6~’17.5	월	1,843,667	136.3	44,510	162.1	84.1
중국	‘16.9~	월	308,957	22.8	7,900	28.8	79.4
헝가리	‘17.1~	월	501,362	37.1	12,970	47.2	78.5
네덜란드	‘17.1~6	월	1,867,340	138.1	48,850	178.0	77.6
그리스	‘13.1~	월	823,189	60.9	22,810	83.1	73.3
콜롬비아	‘17.1~	월	248,648	18.4	7,140	26.0	70.7
브라질	‘17.1~	월	334,344	24.7	9,990	36.4	67.9
대만	‘17.1~	월	767,117	56.7	23,131	84.3	67.3
포르투갈	‘17.1~	월	670,346	49.6	20,470	74.6	66.5
칠레	‘17.7~12	월	455,018	33.6	14,100	51.4	65.5
미국	‘09.7~	시	8,145	125.9	55,980	203.9	61.7
스페인	‘17.1~	월	851,712	63.0	28,380	103.4	60.9
체코	‘17.1~	월	491,868	36.4	18,150	66.1	55.0
말레이시아	‘16.7~	월	254,136	18.8	10,570	38.5	48.8
우즈베키스탄	‘16.10~	월	43,435	3.2	2,160	7.9	40.8
러시아연방	‘17.7~	월	150,729	11.1	11,720	42.7	26.1
멕시코	‘17.1~	일	4,559	8.8	9,710	35.4	24.9

주 1) 환율(2017.1.1.~5.24 기간 평균 최종고시 기준)1\$=1,123.50원, 1€=1,262.48원

2) ‘국가명’ 기준 가나다 순으로 정렬

3) OECD 국가는 국가 명에 음영 표시

출처: 최저임금액(해당국 주재 대사관), 1인당 GNI(세계은행, <http://worldbank.org>)

(6) 국가별 최저임금액 및 1인당 GNI

<표> 국가별 최저임금액 및 1인당 GNI

국 가 ^{(2),(3)}	적용연도	산정기준	최저임금액('17년 최근월) ¹⁾				원화 기준 최저임금액 ('17, 원)	1인당 GNI ('15,\$)	비고
			해당국 통화	단위	달러 환산 (달러)	원화 환산 (원)			
그리스	'13.1~	월	684	Euro	732.70	823,189	1,352,230	22,810	'12년 중기재정조치 이후 '13년 최저임금부터 동일 수준으로 동결
남아프리카 공화국	'17.2~	월	3,223.01	Rand	242.69	272,665	1,352,230	6,080	업종별·지역별 적용, 도시지역 도소매 노동자 기준
네덜란드	'17.1~6	월	1,551.60	Euro	1,662.07	1,867,340	1,352,230	48,850	폴타임 총액기준(23세 이상)
뉴질랜드	'17.4~	시	15.75	New Zealand Dollar	11.10	12,473	6,470	40,020	성인, 신규근로자, 훈련생 구분적용, 성인 기준
대만	'17.1~	월	21,009	New Taiwan Dollar	682.79	767,117	1,352,230	23,131	
대한민국	'17.1~'17.12	시	6,470	Won	5.76	6,470	6,470	27,450	
독일	'17.1~	시	8.84	Euro	9.47	10,639	6,470	45,790	단일 최저임금 기준
러시아연방	'17.7~	월	7,800	Ruble	134.16	150,729	1,352,230	11,720	
루마니아	'17.2~	월	1,450	Ron	355.56	399,475	1,352,230	9,510	
말레이시아	'16.7~	월	1,000	Ringgit	226.20	254,136	1,352,230	10,570	지역별 적용, 말레이반도 기준
멕시코	'17.1~	일	80.04	Peso	4.06	4,559	51,760	9,710	'15.10월부터 지역별 구분 폐지
미국	'09.7~	시	7.25	US Dollar	7.25	8,145	6,470	55,980	'09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법개정 이루어지지 않음
베트남	'17.1~	월	3,750,000	Dong	165.00	185,378	1,352,230	1,990	지역별·산업별 적용, 4개 지역중 1지역 기준
벨기에	'16.6~'17.5	월	1,531.93	Euro	1,641.00	1,843,667	1,352,230	44,510	18세 이상 전일제 근로자 기준
브라질	'17.1~	월	937	Real	297.59	334,344	1,352,230	9,990	
스페인	'17.1~	월	707.7	Euro	758.09	851,712	1,352,230	28,380	
아르헨티나	'17.1~	월	8,060	Peso	495.22	556,382	1,352,230	12,450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주요 노동·경제 지표 분석

국 가 ^{2),3)}	적용연도	산정기준	최저임금액('17년 최근월) ¹⁾				원화 기준 최저 임금액 ⁴⁾ ('17, 원)	1인당 GNI ('15,\$)	비고
			해당국 통화	단위	달러 환산 (달러)	원화 환산 (원)			
아일랜드	'17.1~	시	9.25	Euro	9.91	11,132	6,470	52,550	성인 기준
영국	'17.4~	시	7.05	Pound	8.82	9,904	6,470	43,700	21세~24세 기준('16.4월 25세이상 성인 국가생활임금 도입 7.50) 수시로 고시하며 다시 고시될때까지 기존 최저임금액이 적용
우즈베키스탄	'16.10~	월	149,775	Sum	38.66	43,435	1,352,230	2,160	
이스라엘	'17.1~	월	5,000	New Israeli Shekel	1,352.50	1,519,534	1,352,230	35,770	
인도네시아	17.1~'17.12	월	3,355,750	Rupiah	251.68	282,764	1,352,230	3,440	지역별·산업별 적용, 자카르타주 지역 기준
일본	'16.10~'17.9	시	823	En	7.30	8,200	6,470	38,840	지역별 최저임금의 가중평균치
중국	'16.9~	월	1,890	Yuan	275.00	308,957	1,352,230	7,900	지역별 적용, 베이징시 기준
체코	'17.1~	월	11,000	Koruna	437.80	491,868	1,352,230	18,150	
칠레	'17.7~12	월	270,000	Peso	405.00	455,018	1,352,230	14,100	18~65세 기준
캄보디아	'17.1~	월	153	US Dollar	153.00	171,896	1,352,230	1,070	직물, 봉제, 제화업계 한정, 최저임금 결정을 미화단위로 함 (자국통화단위는 Riel)
캐나다	'16.10~	시	11.40	Canadian Dollar	8.55	9,606	6,470	47,250	지역별·직종별 적용, 온타리오주 기준
콜롬비아	'17.1~	월	737,717	Columbia Peso	221.32	248,648	1,352,230	7,140	
태국	'17.1~	일	310	Baht	8.90	9,996	51,760	5,720	17.1월부터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콕기준
터키	'17.1~	월	1,777.50	Lira	484.90	544,787	1,352,230	9,950	
파라과이	'16.6~'17.5	월	1,964,507	Guarani	349.71	392,901	1,352,230	4,190	
포르투갈	'17.1~	월	557	Euro	596.66	670,346	1,352,230	20,470	
폴란드	'17.1~	월	2,000	ZLOTY	499.60	561,301	1,352,230	13,310	정규고용직 월급여 기준
프랑스	'17.1~	시	9.76	Euro	10.45	11,746	6,470	40,710	
필리핀	'16.6~	일	491	Peso	9.82	11,033	51,760	3,550	지역별·산업별 적용, 수도권 농업, 제조업, 소매업, 서비스업 기준
헝가리	'17.1~	월	127,500	Forint	446.25	501,362	1,352,230	12,970	미고졸 근로자 기준임
호주	'17.7~	시	17.70	Australian Dollar	13.35	15,000	6,470	60,050	지역별·업종별·숙련도별 적용, 연방정부 표준 최저임금 기준

주 1) 환율(2017.1.1.~5.24 기간 평균 최종고시 기준)1\$=1,123.50원, 1€=1,262.48원

2) '국가명' 기준 가나다 순으로 정렬

3) OECD 국가는 국가 명에 음영 표시

4) 원화 기준 최저임금액: 국가별 산정기준에 맞추어 '17년 적용 최저임금액 환산(시간급: 6,470원, 일급: 51,760원(6,470원×8시간), 월급: 1,352,230원(6,470원×209시간))

출처: 최저임금액(해당국 주재 대사관), 1인당 GNI(세계은행, <http://worldbank.org>)

나.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국제비교(OECD)

* OECD 해당 국가 간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의 차이, 비교대상 임금자료의 조사대상 포괄범위 등이 각기 상이하여 정확한 국가비교에는 한계가 있음에 유의

(1) OECD 회원국의 풀타임 근로자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 OECD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15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터키가 70.2%로 가장 높고, 칠레 66.2%, 프랑스 62.3% 순이며, 우리나라는 48.4% 수준

<표> OECD 회원국의 풀타임 근로자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호주	0.575	0.538	0.545	0.522	0.544	0.543	0.536	0.527	0.540	0.534	0.535
벨기에	0.509	0.498	0.503	0.508	0.516	0.507	0.509	0.509	0.515	0.494	0.492
캐나다	0.403	0.405	0.407	0.417	0.422	0.439	0.446	0.454	0.444	0.451	0.445
칠레	-	0.650	-	-	0.707	0.710	0.674	0.671	0.672	0.676	0.662
체코	0.412	0.424	0.407	0.383	0.383	0.377	0.371	0.364	0.369	0.372	0.388
에스토니아	0.401	0.370	0.358	0.378	0.395	0.404	0.388	0.383	0.396	0.399	0.413
프랑스	0.670	0.634	0.633	0.630	0.628	0.621	0.620	0.631	0.628	0.626	0.623
독일	-	-	-	-	-	-	-	-	-	-	0.478
그리스	0.448	0.454	0.462	0.480	0.482	0.477	0.524	0.438	0.456	0.466	0.474
헝가리	0.463	0.477	0.467	0.460	0.467	0.474	0.495	0.539	0.539	0.536	0.525
아일랜드	0.540	0.524	0.531	0.524	0.468	0.441	0.433	0.433	0.428	0.446	0.444
이스라엘	0.549	0.574	0.573	0.572	0.568	0.560	0.564	0.564	0.574	0.570	0.581
일본	0.335	0.338	0.341	0.346	0.362	0.373	0.382	0.383	0.390	0.395	0.398
대한민국	0.373	0.389	0.429	0.436	0.452	0.451	0.455	0.429	0.442	0.458	0.484
라트비아	0.396	0.363	0.365	0.404	0.473	0.490	0.506	0.488	0.467	0.492	0.518
룩셈부르크	0.523	0.542	0.545	0.537	0.546	0.555	0.563	0.563	0.563	0.557	0.548
멕시코	0.381	0.376	0.367	0.362	0.368	0.349	0.363	0.363	0.368	0.375	0.375
네덜란드	0.464	0.499	0.493	0.494	0.497	0.474	0.471	0.470	0.467	0.465	0.459
뉴질랜드	0.544	0.560	0.574	0.591	0.591	0.588	0.588	0.595	0.591	0.599	0.598
폴란드	0.421	0.422	0.396	0.427	0.459	0.453	0.452	0.482	0.496	0.510	0.513
포르투갈	0.464	0.474	0.477	0.486	0.499	0.528	0.527	0.522	0.523	0.549	0.569
슬로바키아	0.432	0.445	0.443	0.428	0.454	0.457	0.457	0.451	0.455	0.451	0.473
슬로베니아	0.512	0.525	0.508	0.507	0.508	0.590	0.606	0.620	0.638	0.600	0.598
스페인	0.370	0.387	0.392	0.392	0.391	0.377	0.382	0.380	0.379	0.370	0.368
터키	0.744	0.725	0.715	0.709	0.713	0.698	0.700	0.702	0.684	0.690	0.702
영국	0.450	0.454	0.466	0.461	0.461	0.461	0.469	0.474	0.471	0.479	0.487
미국	0.316	0.307	0.314	0.341	0.371	0.388	0.383	0.377	0.374	0.367	0.358

출처: OECD(<http://stats.oecd.org/>, '17.5.20. 추출)

(2) OECD 회원국의 풀타임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 OECD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15년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뉴질랜드가 51.7%로 가장 높고, 프랑스 50.3%, 슬로베니아 49.3% 순이며, 우리나라는 37.7% 수준임

<표> OECD 회원국의 풀타임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호주	0.493	0.461	0.454	0.449	0.444	0.450	0.450	0.440	0.438	0.436	0.444
벨기에	0.440	0.430	0.432	0.440	0.439	0.432	0.432	0.434	0.437	0.423	0.421
캐나다	0.359	0.362	0.361	0.368	0.378	0.390	0.395	0.397	0.395	0.397	0.397
칠레	-	0.413	-	-	0.439	0.441	0.430	0.428	0.447	0.450	0.455
체코	0.356	0.364	0.349	0.326	0.322	0.320	0.313	0.307	0.313	0.317	0.331
에스토니아	0.324	0.302	0.298	0.324	0.339	0.339	0.326	0.322	0.333	0.340	0.352
프랑스	0.541	0.510	0.508	0.507	0.509	0.503	0.501	0.509	0.507	0.505	0.503
독일	-	-	-	-	-	-	-	-	-	-	0.427
그리스	0.315	0.308	0.314	0.326	0.327	0.382	0.356	0.298	0.310	0.317	0.322
헝가리	0.352	0.356	0.344	0.342	0.342	0.347	0.363	0.396	0.402	0.402	0.397
아일랜드	0.462	0.442	0.447	0.444	0.389	0.376	0.373	0.379	0.368	0.374	0.373
이스라엘	0.403	0.415	0.415	0.412	0.416	0.412	0.417	0.412	0.420	0.416	0.425
일본	0.293	0.296	0.298	0.304	0.316	0.326	0.333	0.333	0.339	0.343	0.346
대한민국	0.298	0.306	0.334	0.341	0.359	0.359	0.358	0.341	0.351	0.357	0.377
라트비아	0.302	0.277	0.285	0.315	0.369	0.382	0.405	0.391	0.374	0.394	0.411
룩셈부르크	0.452	0.454	0.457	0.450	0.457	0.459	0.466	0.466	0.466	0.453	0.446
멕시코	0.299	0.291	0.283	0.286	0.283	0.266	0.271	0.273	0.275	0.287	0.290
네덜란드	0.410	0.425	0.420	0.421	0.423	0.407	0.404	0.404	0.401	0.388	0.383
뉴질랜드	0.473	0.492	0.494	0.505	0.514	0.507	0.504	0.510	0.505	0.508	0.517
폴란드	0.339	0.339	0.321	0.348	0.375	0.372	0.371	0.385	0.396	0.409	0.411
포르투갈	0.326	0.326	0.327	0.334	0.342	0.359	0.359	0.355	0.356	0.392	0.406
슬로바키아	0.346	0.347	0.345	0.337	0.355	0.357	0.358	0.358	0.360	0.354	0.369
슬로베니아	0.431	0.428	0.415	0.414	0.415	0.480	0.494	0.505	0.519	0.495	0.493
스페인	0.297	0.312	0.316	0.316	0.315	0.317	0.321	0.319	0.318	0.312	0.310
터키	0.394	0.384	0.379	0.376	0.378	0.385	0.386	0.387	0.378	0.393	0.400
영국	0.369	0.371	0.382	0.378	0.380	0.380	0.385	0.390	0.390	0.398	0.405
미국	0.245	0.237	0.235	0.254	0.270	0.284	0.280	0.272	0.268	0.266	0.252

출처: OECD(<http://stats.oecd.org/>, '17.5.20. 추출)

다. 최저임금 현황(OECD)

<표> 주요 국가별 최저임금 현황('13~'17)

(단위: 자국통화단위, %)

국가명		화폐단위	연간 최저임금 금액(자국통화 기준)					산정 기준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OECD 회원국	그리스	Euro	7,963	7,963	7,963	7,963	-	월	663.59	-
	네덜란드	Euro	19,044	19,316	19,464	19,841	-	월	1,530.90	-
	뉴질랜드	New Zealand Dollar	28,470	29,380	30,420	31,460	-	시	15.13	-
	대한민국	Won	12,188,880	13,066,680	13,994,640	15,123,240	16,226,760	시	6,030	6,470
	독일	Euro	-	-	17,280	17,280	17,976	시	8.50	8.84
	라트비아	Latvian Lats	3,408	3,840	4,320	4,440	4,560	월	370	380
	룩셈부르크	Euro	22,382	23,076	23,076	27,691	-	월	2,308	-
	멕시코	Mexican Peso	16,411	17,051	17,870	18,990	20,810	일	73.04	80.04
	미국	US Dollar	15,080	15,080	15,080	15,080	15,080	시	7.25	7.25
	벨기에	Euro	18,713	18,713	18,713	18,931	-	월	1,577.60	-
	스페인	Euro	9,034	9,035	9,080	9,171	9,906	월	655.08	707.60
	슬로바키아	Euro	4,052	4,224	4,560	4,860	5,220	월	405.00	435.00
	슬로베니아	Euro	9,404	9,464	9,492	9,492	9,660	월	791.00	805.00
	아일랜드	Euro	17,992	17,992	17,992	19,032	19,240	시	9.15	9.25
	에스토니아	Euro	3,840	4,260	4,680	5,160	5,640	월	430.00	470.00
	영국	Pound Sterling	12,938	13,224	13,624	14,066	14,612	시	6.76	7.03
	이스라엘	New Israeli Sheqel	51,600	51,600	54,750	56,850	61,800	월	4,737.50	5,150.00
	일본	Yen	1,597,440	1,631,760	1,672,840	-	-	시	-	-
	체코	Czech Koruna	98,500	102,000	110,400	118,800	132,000	월	9,900.00	11,000.00
	칠레	Chilean Peso	2,418,000	2,595,000	2,781,000	3,045,000	-	월	253,750	-
비 회원국	캐나다	Canadian Dollar	21,091	21,632	22,214	22,880	-	시	11.00	-
	터키	Turkish Lira	12,001	13,230	15,282	19,764	21,330	월	1,647.00	1,777.50
	포르투갈	Euro	6,790	6,860	7,070	7,420	7,798	월	530	557
	폴란드	Zloty	19,200	20,160	21,000	22,200	24,000	월	1,850	2,000
	프랑스	Euro	17,163	17,345	17,490	17,599	-	시	9.67	-
	헝가리	Forint	1,176,000	1,218,000	1,260,000	1,332,000	1,531,800	월	111,000	127,650
	호주	Australian Dollar	31,944	32,841	33,743	34,570	-	월		
	러시아	Russian Ruble	72,870	77,756	83,496	86,856	-	월	6,204	-
	루마니아	Romanian Leu	9,250	10,500	12,150	14,200	17,400	월	1,183.33	1,450.00
	리투아니아	Lithuanian Litas	12,000	12,108	12,430	14,502	15,748	월	1,208.50	1,312.10
	몰타	Euro	8,434	8,615	8,646	8,737	8,828	월	-	-
	브라질	Brazilian Real	8,136	8,688	9,456	10,560	-	월	-	-
	코스타리카	Costa Rican Colon	-	3,737,198	3,991,865	4,103,857	-	월	293,133.00	-
	콜롬비아	Colombian Peso	8,253,000	8,624,000	9,020,900	9,652,356	10,328,038	월	689,454	737,717

주 1) 정렬은 '가나다'순서임, OECD.stat 자료로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취합한 자료와 상이

출처: OECD(<http://stats.oecd.org/>, '17.5.20. 추출)

라. 국가별 최저임금 적용 및 미만현황¹⁷⁾

(1) 아시아

1) 대만

- 사용자는 모든 근로자(아르바이트 포함)에 대해 노공보험을 강제적으로 들게 되어있으므로 최저임금 관련 근로자 수 통계자료는 노공보험국의 노공보험 가입자 수 통계자료를 사용함

<표> 최저임금 적용현황(대만)

(단위: 명)

연도 \ 비율	전체 근로자 수	최저임금 수혜 근로자 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
2016	10,165,434	2,218,878	409,754
2015	10,073,327	2,255,685	391,808
2014	9,920,361	2,311,460	355,802
2013	9,745,794	748,728	329,639
2012	9,709,511	1,791,616	322,812
2011	9,725,761	1,334,778	304,951
2010	9,397,608	1,212,396	260,640

2) 말레이시아

- 2016.8월~10월간 노동청에서 실시한 법정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7,214개 업체중 98%인 7,043개 업체가 최저임금제를 준수하였으며 2%(171개 업체)는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남
 - 최저임금제로 혜택을 입는 근로자수는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 8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말레이시아 노동조합)

17)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최저임금위원회, 2016.6) - “최저임금 적용현황” 혹은 “최저임금 미만현황” 자료가 있는 경우만 발체

3) 이스라엘

<표> 최저임금 적용현황(이스라엘)

(단위: 명)

적용 연도	적용 업종	적용대상 사업체*	적용대상 근로자	최저임금 대상근로자**	영향률
'16	1인 이상	-	3,778,100	-	-
'15	1인 이상	504,224	3,643,800	-	-

주) * 면세사업자는 제외임.

** 최저임금대상근로자의 통계는 이스라엘은행(Bank of Israel)의 2012년 통계가 가장 최근 것임. 2013년 이후 통계 없음.

4) 일본

- 지역별 최저임금 미만율은 '02년 1.9%에서 2007년 1.1%로 감소 하였으나, '14년 2.0%로 다시 상승 추세
- 영향률은 '02년 1.9%를 정점으로 1.5~1.6%대를 유지하다 '07년부터 상승 '14년 7.3%로 증가

<표> 최저임금 적용현황(일본, 미만율 및 영향률)

(단위: %)

연도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미만율	1.2	1.9	1.6	1.5	1.4	1.2	1.1	1.2	1.6	1.6	1.7	2.1	1.9	2.0	1.9
영향률	1.8	1.9	1.6	1.5	1.6	1.5	2.2	2.7	2.7	4.1	3.4	4.9	7.4	7.3	9.0

자료) 후생노동성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

5) 터키

- 2016년도의 경우 전체 근로자수 중 최저임금 근로자수 비율이 20%에 달함

(2) 오세아니아

1) 뉴질랜드

<표> 최저임금 적용현황(뉴질랜드)

(단위: 명, %)

적용 연도	적용 업종	전체(적용대상)근로자	최저임금 대상근로자	영향률
'16	1명 이상 전산업	2,465,500	119,500	4.8
'15	1명 이상 전산업	2,357,000	73,300	3.1

주)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대부분 청년층 및 파트타임 근로자임

2) 호주

- 최저임금 미만률 및 영향률을 알아보기 위한 별도의 소득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임금을 조사하고 있음
- 동 조사를 근거로 각 산업계의 근로조건에 부여 된 최저임금만 적용받는 근로자 수 또는 근로자가 속한 회사 또는 산업군이 근로자·근로자집단과 합의한 사항이 적용되는 근로자 수와 그 달의 소득통계를 조사 후 발표함
- (영향률) 산업별 총 근로자대비 산업별 최저임금만을 적용받는 근로자를 말함

<표> 최저임금 적용현황(호주, 영향률)

(단위: %)

적용 업종	영향률	
	2016	2014
전 산업	24.5	18.8
광산업	n/a	0.8
건설업	19.7	13.7
도매업	16.8	8.1
소매업	34.5	25.6
숙박, 식당업	42.7	44.8
정보통신업	5.5	5.7
금융·보험	n/a	4.7
행정·지원	42.1	29.0
공공행정·안전	18.1	6.9
보건·복지	28.8	19.0

자료) 공정근로위원회

<표> 최저임금 미만현황(호주)

(단위: 천명)

연도 \ 비율	전체 근로자수	주급 500~600호불	주급 500호불 미만	비고
2016	10,147.0	434.4(4.3%)	1,931.9(19.0%)	-
2014	10,258.9	475.1(4.6%)	1,876.1(18.3%)	-
2012	11,543.8	433.6(3.8%)	2,020.5(17.5%)	-
2010	11,408.0	528.0(4.6%)	2,081.4(18.2%)	-

주) 위 표의 (%)는 전체 근로자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EEH (Employee Earnings and Hours) Survey에 참여한 인원 중 그 비중을 의미함

자료) 호주 통계청, 주급 통계는 2년에 한번씩 5월에 발표

(3) 유럽

1) 네덜란드

○ 2015년 전체 고용 계약의 6.3%가 최저임금 수령

- 최저임금 적용 주요 직종: 서비스, 임시직, 고객대응, 문화,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등
- 종사자 대부분은 주20시간 이하 근무 학생이며 특히 인턴십의 경우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받는 일이 빈번함(인턴십은 공식적으로 학생만 지원 가능)

<표> 최저임금 적용현황(네덜란드)

(기준년도: 2015년)

	최저임금적용 고용 계약 수 (단위: 천건)	네덜란드 각 직종 별 비율
합계	488	6.3%
농업 및 산업	45	3.7%
상업 서비스	314	7.8%
비상업 서비스 (정부 및 건강관련분야 포함)	130	5.1%

출처) 네덜란드 통계청 (Netherlands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www.cbs.nl

<표> 최저임금 미만현황(네덜란드)

(단위: 천명, %)

연도	최저임금 및 근사임금(최저임금의 100-105%) 받는 근로자수(비율)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수(비율)
2014	222(2.9)	490(6.4)
2012	195(2.5)	491(6.2)
2008	-	461(5.9)

주 1) 최저임금의 100%-105% 사이의 임금을 받는 경우는 합계로 산출(최저임금 및 근사임금)

2) 장애인근로자 및 최저임금 적용 예외대상과 같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수의 경우 또한 수치에 포함하여 집계

2) 독일

<표> 최저임금 적용현황(독일)

(단위: 개소, 명)

적용 연도	적용 업종	적용대상사업체 ¹	적용대상근로자 ²
'15.1.1일 기준	예외직업군을 제외한 모든 업종	1,949,124	약 400만 명

주 1) 연방통계청 집계 1명 이상의 사회보장보험 의무를 가진 근로자를 고용 회사의 수

2) 연방통계청 추계

<표> 최저임금 미만현황¹⁾(독일)

(단위: 만명, %)

조사기간	'14.4월	'15.1월 이후
8.5유로 미만 저임금 근로자수	약 550만명	약 150만명 ²⁾
미만율	10.7%	3.4%

주 1) 독일 연방 통계청 2016.4.6. 발표 자료

2) 법정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특히 직업훈련생, 실습생 및 18세 미만 근로자

3) 러시아

<표> 최저임금 적용현황(러시아)

(단위: 개소, 명)

적용 연도	전체 근로자수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수	비율
'12-'17	75,676,000	* 관련 최신정보 없음	-
'08	74,952,000	14,990	0.02
'07	74,156,000	14,831	0.02
'06	73,811,000	14,762	0.02
'05	72,909,000	14,581	0.02

4) 스페인

○ 최저임금 적용현황

- ①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일이 12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대한 비례배분금액이 지급되며, ②시간제 가사도우미의 경우 실질근무시간당 5.54유로의 최저임금이 지급되는 바, 비율만 상이할 뿐 모두 최저임금 대상자로 고려

<표> 최저임금 적용현황(스페인)

(단위: 개소, 명)

적용 연도	적용 업종	적용대상사업체	적용대상근로자
'15	1명 이상 전산업	3,186,878	14,988,800
'14	1명 이상 전산업	3,119,310	14,483,100

자료) 스페인 통계청

○ 최저임금 미만현황

- 스페인 조세청(Agencia Tributaria)은 매년 임금통계를 통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치를 발표하나, 이는 총 연간 임금 평균 지급액을 기준으로 하며 최저임금 비례배분금액을 지급받는 임시직 근로자 및 시간제·기간제 근로자 등도 포괄적으로 포함시켜 사실상 최저임금 위반현황을 나타내는 지표로서의 역할은 할 수 없는 바, 현재 최저임금 위반현황을 발표하는 공식통계 자료 부재

* 예) 2월에 퇴직한 월 급여 5,000유로의 기업 간부의 경우(연간 임금 평균 지급액은 총 5,000유로), 9월에 취직하여 월 급여 2,000유로를 지급받은 회사원의 경우(연간 임금 평균 지급액은 총 8,000유로),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3개월 동안 월 급여 1,000유로의 아르바이트를 한 대학생의 경우 등, 조세청 통계표에 의하면 이들은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은 것으로 분류

- 따라서, 해당 자료를 인용하여 2014년도 스페인의 최저임금 위반율이 35%에 달한다고 분석하지 않도록 유의

<표> 최저임금 미만현황(스페인)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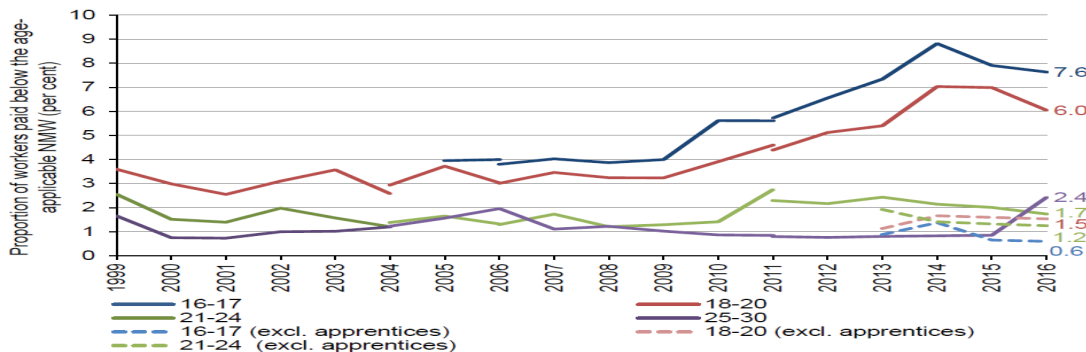
연도	'13	'14
임금근로자수(A)	16,682,061	16,899,024
미만근로자수(B)	5,752,040	5,892,249
미만율(B/A)	34.5	34.9

자료) 스페인 조세청, 2015년 통계 미발표

- 최저임금 적용현황의 '적용대상 근로자수'(통계청 자료)와 최저임금 미만현황의 '임금근로자수'(조세청 자료)가 상이한 이유는, 통계청의 경우 2015년 4분기 조사 순간의 임금 근로자수에 대한 집계이며, 조세청의 경우 2015년 한 해 동안 소득신고한 전체 근로자수에 대한 집계이기 때문

5) 영국

-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25세 이상 성인 근로자
 - 2016년 4월 기준,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25세 이상 성인근로자는 30.6만명이며, 2015년 4월 기준 15.5만명 보다 크게 증가
 - 30.6만 중 15.6만명은 21세 이상 최저임금(£6.7)과 국민생활임금(£7.2) 사이, 13.2만명은 21세 이상 최저임금(£6.7)보다 낮은 시급을 받고 있으며, 1.8만명이 21세 이상 최저임금(£6.7)을 받는 것으로 조사됨
- 저임금위원회는 2016년 4월부터 국민생활임금이 도입되면서 과도기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분석
-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24세 이하 젊은 근로자
 - '16년 4월 기준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비율은 16~17세는 0.6% (1,700명), 18~20세 1.5%(14,000명), 21~24세 1.2%(24,000명)임
 - 참고로, '16년 25~30세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는 비율이 '15년 0.9% → '16년 2.4%로 높아진 이유는 앞서 설명과 같이 국가생활임금 도입 시점과 조사 시점이 유사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Source: LPC estimates using ASHE; without supplementary information, April 1999-2003; with supplementary information, April 2004-05; 2007 methodology, April 2006-10; and 2010 Methodology, April 2011-16, low pay weights, including those not on adult rates of pay, UK.

- 주 1) 통계청(ONS) 중앙 평가 방법을 이용하여 10펜스 밴드(band)에서 수행됨
- 2) ONS는 매년 근로시간 및 소득에 관한 연차 조사(ASHE)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 ASHE 조사는 성별, 정규근무 여부, 종교, 직업, 지역, 나이 등을 포함하고 있어 총 주당 임금, 초과 근무 수당, 총 시간당 임금, 총 근무시간, 기본 근무시간, 초과 근무시간 등을 알 수 있음
- 3) 최저임금 미만을 구하기 위해서 별도의 통계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조사 통계를 통해 최저임금 관련 자료를 파악하고 있으며 동 조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 자료) 영국 저임금위원회 <http://www.lowpay.gov.uk/>, 통계청(ONS)

- 저임금위원회는 연령별로 최저임금 및 생활임금 이하를 받는 성인 근로자수를 연도별로 추산함

- 2016.4월부터 25세 이상 성인에 대해 국가생활임금이 도입되면서, 2020년 누적 기준으로 약 600만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표> 최저임금/생활임금 이하를 받는 성인근로자 수(영국)

(단위: 천명, %, 파운드)

구분		2015년		2016년		2020년	
		(천명)	(%)	(천명)	(%)	(천명)	(%)
생활임금	25세이상	996	4.2	1,785	7.6	3,278	13.9
	21~24세	248	12.5	248	12.5	248	12.5
최저임금	18~20세	126	12.6	159	12.6	159	12.6
	16~17세	33	11.1	33	11.1	33	11.1
All		1,404	5.2	2,192	8.2	3,685	13.7

자료) 영국 저임금위원회 <http://www.lowpay.gov.uk/>, 통계청(ONS)

6) 포르투갈

-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 비율은 2003년 6.2%에서 2006년 4.0%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상승 추세로 전환하여 2011년 9.8%를 기록

<표> 최저임금 적용현황(포르투갈)

(단위: 천명, %)

연도	비율	전체 근로자수	최저임금 수혜 근로자수 ¹⁾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수
2008		5,198	6.8	-
2009		5,054	8.1	-
2010		4,978	9.4	-
2011		5,350	9.8	-
2012		4,635	12.7	-
2013		5,285	11.7	-
2014		5,226	13.2	-
2015		5,195	21.4	-
2016		5,211	25.3	-

주 1) 매년 4월 기준

2) 성별 및 종사부문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 비율에 대한 통계조사를 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미만을 및 미만 근로자 수에 대한 별도의 통계조사는 하고 있지 않음

7) 폴란드

<표> 최저임금 적용현황(폴란드)

(단위: 명, %)

연도 \ 구분	전체 근로자수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수	비고
2015	14,830,000	-	-
2014	14,560,000	225,000	1.55%
2013	14,240,000	436,000	3.06%
2012	14,170,000	358,000	2.53%
2011	14,230,000	-	-
2010	14,110,000	705,300	5.00%
2009	13,780,000	526,000	3.82%
2008	14,040,000	435,100	3.10%
2007	13,770,000	211,000	1.53%
2006	13,220,000	178,700	1.35%

8) 프랑스

<표> 최저임금 적용현황(프랑스, 민간기업의 최저임금 근로자 수 비율)

(단위: 명,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비율	11.1	12.3	10.8	11.1	10.5 (160만 명)

주) 자료 : Dares(프랑스 고용통계국)

<표> 최저임금 미만현황(프랑스)

범주	해당인원
외판원 등 실질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근로자(VRP)	50만명(2014)
견습생	120만명(2014)
장애인 노동자	119,107(2015)
보모 (assistantes maternelles)	352,000(2013)
아동보호인력 (assistants familiaux)	49,083(2009)
고용된 분야에서 6개월 미만의 경력을 보유한 18세 미만 근로자	25,000(2007)
견습생 및 contrats en alternance 해당자	571,000(2007)

주) 자료 : sevice-public.fr, ladocumentationfrancaise.fr 등

<표> 최저임금 근로자 수 및 비율(프랑스, 기업규모별)

(단위: 천명, %)

기업 규모	2015년		2016년	
	수혜 근로자수	전체 인원대비 비율	수혜 근로자수	전체 인원대비 비율
1-9	700	24.3	710	24.2
10-19	180	12.4	150	10.6
20-49	240	12.4	210	10.6
50-99	150	12.4	140	11.0
100-249	130	8.0	120	7.6
250-499	80	7.1	70	5.9
500-	210	4.2	200	4.1
합계	1,690	11.1	1,600	10.5

주) 자료 : Dares(프랑스 고용통계국)

<표>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은 근로자 비율(프랑스, 기업업종별)

(단위: %)

구분	최저임금 혜택 근로자 비율	
	2015년	2016년
채굴 산업	2.3	3.4
제조업	5.8	5.2
전기, 가스 생산 및 유통	0.6	0.5
물 생산 및 배급	3.8	1.9
건설	7.9	8.2
상업: 자동차 및 오토바이 정비	15.2	11.4
운송 및 저장	7.0	5.7
호텔 및 외식업	34.8	38.0
정보 통신	2.3	2.5
금융 및 보험	3.0	2.9
부동산	10.6	11.1
전문화 및 과학기술	5.9	6.0
행정 서비스	13.0	12.0
교육 (공교육 제외)	7.7	7.7
보건 및 사회적 활동	22.5	20.0
예술, 공연	13.1	14.2
기타 서비스 활동	22.1	22.3
종합	11.1	10.5

주) 자료 : Dares(프랑스 고용통계국)

<표> 최저임금 근로자 비율(프랑스, 성별 및 연령별, 2016년)

(단위: %)

남성	여성	25세 미만	25~29세	30~39세	40세 이상
5.5	12.7	28.1	11.0	6.6	6.8

9) 헝가리

<표> 최저임금 적용현황(헝가리)

(단위: 개소, 명, %)

적용 연도	적용 업종	적용대상사업체	적용대상근로자	최저임금 대상근로자	영향률
'15	1명 이상 전산업		4,259,000	950,000	22.3%
'14	1명 이상 전산업	1,847,522	4,069,900	801,770	19.7%

주 1) 상기 통계는 미고졸자 및 고졸 근로자 모두를 합한 수치임.

자료) 고용청(National Employment Service) www.afsz.hu, 헝가리통계청(Hungarian Central Statistical Office) www.ksh.hu

<표> 최저임금 미만현황(헝가리, 정부지정 공공근로자)

(단위: 명, %)

조사기간	'14	'15
임금근로자수(A)	4,069,900	4,259,000
미만근로자수(B)	178,200	232,300
미만율(B/A)	4.4%	5.4%

(4) 아메리카

1) 미국

- 2014년 미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시간급으로 임금을 받는 16세 이상 근로자는 77.2백만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58.7%를 차지
 - 시간급을 받는 자 중에서 연방정부의 최저임금(\$7.25)를 받는 근로자는 1.3백만명이며
 - 연방정부의 최저임금(\$7.25)보다 적게 받는 근로자는 1.7백만명으로, 연방정부의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받는 자는 총 3백만명임 (전체 시간급 근로자의 3.9%에 해당)
- 시간급 근로자 중 연방정부의 최저임금 이하로 받는 근로자 비율은 1979년 13.4%에서 점차 감소
 - 2014년은 2013년 4.3%에 비해 0.4%p 감소한 3.9%

<표> 최저임금 이하현황(미국, 연방최저임금 이하 시급 근로자비율)

(단위: US \$, %)

연도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연방 최저임금	2.90	3.10	3.35	3.35	3.35	3.35	3.35	3.35	3.35	3.35
비율	13.4	15.1	15.1	12.8	12.2	11	9.9	8.8	7.9	6.5
연도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연방 최저임금	3.35	3.80	4.25	4.25	4.25	4.25	4.25	4.75	5.15	5.15
비율	5.1	5.1	8.4	7.7	6.7	6.2	5.3	5.4	6.7	6.2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연방 최저임금	5.15	5.15	5.15	5.15	5.15	5.15	5.15	5.15	5.85	6.55
비율	4.6	3.6	3	3	2.9	2.7	2.5	2.2	2.3	3.0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연방 최저임금	7.25	7.25	7.25	7.25	7.25	7.25				
비율	4.9	6.0	5.2	4.7	4.3	3.9				

자료) BLS Reports(April 2015), Characteristics of Minimum Wage Workers, 2014

2) 브라질

<표> 최저임금 적용현황(브라질)

(단위: 천명)

연도 \ 비율	전체 근로자수 ¹⁾	최저임금 수혜 근로자수 ²⁾ (1 up to 2 minimum wage)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수 ³⁾ (up to 1 minimum wage)	비고
2014	98,621	32,718	25,069	-
2013	95,855	33,412	23,803	-
2012	93,915	31,899	26,080	-
2011	93,493	37,471	39,448	-
2010	86,353	32,934	44,991	-
2009	92,689	35,655	41,011	-
2008	92,395	34,401	40,024	-
2007	90,786	33,055	38,126	-
2006	89,318	32,075	40,064	-

주 1) 전체 근로자수 : 브라질 노동력인구(15세 이상) 중 실업자 제외하고 취업인만 고려된 숫자

2) 최저임금 수혜 근로자수 : 보수가 최저임금 1배에서 2배까지 되는 근로자 숫자

3)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수 : 보수가 최저임금 1배미만 되는 근로자 숫자

자료) 브라질국립통계원(IBGE)

3) 아르헨티나

<표> 최저임금 적용현황(아르헨티나)

(단위: 천명)

연도 \ 구분	전체 근로자수	최저임금 수령 근로자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수 비율	비고 (혜택배제 인구)
2015	19,280	150	0.78%	28%
2014	19,450	113	0.58%	26.3%
2013	19,200	113	0.59%	22.93%
2012	18,910	300	23%	-
2011	18,480	300	22.6%	-
2010	18,360	227	20.2%	-

주 1) 최저임금 미만을 및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 등을 산출하기 위한 별도의 통계조사를 하고 있지 않으며,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수에 대한 공식/민간 통계는 부재

2) 최저임금 미만율은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공식 통계)에 비정규직 노동자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수 비율(민간 추정치)을 곱하여 산출

4) 칠레

<표> 최저임금 적용현황(칠레)

(단위: 명)

연도	전체 근로자수	최저임금 수혜 근로자수
2014	7,105,047	1,207,857(17%)

<표> 최저임금 미만현황(칠레)

(단위: 천명)

조사기간	2014
임금근로자수	7,105,047
미만근로자수(추정치)	1,400,000
미만율	약 19%

5) 캐나다

<표> 최저임금 적용현황(캐나다)

(단위: 천명)

	2011	2012	2013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 비중	6.9%	7.0%	6.7%

주: 2014년 이후 신규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음
자료) 캐나다 통계청, 최저임금 미만현황 통계는 없음

6) 콜롬비아

<표> 최저임금 적용현황(콜롬비아)

(단위: 명)

연도	비율	전체 근로자 수	최저임금 수혜 근로자 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
2015		21,320천명	-	-
2014		20,621천명	-	-
2013		21,584천명	-	-
2012		20,696,418	1,272,715	8,819,146
2011		20,019,511	1,300,153	8,758,069
2010		19,213,323	1,352,187	8,888,771
2009		18,420,153	2,079,071	8,109,623

자료) 콜롬비아 통계청, 노동부

7) 파라과이

<표> 최저임금 적용현황(파라과이)

(단위: 명, %)

연도	근로자수	전체 근로자수	최저임금 수혜 근로자수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수 비율(%)
2015		3,492,514	3,306,124	94.7
2014		3,460,249	3,250,976	94
2013		3,274,819	2,618,600	80
2012		3,246,904	1,841,900	57
2011		3,034,771	1,638,038	54
2010		2,382,575	1,001,957	42
2009		2,960,843	1,047,843	35
2008		2,735,646	820,694	30

주)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수 비율(%)=최저임금 이하 근로자수/전체근로자수 *100
자료) 통계청

<표> 최저임금 미만현황(파라과이)

(단위: 천명, %)

조사기간	2015 4/4분기	2016 4/4분기
임금근로자수(A)	1,098,246	1,108,301
미만근로자수(B)	141,654	145,171
미만율(B/A)	12.2	12.1

주) 조사 방법: 분기별 980가구를 정기적으로 5회 이상 방문하여 변동사항을 토대로 산출

2. 외국의 최저임금 관련 최근동향

가. OECD 회원국

나. 비(非) OECD 회원국

2 외국의 최저임금 관련 최근동향

가. OECD 회원국

대륙명	국가명	최근 동향
유럽	그리스	● '12년 제정된 법률 4046/2012에 의거 '17.4월부터 정부가 채권단의 동의하에 최저임금수준을 결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17.3월 말 현재까지 법제에 변화가 없음 - '17년 현재 그리스 정부와 채권단은 구제금융협정 이행 제2차 평가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이며, 양측 간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는 주된 원인은 노동고용관련법 개정에 있음
	네덜란드	● 노동조합 주도로 청소년과 성인에게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여 '17.1월 관련 법안 통과 - 21세 이상 청년은 23세 이상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도록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 18세 이상 21세 미만의 청소년도 기존 성인 최저임금의 45.5~61.5%에서 50~8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
	독일	● 정부 발표에 따르면,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우려했던 실업률 증가는 없었고, 연초 4.8%에서 10월 4.5%로 하락 - 신규 일자리는 40만개 증가 - 독일 '미니잡 중앙 협회'는 '미니잡'이 2015.9월 이후 1년간 18만7125명(2.7%) 감소 ● 독일 경제사회학연구소(WSI)는 법정 최저임금제도 도입으로 1년 전에 비해 8.5유로 미만인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6%→3%로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발표
	벨기에	● '15년 및 '16년 국가최저임금*은 국가노동위원회에서 노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 단독 결정으로 추진 * '16년 국가최저임금 적용시기 : '16.6월~'17.5월 ● '17년 국가최저임금은 '17.3월 현재 노사협의를 완료되었으나 국가노동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앞두고 있음.

대륙명	국가명	최근 동향
	스페인	● '17년도 스페인 법정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8% 인상률을 보이며 최근 30년 내 최대의 상승폭을 기록함. - 국민당 정권은 제1야당인 사회당(PSOE)과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예산제한안 승인을 조건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높이는 데 사전 합의한 바 있음. - 또한 전반적으로 호전된 자국 경제상황('15, '16년 연속 3% 성장)도 동 인상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 - 이번 인상에 대해 노동자위원회(CCOO)와 노동총동맹(UGT)은 충분하진 않지만 '하나의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
	아일랜드	● 일부 경제연구원 및 싱크탱크는 생계를 위해 필요한 최소 임금이 11.50유로라고 발표, 최저임금을 동 수준에 맞춰야한다고 주장 - 고용주를 포함하여 이에 반대하는 측은 유럽 내에서 아일랜드의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 편이며, 실업률 증가를 이유로 반대
	영국	● '16.4월부터 25세 이상 모든 근로자에게 국가생활임금 적용 - 시간당 7.2파운드(기존 21세 성인 최저임금 대비 9.7% 인상) - 2020년까지 최소 9파운드 이상으로 인상 추진 ※ 중위 소득(median earnings)의 60% 이상을 목표 ● '17.4월 저임금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 국가생활임금 도입으로 주26시간 일하는 근로자 기준으로 연간 £400소득인상 효과 -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을 통해 최저소득계층의 실질임금 상승을 견인
	체코	● 체코 현 연립정부는 2013년 수립 당시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최소 40%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인상하겠다는 합의를 연정 협정에 명시함 - 지난 5년간 체코의 최저임금은 40%가까이 인상되었음 ● 2017년 10월 총선(하원선거)을 앞두고 현 연립정부 제1야당 사회민주당 당수 소보트카 총리는 최저임금 추가인상을 총선공약 중 하나로 내걸고 있음 - 반면, 현 연립정부 제3야당 기독교민주연합의 당수 벨로브라텍 부총리겸 과학연구혁신장관은 경제호황으로 임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 이상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밝힘

대륙명	국가명	최근 동향
	포르투갈	● '14.6월 국제구제금융 체제에서 성공적으로 졸업한 후, '11년 이후 485유로로 동결해 왔던 최저임금을 '14.10월부터 505유로로 인상, '16.1월부터 530유로, '17.1월부터 557유로로 조정함.
	폴란드	● 2017년 최저임금은 2,000PLN로 전년대비 8.1% 인상 - 2016년 사기업부문 전체근로자 평균임금 4,636PLN의 43.1% 수준
	프랑스	● '17년 4월 대선을 앞두고 극좌 성향의 멜랑송 후보는 최저임금을 15% 인상할 것을 주장 - 이에 대해 프랑스 기업인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여타 임금 및 물가 상승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결국 프랑스 기업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것을 우려 - 특히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작업장은 기계화 또는 수입 대체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할 가능성 다대
아메리카	미국	●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기간 중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나 연방정부보다는 주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 ● 연방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은 일반적으로 연방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지 않고 있어 연방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 - 다만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 등은 향후 수년에 걸쳐 최저임금을 \$15.00로 인상하는 법안에 서명하는 등 일부 주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시도하고 있음
	캐나다	● '16.10월 온타리오주 내 시간당 최저임금이 \$11.25에서 \$11.40으로 인상되었으나, 노동자와 빈곤퇴치집단은 이 역시도 근로자와 그 가족의 빈곤 탈피를 돕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로 인상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 - 알버타 주정부가 주내 시간당 최저임금을 현행 \$12.20에서 '18년까지 \$15로 인상할 것을 발표함에 따라, 온타리오주 내 시간당 최저임금의 인상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음

대륙명	국가명	최근 동향
아시아	일본	● 민주당 정권의 신성장전략에 따라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전국평균 1,000엔까지 인상할 것을 결정한 바 있으며 - '16년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아베노믹스 효과(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고용·소득여건 개선)에 따른 경기회복세 강화, 2016 춘계 노사임금협상 결과 등을 반영하여 지역평균 25엔이 인상된 823엔으로 확정 ● '17.3.28. 일본정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장시간 근로해소 등에 관한 '일하는방식개혁실행계획'을 발표, '17년 내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19년부터 실행할 계획 - 이 중 임금인상과 노동생산성 향상 관련, 최저임금을 연 3% 기준으로 명목 GDP성장률도 고려하여 인상할 계획으로 전국 평균 1,000엔이 되는 것이 목표임을 재확인
	뉴질랜드	● '16년 3월 「최저임금개정법」 통과로 '16년 4월 1일부터 고용주의 의무 강화 등 일부 법률 개정·적용 - 특히 근로감독관 또는 피고용인은 최저임금법에 의거 피고용인이 마땅히 받아야할 임금이 체납된 경우, 이를 고용주 외에 다른 사람에게 상환받을 수 있음. - 단, 1)고용주가 피고용인의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고, 2)고용관계청 또는 법원의 허가가 있을 경우에만 피고용인에게 해당 권리가 인정됨
오세아니아	호주	● 호주노조위원회(ACTU: 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s)는 '17.6월 심사될 호주 최저임금이 주급기준으로 최소 6.6% (45호불)인상한 717.70호불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 - 이에 대해 호주 산업협회, 호주 산업상공회의소 등 기업 및 산업대표 단체들은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임금상승률은 대규모 정리해고, 신규 채용 축소 등 부정적인 효과가 더 많을 수 있다고 반박하면서 주급기준으로 1.2%수준(8.1호불)의 인상이 적절하다고 주장

나. 비(非) OECD 회원국

구분	국가명	최근 동향
유럽	러시아	● 러시아 연방법에 의거 최저임금은 노동가능 인구 기준의 최저생계비보다 낮을 수 없음. -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17.1월 기준 러시아 최저임금은 최저생계비의 약 70% 수준이며, 최근 노동부는 '17.10월까지 최저임금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인상시킬 계획임을 발표
아메리카	브라질	● 브라질은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되어 왔으며, 연방최저임금보다 주최저임금이 약간 높은 수준임 *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 : '15년(8.8%) → '16년(11.6%) → '17년(6.47%) ● 브라질의 최저임금은 사회보장수당, 실업수당, 노인 및 장애인수당 등의 정부지출과 연관되어 있어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각종수당도 그에 따라 인상되는 체계임
	아르헨티나	● 국립통계원(INDEC)의 2016년 3/4분기 통계에 의하면, 전체 근로자의 약 33.8%가 비공식고용(노동부 미등록) 근로자이며, 이 중 45.5%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임
	콜롬비아	● 콜롬비아 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원유의 국제가격 하락세가 지속됨에 따라 '15년~'16년 물가상승률은 중앙은행의 목표치를 상회하였음. - 이에 따라 노동자대표측은 '17년 최저임금 협상에서 이를 반영하여 8.5%의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였으며, 경영자대표측은 6.5% 이상의 인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 - 이로 인하여 노사간 협상이 결렬되어 중앙정부가 인상률을 7%로 최종 결정함 ● OECD는 '16년 1월 “콜롬비아 노동시장 및 사회정책에 대한 평가보고서(Review of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ies-Colombia)”를 발표함 - 동 보고서는 최근 수년간 콜롬비아 법정최저임금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아 비정규직 감소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한다고 지적 - 동 보고서는 생산성이 현저히 낮은 근로자들이 정규직화되어 해당 가정의 빈곤수준을 낮추기 위해, 최저임금 상승률을 인플레이션 인상 수준 이하로 조정하고 특정 집단 또는 지역별로 차별화된 최저임금제 적용을 권고

구분	국가명	최근 동향
	파라과이	● '15.10월 「가내근로자법(5407호)」 제정으로 가내근로자의 최저임금 감액비율을 60%에서 40%로 감소시키고, 가내근로자에게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 사전해고통지 및 사회보장제도 혜택 등을 부여함 ● '16.11월 「노동법 255조항」을 변경하여 '최저임금위원회(CONASAM)는 매년 6월에 최저임금 인상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최저임금을 1,964,507Gs로 7.7% 인상(대통령령 6414호) - 동 인상안 논의 초기 매년 물가상승률을 바탕으로 자동 인상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으나, 대통령실은 매년 6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사항임을 확인
아시아	베트남	● 매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노·사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견해차 존재 - '1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국가임금위원회에서 베트남 노동총연맹은 지역별로 25만동~40만동(11.11%) 인상안 제안, 베트남 상공회의소는 10만동~18만동(4.62%) 인상안 제안, 국가임금위원회 기술부서에서는 지역별로 25만동~35만동, 23만동~30만동, 10만동~20만동 인상 등 세가지 인상안 제안 - 국가임금위원회는 예년과 달리 2차 회의에서 전년대비 평균 7.3% 인상안에 노사정 합의
	우즈베키스탄	● 최근 8% 내외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고 있으며, 최저임금도 2006년도 10\$수준에서 2016년 46.4\$수준으로 급격히 인상된 바 있음. 그러나 환율의 지속적인 평가절하와 물가인상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최저임금 인상효과는 미미하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됨.
	캄보디아	● 캄보디아 정부는 현재 봉제업체에만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의 적용범위를 확대시키고, 이를 위한 국가최저임금위원회의 창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마련을 추진 중임 - 그러나 동법 초안에는 ▲ 연례 최저임금 인상 논의시 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경제적·사회적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벌금 부과, ▲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기 위해 “불법적 행위”를 저지르는 개인에게 벌금 부과, ▲ 비공식부문 노동자 및 가사노동자를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노조 및 인권 NGO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

구분	국가명	최근 동향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와의 임금 격차 축소 및 국내 건설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업 숙련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설정할 방침 - 숙련노동자를 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공공국민주택부 건설국 유시드포입 국장은 “노동자의 교육수준이나 건설업계에서의 취업연수 등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언급 - 인도네시아 건설업협회(KI) 측은 환영의 뜻을 표하며, 외국기업과의 합작사업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임에도 저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고, 현재 인도네시아 노동자의 임금은 기술수준이 비슷한 외국인의 3분의 1에서 4분의 1정도“라고 지적
	태국	● ‘15년 4월 1일 태국의 비상계엄체제가 해지되면서 노동단체는 2년간 인상되지 않았던 최저임금을 360바트(20%)로 인상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 - 태국 노동단체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17년 1월부터 최저임금 일당을 300바트에서 지역별 차등*을 두어 최대 3.3%(310바트)까지 인상 * ‘13.1.1이후 태국 최저임금은 일당 300바트로 전국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나, ‘17.1.1.부터 지역별 최저임금을 300~310바트로 차등적용
	중국	● ‘06년 이후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추진하며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 하였으나 경제성장률의 점진적 하락으로 임금인상 부담이 커져 ‘16년 발표한 13.5규획에서는 명시적 최저임금 인상률 목표 제외 - ‘16년 최저임금을 인상한 9개 지역의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11.2%*로 과거에 비해 하락 * 11.2%는 각 성·시 내부의 1류지역(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 최저임금 기준 상승률 - 중국은 2020년 전면적 소강사회(小康社會)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어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나, 그 수준은 점진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

구분	국가명	최근 동향
	필리핀	● '17.3월 발행한 노동부령 174호는 불법적 단기계약직근로제 (endo)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및 사회보장 제도 면제에 동의를 강요하는 계약서 서명을 금지함 ● '17.2월 대법원은 최저임금 근로자가 보너스 등 임금 외 추가 수당을 받을 경우 세금 환급 금액을 제한하는 규정('08년 제정)을 무효화함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 남아공 노동조합회(Congress of South Africa Trade Unions, COSATU)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제도 법령 제정 및 한층 포괄적인 단체교섭 요구가 점증하는 추세 - 라마포사 부통령은 '16.3월 국가경제개발노동위원회(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Labour Council, NEDLAC) 내에서 국가최저임금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합의하였으며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라고 발표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국가최저임금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 중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주요 노동·경제 지표 분석

[부 표]

최저임금 영향률

부표 **최저임금 영향률**

- 최저임금 영향률은 새롭게 적용될 최저임금에 따라 임금인상이 필요한 대상근로자의 비율로서 한국노동연구원이 추정한 수치임
 - 이는 실적치가 아닌 예측치로서 그 활용에서 다음의 사항들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① 영향률을 산정함에 있어 최저임금 감액적용자(3개월 수습근로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료의 제약 상 이들을 별도로 제외하여 추정할 수가 없음
 - ② 영향률은 예측치로서 확정치인 최저임금 미만율과는 일정한 괴리가 있음. 이는 임금상승률 예측 오류, 임금분포의 변화, 가중치의 변화 등에 기인함
 - ③ 영향률 산정시 활용된 특히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는 가구조사로서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조사결과가 문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응답자의 기억이나 대리응답에 의존함으로써 응답결과에 대한 정확도에 한계가 있음
- 최저임금 인상률은 향후 적용 2018년 최저임금의 2017년 최저임금 대비 상승률을 의미함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주요 노동·경제 지표 분석

(단위: 원/시간, 천명, %)

시급	최저임금 인상률	전체근로자(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민간부문 임금근로자(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상용		임시		일용		전체		5명 이상		4명 이하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6,030		390	3.0	1,590	30.6	555	37.9	2,535	12.9	275	2.4	439	10.8
6,035		390	3.0	1,590	30.6	555	37.9	2,535	12.9	276	2.4	439	10.8
6,040		391	3.0	1,596	30.7	555	37.9	2,542	13.0	277	2.5	441	10.8
6,045		391	3.0	1,596	30.7	555	37.9	2,542	13.0	277	2.5	442	10.8
6,050		391	3.0	1,597	30.7	555	37.9	2,543	13.0	279	2.5	442	10.8
6,055		392	3.0	1,599	30.8	555	37.9	2,546	13.0	279	2.5	443	10.9
6,060		392	3.0	1,599	30.8	555	37.9	2,546	13.0	281	2.5	443	10.9
6,065		392	3.0	1,599	30.8	555	37.9	2,546	13.0	281	2.5	444	10.9
6,070		394	3.0	1,600	30.8	555	37.9	2,548	13.0	282	2.5	444	10.9
6,075		394	3.0	1,600	30.8	555	37.9	2,549	13.0	283	2.5	444	10.9
6,080		395	3.0	1,600	30.8	555	37.9	2,550	13.0	283	2.5	444	10.9
6,085		395	3.0	1,600	30.8	555	37.9	2,550	13.0	285	2.5	444	10.9
6,090		395	3.0	1,600	30.8	555	37.9	2,550	13.0	286	2.5	446	10.9
6,095		395	3.0	1,605	30.9	555	37.9	2,555	13.0	286	2.5	447	11.0
6,100		395	3.0	1,605	30.9	555	37.9	2,555	13.0	287	2.5	447	11.0
6,105		395	3.0	1,605	30.9	555	37.9	2,555	13.0	288	2.6	447	11.0
6,110		395	3.0	1,605	30.9	555	37.9	2,555	13.0	289	2.6	448	11.0
6,115		396	3.1	1,605	30.9	555	37.9	2,557	13.0	289	2.6	448	11.0
6,120		396	3.1	1,605	30.9	555	37.9	2,557	13.0	290	2.6	449	11.0
6,125		397	3.1	1,606	30.9	555	37.9	2,558	13.0	291	2.6	449	11.0
6,130		404	3.1	1,622	31.2	555	37.9	2,581	13.1	292	2.6	449	11.0
6,135		404	3.1	1,622	31.2	555	37.9	2,581	13.1	293	2.6	450	11.0
6,140		404	3.1	1,623	31.2	555	37.9	2,582	13.2	293	2.6	450	11.0
6,145		404	3.1	1,625	31.3	555	37.9	2,584	13.2	294	2.6	450	11.0
6,150		404	3.1	1,625	31.3	555	37.9	2,584	13.2	295	2.6	451	11.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2016년 8월 원자료 및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6년 6월 원자료

[부 표] 최저임금 영향률

최저임금		전체근로자(경제활동인구가조사)						민간부문 임금근로자(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시급	인상률	상용		임시		일용		전체		5명 이상		4명 이하		전 체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6,155		404	3.1	1,625	31.3	555	37.9	2,584	13.2	296	2.6	451	11.1	747	4.9
6,160		404	3.1	1,628	31.3	556	38.0	2,589	13.2	296	2.6	451	11.1	748	4.9
6,165		404	3.1	1,630	31.4	556	38.0	2,590	13.2	319	2.8	499	12.2	818	5.3
6,170		404	3.1	1,630	31.4	556	38.0	2,590	13.2	321	2.8	500	12.3	820	5.3
6,175		405	3.1	1,630	31.4	556	38.0	2,591	13.2	322	2.9	501	12.3	823	5.4
6,180		407	3.1	1,633	31.4	557	38.0	2,598	13.2	324	2.9	502	12.3	826	5.4
6,185		407	3.1	1,633	31.4	557	38.0	2,598	13.2	325	2.9	502	12.3	827	5.4
6,190		407	3.1	1,633	31.4	558	38.1	2,598	13.2	327	2.9	505	12.4	832	5.4
6,195		408	3.1	1,634	31.5	558	38.1	2,600	13.2	329	2.9	507	12.4	836	5.4
6,200		421	3.2	1,660	31.9	568	38.8	2,649	13.5	330	2.9	509	12.5	839	5.5
6,205		421	3.2	1,660	31.9	568	38.8	2,649	13.5	331	2.9	509	12.5	840	5.5
6,210		425	3.3	1,661	32.0	568	38.8	2,654	13.5	371	3.3	627	15.4	998	6.5
6,215		425	3.3	1,664	32.0	568	38.8	2,657	13.5	371	3.3	627	15.4	998	6.5
6,220		426	3.3	1,666	32.1	569	38.8	2,660	13.6	373	3.3	629	15.4	1,002	6.5
6,225		426	3.3	1,667	32.1	569	38.8	2,661	13.6	376	3.3	630	15.5	1,006	6.6
6,230		426	3.3	1,667	32.1	569	38.8	2,662	13.6	381	3.4	636	15.6	1,017	6.6
6,235		428	3.3	1,667	32.1	569	38.8	2,664	13.6	390	3.5	652	16.0	1,042	6.8
6,240		428	3.3	1,667	32.1	569	38.8	2,664	13.6	419	3.7	684	16.8	1,104	7.2
6,245		429	3.3	1,669	32.1	569	38.8	2,667	13.6	444	3.9	714	17.5	1,158	7.5
6,250		429	3.3	1,669	32.1	569	38.8	2,668	13.6	451	4.0	723	17.7	1,174	7.6
6,255		429	3.3	1,669	32.1	569	38.8	2,668	13.6	454	4.0	729	17.9	1,183	7.7
6,260		434	3.3	1,675	32.2	574	39.2	2,683	13.7	459	4.1	732	17.9	1,190	7.8
6,265		434	3.3	1,676	32.2	574	39.2	2,684	13.7	462	4.1	735	18.0	1,198	7.8
6,270		434	3.3	1,676	32.2	574	39.2	2,684	13.7	468	4.2	737	18.1	1,206	7.9
6,275		436	3.4	1,682	32.4	575	39.3	2,694	13.7	471	4.2	741	18.2	1,212	7.9
6,280		436	3.4	1,682	32.4	575	39.3	2,694	13.7	473	4.2	743	18.2	1,215	7.9
6,285		437	3.4	1,682	32.4	575	39.3	2,694	13.7	475	4.2	744	18.3	1,219	7.9
6,290		438	3.4	1,684	32.4	575	39.3	2,697	13.7	477	4.2	746	18.3	1,223	8.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가조사」, 2016년 8월 원자료 및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6년 6월 원자료

최저임금	전체근로자(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민간부문 임금근로자(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시급	인상률	상용		임시		일용		전체		5명 이상		4명 이하		전체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6,295			438	3.4	1,685	32.4	575	39.3	2,699	13.7	479	4.2	747	18.3	1,226	8.0				
6,300			438	3.4	1,685	32.4	575	39.3	2,699	13.8	482	4.3	748	18.4	1,231	8.0				
6,305			438	3.4	1,685	32.4	575	39.3	2,699	13.8	484	4.3	751	18.4	1,235	8.0				
6,310			439	3.4	1,686	32.4	575	39.3	2,700	13.8	487	4.3	753	18.5	1,241	8.1				
6,315			439	3.4	1,686	32.4	575	39.3	2,700	13.8	497	4.4	758	18.6	1,255	8.2				
6,320			441	3.4	1,688	32.5	578	39.5	2,707	13.8	500	4.4	760	18.6	1,260	8.2				
6,325			442	3.4	1,690	32.5	578	39.5	2,710	13.8	512	4.5	763	18.7	1,275	8.3				
6,330			443	3.4	1,690	32.5	578	39.5	2,711	13.8	519	4.6	765	18.8	1,283	8.4				
6,335			445	3.4	1,690	32.5	580	39.6	2,715	13.8	521	4.6	765	18.8	1,287	8.4				
6,340			445	3.4	1,690	32.5	580	39.6	2,715	13.8	524	4.6	769	18.9	1,293	8.4				
6,345			445	3.4	1,690	32.5	580	39.6	2,715	13.8	526	4.7	769	18.9	1,295	8.4				
6,350			445	3.4	1,690	32.5	580	39.6	2,715	13.8	528	4.7	771	18.9	1,299	8.5				
6,355			445	3.4	1,690	32.5	580	39.6	2,715	13.8	530	4.7	772	18.9	1,302	8.5				
6,360			477	3.7	1,790	34.5	603	41.2	2,870	14.6	532	4.7	773	19.0	1,305	8.5				
6,365			477	3.7	1,790	34.5	603	41.2	2,870	14.6	534	4.7	774	19.0	1,308	8.5				
6,370			477	3.7	1,790	34.5	603	41.2	2,870	14.6	536	4.8	777	19.1	1,313	8.6				
6,375			477	3.7	1,791	34.5	603	41.2	2,870	14.6	537	4.8	777	19.1	1,314	8.6				
6,380			478	3.7	1,791	34.5	603	41.2	2,871	14.6	538	4.8	778	19.1	1,315	8.6				
6,385			481	3.7	1,800	34.6	603	41.2	2,885	14.7	539	4.8	779	19.1	1,318	8.6				
6,390			481	3.7	1,802	34.7	607	41.5	2,891	14.7	541	4.8	780	19.1	1,321	8.6				
6,395			481	3.7	1,802	34.7	607	41.5	2,891	14.7	543	4.8	781	19.2	1,324	8.6				
6,400			482	3.7	1,803	34.7	607	41.5	2,893	14.7	544	4.8	781	19.2	1,326	8.6				
6,405			482	3.7	1,807	34.8	607	41.5	2,896	14.8	546	4.8	783	19.2	1,328	8.7				
6,410			482	3.7	1,807	34.8	607	41.5	2,896	14.8	550	4.9	787	19.3	1,336	8.7				
6,415			483	3.7	1,807	34.8	607	41.5	2,896	14.8	552	4.9	789	19.3	1,341	8.7				
6,420			485	3.7	1,809	34.8	608	41.5	2,901	14.8	558	4.9	791	19.4	1,349	8.8				
6,425			485	3.7	1,809	34.8	608	41.5	2,901	14.8	558	4.9	792	19.4	1,350	8.8				
6,430			485	3.7	1,809	34.8	608	41.5	2,901	14.8	560	5.0	792	19.4	1,352	8.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2016년 8월 원자료 및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6년 6월 원자료

[부 표] 최저임금 영향률

최저임금 시급 인상률	전체근로자(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민간부문 임금근로자(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상용 근로자수	영향률	임시 근로자수	영향률	일용 근로자수	영향률	전체 근로자수	영향률
영향률	전체				5명 이상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6,435	490	3.8	1,813	34.9	608	41.5	2,912	14.8
6,440	490	3.8	1,813	34.9	608	41.5	2,912	14.8
6,445	491	3.8	1,814	34.9	608	41.5	2,913	14.8
6,450	491	3.8	1,814	34.9	608	41.5	2,913	14.8
6,455	508	3.9	1,835	35.3	611	41.7	2,955	15.1
6,460	508	3.9	1,835	35.3	611	41.7	2,955	15.1
6,465	508	3.9	1,835	35.3	611	41.7	2,955	15.1
6,470	511	3.9	1,837	35.4	611	41.7	2,959	15.1
6,475	511	3.9	1,837	35.4	611	41.7	2,959	15.1
6,480	511	3.9	1,837	35.4	611	41.7	2,959	15.1
6,485	511	3.9	1,837	35.4	611	41.7	2,959	15.1
6,490	512	3.9	1,838	35.4	611	41.7	2,960	15.1
6,495	512	3.9	1,838	35.4	611	41.7	2,960	15.1
6,500	532	4.1	1,852	35.6	613	41.8	2,997	15.3
6,505	532	4.1	1,853	35.7	613	41.8	2,998	15.3
6,510	532	4.1	1,853	35.7	613	41.8	2,998	15.3
6,515	532	4.1	1,856	35.7	613	41.8	3,001	15.3
6,520	533	4.1	1,856	35.7	613	41.8	3,001	15.3
6,525	533	4.1	1,856	35.7	613	41.8	3,001	15.3
6,530	534	4.1	1,856	35.7	613	41.8	3,002	15.3
6,535	536	4.1	1,856	35.7	613	41.8	3,005	15.3
6,540	536	4.1	1,856	35.7	613	41.8	3,005	15.3
6,545	537	4.1	1,856	35.7	613	41.8	3,005	15.3
6,550	537	4.1	1,856	35.7	613	41.8	3,005	15.3
6,555	572	4.4	1,913	36.8	628	42.9	3,113	15.9
6,560	572	4.4	1,913	36.8	628	42.9	3,113	15.9
6,565	572	4.4	1,913	36.8	628	42.9	3,113	15.9
6,570	572	4.4	1,913	36.8	628	42.9	3,113	15.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2016년 8월 원자료 및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6년 6월 원자료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주요 노동·경제 지표 분석

최저임금 시급	전체근로자(경제활동인구가조사)						민간부문 임금근로자(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상용		임시		일용		전체		5명 이상		4명 이하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6,575	572	4.4	1,914	36.8	628	42.9	3,113	15.9	647	5.7	876	21.5
6,580	572	4.4	1,914	36.8	628	42.9	3,113	15.9	648	5.7	876	21.5
6,585	572	4.4	1,914	36.8	628	42.9	3,113	15.9	649	5.8	876	21.5
6,590	572	4.4	1,914	36.8	628	42.9	3,114	15.9	688	5.9	878	21.5
6,595	572	4.4	1,916	36.9	628	42.9	3,116	15.9	670	5.9	879	21.6
6,600	574	4.4	1,921	37.0	628	42.9	3,124	15.9	672	6.0	880	21.6
6,605	574	4.4	1,922	37.0	628	42.9	3,125	15.9	673	6.0	880	21.6
6,610	574	4.4	1,922	37.0	628	42.9	3,125	15.9	674	6.0	880	21.6
6,615	574	4.4	1,923	37.0	628	42.9	3,125	15.9	676	6.0	881	21.6
6,620	574	4.4	1,923	37.0	628	42.9	3,125	15.9	678	6.0	882	21.6
6,625	608	4.7	1,985	38.2	646	44.1	3,239	16.5	682	6.0	885	21.7
6,630	608	4.7	1,985	38.2	646	44.1	3,239	16.5	683	6.1	886	21.7
6,635	608	4.7	1,985	38.2	646	44.1	3,239	16.5	687	6.1	895	21.9
6,640	608	4.7	1,985	38.2	646	44.1	3,239	16.5	688	6.1	896	22.0
6,645	609	4.7	1,985	38.2	646	44.1	3,240	16.5	690	6.1	896	22.0
6,650	609	4.7	1,985	38.2	646	44.1	3,240	16.5	692	6.1	896	22.0
6,655	610	4.7	1,987	38.2	646	44.1	3,242	16.5	695	6.2	898	22.0
6,660	610	4.7	1,987	38.2	646	44.1	3,242	16.5	697	6.2	899	22.0
6,665	610	4.7	1,987	38.2	646	44.1	3,242	16.5	700	6.2	899	22.1
6,670	610	4.7	1,987	38.2	646	44.1	3,242	16.5	702	6.2	900	22.1
6,675	621	4.8	2,027	39.0	660	45.1	3,308	16.9	704	6.2	901	22.1
6,680	621	4.8	2,027	39.0	660	45.1	3,308	16.9	706	6.3	902	22.1
6,685	621	4.8	2,027	39.0	660	45.1	3,308	16.9	708	6.3	903	22.1
6,690	622	4.8	2,027	39.0	660	45.1	3,309	16.9	710	6.3	903	22.1
6,695	622	4.8	2,027	39.0	660	45.1	3,309	16.9	711	6.3	904	22.2
6,700	622	4.8	2,027	39.0	661	45.2	3,310	16.9	713	6.3	904	22.2
6,705	627	4.8	2,031	39.1	663	45.3	3,320	16.9	715	6.3	906	22.2
6,710	627	4.8	2,031	39.1	663	45.3	3,320	16.9	717	6.4	907	22.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가조사」, 2016년 8월 원자료 및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6년 6월 원자료

[부 표] 최저임금 영향률

최저임금		전체근로자(경제활동인구가조사)						민간부문 임금근로자(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시급	인상률	상용		임시		일용		전체		5명 이상		4명 이하		전체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6,715	3.8	627	4.8	2,031	39.1	663	45.3	3,320	16.9	718	6.4	909	22.3	1,627	10.6
6,720	3.9	627	4.8	2,032	39.1	663	45.3	3,321	16.9	722	6.4	914	22.4	1,636	10.7
6,725	3.9	627	4.8	2,032	39.1	663	45.3	3,322	16.9	724	6.4	915	22.4	1,639	10.7
6,730	4.0	628	4.8	2,032	39.1	663	45.3	3,323	16.9	738	6.5	975	23.9	1,713	11.2
6,735	4.1	629	4.8	2,032	39.1	663	45.3	3,323	16.9	740	6.6	977	24.0	1,717	11.2
6,740	4.2	629	4.8	2,033	39.1	663	45.3	3,324	16.9	742	6.6	980	24.0	1,722	11.2
6,745	4.3	629	4.8	2,033	39.1	663	45.3	3,324	16.9	744	6.6	980	24.0	1,724	11.2
6,750	4.3	630	4.9	2,033	39.1	663	45.3	3,326	16.9	748	6.6	987	24.2	1,735	11.3
6,755	4.4	638	4.9	2,063	39.7	673	46.0	3,374	17.2	750	6.6	988	24.2	1,737	11.3
6,760	4.5	638	4.9	2,063	39.7	673	46.0	3,374	17.2	752	6.7	988	24.2	1,740	11.3
6,765	4.6	640	4.9	2,063	39.7	673	46.0	3,376	17.2	754	6.7	989	24.2	1,743	11.4
6,770	4.6	640	4.9	2,064	39.7	673	46.0	3,377	17.2	757	6.7	992	24.3	1,748	11.4
6,775	4.7	640	4.9	2,064	39.7	673	46.0	3,378	17.2	758	6.7	993	24.3	1,751	11.4
6,780	4.8	646	5.0	2,064	39.7	673	46.0	3,383	17.2	775	6.9	1,012	24.8	1,786	11.6
6,785	4.9	646	5.0	2,064	39.7	673	46.0	3,383	17.2	776	6.9	1,013	24.8	1,789	11.6
6,790	4.9	648	5.0	2,064	39.7	673	46.0	3,386	17.2	778	6.9	1,013	24.9	1,791	11.7
6,795	5.0	649	5.0	2,065	39.7	673	46.0	3,387	17.3	782	6.9	1,014	24.9	1,796	11.7
6,800	5.1	649	5.0	2,065	39.7	673	46.0	3,387	17.3	784	7.0	1,016	24.9	1,800	11.7
6,805	5.2	649	5.0	2,065	39.7	673	46.0	3,387	17.3	786	7.0	1,016	24.9	1,803	11.7
6,810	5.3	671	5.2	2,109	40.6	681	46.5	3,461	17.6	789	7.0	1,017	24.9	1,806	11.8
6,815	5.3	671	5.2	2,109	40.6	681	46.5	3,461	17.6	790	7.0	1,017	24.9	1,808	11.8
6,820	5.4	672	5.2	2,109	40.6	681	46.5	3,462	17.6	793	7.0	1,018	25.0	1,811	11.8
6,825	5.5	672	5.2	2,109	40.6	681	46.5	3,462	17.6	796	7.1	1,021	25.0	1,817	11.8
6,830	5.6	672	5.2	2,109	40.6	681	46.5	3,462	17.6	799	7.1	1,022	25.1	1,821	11.9
6,835	5.6	673	5.2	2,111	40.6	681	46.5	3,465	17.7	803	7.1	1,023	25.1	1,826	11.9
6,840	5.7	673	5.2	2,111	40.6	681	46.5	3,465	17.7	804	7.1	1,023	25.1	1,828	11.9
6,845	5.8	674	5.2	2,112	40.6	681	46.5	3,467	17.7	805	7.1	1,024	25.1	1,829	11.9
6,850	5.9	676	5.2	2,112	40.6	681	46.5	3,469	17.7	809	7.2	1,024	25.1	1,833	11.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가조사」, 2016년 8월 원자료 및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6년 6월 원자료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주요 노동·경제 지표 분석

최저임금	시급	전체근로자(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민간부문 임금근로자(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인상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6,855	6.0	682	5.3	2,115	40.7	683	46.7	3,480	17.7
6,860	6.0	682	5.3	2,115	40.7	683	46.7	3,480	17.7
6,865	6.1	682	5.3	2,118	40.8	683	46.7	3,484	17.8
6,870	6.2	682	5.3	2,118	40.8	683	46.7	3,484	17.8
6,875	6.3	684	5.3	2,122	40.8	683	46.7	3,490	17.8
6,880	6.3	685	5.3	2,122	40.8	684	46.7	3,491	17.8
6,885	6.4	707	5.5	2,132	41.0	687	46.9	3,525	18.0
6,890	6.5	707	5.5	2,132	41.0	687	46.9	3,526	18.0
6,895	6.6	708	5.5	2,132	41.0	687	46.9	3,527	18.0
6,900	6.6	711	5.5	2,132	41.0	687	46.9	3,530	18.0
6,905	6.7	714	5.5	2,132	41.0	687	46.9	3,533	18.0
6,910	6.8	714	5.5	2,132	41.0	687	46.9	3,533	18.0
6,915	6.9	714	5.5	2,135	41.1	687	46.9	3,536	18.0
6,920	7.0	714	5.5	2,137	41.1	687	46.9	3,538	18.0
6,925	7.0	714	5.5	2,137	41.1	687	46.9	3,538	18.0
6,930	7.1	714	5.5	2,137	41.1	687	46.9	3,539	18.0
6,935	7.2	716	5.5	2,138	41.2	689	47.0	3,543	18.1
6,940	7.3	716	5.5	2,138	41.2	689	47.0	3,543	18.1
6,945	7.3	716	5.5	2,138	41.2	689	47.0	3,543	18.1
6,950	7.4	716	5.5	2,138	41.2	689	47.0	3,543	18.1
6,955	7.5	734	5.7	2,163	41.6	692	47.2	3,588	18.3
6,960	7.6	736	5.7	2,163	41.6	692	47.2	3,591	18.3
6,965	7.7	736	5.7	2,163	41.6	692	47.2	3,591	18.3
6,970	7.7	740	5.7	2,163	41.6	692	47.2	3,594	18.3
6,975	7.8	740	5.7	2,163	41.6	692	47.2	3,595	18.3
6,980	7.9	740	5.7	2,166	41.7	693	47.4	3,600	18.3
6,985	8.0	740	5.7	2,166	41.7	693	47.4	3,600	18.3
6,990	8.0	740	5.7	2,167	41.7	693	47.4	3,601	18.3
		5명 이상		4명 이하		전체		전체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810	7.2	1,024	25.1	810	7.2	1,834	11.9
		814	7.2	1,025	25.1	814	7.2	1,839	12.0
		817	7.2	1,026	25.2	817	7.2	1,843	12.0
		818	7.3	1,027	25.2	818	7.3	1,845	12.0
		819	7.3	1,027	25.2	819	7.3	1,846	12.0
		820	7.3	1,028	25.2	820	7.3	1,848	12.0
		824	7.3	1,029	25.2	824	7.3	1,853	12.1
		826	7.3	1,029	25.2	826	7.3	1,856	12.1
		827	7.3	1,030	25.2	827	7.3	1,857	12.1
		838	7.4	1,053	25.8	838	7.4	1,891	12.3
		839	7.4	1,054	25.8	839	7.4	1,892	12.3
		840	7.5	1,054	25.8	840	7.5	1,894	12.3
		841	7.5	1,054	25.9	841	7.5	1,895	12.3
		843	7.5	1,055	25.9	843	7.5	1,899	12.4
		845	7.5	1,056	25.9	845	7.5	1,901	12.4
		847	7.5	1,056	25.9	847	7.5	1,903	12.4
		849	7.5	1,058	25.9	849	7.5	1,907	12.4
		851	7.5	1,059	26.0	851	7.5	1,910	12.4
		853	7.6	1,059	26.0	853	7.6	1,912	12.5
		855	7.6	1,060	26.0	855	7.6	1,915	12.5
		857	7.6	1,061	26.0	857	7.6	1,918	12.5
		858	7.6	1,062	26.0	858	7.6	1,920	12.5
		860	7.6	1,062	26.1	860	7.6	1,922	12.5
		866	7.7	1,073	26.3	866	7.7	1,939	12.6
		867	7.7	1,073	26.3	867	7.7	1,941	12.6
		868	7.7	1,074	26.3	868	7.7	1,942	12.6
		870	7.7	1,075	26.4	870	7.7	1,945	12.7
		873	7.7	1,080	26.5	873	7.7	1,954	12.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2016년 8월 원자료 및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6년 6월 원자료

[부 표] 최저임금 영향률

최저임금		전체근로자(경제활동인구가조사)						민간부문 임금근로자(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시급	인상률	상용		임시		일용		전체		5명 이상		4명 이하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6,715	3.8	627	4.8	2,031	39.1	663	45.3	3,320	16.9	718	6.4	909	22.3
6,720	3.9	627	4.8	2,032	39.1	663	45.3	3,321	16.9	722	6.4	914	22.4
6,725	3.9	627	4.8	2,032	39.1	663	45.3	3,322	16.9	724	6.4	915	22.4
6,730	4.0	628	4.8	2,032	39.1	663	45.3	3,323	16.9	738	6.5	975	23.9
6,735	4.1	629	4.8	2,032	39.1	663	45.3	3,323	16.9	740	6.6	977	24.0
6,740	4.2	629	4.8	2,033	39.1	663	45.3	3,324	16.9	742	6.6	980	24.0
6,745	4.3	629	4.8	2,033	39.1	663	45.3	3,324	16.9	744	6.6	980	24.0
6,750	4.3	630	4.9	2,033	39.1	663	45.3	3,326	16.9	748	6.6	987	24.2
6,755	4.4	638	4.9	2,063	39.7	673	46.0	3,374	17.2	750	6.6	988	24.2
6,760	4.5	638	4.9	2,063	39.7	673	46.0	3,374	17.2	752	6.7	988	24.2
6,765	4.6	640	4.9	2,063	39.7	673	46.0	3,376	17.2	754	6.7	989	24.2
6,770	4.6	640	4.9	2,064	39.7	673	46.0	3,377	17.2	757	6.7	992	24.3
6,775	4.7	640	4.9	2,064	39.7	673	46.0	3,378	17.2	758	6.7	993	24.3
6,780	4.8	646	5.0	2,064	39.7	673	46.0	3,383	17.2	775	6.9	1,012	24.8
6,785	4.9	646	5.0	2,064	39.7	673	46.0	3,383	17.2	776	6.9	1,013	24.8
6,790	4.9	648	5.0	2,064	39.7	673	46.0	3,386	17.2	778	6.9	1,013	24.9
6,795	5.0	649	5.0	2,065	39.7	673	46.0	3,387	17.3	782	6.9	1,014	24.9
6,800	5.1	649	5.0	2,065	39.7	673	46.0	3,387	17.3	784	7.0	1,016	24.9
6,805	5.2	649	5.0	2,065	39.7	673	46.0	3,387	17.3	786	7.0	1,016	24.9
6,810	5.3	671	5.2	2,109	40.6	681	46.5	3,461	17.6	789	7.0	1,017	24.9
6,815	5.3	671	5.2	2,109	40.6	681	46.5	3,461	17.6	790	7.0	1,017	24.9
6,820	5.4	672	5.2	2,109	40.6	681	46.5	3,462	17.6	793	7.0	1,018	25.0
6,825	5.5	672	5.2	2,109	40.6	681	46.5	3,462	17.6	796	7.1	1,021	25.0
6,830	5.6	672	5.2	2,109	40.6	681	46.5	3,462	17.6	799	7.1	1,022	25.1
6,835	5.6	673	5.2	2,111	40.6	681	46.5	3,465	17.7	803	7.1	1,023	25.1
6,840	5.7	673	5.2	2,111	40.6	681	46.5	3,465	17.7	804	7.1	1,023	25.1
6,845	5.8	674	5.2	2,112	40.6	681	46.5	3,467	17.7	805	7.1	1,024	25.1
6,850	5.9	676	5.2	2,112	40.6	681	46.5	3,469	17.7	809	7.2	1,024	25.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가조사」, 2016년 8월 원자료 및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6년 6월 원자료

최저임금	전체 근로자(경제활동인구가조사)										민간부문 임금근로자(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시급	인상률	상용		임시		일용		전체		5명 이상		4명 이하		전체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6,995	8.1	742	5.7	2,168	41.7	693	47.4	3,604	18.4	875	7.8	1,081	26.5	1,956	12.7					
7,000	8.2	742	5.7	2,168	41.7	693	47.4	3,604	18.4	877	7.8	1,082	26.5	1,959	12.8					
7,005	8.3	743	5.7	2,169	41.7	693	47.4	3,606	18.4	878	7.8	1,082	26.5	1,960	12.8					
7,010	8.3	749	5.8	2,179	41.9	694	47.4	3,622	18.5	883	7.8	1,085	26.6	1,968	12.8					
7,015	8.4	749	5.8	2,179	41.9	694	47.4	3,622	18.5	884	7.8	1,086	26.6	1,970	12.8					
7,020	8.5	752	5.8	2,180	41.9	694	47.4	3,625	18.5	887	7.9	1,087	26.7	1,973	12.9					
7,025	8.6	755	5.8	2,180	41.9	694	47.4	3,628	18.5	889	7.9	1,089	26.7	1,978	12.9					
7,030	8.7	755	5.8	2,180	41.9	694	47.4	3,628	18.5	892	7.9	1,090	26.7	1,982	12.9					
7,035	8.7	756	5.8	2,180	42.0	694	47.4	3,630	18.5	896	7.9	1,094	26.8	1,990	13.0					
7,040	8.8	756	5.8	2,180	42.0	694	47.4	3,630	18.5	905	8.0	1,100	27.0	2,006	13.1					
7,045	8.9	765	5.9	2,186	42.1	694	47.4	3,645	18.6	910	8.1	1,105	27.1	2,014	13.1					
7,050	9.0	765	5.9	2,186	42.1	694	47.4	3,645	18.6	912	8.1	1,105	27.1	2,017	13.1					
7,055	9.0	765	5.9	2,186	42.1	694	47.4	3,645	18.6	915	8.1	1,106	27.1	2,021	13.2					
7,060	9.1	765	5.9	2,186	42.1	694	47.4	3,645	18.6	926	8.2	1,118	27.4	2,044	13.3					
7,065	9.2	770	5.9	2,192	42.2	694	47.4	3,657	18.6	929	8.2	1,118	27.4	2,047	13.3					
7,070	9.3	770	5.9	2,192	42.2	694	47.4	3,657	18.6	931	8.3	1,120	27.5	2,052	13.4					
7,075	9.4	772	6.0	2,192	42.2	694	47.4	3,658	18.6	936	8.3	1,121	27.5	2,057	13.4					
7,080	9.4	772	6.0	2,192	42.2	694	47.4	3,658	18.6	944	8.4	1,123	27.5	2,067	13.5					
7,085	9.5	772	6.0	2,192	42.2	694	47.4	3,658	18.6	952	8.4	1,126	27.6	2,079	13.5					
7,090	9.6	772	6.0	2,194	42.2	694	47.4	3,660	18.6	959	8.5	1,127	27.6	2,086	13.6					
7,095	9.7	774	6.0	2,195	42.2	694	47.4	3,664	18.7	962	8.5	1,128	27.7	2,090	13.6					
7,100	9.7	776	6.0	2,195	42.2	694	47.4	3,665	18.7	964	8.5	1,130	27.7	2,094	13.6					
7,105	9.8	777	6.0	2,195	42.2	694	47.4	3,667	18.7	966	8.6	1,131	27.7	2,097	13.7					
7,110	9.9	778	6.0	2,195	42.2	694	47.4	3,668	18.7	968	8.6	1,131	27.7	2,099	13.7					
7,115	10.0	778	6.0	2,195	42.2	694	47.4	3,668	18.7	969	8.6	1,131	27.7	2,101	13.7					
7,120	10.0	778	6.0	2,195	42.2	694	47.4	3,668	18.7	975	8.6	1,137	27.9	2,113	13.8					
7,125	10.1	778	6.0	2,195	42.2	694	47.4	3,668	18.7	977	8.7	1,137	27.9	2,114	13.8					
7,130	10.2	778	6.0	2,195	42.2	694	47.4	3,668	18.7	980	8.7	1,137	27.9	2,118	13.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가조사」, 2016년 8월 원자료 및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6년 6월 원자료

[부 표] 최저임금 영향률

최저임금		전체근로자(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민간부문 임금근로자(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시급	인상률	상용		임시		일용		전체		5명 이상		4명 이하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7,135	10.3	778	6.0	2,195	42.2	694	47.4	3,668	18.7	983	8.7	1,138	27.9
7,140	10.4	778	6.0	2,195	42.2	694	47.4	3,668	18.7	984	8.7	1,139	27.9
7,145	10.4	778	6.0	2,195	42.2	694	47.4	3,668	18.7	986	8.7	1,139	27.9
7,150	10.5	1,016	7.8	2,504	48.2	766	52.3	4,286	21.8	989	8.8	1,141	28.0
7,155	10.6	1,016	7.8	2,504	48.2	766	52.3	4,286	21.8	991	8.8	1,141	28.0
7,160	10.7	1,016	7.8	2,504	48.2	766	52.3	4,286	21.8	993	8.8	1,144	28.1
7,165	10.7	1,016	7.8	2,504	48.2	766	52.3	4,286	21.8	995	8.8	1,144	28.1
7,170	10.8	1,016	7.8	2,504	48.2	766	52.3	4,286	21.8	999	8.9	1,151	28.2
7,175	10.9	1,016	7.8	2,504	48.2	766	52.3	4,286	21.8	1,001	8.9	1,151	28.2
7,180	11.0	1,016	7.8	2,504	48.2	766	52.3	4,286	21.8	1,003	8.9	1,152	28.3
7,185	11.1	1,016	7.8	2,504	48.2	766	52.3	4,286	21.8	1,008	8.9	1,153	28.3
7,190	11.1	1,016	7.8	2,504	48.2	766	52.3	4,286	21.8	1,012	9.0	1,157	28.4
7,195	11.2	1,020	7.9	2,505	48.2	766	52.3	4,291	21.9	1,013	9.0	1,158	28.4
7,200	11.3	1,022	7.9	2,506	48.2	766	52.3	4,294	21.9	1,015	9.0	1,159	28.4
7,205	11.4	1,022	7.9	2,507	48.3	766	52.3	4,295	21.9	1,017	9.0	1,160	28.4
7,210	11.4	1,023	7.9	2,509	48.3	766	52.3	4,298	21.9	1,021	9.1	1,161	28.5
7,215	11.5	1,023	7.9	2,509	48.3	766	52.3	4,298	21.9	1,023	9.1	1,162	28.5
7,220	11.6	1,025	7.9	2,509	48.3	766	52.3	4,299	21.9	1,025	9.1	1,164	28.6
7,225	11.7	1,032	8.0	2,518	48.5	766	52.3	4,315	22.0	1,028	9.1	1,165	28.6
7,230	11.7	1,032	8.0	2,518	48.5	766	52.3	4,316	22.0	1,029	9.1	1,165	28.6
7,235	11.8	1,035	8.0	2,520	48.5	766	52.3	4,320	22.0	1,032	9.1	1,166	28.6
7,240	11.9	1,035	8.0	2,520	48.5	766	52.3	4,320	22.0	1,034	9.2	1,167	28.6
7,245	12.0	1,036	8.0	2,520	48.5	766	52.3	4,321	22.0	1,070	9.5	1,242	30.5
7,250	12.1	1,037	8.0	2,520	48.5	766	52.3	4,323	22.0	1,071	9.5	1,242	30.5
7,255	12.1	1,039	8.0	2,522	48.5	766	52.3	4,327	22.0	1,074	9.5	1,243	30.5
7,260	12.2	1,039	8.0	2,522	48.5	766	52.3	4,327	22.0	1,076	9.5	1,243	30.5
7,265	12.3	1,039	8.0	2,522	48.5	766	52.3	4,327	22.0	1,078	9.6	1,245	30.5
7,270	12.4	1,039	8.0	2,524	48.6	766	52.3	4,330	22.1	1,083	9.6	1,246	30.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2016년 8월 원자료 및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6년 6월 원자료

최저임금	시급 인상률	전체 근로자(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민간부문 임금근로자(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상용		임시		일용		전체		5명 이상		4명 이하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7,275	12.4	1,039	8.0	2,524	48.6	766	52.3	4,330	22.1	1,084	9.6	1,247	30.6
7,280	12.5	1,039	8.0	2,524	48.6	766	52.3	4,330	22.1	1,087	9.6	1,248	30.6
7,285	12.6	1,046	8.1	2,533	48.7	767	52.4	4,345	22.1	1,090	9.7	1,249	30.6
7,290	12.7	1,046	8.1	2,533	48.7	767	52.4	4,345	22.1	1,093	9.7	1,249	30.6
7,295	12.8	1,046	8.1	2,533	48.7	767	52.4	4,346	22.1	1,095	9.7	1,249	30.6
7,300	12.8	1,051	8.1	2,535	48.8	767	52.4	4,353	22.2	1,097	9.7	1,250	30.7
7,305	12.9	1,051	8.1	2,536	48.8	767	52.4	4,355	22.2	1,101	9.8	1,250	30.7
7,310	13.0	1,052	8.1	2,537	48.8	767	52.4	4,356	22.2	1,104	9.8	1,252	30.7
7,315	13.1	1,052	8.1	2,538	48.8	767	52.4	4,357	22.2	1,108	9.8	1,263	31.0
7,320	13.1	1,052	8.1	2,538	48.8	767	52.4	4,357	22.2	1,110	9.8	1,264	31.0
7,325	13.2	1,052	8.1	2,538	48.8	767	52.4	4,357	22.2	1,112	9.9	1,265	31.0
7,330	13.3	1,052	8.1	2,539	48.9	767	52.4	4,359	22.2	1,114	9.9	1,266	31.0
7,335	13.4	1,063	8.2	2,541	48.9	769	52.5	4,373	22.3	1,119	9.9	1,267	31.1
7,340	13.4	1,063	8.2	2,541	48.9	769	52.5	4,373	22.3	1,122	9.9	1,268	31.1
7,345	13.5	1,063	8.2	2,541	48.9	769	52.5	4,373	22.3	1,125	10.0	1,268	31.1
7,350	13.6	1,064	8.2	2,541	48.9	769	52.5	4,374	22.3	1,127	10.0	1,269	31.1
7,355	13.7	1,064	8.2	2,541	48.9	769	52.5	4,374	22.3	1,130	10.0	1,271	31.2
7,360	13.8	1,064	8.2	2,541	48.9	769	52.5	4,374	22.3	1,133	10.0	1,274	31.2
7,365	13.8	1,064	8.2	2,541	48.9	769	52.5	4,374	22.3	1,135	10.1	1,274	31.3
7,370	13.9	1,066	8.2	2,544	49.0	769	52.5	4,380	22.3	1,138	10.1	1,275	31.3
7,375	14.0	1,067	8.2	2,544	49.0	769	52.5	4,380	22.3	1,145	10.2	1,277	31.3
7,380	14.1	1,070	8.2	2,547	49.0	769	52.5	4,385	22.3	1,146	10.2	1,277	31.3
7,385	14.1	1,070	8.2	2,547	49.0	769	52.5	4,385	22.3	1,149	10.2	1,277	31.3
7,390	14.2	1,072	8.3	2,551	49.1	770	52.6	4,393	22.4	1,152	10.2	1,278	31.3
7,395	14.3	1,073	8.3	2,551	49.1	770	52.6	4,393	22.4	1,200	10.6	1,352	33.2
7,400	14.4	1,074	8.3	2,551	49.1	770	52.6	4,395	22.4	1,202	10.7	1,352	33.2
7,405	14.5	1,076	8.3	2,551	49.1	770	52.6	4,396	22.4	1,204	10.7	1,353	33.2
7,410	14.5	1,079	8.3	2,551	49.1	770	52.6	4,400	22.4	1,233	10.9	1,360	33.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2016년 8월 원자료 및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6년 6월 원자료

[부 표] 최저임금 영향률

최저임금		전체 근로자(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민간부문 임금근로자(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시급	인상률	상용		임시		일용		전체		5명 이상		4명 이하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7,415	14.6	1,100	8.5	2,561	49.3	771	52.7	4,432	22.6	1,235	11.0	1,360	33.4
7,420	14.7	1,100	8.5	2,561	49.3	771	52.7	4,432	22.6	1,241	11.0	1,361	33.4
7,425	14.8	1,100	8.5	2,561	49.3	771	52.7	4,432	22.6	1,245	11.0	1,361	33.4
7,430	14.8	1,100	8.5	2,561	49.3	771	52.7	4,432	22.6	1,251	11.1	1,362	33.4
7,435	14.9	1,100	8.5	2,562	49.3	771	52.7	4,433	22.6	1,255	11.1	1,363	33.4
7,440	15.0	1,100	8.5	2,563	49.3	771	52.7	4,434	22.6	1,258	11.2	1,364	33.4
7,445	15.1	1,100	8.5	2,563	49.3	771	52.7	4,434	22.6	1,261	11.2	1,364	33.5
7,450	15.1	1,167	9.0	2,614	50.3	787	53.8	4,568	23.3	1,263	11.2	1,364	33.5
7,455	15.2	1,167	9.0	2,614	50.3	787	53.8	4,568	23.3	1,271	11.3	1,370	33.6
7,460	15.3	1,167	9.0	2,614	50.3	787	53.8	4,569	23.3	1,273	11.3	1,371	33.6
7,465	15.4	1,167	9.0	2,614	50.3	787	53.8	4,569	23.3	1,285	11.4	1,394	34.2
7,470	15.5	1,169	9.0	2,614	50.3	787	53.8	4,571	23.3	1,292	11.5	1,395	34.2
7,475	15.5	1,169	9.0	2,614	50.3	787	53.8	4,571	23.3	1,297	11.5	1,397	34.3
7,480	15.6	1,170	9.0	2,614	50.3	787	53.8	4,572	23.3	1,300	11.5	1,397	34.3
7,485	15.7	1,171	9.0	2,614	50.3	787	53.8	4,573	23.3	1,304	11.6	1,399	34.3
7,490	15.8	1,171	9.0	2,614	50.3	787	53.8	4,573	23.3	1,308	11.6	1,401	34.4
7,495	15.8	1,176	9.1	2,625	50.5	792	54.1	4,592	23.4	1,318	11.7	1,405	34.4
7,500	15.9	1,176	9.1	2,626	50.5	792	54.1	4,594	23.4	1,322	11.7	1,412	34.6
7,505	16.0	1,181	9.1	2,633	50.7	792	54.1	4,606	23.5	1,328	11.8	1,417	34.7
7,510	16.1	1,185	9.1	2,638	50.8	794	54.2	4,617	23.5	1,330	11.8	1,417	34.8
7,515	16.2	1,185	9.1	2,638	50.8	794	54.2	4,617	23.5	1,333	11.8	1,417	34.8
7,520	16.2	1,185	9.1	2,638	50.8	794	54.2	4,617	23.5	1,336	11.8	1,420	34.8
7,525	16.3	1,185	9.1	2,638	50.8	794	54.2	4,617	23.5	1,339	11.9	1,420	34.8
7,530	16.4	1,189	9.2	2,642	50.8	794	54.2	4,625	23.6	1,344	11.9	1,423	34.9
7,535	16.5	1,189	9.2	2,642	50.8	794	54.2	4,625	23.6	1,347	11.9	1,424	34.9
7,540	16.5	1,189	9.2	2,642	50.8	794	54.2	4,625	23.6	1,349	12.0	1,424	34.9
7,545	16.6	1,189	9.2	2,642	50.8	794	54.2	4,625	23.6	1,352	12.0	1,425	34.9
7,550	16.7	1,197	9.2	2,653	51.0	795	54.3	4,645	23.7	1,357	12.0	1,430	35.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2016년 8월 원자료 및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6년 6월 원자료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주요 노동·경제 지표 분석

최저임금 시급	전체근로자(경제활동인구가조사)				민간부문 임금근로자(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상용		임시		일용		전체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7,555	1,197	9.2	2,653	51.0	795	54.3	4,645	23.7
7,560	1,197	9.2	2,653	51.0	795	54.3	4,645	23.7
7,565	1,197	9.2	2,653	51.0	795	54.3	4,645	23.7
7,570	1,198	9.2	2,657	51.1	796	54.3	4,651	23.7
7,575	1,199	9.2	2,657	51.1	796	54.3	4,652	23.7
7,580	1,199	9.2	2,657	51.1	796	54.3	4,652	23.7
7,585	1,203	9.3	2,659	51.2	796	54.3	4,658	23.7
7,590	1,203	9.3	2,659	51.2	796	54.4	4,659	23.7
7,595	1,203	9.3	2,659	51.2	796	54.4	4,659	23.7
7,600	1,203	9.3	2,659	51.2	796	54.4	4,659	23.7
7,605	1,205	9.3	2,659	51.2	796	54.4	4,660	23.7
7,610	1,206	9.3	2,660	51.2	796	54.4	4,662	23.8
7,615	1,208	9.3	2,662	51.2	796	54.4	4,667	23.8
7,620	1,209	9.3	2,662	51.2	796	54.4	4,667	23.8
7,625	1,209	9.3	2,662	51.2	796	54.4	4,667	23.8
7,630	1,231	9.5	2,683	51.8	804	54.9	4,728	24.1
7,635	1,231	9.5	2,683	51.8	804	54.9	4,728	24.1
7,640	1,232	9.5	2,694	51.8	804	54.9	4,729	24.1
7,645	1,232	9.5	2,694	51.8	804	54.9	4,730	24.1
7,650	1,232	9.5	2,694	51.8	804	54.9	4,730	24.1
7,655	1,232	9.5	2,694	51.8	804	54.9	4,730	24.1
7,660	1,232	9.5	2,694	51.8	804	54.9	4,730	24.1
7,665	1,237	9.5	2,696	51.9	807	55.1	4,740	24.2
7,670	1,238	9.5	2,696	51.9	807	55.1	4,741	24.2
7,675	1,238	9.5	2,696	51.9	807	55.1	4,741	24.2
7,680	1,242	9.6	2,696	51.9	807	55.1	4,745	24.2
7,685	1,242	9.6	2,696	51.9	807	55.1	4,745	24.2
7,690	1,244	9.6	2,698	51.9	807	55.1	4,748	24.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가조사」, 2016년 8월 원자료 및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6년 6월 원자료

최저임금		전체근로자(경제활동인구가조사)								민간부문 임금근로자(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시급	인상률	상용		임시		일용		전체		5명 이상		4명 이하		전체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7,695	18.9	1,244	9.6	2,698	51.9	807	55.1	4,748	24.2	1,456	12.9	1,471	36.1	2,927	19.1		
7,700	19.0	1,247	9.6	2,699	51.9	807	55.1	4,753	24.2	1,458	12.9	1,471	36.1	2,929	19.1		
7,705	19.1	1,247	9.6	2,699	51.9	807	55.1	4,753	24.2	1,469	13.0	1,476	36.2	2,944	19.2		
7,710	19.2	1,247	9.6	2,701	52.0	807	55.1	4,755	24.2	1,472	13.0	1,477	36.2	2,949	19.2		
7,715	19.2	1,247	9.6	2,702	52.0	807	55.1	4,755	24.2	1,474	13.1	1,479	36.3	2,954	19.2		
7,720	19.3	1,247	9.6	2,702	52.0	807	55.1	4,755	24.2	1,478	13.1	1,480	36.3	2,957	19.3		
7,725	19.4	1,248	9.6	2,702	52.0	807	55.1	4,756	24.2	1,480	13.1	1,480	36.3	2,960	19.3		
7,730	19.5	1,249	9.6	2,702	52.0	807	55.1	4,758	24.2	1,497	13.3	1,482	36.3	2,979	19.4		
7,735	19.6	1,249	9.6	2,702	52.0	807	55.1	4,758	24.2	1,499	13.3	1,483	36.4	2,982	19.4		
7,740	19.6	1,249	9.6	2,702	52.0	807	55.1	4,758	24.2	1,503	13.3	1,483	36.4	2,986	19.4		
7,745	19.7	1,249	9.6	2,702	52.0	807	55.1	4,758	24.2	1,506	13.4	1,484	36.4	2,990	19.5		
7,750	19.8	1,399	10.8	2,805	54.0	825	56.4	5,029	25.6	1,509	13.4	1,485	36.4	2,994	19.5		
7,755	19.9	1,399	10.8	2,805	54.0	825	56.4	5,029	25.6	1,513	13.4	1,485	36.4	2,998	19.5		
7,760	19.9	1,399	10.8	2,806	54.0	825	56.4	5,030	25.6	1,515	13.4	1,485	36.4	3,001	19.5		
7,765	20.0	1,399	10.8	2,807	54.0	825	56.4	5,031	25.6	1,679	14.9	1,579	38.7	3,258	21.2		
7,770	20.1	1,399	10.8	2,807	54.0	825	56.4	5,032	25.6	1,708	15.1	1,581	38.8	3,289	21.4		
7,775	20.2	1,403	10.8	2,813	54.1	825	56.4	5,041	25.7	1,715	15.2	1,583	38.8	3,298	21.5		
7,780	20.2	1,404	10.8	2,813	54.1	826	56.4	5,043	25.7	1,718	15.2	1,583	38.8	3,301	21.5		
7,785	20.3	1,406	10.8	2,813	54.1	826	56.4	5,045	25.7	1,721	15.3	1,584	38.8	3,305	21.5		
7,790	20.4	1,407	10.9	2,815	54.2	826	56.4	5,048	25.7	1,727	15.3	1,584	38.9	3,312	21.6		
7,795	20.5	1,407	10.9	2,815	54.2	826	56.4	5,048	25.7	1,734	15.4	1,585	38.9	3,319	21.6		
7,800	20.6	1,415	10.9	2,821	54.3	826	56.4	5,062	25.8	1,739	15.4	1,586	38.9	3,324	21.7		
7,805	20.6	1,415	10.9	2,821	54.3	826	56.4	5,062	25.8	1,742	15.5	1,587	38.9	3,329	21.7		
7,810	20.7	1,415	10.9	2,822	54.3	826	56.4	5,063	25.8	1,746	15.5	1,587	38.9	3,333	21.7		
7,815	20.8	1,415	10.9	2,822	54.3	826	56.4	5,063	25.8	1,749	15.5	1,588	39.0	3,337	21.7		
7,820	20.9	1,415	10.9	2,824	54.3	826	56.4	5,065	25.8	1,755	15.6	1,591	39.0	3,347	21.8		
7,825	20.9	1,415	10.9	2,824	54.3	826	56.4	5,065	25.8	1,787	15.8	1,601	39.3	3,387	22.1		
7,830	21.0	1,415	10.9	2,824	54.3	826	56.4	5,065	25.8	1,789	15.9	1,601	39.3	3,390	22.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2016년 8월 원자료 및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6년 6월 원자료

최저임금		전체근로자(경제활동인구가조사)								민간부문 임금근로자(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시급	인상률	상용		임시		일용		전체		5명 이상		4명 이하		전체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7,835	21.1	1,421	11.0	2,825	54.4	826	56.4	5,071	25.8	1,793	15.9	1,602	39.3	3,395	22.1		
7,840	21.2	1,421	11.0	2,825	54.4	826	56.4	5,071	25.8	1,796	15.9	1,602	39.3	3,398	22.1		
7,845	21.3	1,421	11.0	2,825	54.4	826	56.4	5,072	25.8	1,802	16.0	1,604	39.4	3,407	22.2		
7,850	21.3	1,423	11.0	2,825	54.4	826	56.4	5,074	25.9	1,806	16.0	1,606	39.4	3,412	22.2		
7,855	21.4	1,424	11.0	2,826	54.4	826	56.4	5,076	25.9	1,812	16.1	1,606	39.4	3,419	22.3		
7,860	21.5	1,424	11.0	2,826	54.4	826	56.4	5,076	25.9	1,814	16.1	1,606	39.4	3,420	22.3		
7,865	21.6	1,428	11.0	2,829	54.4	826	56.4	5,083	25.9	1,817	16.1	1,607	39.4	3,424	22.3		
7,870	21.6	1,428	11.0	2,829	54.4	826	56.4	5,083	25.9	1,821	16.1	1,610	39.5	3,431	22.3		
7,875	21.7	1,428	11.0	2,829	54.4	826	56.4	5,084	25.9	1,827	16.2	1,618	39.7	3,446	22.4		
7,880	21.8	1,428	11.0	2,829	54.4	826	56.4	5,084	25.9	1,830	16.2	1,619	39.7	3,449	22.5		
7,885	21.9	1,428	11.0	2,829	54.4	826	56.4	5,084	25.9	1,833	16.3	1,620	39.7	3,452	22.5		
7,890	21.9	1,428	11.0	2,829	54.4	826	56.4	5,084	25.9	1,845	16.4	1,627	39.9	3,472	22.6		
7,895	22.0	1,429	11.0	2,829	54.4	826	56.4	5,085	25.9	1,851	16.4	1,629	39.9	3,479	22.7		
7,900	22.1	1,429	11.0	2,829	54.4	826	56.4	5,085	25.9	1,854	16.4	1,629	40.0	3,483	22.7		
7,905	22.2	1,429	11.0	2,829	54.4	826	56.4	5,085	25.9	1,858	16.5	1,630	40.0	3,488	22.7		
7,910	22.3	1,429	11.0	2,829	54.4	826	56.4	5,085	25.9	1,862	16.5	1,630	40.0	3,492	22.7		
7,915	22.3	1,430	11.0	2,833	54.5	826	56.4	5,089	25.9	1,866	16.5	1,630	40.0	3,496	22.8		
7,920	22.4	1,431	11.0	2,833	54.5	826	56.4	5,089	25.9	1,874	16.6	1,631	40.0	3,505	22.8		
7,925	22.5	1,431	11.0	2,833	54.5	826	56.4	5,090	25.9	1,876	16.6	1,632	40.0	3,509	22.9		
7,930	22.6	1,431	11.0	2,833	54.5	826	56.4	5,090	25.9	1,881	16.7	1,633	40.0	3,514	22.9		
7,935	22.6	1,431	11.0	2,833	54.5	826	56.4	5,090	25.9	1,887	16.7	1,634	40.1	3,521	22.9		
7,940	22.7	1,431	11.0	2,833	54.5	826	56.4	5,090	25.9	1,893	16.8	1,636	40.1	3,529	23.0		
7,945	22.8	1,573	12.1	3,065	59.0	868	59.3	5,506	28.1	1,896	16.8	1,637	40.1	3,533	23.0		
7,950	22.9	1,573	12.1	3,065	59.0	868	59.3	5,506	28.1	1,904	16.9	1,638	40.2	3,542	23.1		
7,955	23.0	1,573	12.1	3,065	59.0	868	59.3	5,506	28.1	1,907	16.9	1,638	40.2	3,545	23.1		
7,960	23.0	1,573	12.1	3,065	59.0	868	59.3	5,506	28.1	1,911	16.9	1,639	40.2	3,550	23.1		
7,965	23.1	1,573	12.1	3,065	59.0	868	59.3	5,506	28.1	1,925	17.1	1,662	40.8	3,587	23.4		
7,970	23.2	1,573	12.1	3,065	59.0	868	59.3	5,506	28.1	1,929	17.1	1,663	40.8	3,592	23.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기조사」, 2016년 8월 원자료 및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6년 6월 원자료

[부 표] 최저임금 영향률

최저임금		전체근로자(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민간부문 임금근로자(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시급	인상률	상용		임시		일용		전체		5명 이상		4명 이하		전 체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7,975	23.3	1,573	12.1	3,065	59.0	868	59.3	5,506	28.1	1,933	17.1	1,663	40.8	3,596	23.4
7,980	23.3	1,573	12.1	3,065	59.0	868	59.3	5,506	28.1	1,938	17.2	1,664	40.8	3,601	23.5
7,985	23.4	1,573	12.1	3,067	59.0	868	59.3	5,508	28.1	1,943	17.2	1,665	40.8	3,608	23.5
7,990	23.5	1,573	12.1	3,067	59.0	868	59.3	5,508	28.1	1,946	17.3	1,665	40.8	3,611	23.5
7,995	23.6	1,575	12.1	3,067	59.0	868	59.3	5,510	28.1	1,950	17.3	1,665	40.8	3,615	23.5
8,000	23.6	1,575	12.1	3,067	59.0	868	59.3	5,510	28.1	1,957	17.4	1,666	40.9	3,623	23.6
8,005	23.7	1,575	12.1	3,067	59.0	868	59.3	5,510	28.1	1,961	17.4	1,667	40.9	3,628	23.6
8,010	23.8	1,577	12.2	3,068	59.0	868	59.3	5,513	28.1	2,045	18.1	1,727	42.4	3,772	24.6
8,015	23.9	1,577	12.2	3,068	59.0	868	59.3	5,513	28.1	2,047	18.1	1,728	42.4	3,774	24.6
8,020	24.0	1,577	12.2	3,068	59.0	868	59.3	5,513	28.1	2,050	18.2	1,728	42.4	3,779	24.6
8,025	24.0	1,577	12.2	3,068	59.0	868	59.3	5,513	28.1	2,058	18.2	1,732	42.5	3,789	24.7
8,030	24.1	1,577	12.2	3,068	59.0	868	59.3	5,513	28.1	2,061	18.3	1,732	42.5	3,793	24.7
8,035	24.2	1,577	12.2	3,068	59.0	868	59.3	5,513	28.1	2,064	18.3	1,733	42.5	3,797	24.7
8,040	24.3	1,577	12.2	3,068	59.0	868	59.3	5,513	28.1	2,068	18.3	1,733	42.5	3,801	24.8
8,045	24.3	1,604	12.4	3,074	59.1	868	59.3	5,545	28.3	2,070	18.4	1,733	42.5	3,803	24.8
8,050	24.4	1,604	12.4	3,074	59.1	868	59.3	5,545	28.3	2,074	18.4	1,741	42.7	3,815	24.8
8,055	24.5	1,604	12.4	3,074	59.1	868	59.3	5,545	28.3	2,077	18.4	1,741	42.7	3,819	24.9
8,060	24.6	1,604	12.4	3,074	59.1	868	59.3	5,545	28.3	2,084	18.5	1,742	42.7	3,827	24.9
8,065	24.7	1,604	12.4	3,074	59.1	868	59.3	5,545	28.3	2,090	18.5	1,743	42.7	3,832	25.0
8,070	24.7	1,605	12.4	3,074	59.1	868	59.3	5,546	28.3	2,094	18.6	1,743	42.8	3,837	25.0
8,075	24.8	1,605	12.4	3,074	59.1	868	59.3	5,546	28.3	2,111	18.7	1,746	42.8	3,857	25.1
8,080	24.9	1,605	12.4	3,074	59.1	868	59.3	5,546	28.3	2,115	18.8	1,746	42.8	3,861	25.1
8,085	25.0	1,605	12.4	3,074	59.1	868	59.3	5,546	28.3	2,119	18.8	1,747	42.8	3,866	25.2
8,090	25.0	1,605	12.4	3,074	59.2	868	59.3	5,547	28.3	2,128	18.9	1,753	43.0	3,881	25.3
8,095	25.1	1,608	12.4	3,074	59.2	868	59.3	5,550	28.3	2,129	18.9	1,753	43.0	3,883	25.3
8,100	25.2	1,608	12.4	3,074	59.2	868	59.3	5,550	28.3	2,133	18.9	1,754	43.0	3,887	25.3
8,105	25.3	1,629	12.6	3,089	59.4	868	59.3	5,586	28.5	2,136	18.9	1,755	43.1	3,891	25.3
8,110	25.3	1,629	12.6	3,089	59.4	868	59.3	5,586	28.5	2,139	19.0	1,756	43.1	3,895	25.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2016년 8월 원자료 및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6년 6월 원자료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주요 노동·경제 지표 분석

최저임금		전체 근로자(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민간부문 임금근로자(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시급	인상률	상용		임시		일용		전체		5명 이상		4명 이하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8,115	25.4	1,630	12.6	3,089	59.4	868	59.3	5,587	28.5	2,143	19.0	1,757	43.1
8,120	25.5	1,630	12.6	3,089	59.4	868	59.3	5,587	28.5	2,146	19.0	1,758	43.1
8,125	25.6	1,646	12.7	3,095	59.6	870	59.4	5,610	28.6	2,148	19.0	1,758	43.1
8,130	25.7	1,646	12.7	3,095	59.6	870	59.4	5,610	28.6	2,151	19.1	1,758	43.1
8,135	25.7	1,646	12.7	3,095	59.6	870	59.4	5,610	28.6	2,162	19.2	1,762	43.2
8,140	25.8	1,646	12.7	3,095	59.6	870	59.4	5,610	28.6	2,166	19.2	1,763	43.2
8,145	25.9	1,646	12.7	3,095	59.6	870	59.4	5,611	28.6	2,172	19.3	1,765	43.3
8,150	26.0	1,646	12.7	3,095	59.6	870	59.4	5,611	28.6	2,174	19.3	1,765	43.3
8,155	26.0	1,646	12.7	3,095	59.6	870	59.4	5,612	28.6	2,187	19.4	1,766	43.3
8,160	26.1	1,646	12.7	3,095	59.6	870	59.4	5,612	28.6	2,192	19.4	1,769	43.4
8,165	26.2	1,649	12.7	3,096	59.6	870	59.4	5,615	28.6	2,197	19.5	1,770	43.4
8,170	26.3	1,649	12.7	3,096	59.6	870	59.4	5,615	28.6	2,199	19.5	1,770	43.4
8,175	26.4	1,651	12.7	3,112	59.9	871	59.5	5,634	28.7	2,203	19.5	1,771	43.4
8,180	26.4	1,651	12.7	3,112	59.9	871	59.5	5,634	28.7	2,207	19.6	1,771	43.4
8,185	26.5	1,651	12.7	3,112	59.9	871	59.5	5,634	28.7	2,210	19.6	1,773	43.5
8,190	26.6	1,651	12.7	3,112	59.9	871	59.5	5,635	28.7	2,213	19.6	1,773	43.5
8,195	26.7	1,653	12.8	3,116	60.0	872	59.5	5,641	28.7	2,221	19.7	1,775	43.5
8,200	26.7	1,655	12.8	3,116	60.0	872	59.5	5,642	28.7	2,225	19.7	1,775	43.5
8,205	26.8	1,655	12.8	3,116	60.0	872	59.5	5,642	28.7	2,229	19.8	1,775	43.5
8,210	26.9	1,656	12.8	3,119	60.0	872	59.5	5,647	28.8	2,232	19.8	1,776	43.5
8,215	27.0	1,656	12.8	3,119	60.0	872	59.5	5,647	28.8	2,240	19.9	1,788	43.8
8,220	27.0	1,660	12.8	3,119	60.0	872	59.5	5,650	28.8	2,245	19.9	1,788	43.9
8,225	27.1	1,663	12.8	3,120	60.0	872	59.5	5,654	28.8	2,251	20.0	1,789	43.9
8,230	27.2	1,664	12.8	3,120	60.0	872	59.5	5,655	28.8	2,253	20.0	1,789	43.9
8,235	27.3	1,667	12.9	3,121	60.1	872	59.5	5,660	28.8	2,268	20.1	1,797	44.1
8,240	27.4	1,667	12.9	3,121	60.1	872	59.5	5,660	28.8	2,272	20.1	1,797	44.1
8,245	27.4	1,668	12.9	3,121	60.1	872	59.5	5,661	28.8	2,276	20.2	1,797	44.1
8,250	27.5	1,673	12.9	3,122	60.1	872	59.5	5,666	28.9	2,279	20.2	1,798	44.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2016년 8월 원자료 및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6년 6월 원자료

[부 표] 최저임금 영향률

최저임금		전체 근로자(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민간부문 임금근로자(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상용		임시		일용		전체		5명 이상		4명 이하		전 체	
시급	인상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8,255	27.6	1,673	12.9	3,122	60.1	872	59.5	5,666	28.9	2,281	20.2	1,799	44.1	4,080	26.6
8,260	27.7	1,673	12.9	3,122	60.1	872	59.5	5,666	28.9	2,289	20.3	1,800	44.2	4,089	26.6
8,265	27.7	1,673	12.9	3,123	60.1	872	59.5	5,668	28.9	2,293	20.3	1,801	44.2	4,094	26.7
8,270	27.8	1,676	12.9	3,124	60.1	872	59.5	5,671	28.9	2,296	20.4	1,802	44.2	4,097	26.7
8,275	27.9	1,676	12.9	3,124	60.1	872	59.5	5,671	28.9	2,299	20.4	1,802	44.2	4,101	26.7
8,280	28.0	1,684	13.0	3,127	60.2	872	59.5	5,683	29.0	2,332	20.7	1,858	45.6	4,190	27.3
8,285	28.1	1,685	13.0	3,127	60.2	872	59.5	5,684	29.0	2,332	20.7	1,858	45.6	4,191	27.3
8,290	28.1	1,686	13.0	3,128	60.2	873	59.6	5,688	29.0	2,335	20.7	1,859	45.6	4,194	27.3
8,295	28.2	1,688	13.0	3,129	60.2	873	59.6	5,690	29.0	2,340	20.7	1,859	45.6	4,199	27.3
8,300	28.3	1,688	13.0	3,129	60.2	873	59.6	5,690	29.0	2,344	20.8	1,860	45.6	4,204	27.4
8,305	28.4	1,688	13.0	3,129	60.2	873	59.6	5,690	29.0	2,349	20.8	1,860	45.6	4,209	27.4
8,310	28.4	1,690	13.0	3,130	60.2	873	59.6	5,693	29.0	2,351	20.8	1,861	45.6	4,212	27.4
8,315	28.5	1,692	13.1	3,132	60.3	873	59.6	5,697	29.0	2,356	20.9	1,861	45.7	4,217	27.5
8,320	28.6	1,692	13.1	3,132	60.3	873	59.6	5,697	29.0	2,379	21.1	1,874	46.0	4,253	27.7
8,325	28.7	1,693	13.1	3,132	60.3	873	59.6	5,698	29.0	2,383	21.1	1,875	46.0	4,258	27.7
8,330	28.7	1,693	13.1	3,132	60.3	873	59.6	5,698	29.0	2,388	21.2	1,875	46.0	4,264	27.8
8,335	28.8	1,693	13.1	3,132	60.3	873	59.6	5,698	29.0	2,390	21.2	1,876	46.0	4,266	27.8
8,340	28.9	1,693	13.1	3,132	60.3	873	59.6	5,698	29.0	2,394	21.2	1,877	46.0	4,270	27.8
8,345	29.0	1,835	14.2	3,202	61.6	884	60.4	5,921	30.2	2,399	21.3	1,877	46.0	4,276	27.8
8,350	29.1	1,835	14.2	3,202	61.6	884	60.4	5,921	30.2	2,403	21.3	1,878	46.0	4,281	27.9
8,355	29.1	1,835	14.2	3,202	61.6	884	60.4	5,921	30.2	2,406	21.3	1,878	46.1	4,285	27.9
8,360	29.2	1,835	14.2	3,202	61.6	884	60.4	5,921	30.2	2,411	21.4	1,880	46.1	4,292	28.0
8,365	29.3	1,837	14.2	3,203	61.6	884	60.4	5,925	30.2	2,415	21.4	1,881	46.1	4,295	28.0
8,370	29.4	1,839	14.2	3,203	61.6	884	60.4	5,926	30.2	2,418	21.4	1,881	46.1	4,299	28.0
8,375	29.4	1,839	14.2	3,203	61.6	884	60.4	5,926	30.2	2,421	21.5	1,882	46.1	4,303	28.0
8,380	29.5	1,839	14.2	3,203	61.6	884	60.4	5,926	30.2	2,441	21.6	1,885	46.2	4,326	28.2
8,385	29.6	1,839	14.2	3,203	61.6	884	60.4	5,926	30.2	2,449	21.7	1,888	46.3	4,336	28.2
8,390	29.7	1,841	14.2	3,203	61.6	884	60.4	5,928	30.2	2,450	21.7	1,888	46.3	4,338	28.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2016년 8월 원자료 및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6년 6월 원자료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주요 노동·경제 지표 분석

최저임금 시급	인상률	전체근로자(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민간부문 임금근로자(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상용		임시		일용		전체		5명 이상		4명 이하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8,395	29.8	1,841	14.2	3,203	61.6	884	60.4	5,928	30.2	2,455	21.8	1,889	46.3
8,400	29.8	1,841	14.2	3,203	61.6	884	60.4	5,928	30.2	2,461	21.8	1,889	46.3
8,405	29.9	1,843	14.2	3,203	61.6	884	60.4	5,930	30.2	2,466	21.9	1,890	46.4
8,410	30.0	1,843	14.2	3,203	61.6	884	60.4	5,930	30.2	2,482	22.0	1,896	46.5
8,415	30.1	1,844	14.2	3,203	61.6	885	60.5	5,932	30.2	2,483	22.0	1,896	46.5
8,420	30.1	1,844	14.2	3,203	61.6	885	60.5	5,932	30.2	2,486	22.0	1,897	46.5
8,425	30.2	1,844	14.2	3,204	61.7	885	60.5	5,934	30.2	2,489	22.1	1,898	46.5
8,430	30.3	1,844	14.2	3,204	61.7	885	60.5	5,934	30.2	2,492	22.1	1,898	46.5
8,435	30.4	1,846	14.2	3,204	61.7	885	60.5	5,935	30.2	2,495	22.1	1,899	46.6
8,440	30.4	1,846	14.2	3,204	61.7	885	60.5	5,936	30.2	2,501	22.2	1,914	46.9
8,445	30.5	1,860	14.3	3,208	61.7	888	60.6	5,957	30.3	2,514	22.3	1,914	47.0
8,450	30.6	1,860	14.3	3,209	61.8	888	60.6	5,957	30.4	2,518	22.3	1,917	47.0
8,455	30.7	1,860	14.3	3,209	61.8	888	60.6	5,957	30.4	2,521	22.4	1,917	47.0
8,460	30.8	1,860	14.3	3,209	61.8	888	60.6	5,957	30.4	2,528	22.4	1,927	47.3
8,465	30.8	1,865	14.4	3,210	61.8	888	60.6	5,963	30.4	2,531	22.4	1,927	47.3
8,470	30.9	1,866	14.4	3,210	61.8	888	60.6	5,964	30.4	2,533	22.5	1,929	47.3
8,475	31.0	1,889	14.6	3,221	62.0	888	60.7	5,998	30.6	2,538	22.5	1,930	47.3
8,480	31.1	1,889	14.6	3,221	62.0	888	60.7	5,998	30.6	2,541	22.5	1,930	47.3
8,485	31.1	1,889	14.6	3,221	62.0	888	60.7	5,998	30.6	2,543	22.6	1,931	47.3
8,490	31.2	1,889	14.6	3,221	62.0	888	60.7	5,998	30.6	2,546	22.6	1,931	47.4
8,495	31.3	1,889	14.6	3,221	62.0	888	60.7	5,998	30.6	2,549	22.6	1,931	47.4
8,500	31.4	1,889	14.6	3,221	62.0	888	60.7	5,998	30.6	2,553	22.6	1,932	47.4
8,505	31.5	1,889	14.6	3,221	62.0	888	60.7	5,998	30.6	2,559	22.7	1,934	47.4
8,510	31.5	1,889	14.6	3,221	62.0	888	60.7	5,998	30.6	2,563	22.7	1,935	47.5
8,515	31.6	1,908	14.7	3,245	62.5	890	60.8	6,043	30.8	2,565	22.7	1,936	47.5
8,520	31.7	1,908	14.7	3,245	62.5	890	60.8	6,043	30.8	2,567	22.8	1,936	47.5
8,525	31.8	1,913	14.8	3,246	62.5	891	60.8	6,050	30.8	2,571	22.8	1,937	47.5
8,530	31.8	1,913	14.8	3,246	62.5	891	60.8	6,050	30.8	2,576	22.8	1,939	47.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2016년 8월 원자료 및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6년 6월 원자료

[부 표] 최저임금 영향률

최저임금		전체 근로자(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민간부문 임금근로자(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시급	인상률	상용		임시		일용		전체		5명 이상		4명 이하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8,535	31.9	1,913	14.8	3,246	62.5	891	60.8	6,050	30.8	2,581	22.9	1,941	47.6
8,540	32.0	1,913	14.8	3,247	62.5	891	60.8	6,051	30.8	2,588	23.0	1,942	47.6
8,545	32.1	1,913	14.8	3,247	62.5	891	60.8	6,051	30.8	2,593	23.0	1,942	47.6
8,550	32.1	1,915	14.8	3,248	62.5	891	60.8	6,054	30.8	2,595	23.0	1,942	47.6
8,555	32.2	1,915	14.8	3,248	62.5	891	60.8	6,054	30.8	2,597	23.0	1,943	47.6
8,560	32.3	1,917	14.8	3,248	62.5	891	60.8	6,055	30.9	2,601	23.1	1,943	47.7
8,565	32.4	1,917	14.8	3,248	62.5	891	60.8	6,056	30.9	2,608	23.1	1,947	47.8
8,570	32.5	1,917	14.8	3,248	62.5	891	60.8	6,056	30.9	2,612	23.2	1,948	47.8
8,575	32.5	1,919	14.8	3,248	62.5	891	60.8	6,058	30.9	2,613	23.2	1,948	47.8
8,580	32.6	1,964	15.1	3,273	63.0	900	61.5	6,137	31.3	2,617	23.2	1,949	47.8
8,585	32.7	1,964	15.1	3,273	63.0	900	61.5	6,137	31.3	2,620	23.2	1,949	47.8
8,590	32.8	1,964	15.1	3,273	63.0	900	61.5	6,137	31.3	2,623	23.3	1,949	47.8
8,595	32.8	1,965	15.2	3,273	63.0	900	61.5	6,138	31.3	2,627	23.3	1,950	47.8
8,600	32.9	1,965	15.2	3,273	63.0	900	61.5	6,138	31.3	2,629	23.3	1,950	47.8
8,605	33.0	1,965	15.2	3,273	63.0	900	61.5	6,138	31.3	2,631	23.3	1,951	47.8
8,610	33.1	1,970	15.2	3,276	63.0	904	61.7	6,150	31.3	2,635	23.4	1,951	47.9
8,615	33.2	1,970	15.2	3,276	63.0	904	61.7	6,150	31.3	2,639	23.4	1,951	47.9
8,620	33.2	1,970	15.2	3,276	63.0	904	61.7	6,150	31.3	2,643	23.4	1,953	47.9
8,625	33.3	1,970	15.2	3,276	63.0	904	61.7	6,150	31.3	2,711	24.0	2,009	49.3
8,630	33.4	1,971	15.2	3,276	63.0	904	61.7	6,150	31.3	2,712	24.0	2,010	49.3
8,635	33.5	1,971	15.2	3,276	63.0	904	61.7	6,150	31.3	2,714	24.1	2,010	49.3
8,640	33.5	1,987	15.3	3,282	63.2	904	61.8	6,173	31.5	2,718	24.1	2,010	49.3
8,645	33.6	1,987	15.3	3,282	63.2	904	61.8	6,173	31.5	2,721	24.1	2,010	49.3
8,650	33.7	1,988	15.3	3,282	63.2	904	61.8	6,174	31.5	2,724	24.2	2,010	49.3
8,655	33.8	1,988	15.3	3,282	63.2	904	61.8	6,174	31.5	2,725	24.2	2,010	49.3
8,660	33.8	1,988	15.3	3,282	63.2	904	61.8	6,174	31.5	2,728	24.2	2,011	49.3
8,665	33.9	1,988	15.3	3,282	63.2	904	61.8	6,174	31.5	2,732	24.2	2,011	49.3
8,670	34.0	2,018	15.6	3,293	63.4	905	61.8	6,217	31.7	2,736	24.3	2,012	49.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2016년 8월 원자료 및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6년 6월 원자료

최저임금	전체근로자(경제활동인구가조사)						민간부문 임금근로자(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상용		임시		일용		전체		5명 이상		4명 이하		전체		
시급	인상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8,675	34.1	2,018	15.6	3,294	63.4	905	61.8	6,217	31.7	2,740	24.3	2,013	49.4	4,753	31.0
8,680	34.2	2,018	15.6	3,294	63.4	905	61.8	6,217	31.7	2,741	24.3	2,014	49.4	4,755	31.0
8,685	34.2	2,018	15.6	3,294	63.4	905	61.8	6,217	31.7	2,744	24.3	2,014	49.4	4,757	31.0
8,690	34.3	2,019	15.6	3,294	63.4	905	61.8	6,218	31.7	2,752	24.4	2,015	49.4	4,767	31.0
8,695	34.4	2,019	15.6	3,294	63.4	905	61.8	6,218	31.7	2,758	24.5	2,016	49.4	4,774	31.1
8,700	34.5	2,022	15.6	3,296	63.4	905	61.8	6,223	31.7	2,761	24.5	2,016	49.5	4,777	31.1
8,705	34.5	2,024	15.6	3,296	63.4	905	61.8	6,225	31.7	2,764	24.5	2,017	49.5	4,781	31.1
8,710	34.6	2,026	15.6	3,296	63.4	905	61.8	6,227	31.7	2,767	24.5	2,019	49.5	4,786	31.2
8,715	34.7	2,026	15.6	3,296	63.4	905	61.8	6,227	31.7	2,770	24.6	2,019	49.5	4,789	31.2
8,720	34.8	2,026	15.6	3,297	63.4	907	62.0	6,230	31.7	2,774	24.6	2,021	49.6	4,795	31.2
8,725	34.9	2,026	15.6	3,297	63.4	907	62.0	6,231	31.7	2,778	24.6	2,022	49.6	4,799	31.3
8,730	34.9	2,026	15.6	3,297	63.4	907	62.0	6,231	31.7	2,782	24.7	2,022	49.6	4,804	31.3
8,735	35.0	2,026	15.6	3,297	63.4	907	62.0	6,231	31.7	2,784	24.7	2,023	49.6	4,807	31.3
8,740	35.1	2,036	15.7	3,312	63.7	909	62.1	6,256	31.9	2,788	24.7	2,025	49.7	4,813	31.3
8,745	35.2	2,036	15.7	3,312	63.7	909	62.1	6,256	31.9	2,791	24.7	2,025	49.7	4,816	31.4
8,750	35.2	2,036	15.7	3,312	63.7	909	62.1	6,256	31.9	2,797	24.8	2,026	49.7	4,824	31.4
8,755	35.3	2,037	15.7	3,312	63.7	909	62.1	6,258	31.9	2,801	24.8	2,027	49.7	4,827	31.4
8,760	35.4	2,041	15.7	3,312	63.7	909	62.1	6,262	31.9	2,803	24.9	2,029	49.8	4,832	31.5
8,765	35.5	2,042	15.7	3,312	63.7	909	62.1	6,263	31.9	2,807	24.9	2,031	49.8	4,838	31.5
8,770	35.5	2,042	15.7	3,312	63.7	909	62.1	6,263	31.9	2,810	24.9	2,032	49.8	4,842	31.5
8,775	35.6	2,042	15.7	3,312	63.7	909	62.1	6,263	31.9	2,813	24.9	2,032	49.8	4,845	31.6
8,780	35.7	2,042	15.7	3,312	63.7	909	62.1	6,263	31.9	2,818	25.0	2,033	49.9	4,851	31.6
8,785	35.8	2,044	15.8	3,313	63.7	909	62.1	6,265	31.9	2,820	25.0	2,033	49.9	4,853	31.6
8,790	35.9	2,044	15.8	3,313	63.7	909	62.1	6,265	31.9	2,823	25.0	2,034	49.9	4,857	31.6
8,795	35.9	2,045	15.8	3,313	63.7	909	62.1	6,267	31.9	2,826	25.1	2,034	49.9	4,860	31.7
8,800	36.0	2,046	15.8	3,313	63.7	909	62.1	6,268	31.9	2,837	25.2	2,046	50.2	4,883	31.8
8,805	36.1	2,046	15.8	3,313	63.8	909	62.1	6,268	31.9	2,842	25.2	2,046	50.2	4,888	31.8
8,810	36.2	2,047	15.8	3,314	63.8	909	62.1	6,270	31.9	2,848	25.3	2,049	50.3	4,897	31.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2016년 8월 원자료 및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6년 6월 원자료

[부 표] 최저임금 영향률

최저임금		전체 근로자(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민간부문 임금근로자(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시급	인상률	상용		임시		일용		전체		5명 이상		4명 이하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8,815	36.2	2,047	15.8	3,314	63.8	909	62.1	6,270	31.9	2,849	25.3	2,049	50.3
8,820	36.3	2,048	15.8	3,315	63.8	909	62.1	6,272	32.0	2,853	25.3	2,050	50.3
8,825	36.4	2,048	15.8	3,315	63.8	909	62.1	6,272	32.0	2,875	25.5	2,065	50.6
8,830	36.5	2,073	16.0	3,327	64.0	915	62.5	6,315	32.2	2,877	25.5	2,065	50.7
8,835	36.6	2,073	16.0	3,327	64.0	915	62.5	6,315	32.2	2,882	25.6	2,067	50.7
8,840	36.6	2,073	16.0	3,327	64.0	915	62.5	6,315	32.2	2,883	25.6	2,067	50.7
8,845	36.7	2,075	16.0	3,327	64.0	915	62.5	6,317	32.2	2,888	25.6	2,067	50.7
8,850	36.8	2,075	16.0	3,327	64.0	915	62.5	6,317	32.2	2,893	25.7	2,074	50.9
8,855	36.9	2,079	16.0	3,334	64.2	917	62.6	6,330	32.2	2,898	25.7	2,075	50.9
8,860	36.9	2,079	16.0	3,334	64.2	917	62.6	6,330	32.2	2,901	25.7	2,076	50.9
8,865	37.0	2,079	16.0	3,335	64.2	917	62.6	6,330	32.3	2,903	25.7	2,076	50.9
8,870	37.1	2,080	16.0	3,336	64.2	917	62.6	6,333	32.3	2,906	25.8	2,077	50.9
8,875	37.2	2,080	16.0	3,336	64.2	917	62.6	6,333	32.3	2,914	25.8	2,083	51.1
8,880	37.2	2,080	16.0	3,336	64.2	917	62.6	6,333	32.3	2,917	25.9	2,083	51.1
8,885	37.3	2,080	16.0	3,336	64.2	917	62.6	6,333	32.3	2,920	25.9	2,084	51.1
8,890	37.4	2,080	16.0	3,336	64.2	917	62.6	6,333	32.3	2,923	25.9	2,084	51.1
8,895	37.5	2,080	16.0	3,336	64.2	917	62.6	6,333	32.3	2,926	25.9	2,085	51.1
8,900	37.6	2,081	16.1	3,336	64.2	918	62.7	6,335	32.3	2,929	26.0	2,085	51.1
8,905	37.6	2,081	16.1	3,336	64.2	918	62.7	6,335	32.3	2,932	26.0	2,086	51.2
8,910	37.7	2,082	16.1	3,336	64.2	918	62.7	6,336	32.3	2,935	26.0	2,087	51.2
8,915	37.8	2,082	16.1	3,337	64.2	918	62.7	6,337	32.3	2,943	26.1	2,087	51.2
8,920	37.9	2,082	16.1	3,337	64.2	918	62.7	6,337	32.3	2,944	26.1	2,088	51.2
8,925	37.9	2,082	16.1	3,337	64.2	918	62.7	6,337	32.3	2,949	26.1	2,088	51.2
8,930	38.0	2,082	16.1	3,337	64.2	918	62.7	6,337	32.3	2,954	26.2	2,088	51.2
8,935	38.1	2,082	16.1	3,337	64.2	918	62.7	6,337	32.3	2,971	26.3	2,095	51.4
8,940	38.2	2,602	20.1	3,571	68.7	988	67.5	7,161	36.5	2,974	26.4	2,096	51.4
8,945	38.3	2,602	20.1	3,571	68.7	988	67.5	7,161	36.5	2,976	26.4	2,096	51.4
8,950	38.3	2,602	20.1	3,571	68.7	988	67.5	7,161	36.5	2,979	26.4	2,097	51.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2016년 8월 원자료 및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6년 6월 원자료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주요 노동·경제 지표 분석

최저임금		전체근로자(경제활동인구가조사)						민간부문 임금근로자(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시급	인상률	상용		임시		일용		전체		5명 이상		4명 이하		전체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8,955	38.4	2,604	20.1	3,571	68.7	988	67.5	7,163	36.5	2,983	26.5	2,097	51.4	5,080	33.1
8,960	38.5	2,604	20.1	3,571	68.7	988	67.5	7,163	36.5	2,994	26.5	2,108	51.7	5,102	33.2
8,965	38.6	2,604	20.1	3,571	68.7	988	67.5	7,163	36.5	2,996	26.6	2,109	51.7	5,105	33.2
8,970	38.6	2,604	20.1	3,571	68.7	988	67.5	7,163	36.5	3,000	26.6	2,111	51.8	5,111	33.3
8,975	38.7	2,604	20.1	3,571	68.7	988	67.5	7,163	36.5	3,001	26.6	2,111	51.8	5,112	33.3
8,980	38.8	2,604	20.1	3,571	68.7	988	67.5	7,163	36.5	3,005	26.6	2,112	51.8	5,117	33.3
8,985	38.9	2,604	20.1	3,571	68.7	988	67.5	7,163	36.5	3,008	26.7	2,113	51.8	5,121	33.4
8,990	38.9	2,605	20.1	3,571	68.7	988	67.5	7,164	36.5	3,011	26.7	2,113	51.8	5,124	33.4
8,995	39.0	2,606	20.1	3,571	68.7	988	67.5	7,165	36.5	3,019	26.8	2,114	51.9	5,133	33.4
9,000	39.1	2,607	20.1	3,571	68.7	988	67.5	7,166	36.5	3,027	26.8	2,121	52.0	5,148	33.5
9,005	39.2	2,631	20.3	3,584	69.0	992	67.7	7,206	36.7	3,031	26.9	2,122	52.0	5,152	33.6
9,010	39.3	2,631	20.3	3,584	69.0	992	67.7	7,206	36.7	3,034	26.9	2,122	52.0	5,156	33.6
9,015	39.3	2,631	20.3	3,584	69.0	992	67.7	7,206	36.7	3,039	27.0	2,122	52.1	5,162	33.6
9,020	39.4	2,631	20.3	3,584	69.0	992	67.7	7,206	36.7	3,042	27.0	2,123	52.1	5,165	33.6
9,025	39.5	2,632	20.3	3,584	69.0	992	67.7	7,207	36.7	3,045	27.0	2,123	52.1	5,168	33.7
9,030	39.6	2,633	20.3	3,585	69.0	992	67.7	7,210	36.7	3,048	27.0	2,124	52.1	5,172	33.7
9,035	39.6	2,633	20.3	3,585	69.0	992	67.7	7,210	36.7	3,051	27.1	2,124	52.1	5,176	33.7
9,040	39.7	2,633	20.3	3,585	69.0	992	67.7	7,210	36.7	3,056	27.1	2,126	52.1	5,182	33.7
9,045	39.8	2,633	20.3	3,585	69.0	992	67.7	7,210	36.7	3,059	27.1	2,127	52.2	5,186	33.8
9,050	39.9	2,633	20.3	3,585	69.0	992	67.7	7,210	36.7	3,060	27.1	2,127	52.2	5,187	33.8
9,055	40.0	2,633	20.3	3,585	69.0	992	67.7	7,210	36.7	3,063	27.2	2,127	52.2	5,191	33.8
9,060	40.0	2,646	20.4	3,593	69.1	996	68.0	7,235	36.9	3,083	27.3	2,141	52.5	5,224	34.0
9,065	40.1	2,646	20.4	3,593	69.1	996	68.0	7,235	36.9	3,086	27.4	2,141	52.5	5,227	34.0
9,070	40.2	2,646	20.4	3,593	69.1	996	68.0	7,235	36.9	3,089	27.4	2,141	52.5	5,231	34.1
9,075	40.3	2,646	20.4	3,593	69.1	996	68.0	7,235	36.9	3,093	27.4	2,142	52.5	5,235	34.1
9,080	40.3	2,647	20.4	3,596	69.2	997	68.1	7,241	36.9	3,095	27.4	2,142	52.5	5,236	34.1
9,085	40.4	2,647	20.4	3,596	69.2	997	68.1	7,241	36.9	3,098	27.5	2,142	52.5	5,240	34.1
9,090	40.5	2,648	20.4	3,597	69.2	997	68.1	7,242	36.9	3,102	27.5	2,142	52.5	5,244	34.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가조사」, 2016년 8월 원자료 및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6년 6월 원자료

[부 표] 최저임금 영향률

최저임금		전체근로자(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민간부문 임금근로자(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시급	인상률	상용		임시		일용		전체		5명 이상		4명 이하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9,095	40.6	2,648	20.4	3,597	69.2	997	68.1	7,242	36.9	3,106	27.5	2,143	52.6
9,100	40.6	2,651	20.4	3,597	69.2	997	68.1	7,245	36.9	3,109	27.6	2,144	52.6
9,105	40.7	2,651	20.4	3,597	69.2	997	68.1	7,246	36.9	3,111	27.6	2,144	52.6
9,110	40.8	2,651	20.4	3,597	69.2	997	68.1	7,246	36.9	3,114	27.6	2,146	52.6
9,115	40.9	2,651	20.4	3,597	69.2	997	68.1	7,246	36.9	3,116	27.6	2,146	52.6
9,120	41.0	2,654	20.5	3,597	69.2	997	68.1	7,248	36.9	3,125	27.7	2,149	52.7
9,125	41.0	2,654	20.5	3,598	69.2	997	68.1	7,250	36.9	3,129	27.7	2,149	52.7
9,130	41.1	2,655	20.5	3,599	69.3	997	68.1	7,252	36.9	3,131	27.8	2,149	52.7
9,135	41.2	2,655	20.5	3,599	69.3	997	68.1	7,252	36.9	3,134	27.8	2,150	52.7
9,140	41.3	2,655	20.6	3,609	69.4	997	68.1	7,271	37.0	3,136	27.8	2,150	52.7
9,145	41.3	2,655	20.6	3,609	69.4	997	68.1	7,271	37.0	3,139	27.8	2,150	52.7
9,150	41.4	2,655	20.6	3,609	69.4	997	68.1	7,271	37.0	3,143	27.9	2,150	52.7
9,155	41.5	2,655	20.6	3,609	69.4	997	68.1	7,271	37.0	3,149	27.9	2,152	52.8
9,160	41.6	2,655	20.6	3,609	69.4	997	68.1	7,271	37.0	3,152	28.0	2,153	52.8
9,165	41.7	2,656	20.6	3,609	69.4	997	68.1	7,272	37.1	3,157	28.0	2,156	52.9
9,170	41.7	2,675	20.6	3,614	69.5	999	68.2	7,288	37.1	3,162	28.0	2,156	52.9
9,175	41.8	2,675	20.6	3,614	69.5	999	68.2	7,288	37.1	3,166	28.1	2,157	52.9
9,180	41.9	2,678	20.7	3,616	69.6	999	68.2	7,293	37.2	3,171	28.1	2,157	52.9
9,185	42.0	2,679	20.7	3,616	69.6	999	68.2	7,293	37.2	3,172	28.1	2,157	52.9
9,190	42.0	2,683	20.7	3,616	69.6	999	68.2	7,297	37.2	3,175	28.2	2,159	52.9
9,195	42.1	2,684	20.7	3,616	69.6	999	68.2	7,298	37.2	3,179	28.2	2,159	53.0
9,200	42.2	2,684	20.7	3,616	69.6	999	68.2	7,299	37.2	3,186	28.3	2,169	53.2
9,205	42.3	2,684	20.7	3,616	69.6	999	68.2	7,299	37.2	3,189	28.3	2,169	53.2
9,210	42.3	2,692	20.8	3,618	69.6	999	68.2	7,308	37.2	3,192	28.3	2,170	53.2
9,215	42.4	2,692	20.8	3,618	69.6	999	68.2	7,308	37.2	3,195	28.3	2,170	53.2
9,220	42.5	2,692	20.8	3,618	69.6	999	68.2	7,308	37.2	3,198	28.4	2,171	53.3
9,225	42.6	2,693	20.8	3,618	69.6	999	68.2	7,309	37.2	3,201	28.4	2,172	53.3
9,230	42.7	2,693	20.8	3,618	69.6	999	68.2	7,309	37.2	3,204	28.4	2,172	53.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2016년 8월 원자료 및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6년 6월 원자료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주요 노동·경제 지표 분석

최저임금		전체 근로자(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민간부문 임금근로자(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시급	인상률	상용		임시		일용		전체		5명 이상		4명 이하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9,235	42.7	2,712	20.9	3,625	69.8	1,000	68.3	7,336	37.4	3,209	28.5	2,172	53.3
9,240	42.8	2,712	20.9	3,625	69.8	1,000	68.3	7,336	37.4	3,211	28.5	2,172	53.3
9,245	42.9	2,712	20.9	3,625	69.8	1,000	68.3	7,337	37.4	3,306	29.3	2,257	55.3
9,250	43.0	2,713	20.9	3,625	69.8	1,000	68.3	7,337	37.4	3,308	29.3	2,257	55.3
9,255	43.0	2,713	20.9	3,625	69.8	1,000	68.3	7,337	37.4	3,313	29.4	2,257	55.4
9,260	43.1	2,713	20.9	3,625	69.8	1,000	68.3	7,337	37.4	3,316	29.4	2,257	55.4
9,265	43.2	2,713	20.9	3,625	69.8	1,000	68.3	7,337	37.4	3,318	29.4	2,258	55.4
9,270	43.3	2,720	21.0	3,631	69.9	1,002	68.5	7,354	37.5	3,322	29.5	2,259	55.4
9,275	43.4	2,720	21.0	3,631	69.9	1,002	68.5	7,354	37.5	3,325	29.5	2,259	55.4
9,280	43.4	2,720	21.0	3,631	69.9	1,002	68.5	7,354	37.5	3,329	29.5	2,260	55.4
9,285	43.5	2,721	21.0	3,631	69.9	1,002	68.5	7,354	37.5	3,334	29.6	2,260	55.4
9,290	43.6	2,721	21.0	3,631	69.9	1,002	68.5	7,354	37.5	3,336	29.6	2,261	55.5
9,295	43.7	2,730	21.1	3,634	69.9	1,003	68.5	7,367	37.5	3,339	29.6	2,262	55.5
9,300	43.7	2,731	21.1	3,634	69.9	1,003	68.5	7,369	37.5	3,342	29.6	2,263	55.5
9,305	43.8	2,731	21.1	3,634	69.9	1,003	68.5	7,369	37.5	3,349	29.7	2,264	55.5
9,310	43.9	2,737	21.1	3,634	69.9	1,004	68.5	7,375	37.6	3,352	29.7	2,265	55.5
9,315	44.0	2,737	21.1	3,634	69.9	1,004	68.5	7,375	37.6	3,369	29.9	2,286	56.1
9,320	44.0	2,737	21.1	3,634	69.9	1,004	68.5	7,375	37.6	3,369	29.9	2,286	56.1
9,325	44.1	2,737	21.1	3,634	69.9	1,004	68.5	7,375	37.6	3,371	29.9	2,286	56.1
9,330	44.2	2,740	21.1	3,634	69.9	1,004	68.6	7,379	37.6	3,375	29.9	2,287	56.1
9,335	44.3	2,741	21.1	3,634	69.9	1,004	68.6	7,380	37.6	3,378	30.0	2,287	56.1
9,340	44.4	2,741	21.1	3,634	69.9	1,004	68.6	7,380	37.6	3,381	30.0	2,288	56.1
9,345	44.4	2,744	21.2	3,634	69.9	1,004	68.6	7,383	37.6	3,383	30.0	2,288	56.1
9,350	44.5	2,748	21.2	3,634	69.9	1,004	68.6	7,387	37.6	3,385	30.0	2,288	56.1
9,355	44.6	2,751	21.2	3,635	69.9	1,004	68.6	7,390	37.7	3,389	30.1	2,289	56.1
9,360	44.7	2,751	21.2	3,635	69.9	1,004	68.6	7,390	37.7	3,392	30.1	2,290	56.2
9,365	44.7	2,755	21.2	3,635	70.0	1,005	68.6	7,395	37.7	3,400	30.1	2,291	56.2
9,370	44.8	2,755	21.2	3,635	70.0	1,005	68.6	7,395	37.7	3,401	30.2	2,292	56.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2016년 8월 원자료 및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6년 6월 원자료

[부 표] 최저임금 영향률

최저임금		전체 근로자(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민간부문 임금근로자(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시급	인상률	상용		임시		일용		전체		5명 이상		4명 이하		전체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9,375	44.9	2,757	21.3	3,637	70.0	1,005	68.6	7,399	37.7	3,404	30.2	2,292	56.2	5,696	37.1
9,380	45.0	2,757	21.3	3,637	70.0	1,005	68.6	7,399	37.7	3,408	30.2	2,293	56.2	5,700	37.1
9,385	45.1	2,758	21.3	3,638	70.0	1,005	68.6	7,400	37.7	3,410	30.2	2,293	56.2	5,703	37.1
9,390	45.1	2,758	21.3	3,638	70.0	1,005	68.6	7,401	37.7	3,413	30.3	2,293	56.2	5,706	37.2
9,395	45.2	2,758	21.3	3,641	70.1	1,005	68.6	7,403	37.7	3,415	30.3	2,294	56.3	5,708	37.2
9,400	45.3	2,758	21.3	3,641	70.1	1,005	68.6	7,404	37.7	3,419	30.3	2,294	56.3	5,714	37.2
9,405	45.4	2,758	21.3	3,641	70.1	1,005	68.6	7,404	37.7	3,422	30.3	2,295	56.3	5,716	37.2
9,410	45.4	2,762	21.3	3,643	70.1	1,006	68.7	7,411	37.8	3,434	30.5	2,303	56.5	5,737	37.4
9,415	45.5	2,769	21.4	3,645	70.1	1,006	68.7	7,419	37.8	3,437	30.5	2,303	56.5	5,741	37.4
9,420	45.6	2,769	21.4	3,645	70.1	1,006	68.7	7,419	37.8	3,441	30.5	2,304	56.5	5,745	37.4
9,425	45.7	2,770	21.4	3,645	70.1	1,006	68.7	7,420	37.8	3,442	30.5	2,304	56.5	5,746	37.4
9,430	45.7	2,770	21.4	3,646	70.2	1,006	68.7	7,422	37.8	3,449	30.6	2,305	56.5	5,754	37.5
9,435	45.8	2,777	21.4	3,651	70.3	1,008	68.8	7,435	37.9	3,452	30.6	2,305	56.5	5,757	37.5
9,440	45.9	2,777	21.4	3,651	70.3	1,008	68.8	7,435	37.9	3,455	30.6	2,306	56.5	5,760	37.5
9,445	46.0	2,777	21.4	3,651	70.3	1,008	68.8	7,435	37.9	3,458	30.7	2,306	56.6	5,764	37.5
9,450	46.1	2,777	21.4	3,651	70.3	1,008	68.8	7,435	37.9	3,459	30.7	2,307	56.6	5,766	37.6
9,455	46.1	2,778	21.4	3,651	70.3	1,008	68.8	7,436	37.9	3,466	30.7	2,310	56.7	5,776	37.6
9,460	46.2	2,778	21.4	3,652	70.3	1,009	68.9	7,439	37.9	3,469	30.8	2,310	56.7	5,779	37.6
9,465	46.3	2,779	21.4	3,652	70.3	1,009	68.9	7,440	37.9	3,473	30.8	2,311	56.7	5,783	37.7
9,470	46.4	2,779	21.4	3,652	70.3	1,009	68.9	7,440	37.9	3,475	30.8	2,311	56.7	5,787	37.7
9,475	46.4	2,779	21.4	3,652	70.3	1,009	68.9	7,440	37.9	3,477	30.8	2,312	56.7	5,789	37.7
9,480	46.5	2,781	21.4	3,652	70.3	1,009	68.9	7,442	37.9	3,482	30.9	2,313	56.7	5,795	37.7
9,485	46.6	2,781	21.4	3,652	70.3	1,009	68.9	7,442	37.9	3,484	30.9	2,313	56.7	5,797	37.8
9,490	46.7	2,782	21.5	3,652	70.3	1,009	68.9	7,443	37.9	3,492	31.0	2,316	56.8	5,808	37.8
9,495	46.8	2,782	21.5	3,652	70.3	1,009	68.9	7,443	37.9	3,495	31.0	2,316	56.8	5,811	37.8
9,500	46.8	2,782	21.5	3,652	70.3	1,009	68.9	7,443	37.9	3,498	31.0	2,317	56.8	5,815	37.9
9,505	46.9	2,782	21.5	3,652	70.3	1,009	68.9	7,443	37.9	3,500	31.0	2,317	56.8	5,817	37.9
9,510	47.0	2,782	21.5	3,652	70.3	1,009	68.9	7,443	37.9	3,503	31.1	2,318	56.9	5,821	37.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2016년 8월 원자료 및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6년 6월 원자료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주요 노동·경제 지표 분석

최저임금		전체근로자(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민간부문 임금근로자(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시급	인상률	상용		임시		일용		전체		5명 이상		4명 이하		전체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9,515	47.1	2,782	21.5	3,652	70.3	1,009	68.9	7,443	37.9	3,505	31.1	2,318	56.9	5,824	37.9
9,520	47.1	2,782	21.5	3,652	70.3	1,009	68.9	7,443	37.9	3,508	31.1	2,319	56.9	5,827	38.0
9,525	47.2	2,782	21.5	3,652	70.3	1,009	68.9	7,443	37.9	3,512	31.1	2,321	56.9	5,833	38.0
9,530	47.3	2,782	21.5	3,652	70.3	1,009	68.9	7,443	37.9	3,514	31.2	2,322	56.9	5,836	38.0
9,535	47.4	3,150	24.3	3,842	73.9	1,066	72.8	8,058	41.1	3,518	31.2	2,322	57.0	5,840	38.0
9,540	47.4	3,150	24.3	3,842	73.9	1,066	72.8	8,058	41.1	3,520	31.2	2,323	57.0	5,843	38.1
9,545	47.5	3,150	24.3	3,842	73.9	1,066	72.8	8,058	41.1	3,523	31.2	2,323	57.0	5,846	38.1
9,550	47.6	3,150	24.3	3,842	73.9	1,066	72.8	8,058	41.1	3,538	31.4	2,326	57.1	5,864	38.2
9,555	47.7	3,150	24.3	3,842	73.9	1,066	72.8	8,058	41.1	3,540	31.4	2,328	57.1	5,868	38.2
9,560	47.8	3,150	24.3	3,842	73.9	1,066	72.8	8,058	41.1	3,543	31.4	2,328	57.1	5,871	38.2
9,565	47.8	3,150	24.3	3,842	73.9	1,066	72.8	8,058	41.1	3,548	31.5	2,331	57.2	5,879	38.3
9,570	47.9	3,150	24.3	3,842	73.9	1,066	72.8	8,058	41.1	3,552	31.5	2,332	57.2	5,883	38.3
9,575	48.0	3,150	24.3	3,842	73.9	1,066	72.8	8,058	41.1	3,556	31.5	2,333	57.2	5,888	38.3
9,580	48.1	3,150	24.3	3,842	73.9	1,066	72.8	8,058	41.1	3,557	31.5	2,333	57.2	5,890	38.4
9,585	48.1	3,150	24.3	3,842	73.9	1,066	72.8	8,058	41.1	3,560	31.6	2,335	57.3	5,895	38.4
9,590	48.2	3,150	24.3	3,842	73.9	1,066	72.8	8,058	41.1	3,564	31.6	2,335	57.3	5,899	38.4
9,595	48.3	3,150	24.3	3,842	73.9	1,066	72.8	8,058	41.1	3,566	31.6	2,335	57.3	5,902	38.4
9,600	48.4	3,150	24.3	3,842	73.9	1,066	72.8	8,058	41.1	3,569	31.7	2,336	57.3	5,905	38.5
9,605	48.5	3,150	24.3	3,842	73.9	1,066	72.8	8,058	41.1	3,572	31.7	2,336	57.3	5,908	38.5
9,610	48.5	3,150	24.3	3,842	73.9	1,066	72.8	8,058	41.1	3,573	31.7	2,336	57.3	5,909	38.5
9,615	48.6	3,150	24.3	3,842	73.9	1,066	72.8	8,058	41.1	3,582	31.8	2,341	57.4	5,923	38.6
9,620	48.7	3,150	24.3	3,842	73.9	1,066	72.8	8,058	41.1	3,586	31.8	2,341	57.4	5,927	38.6
9,625	48.8	3,151	24.3	3,842	73.9	1,066	72.8	8,059	41.1	3,589	31.8	2,341	57.4	5,930	38.6
9,630	48.8	3,151	24.3	3,842	73.9	1,066	72.8	8,059	41.1	3,594	31.9	2,342	57.4	5,935	38.7
9,635	48.9	3,151	24.3	3,842	73.9	1,066	72.8	8,059	41.1	3,595	31.9	2,342	57.4	5,937	38.7
9,640	49.0	3,151	24.3	3,842	73.9	1,066	72.8	8,059	41.1	3,598	31.9	2,342	57.4	5,941	38.7
9,645	49.1	3,152	24.3	3,843	74.0	1,066	72.8	8,061	41.1	3,602	31.9	2,342	57.5	5,944	38.7
9,650	49.1	3,153	24.3	3,844	74.0	1,066	72.8	8,063	41.1	3,605	32.0	2,343	57.5	5,948	38.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2016년 8월 원자료 및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6년 6월 원자료

[부 표] 최저임금 영향률

최저임금		전체근로자(경제활동인구가조사)						민간부문 임금근로자(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시급	인상률	상용		임시		일용		전체		5명 이상		4명 이하		전체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9,655	49.2	3,161	24.4	3,844	74.0	1,066	72.8	8,071	41.1	3,620	32.1	2,344	57.5	5,964	38.8
9,660	49.3	3,161	24.4	3,844	74.0	1,066	72.8	8,071	41.1	3,634	32.2	2,348	57.6	5,982	39.0
9,665	49.4	3,162	24.4	3,845	74.0	1,066	72.8	8,073	41.1	3,635	32.2	2,348	57.6	5,983	39.0
9,670	49.5	3,162	24.4	3,845	74.0	1,066	72.8	8,073	41.1	3,638	32.3	2,349	57.6	5,987	39.0
9,675	49.5	3,162	24.4	3,845	74.0	1,066	72.8	8,073	41.1	3,645	32.3	2,350	57.6	5,994	39.0
9,680	49.6	3,162	24.4	3,845	74.0	1,066	72.8	8,073	41.1	3,647	32.3	2,350	57.6	5,997	39.1
9,685	49.7	3,168	24.4	3,846	74.0	1,067	72.9	8,081	41.2	3,649	32.4	2,350	57.6	5,999	39.1
9,690	49.8	3,168	24.4	3,846	74.0	1,067	72.9	8,081	41.2	3,651	32.4	2,350	57.6	6,001	39.1
9,695	49.8	3,168	24.4	3,848	74.1	1,067	72.9	8,083	41.2	3,653	32.4	2,351	57.7	6,004	39.1
9,700	49.9	3,168	24.4	3,848	74.1	1,067	72.9	8,083	41.2	3,656	32.4	2,351	57.7	6,007	39.1
9,705	50.0	3,168	24.4	3,848	74.1	1,067	72.9	8,083	41.2	3,676	32.6	2,369	58.1	6,044	39.4
9,710	50.1	3,170	24.5	3,854	74.2	1,069	73.0	8,093	41.2	3,678	32.6	2,369	58.1	6,048	39.4
9,715	50.2	3,172	24.5	3,854	74.2	1,069	73.0	8,095	41.2	3,680	32.6	2,370	58.1	6,049	39.4
9,720	50.2	3,172	24.5	3,854	74.2	1,069	73.0	8,095	41.2	3,682	32.7	2,370	58.1	6,052	39.4
9,725	50.3	3,172	24.5	3,854	74.2	1,069	73.0	8,095	41.2	3,686	32.7	2,370	58.1	6,056	39.4
9,730	50.4	3,174	24.5	3,857	74.2	1,069	73.0	8,099	41.3	3,688	32.7	2,370	58.1	6,058	39.5
9,735	50.5	3,175	24.5	3,857	74.2	1,069	73.0	8,101	41.3	3,693	32.8	2,373	58.2	6,067	39.5
9,740	50.5	3,175	24.5	3,857	74.2	1,069	73.0	8,101	41.3	3,695	32.8	2,373	58.2	6,068	39.5
9,745	50.6	3,175	24.5	3,857	74.2	1,069	73.0	8,101	41.3	3,697	32.8	2,374	58.2	6,071	39.5
9,750	50.7	3,197	24.7	3,862	74.3	1,070	73.0	8,129	41.4	3,700	32.8	2,374	58.2	6,074	39.6
9,755	50.8	3,197	24.7	3,862	74.3	1,070	73.0	8,129	41.4	3,705	32.9	2,375	58.2	6,080	39.6
9,760	50.9	3,197	24.7	3,862	74.3	1,070	73.0	8,129	41.4	3,709	32.9	2,375	58.2	6,084	39.6
9,765	50.9	3,197	24.7	3,862	74.3	1,070	73.0	8,129	41.4	3,712	32.9	2,375	58.3	6,087	39.6
9,770	51.0	3,197	24.7	3,862	74.3	1,070	73.0	8,129	41.4	3,713	32.9	2,375	58.3	6,088	39.7
9,775	51.1	3,198	24.7	3,862	74.3	1,070	73.0	8,130	41.4	3,716	33.0	2,378	58.3	6,094	39.7
9,780	51.2	3,200	24.7	3,862	74.3	1,070	73.0	8,132	41.4	3,719	33.0	2,378	58.3	6,097	39.7
9,785	51.2	3,200	24.7	3,862	74.3	1,070	73.0	8,132	41.4	3,721	33.0	2,379	58.4	6,101	39.7
9,790	51.3	3,200	24.7	3,863	74.3	1,070	73.0	8,133	41.4	3,724	33.0	2,380	58.4	6,103	39.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가조사」, 2016년 8월 원자료 및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6년 6월 원자료

최저임금	친체근로자(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민간부문 임금근로자(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시급	인상률	상용		임시		일용		전체		5명 이상		4명 이하		전체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9,795	51.4	3,200	24.7	3,863	74.3	1,070	73.0	8,133	41.4	3,725	33.0	2,380	58.4	6,105	39.8
9,800	51.5	3,204	24.7	3,863	74.3	1,070	73.0	8,137	41.5	3,730	33.1	2,381	58.4	6,110	39.8
9,805	51.5	3,206	24.7	3,863	74.3	1,070	73.0	8,138	41.5	3,732	33.1	2,381	58.4	6,113	39.8
9,810	51.6	3,206	24.7	3,863	74.3	1,070	73.0	8,139	41.5	3,735	33.1	2,382	58.4	6,117	39.8
9,815	51.7	3,206	24.7	3,864	74.4	1,070	73.0	8,140	41.5	3,738	33.1	2,382	58.4	6,120	39.9
9,820	51.8	3,207	24.7	3,864	74.4	1,070	73.0	8,140	41.5	3,739	33.2	2,382	58.4	6,120	39.9
9,825	51.9	3,207	24.7	3,864	74.4	1,070	73.0	8,140	41.5	3,742	33.2	2,382	58.4	6,124	39.9
9,830	51.9	3,207	24.7	3,864	74.4	1,070	73.0	8,140	41.5	3,745	33.2	2,382	58.4	6,128	39.9
9,835	52.0	3,236	25.0	3,873	74.5	1,071	73.2	8,181	41.7	3,754	33.3	2,388	58.6	6,142	40.0
9,840	52.1	3,236	25.0	3,873	74.5	1,071	73.2	8,181	41.7	3,757	33.3	2,388	58.6	6,145	40.0
9,845	52.2	3,236	25.0	3,873	74.5	1,071	73.2	8,181	41.7	3,760	33.3	2,389	58.6	6,149	40.0
9,850	52.2	3,236	25.0	3,873	74.5	1,071	73.2	8,181	41.7	3,761	33.3	2,389	58.6	6,150	40.1
9,855	52.3	3,239	25.0	3,873	74.5	1,071	73.2	8,183	41.7	3,763	33.4	2,389	58.6	6,152	40.1
9,860	52.4	3,239	25.0	3,873	74.5	1,071	73.2	8,183	41.7	3,811	33.8	2,434	59.7	6,245	40.7
9,865	52.5	3,239	25.0	3,873	74.5	1,071	73.2	8,183	41.7	3,814	33.8	2,434	59.7	6,248	40.7
9,870	52.6	3,240	25.0	3,873	74.5	1,071	73.2	8,184	41.7	3,818	33.9	2,435	59.7	6,253	40.7
9,875	52.6	3,240	25.0	3,873	74.5	1,072	73.2	8,185	41.7	3,820	33.9	2,435	59.7	6,255	40.7
9,880	52.7	3,240	25.0	3,873	74.5	1,072	73.2	8,185	41.7	3,823	33.9	2,435	59.7	6,258	40.8
9,885	52.8	3,240	25.0	3,873	74.5	1,072	73.2	8,185	41.7	3,827	33.9	2,435	59.7	6,262	40.8
9,890	52.9	3,240	25.0	3,873	74.5	1,072	73.2	8,185	41.7	3,829	34.0	2,436	59.7	6,265	40.8
9,895	52.9	3,246	25.0	3,874	74.5	1,072	73.2	8,191	41.7	3,832	34.0	2,436	59.7	6,268	40.8
9,900	53.0	3,246	25.0	3,874	74.5	1,072	73.2	8,191	41.7	3,837	34.0	2,436	59.8	6,274	40.9
9,905	53.1	3,246	25.0	3,874	74.5	1,072	73.2	8,191	41.7	3,840	34.1	2,436	59.8	6,276	40.9
9,910	53.2	3,246	25.0	3,874	74.5	1,072	73.2	8,191	41.7	3,843	34.1	2,437	59.8	6,280	40.9
9,915	53.2	3,246	25.0	3,874	74.5	1,072	73.2	8,191	41.7	3,846	34.1	2,437	59.8	6,283	40.9
9,920	53.3	3,246	25.0	3,874	74.5	1,072	73.2	8,191	41.7	3,851	34.2	2,438	59.8	6,289	41.0
9,925	53.4	3,247	25.0	3,874	74.5	1,072	73.2	8,193	41.7	3,854	34.2	2,438	59.8	6,292	41.0
9,930	53.5	3,247	25.0	3,874	74.5	1,072	73.2	8,193	41.7	3,855	34.2	2,438	59.8	6,294	41.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2016년 8월 원자료 및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6년 6월 원자료

최저임금		전체근로자(경제활동인구가조사)						민간부문 임금근로자(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시급	인상률	상용		임시		일용		전체		5명 이상		4명 이하		전체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근로자수	영향률
9,935	53.6	3,384	26.1	3,967	76.3	1,101	75.2	8,452	43.1	3,862	34.2	2,439	59.8	6,301	41.0
9,940	53.6	3,384	26.1	3,967	76.3	1,101	75.2	8,452	43.1	3,866	34.3	2,441	59.9	6,307	41.1
9,945	53.7	3,384	26.1	3,967	76.3	1,101	75.2	8,452	43.1	3,869	34.3	2,441	59.9	6,310	41.1
9,950	53.8	3,387	26.1	3,968	76.4	1,101	75.2	8,456	43.1	3,873	34.3	2,442	59.9	6,315	41.1
9,955	53.9	3,387	26.1	3,968	76.4	1,101	75.2	8,456	43.1	3,885	34.5	2,463	60.4	6,348	41.3
9,960	53.9	3,387	26.1	3,968	76.4	1,101	75.2	8,456	43.1	3,888	34.5	2,463	60.4	6,351	41.4
9,965	54.0	3,387	26.1	3,968	76.4	1,101	75.2	8,456	43.1	3,892	34.5	2,463	60.4	6,355	41.4
9,970	54.1	3,395	26.2	3,969	76.4	1,101	75.2	8,465	43.1	3,894	34.5	2,464	60.4	6,358	41.4
9,975	54.2	3,395	26.2	3,969	76.4	1,101	75.2	8,465	43.1	3,898	34.6	2,464	60.4	6,362	41.4
9,980	54.3	3,398	26.2	3,969	76.4	1,102	75.3	8,469	43.1	3,899	34.6	2,464	60.4	6,363	41.4
9,985	54.3	3,398	26.2	3,969	76.4	1,102	75.3	8,469	43.1	3,906	34.6	2,466	60.5	6,372	41.5
9,990	54.4	3,398	26.2	3,969	76.4	1,102	75.3	8,469	43.1	3,908	34.7	2,466	60.5	6,374	41.5
9,995	54.5	3,400	26.2	3,969	76.4	1,102	75.3	8,470	43.2	3,911	34.7	2,467	60.5	6,378	41.5
10,000	54.6	3,400	26.2	3,969	76.4	1,102	75.3	8,470	43.2	3,923	34.8	2,473	60.7	6,396	41.7
전체	-	12,966	-	5,196	-	1,464	-	19,627	-	11,277	-	4,077	-	15,354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가조사」, 2016년 8월 원자료 및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6년 6월 원자료

[부 록]

최신 노동·경제 지표

1. 고용
 2. 물가 및 수출입 단가
 3. 국민소득계정
 4. 실물경제
 5. 대외거래
 6. 통화·금리
 7. 경기
 8. 재정
 9. 해외지표
-

1. 고용

(천명)

	15세이상 인 구	경제활동 인 구	취업자	실업자	비 경 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 가 율	고용률 (청년고용률)	실업률 (청년실업률)
2014	42,513	26,536	25,599	937	15,977	62.4	60.2(40.7)	3.5(9.0)
2015	43,017	26,913	25,936	976	16,105	62.6	60.3(41.5)	3.6(9.2)
2016	43,416	27,247	26,235	1,012	16,169	62.8	60.4(42.3)	3.7(9.8)
2014.Ⅱ	42,452	26,767	25,790	977	15,685	63.1	60.8(40.4)	3.7(9.4)
Ⅲ	42,570	26,810	25,927	884	15,760	63.0	60.9(41.5)	3.3(8.6)
Ⅳ	42,687	26,622	25,767	854	16,066	62.4	60.4(40.6)	3.2(8.3)
2015.Ⅰ	42,826	26,356	25,267	1,089	16,469	61.5	59.0(40.8)	4.1(10.3)
Ⅱ	42,975	27,140	26,098	1,042	15,835	63.2	60.7(41.4)	3.8(9.9)
Ⅲ	43,087	27,166	26,237	929	15,921	63.0	60.9(42.1)	3.4(8.4)
Ⅳ	43,182	26,989	26,143	845	16,194	62.5	60.5(41.8)	3.1(8.0)
2016.Ⅰ	43,276	26,708	25,554	1,153	16,568	61.7	59.1(41.4)	4.3(11.3)
Ⅱ	43,385	27,415	26,387	1,028	15,970	63.2	60.8(42.5)	3.8(10.3)
Ⅲ	43,465	27,539	26,554	985	15,926	63.4	61.1(43.0)	3.6(9.3)
Ⅳ	43,537	27,327	26,446	881	16,210	62.8	60.7(42.2)	3.2(8.4)
2015. 4	42,925	26,954	25,900	1,053	15,971	62.8	60.3(41.1)	3.9(10.2)
5	42,975	27,211	26,189	1,022	15,764	63.3	60.9(41.7)	3.8(9.3)
6	43,025	27,255	26,205	1,050	15,770	63.3	60.9(41.4)	3.9(10.2)
7	43,055	27,303	26,305	998	15,751	63.4	61.1(42.4)	3.7(9.4)
8	43,086	27,064	26,141	923	16,022	62.8	60.7(42.0)	3.4(8.0)
9	43,119	27,129	26,264	866	15,990	62.9	60.9(41.7)	3.2(7.9)
10	43,150	27,137	26,298	839	16,012	62.9	60.9(41.7)	3.1(7.4)
11	43,181	27,082	26,253	829	16,099	62.7	60.8(41.8)	3.1(8.1)
12	43,216	26,747	25,879	868	16,469	61.9	59.9(41.8)	3.2(8.4)
2016. 1	43,239	26,433	25,445	988	16,806	61.1	58.8(41.7)	3.7(9.5)
2	43,274	26,734	25,418	1,317	16,540	61.8	58.7(41.4)	4.9(12.5)
3	43,313	26,955	25,800	1,155	16,358	62.2	59.6(41.0)	4.3(11.8)
4	43,348	27,228	26,153	1,075	16,120	62.8	60.3(41.8)	3.9(10.9)
5	43,387	27,455	26,450	1,005	15,932	63.3	61.0(42.7)	3.7(9.7)
6	43,421	27,563	26,559	1,004	15,859	63.5	61.2(43.1)	3.6(10.3)
7	43,442	27,578	26,603	975	15,864	63.5	61.2(43.6)	3.5(9.2)
8	43,465	27,524	26,528	996	15,941	63.3	61.0(42.9)	3.6(9.3)
9	43,488	27,516	26,531	986	15,972	63.3	61.0(42.5)	3.6(9.4)
10	43,512	27,499	26,577	923	16,013	63.2	61.1(42.4)	3.4(8.5)
11	43,537	27,446	26,592	854	16,091	63.0	61.1(41.9)	3.1(8.2)
12	43,561	27,035	26,168	867	16,526	62.1	60.1(42.3)	3.2(8.4)
2017. 1	43,601	26,698	25,689	1,009	16,903	61.2	58.9(41.8)	3.8(8.6)
2	43,633	27,138	25,788	1,350	16,495	62.2	59.1(41.6)	5.0(12.3)
3	43,666	27,409	26,267	1,143	16,257	62.8	60.2(41.8)	4.2(11.3)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주요 노동·경제 지표 분석

(천명)

	산업별 취업자 ¹⁾									
	취업자					취업자 증감(전년동기대비)				
	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림어업	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림어업
2014	25,599	4,330	1,796	17,928	1,452	533	146	42	426	△68
2015	25,936	4,486	1,823	18,177	1,345	337	156	27	251	△107
2016	26,235	4,481	1,845	18,515	1,286	299	△5	22	339	△59
2014.Ⅱ	25,790	4,319	1,813	17,933	1,631	464	136	12	388	△54
Ⅲ	25,927	4,346	1,833	18,051	1,603	517	194	57	401	△121
Ⅳ	25,767	4,374	1,854	18,048	1,395	422	129	72	336	△109
2015.Ⅰ	25,267	4,418	1,756	17,902	1,092	354	139	72	222	△87
Ⅱ	26,098	4,466	1,857	18,169	1,505	308	147	44	235	△127
Ⅲ	26,237	4,511	1,844	18,282	1,494	310	164	11	234	△109
Ⅳ	26,143	4,550	1,835	18,357	1,289	376	176	△19	309	△106
2016.Ⅰ	25,554	4,544	1,748	18,119	1,038	287	126	△7	216	△54
Ⅱ	26,387	4,503	1,829	18,528	1,419	289	38	△28	362	△86
Ⅲ	26,554	4,439	1,882	18,712	1,413	318	△71	38	430	△81
Ⅳ	26,446	4,439	1,921	18,706	1,276	302	△110	85	350	△13
2015. 4	25,900	4,455	1,838	18,072	1,428	216	167	63	108	△135
5	26,189	4,464	1,862	18,228	1,534	379	140	42	315	△123
6	26,205	4,478	1,870	18,202	1,552	329	133	29	282	△123
7	26,305	4,528	1,874	18,287	1,513	326	170	25	212	△91
8	26,141	4,491	1,820	18,241	1,482	256	156	10	194	△115
9	26,264	4,512	1,838	18,317	1,489	347	166	△1	292	△120
10	26,298	4,552	1,824	18,327	1,484	348	191	△27	292	△124
11	26,253	4,545	1,837	18,419	1,337	285	190	△37	285	△168
12	25,879	4,552	1,845	18,326	1,046	495	146	7	354	△27
2016. 1	25,445	4,566	1,775	18,090	909	339	145	17	241	△74
2	25,418	4,541	1,726	18,069	975	223	108	△6	176	△61
3	25,800	4,525	1,744	18,188	1,229	300	124	△33	229	△28
4	26,153	4,503	1,800	18,372	1,369	252	48	△37	302	△60
5	26,450	4,514	1,840	18,552	1,435	261	50	△22	326	△99
6	26,559	4,493	1,847	18,655	1,454	354	15	△24	454	△98
7	26,603	4,464	1,875	18,752	1,402	298	△65	1	465	△111
8	26,528	4,418	1,891	18,699	1,415	387	△74	71	457	△67
9	26,531	4,436	1,879	18,685	1,423	267	△76	41	369	△65
10	26,577	4,437	1,883	18,717	1,438	278	△115	59	390	△46
11	26,592	4,443	1,947	18,730	1,368	339	△102	111	311	31
12	26,168	4,437	1,932	18,668	1,021	289	△115	86	345	△24
2017. 1	25,689	4,406	1,860	18,412	900	243	△160	85	323	△9
2	25,788	4,449	1,871	18,391	965	371	△92	145	322	△10
3	26,267	4,441	1,908	18,638	1,173	466	△83	164	450	△56

주: 1) '00, '04년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시계열 단절
'04년 산업별 취업자증감은 구분류 추정치로 표기

[부 록] 최신 노동·경제 지표

	중상상지위별 취업자 증감 (단위 : 천명, 전년동기대비)								비경제 활동인구	(단위 : 천명)			명목임금 ¹⁾ (전산업)		노동생산성 ²⁾ (제조업) (2010=100)	
	계	임금 근로자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비임금 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활동상태별		구직 단념자				
										취앳 준비	취앳 준비					
2014	533	548	443	140	△35	△15	1	△16	15,977	1,448	560	394	2.4	2.5	98.3	△2.5
2015	337	487	432	54	1	△151	△89	△61	16,105	1,589	610	464	3.3	3.5	95.8	△2.5
2016	299	317	386	18	△88	△18	7	△25	16,169	1,625	628	448	3.8	3.8	-	-
2014.Ⅱ	464	485	478	118	△111	△22	△14	△8	15,685	1,318	568	399	2.1	1.8	100.0	△0.9
Ⅲ	517	519	333	226	△40	△3	19	△22	15,760	1,421	573	457	1.2	1.5	97.1	△2.5
Ⅳ	422	476	355	141	△20	△54	7	△61	16,066	1,494	556	442	3.4	4.0	97.5	△4.7
2015.Ⅰ	354	442	355	82	4	△88	△49	△39	16,469	1,714	574	459	2.8	3.1	96.2	△2.4
Ⅱ	308	422	332	3	87	△114	△37	△77	15,835	1,469	601	416	3.1	3.4	95.9	△4.1
Ⅲ	310	521	505	1	15	△211	△136	△75	15,921	1,543	643	505	3.7	3.8	94.4	△2.7
Ⅳ	376	565	536	129	△100	△189	△135	△54	16,194	1,630	622	476	3.6	3.4	96.7	△0.8
2016.Ⅰ	287	427	505	15	△93	△140	△96	△44	16,568	1,811	620	474	5.3	5.3	96.0	△0.1
Ⅱ	289	392	457	120	△185	△103	△68	△35	15,970	1,610	617	418	2.9	2.9	96.5	0.6
Ⅲ	318	283	316	45	△78	35	52	△17	15,926	1,525	615	427	3.6	3.5	96.2	1.9
Ⅳ	302	164	266	△106	5	138	140	△2	16,210	1,554	659	471	3.4	3.4	-	-
2015. 4	216	347	300	△31	78	△131	△57	△74	15,971	1,492	589	395	2.3	2.8	-	-
5	379	460	351	△27	136	△82	4	△85	15,764	1,445	608	414	3.4	3.8	-	-
6	329	457	346	65	47	△128	△57	△71	15,770	1,470	607	440	3.4	3.5	-	-
7	326	478	462	△31	47	△151	△76	△75	15,751	1,471	640	487	3.8	4.0	-	-
8	256	536	510	2	24	△279	△183	△97	16,022	1,592	667	539	1.0	1.2	-	-
9	347	550	545	32	△27	△203	△149	△54	15,990	1,568	622	488	6.2	6.1	-	-
10	348	583	565	101	△82	△236	△159	△76	16,012	1,542	637	471	0.7	0.6	-	-
11	285	503	496	174	△167	△218	△152	△66	16,099	1,615	601	456	2.6	2.6	-	-
12	495	609	548	113	△52	△114	△94	△20	16,469	1,733	628	501	6.9	6.6	-	-
2016. 1	339	471	509	19	△56	△132	△84	△48	16,806	1,895	609	517	6.2	6.4	-	-
2	223	376	496	△9	△111	△154	△98	△56	16,540	1,870	579	474	6.1	6.0	-	-
3	300	434	510	34	△110	△134	△105	△29	16,358	1,668	671	431	3.6	3.4	-	-
4	252	386	459	96	△169	△133	△105	△28	16,120	1,642	637	414	3.4	3.6	-	-
5	261	358	470	158	△270	△98	△70	△27	15,932	1,585	651	420	2.9	2.9	-	-
6	354	433	443	107	△117	△78	△29	△49	15,859	1,603	563	419	2.5	2.5	-	-
7	298	356	364	70	△78	△58	△10	△48	15,864	1,563	618	446	3.3	3.0	-	-
8	387	315	291	91	△67	72	79	△7	15,941	1,509	636	422	4.5	4.3	-	-
9	267	178	293	△26	△89	89	86	3	15,972	1,503	593	414	3.2	3.1	-	-
10	278	158	256	△67	△30	120	124	△4	16,013	1,466	652	449	4.5	4.5	-	-
11	339	186	297	△147	37	153	141	11	16,091	1,504	667	465	4.5	4.5	-	-
12	289	148	245	△105	7	141	155	△14	16,526	1,693	658	499	1.6	1.8	-	-
2017. 1	243	74	254	△182	1	170	169	1	16,903	1,883	692	589	15.8	15.6	-	-
2	371	162	305	△158	15	209	213	△4	16,495	1,899	606	498	△11.4	△10.6	-	-
3	466	357	407	△108	58	110	127	△18	16,257	1,734	691	468	-	-	-	-

주: 1)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주: 2) 명목노동생산성 = (자출량(산업생산)지수 ÷ 노동투입량(상용근로자수 × 근로시간)지수) × 100

주: 3) 산업생산기준, 노동생산성 2010년부터 시계열 재조정 수치 변동, 2012년 1분기 이후 샘플조사에서 전수조사로 수치 변동

2. 물가 및 수출입 단가

(2015 = 100, %, 전년비, 전년동월비)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집세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지수	동가비	지수	동가비	지수	동가비	지수	동가비	지수	동가비	지수	동가비	지수	동가비
2006	80.2	2.2	80.0	1.8	75.1	△0.1	78.2	2	79.5	0.4	89.3	3.5	79.9	3.0
2007	82.2	2.5	81.9	2.3	76.5	1.9	79.7	1.9	81.0	1.8	92.0	3.1	82.4	3.1
2008	86.1	4.7	85.4	4.3	76.9	0.5	85.9	7.8	82.8	2.3	94.3	2.5	86.3	4.7
2009	88.5	2.8	88.4	3.6	81.8	6.4	88.1	2.5	84.1	1.6	96.1	2.0	88.7	2.8
2010	91.1	2.9	90.0	1.8	90.1	1.0	90.9	3.2	85.7	1.9	97.3	1.2	90.6	2.2
2011	94.7	4.0	92.8	3.2	98.3	9.2	95.4	4.9	89.1	4.0	96.9	△0.4	94.0	3.7
2012	96.8	2.2	94.4	1.7	101.4	3.2	98.0	2.8	92.8	4.2	97.4	0.5	95.0	1.1
2013	98.0	1.3	95.9	1.6	100.8	△0.6	98.9	0.9	95.3	2.7	98.1	0.7	96.5	1.6
2014	99.3	1.3	97.8	2.0	98.1	△2.7	100.2	1.3	97.5	2.3	98.8	0.7	98.1	1.7
2015	100.0	0.7	100.0	2.2	100.0	2.0	100.0	△0.2	100.0	2.5	100.0	1.2	100.0	1.9
2016	101.0	1.0	101.6	1.6	103.8	3.8	99.5	△0.5	101.9	1.9	101.5	1.5	102.7	2.7
2015.5	100.0	0.6	99.9	2.1	101.2	2.7	100.4	△0.3	99.8	2.5	99.5	0.7	100.0	1.8
6	100.1	0.7	99.9	2.0	100.8	3.6	100.6	0.0	99.9	2.5	99.6	0.7	99.8	1.8
7	100.2	0.7	100.2	2.1	100.3	3.0	100.5	△0.1	100.1	2.6	100.6	1.7	100.4	1.9
8	100.4	0.7	100.3	2.1	101.5	2.7	100.4	△0.1	100.3	2.6	100.7	2.0	100.6	1.8
9	100.1	0.5	100.2	2.0	101.3	1.3	99.7	△0.5	100.4	2.6	100.5	1.8	100.4	1.8
10	100.1	0.8	100.4	2.2	99.3	3.0	99.5	△0.4	100.6	2.5	100.6	1.8	100.6	2.0
11	99.9	0.8	100.4	2.2	96.8	1.3	99.7	△0.1	100.7	2.5	100.5	1.8	100.4	2.0
12	100.2	1.1	100.6	2.3	99.8	2.7	99.5	0.3	100.9	2.5	100.6	1.9	100.6	2.2
2016.1	100.4	0.6	101.0	1.6	101.3	1.5	99.1	△1.1	101.1	2.0	101.3	2.0	101.4	2.5
2	100.8	1.1	101.2	1.7	106.0	5.0	98.8	△0.7	101.2	2.0	101.3	2.1	101.8	2.7
3	100.6	0.8	101.3	1.7	103.6	4.6	98.8	△1.4	101.4	2.0	101.4	1.9	102.1	2.7
4	100.8	1.0	101.5	1.9	103.4	4.3	99.1	△0.7	101.5	1.9	101.4	1.9	102.3	2.5
5	100.8	0.8	101.7	1.8	101.9	0.6	99.4	△0.9	101.6	1.9	101.5	1.9	102.7	2.8
6	100.8	0.7	101.8	1.8	99.3	△1.4	100.0	△0.6	101.8	1.9	101.4	1.9	102.7	2.8
7	100.6	0.4	101.5	1.3	99.9	△0.3	99.8	△0.8	102.0	1.8	101.6	1.0	103.2	2.8
8	100.9	0.5	101.6	1.3	102.0	0.5	99.7	△0.7	102.1	1.8	101.6	1.0	103.5	2.9
9	101.5	1.3	101.7	1.5	110.6	9.1	99.7	0.0	102.2	1.8	101.5	1.0	103.3	2.9
10	101.6	1.5	102.1	1.8	106.9	7.7	99.9	0.4	102.3	1.7	101.5	0.9	103.3	2.7
11	101.5	1.5	102.0	1.6	104.6	8.0	99.9	0.2	102.5	1.7	101.5	0.9	103.1	2.7
12	101.6	1.3	101.9	1.2	106.5	6.7	100.1	0.6	102.7	1.7	101.6	0.9	103.3	2.7
2017.1	102.4	2.0	102.5	1.5	109.8	8.5	100.6	1.6	102.8	1.7	102.4	1.1	104.3	2.8
2	102.8	1.9	102.7	1.5	110.6	4.3	101.2	2.4	103.0	1.7	102.4	1.1	104.6	2.7
3	102.8	2.2	102.8	1.4	109.6	5.8	101.1	2.4	103.2	1.7	102.4	1.0	104.8	2.7
4	102.7	1.9	102.8	1.3	108.1	4.5	100.6	1.5	103.3	1.8	102.4	1.1	105.2	2.8

[부 록] 최신 노동·경제 지표

(2010 = 100, %)

	생활물가 ¹⁾		생산자물가		수출물가 ²⁾		수입물가 ³⁾		교역조건 ⁴⁾	
	지수	동기비	지수	동기비	지수	동기비	지수	동기비	지수	동기비
2006	81.1	3.1	87.7	0.9	86.2	△8.2	69.6	0.9	122.2	△9.2
2007	83.7	3.2	88.9	1.4	84.4	△2.1	72.7	4.5	113.2	△7.4
2008	88.1	5.3	96.5	8.5	102.8	21.8	99.1	36.2	105.0	△7.2
2009	89.9	2.1	96.3	△0.2	102.6	△0.2	95.0	△4.1	105.0	-
2010	93.0	3.4	100.0	3.8	100.0	△2.6	100.0	5.3	100.0	△4.8
2011	97.0	4.4	106.7	6.7	100.2	0.2	111.6	11.6	89.2	△10.9
2012	98.7	1.7	107.5	0.7	97.9	△2.4	110.8	△0.7	87.0	△2.4
2013	99.4	0.7	105.7	△1.6	93.7	△4.3	102.7	△7.3	89.6	2.9
2014	100.2	0.8	105.2	△0.5	88.1	△6.0	94.9	△7.5	89.9	0.4
2015	100.0	△0.2	101.0	△4.0	83.5	△5.2	80.4	△15.3	100.0	11.1
2016	100.7	0.7	99.1	△1.8	80.7	△3.3	77.0	△4.2	102.0	2.1
2015.5	100.0	△0.5	101.8	△3.5	83.8	△3.5	81.6	△14.6	100.8	12.8
6	100.2	△0.1	101.8	△3.6	84.8	△2.2	82.0	△14.1	100.1	12.0
7	100.2	△0.1	101.4	△4.0	85.2	△2	81.7	△14.0	99.7	11.8
8	100.3	△0.1	100.8	△4.5	85.8	△1.6	81.3	△13.6	100.0	11.5
9	100.2	△0.3	100.3	△4.6	85.1	△2.1	80.8	△13.1	101.6	12.4
10	100.1	0.1	99.7	△4.6	81.8	△6.5	78.3	△14.9	101.5	12.2
11	99.9	0.1	99.3	△4.7	80.9	△8.6	77.0	△15.6	100.8	9.1
12	100.1	0.5	99.0	△4.0	81.0	△6.2	76.2	△12.0	100.7	7.8
2016.1	100.2	0.4	98.5	△3.3	81.3	△1.5	75.0	△6.3	101.1	5.3
2	100.8	1.0	98.5	△3.4	82.0	△2.1	76.2	△7.4	103.5	3.1
3	100.4	0.5	98.4	△3.3	81.0	△4.2	76.2	△7.6	104.3	5.4
4	100.4	0.6	98.7	△3.0	78.6	△5.2	74.8	△7.1	102.5	2.9
5	100.4	0.4	98.7	△3.0	80.5	△4	77.4	△5.1	101.8	1.0
6	100.5	0.3	99.0	△2.7	80.6	△4.9	78.0	△4.9	100.9	0.8
7	99.9	△0.3	98.9	△2.5	78.9	△7.4	75.9	△7.1	100.1	0.4
8	100.1	△0.2	99.0	△1.8	77.4	△9.7	74.5	△8.4	101.2	1.3
9	101.2	1.0	99.2	△1.1	78.1	△8.3	74.6	△7.7	101.8	0.2
10	101.6	1.4	99.5	△0.1	80.7	△1.4	77.9	△0.6	103.3	1.7
11	101.5	1.6	100.0	0.7	83.7	3.5	79.8	3.6	101.3	0.5
12	101.3	1.2	100.9	1.8	86.3	6.6	83.1	9.2	103.0	2.3
2017.1	102.6	2.4	102.3	3.9	87.4	7.4	85.0	13.3	100.3	△0.8
2	103.1	2.3	102.7	4.3	86.1	5.1	83.2	9.2	100.6	△2.8
3	103.2	2.8	102.6	4.2	85.0	4.9	81.5	6.9	99.6	△4.5
4	102.9	2.5	-	-	-	-	-	-	-	-

주 : 1) 2015=100 기준 2), 3) 원화기준, 4) 순상품교역조건

3. 국민소득계정

	GDP(경상)		GNI(경상)		1인당GNI(경상)		경제성장률(실질,%)			GDP디플레이터(%)	
	억원	억달러	억원	억달러	만원	달러	GDP (전년 동기비)	GDP (전기비)	GNI (전년 동기비)	지수	상승률
2007	10,432,578	11,227	10,400,918	11,193	2,140	23,033	5.5	-	5.5	90.9	2.4
2008	11,044,922	10,017	11,044,143	10,017	2,256	20,463	2.8	-	0.1	93.6	3.0
2009	11,517,078	9,023	11,489,818	9,002	2,336	18,303	0.7	-	2.5	96.9	3.5
2010	12,653,080	10,943	12,665,798	10,954	2,563	22,170	6.5	-	7.0	100.0	3.2
2011	13,326,810	12,027	13,405,298	12,097	2,693	24,302	3.7	-	1.6	101.6	1.6
2012	13,774,567	12,224	13,915,955	12,349	2,783	24,696	2.3	-	2.7	102.6	1.0
2013	14,294,454	13,054	14,396,444	13,147	2,867	26,179	2.9	-	3.7	103.5	0.9
2014	14,860,793	14,110	14,907,639	14,154	2,957	28,071	3.3	-	3.4	104.1	0.6
2015	15,641,239	13,824	15,683,831	13,861	3,074	27,171	2.8	-	6.5	106.6	2.4
2016 ^a	16,374,208	14,110	16,390,665	14,124	3,198	27,561	2.8	-	4.0	108.6	1.8
2012.Ⅲ	3,474,795	-	3,510,103	-	-	-	2.1	0.3	2.5	103.6	0.9
Ⅳ	3,586,351	-	3,621,946	-	-	-	2.2	0.6	2.8	101.8	△0.3
2013.Ⅰ	3,359,464	-	3,380,098	-	-	-	2.1	0.7	2.8	103.6	0.5
Ⅱ	3,565,609	-	3,585,063	-	-	-	2.7	1.0	3.9	103.2	1.0
Ⅲ	3,638,432	-	3,664,981	-	-	-	3.2	0.8	3.9	105.1	1.4
Ⅳ	3,730,950	-	3,766,302	-	-	-	3.5	0.9	4.3	102.3	0.5
2014.Ⅰ	3,537,431	-	3,530,119	-	-	-	3.9	1.1	3.9	105.0	1.4
Ⅱ	3,701,863	-	3,707,997	-	-	-	3.5	0.6	3.4	103.5	0.3
Ⅲ	3,764,478	-	3,779,628	-	-	-	3.4	0.7	2.7	105.2	0.1
Ⅳ	3,857,021	-	3,889,894	-	-	-	2.7	0.3	3.5	103.0	0.7
2015.Ⅰ	3,699,474	-	3,744,280	-	-	-	2.6	0.8	7.8	107.0	2.0
Ⅱ	3,891,739	-	3,865,506	-	-	-	2.4	0.4	5.6	106.3	2.8
Ⅲ	3,984,765	-	4,003,978	-	-	-	3.0	1.3	7.3	108.1	2.8
Ⅳ	4,065,261	-	4,070,067	-	-	-	3.2	0.7	5.5	105.2	2.1
2016 ^a .Ⅰ	3,873,532	-	3,887,636	-	-	-	2.9	0.5	4.8	109.0	1.8
Ⅱ	4,099,585	-	4,076,522	-	-	-	3.4	0.9	4.8	108.3	1.8
Ⅲ	4,150,250	-	4,163,409	-	-	-	2.6	0.5	3.1	109.7	1.5
Ⅳ	4,250,841	-	4,263,097	-	-	-	2.4	0.5	3.3	107.4	2.1
2017 ^a .Ⅰ	-	-	-	-	-	-	2.7	0.9	-	-	-

[부 록] 최신 노동·경제 지표

(2010년=100, %)

	경제활동별 성장률					지출항목별 증가율					국내총 투자율	총 저축률 (명목)	
	산 업					최 종 소 비	민 간 소 비	총 자 형	정 본 성	설 투 비 자			건 투 설 자
		광 공 업	제 조 업	서 비 스 업	농 어 림 업								
2007	5.5	8.3	8.4	5.2	4.1	5.3	5.1	5.0	9.7	1.5	32.8	33.2	
2008	2.8	3.7	3.7	3.2	5.6	2.2	1.4	△0.9	△0.2	△2.7	33.0	32.9	
2009	0.7	△0.5	△0.5	1.5	3.2	1.3	0.2	0.3	△7.7	3.5	28.6	32.9	
2010	6.5	13.5	13.7	4.4	△4.3	4.3	4.4	5.5	22.0	△3.7	32.1	35.0	
2011	3.7	6.5	6.5	3.1	△2.0	2.7	2.9	0.8	4.7	△3.4	32.9	34.6	
2012	2.3	2.4	2.4	2.8	△0.9	2.2	1.9	△0.5	0.1	△3.9	30.8	34.2	
2013	2.9	3.6	3.6	2.9	3.1	2.2	1.9	3.3	△0.8	5.5	29.0	34.3	
2014	3.3	3.5	3.5	3.3	3.6	2.0	1.7	3.4	6.0	1.1	29.3	34.5	
2015	2.8	1.7	1.8	2.8	△0.4	2.4	2.2	5.1	4.7	6.6	28.9	35.6	
2016 ^p	2.8	2.3	2.3	2.3	△2.9	2.9	2.5	5.2	△2.3	10.7	29.3	35.8	
2012.Ⅲ	2.1	2.0	2.0	2.7	0.0	2.7	2.6	△0.9	△4.2	△2.6	29.4	33.8	
Ⅳ	2.2	2.0	2.0	2.8	△1.3	2.7	2.7	△3.6	△3.8	△6.4	28.6	33.9	
2013.Ⅰ	2.1	2.8	2.7	2.2	△1.2	1.5	1.5	△3.2	△12.3	1.2	29.4	34.1	
Ⅱ	2.7	3.6	3.6	2.7	0.2	2.2	1.9	4.2	△3.3	8.9	28.3	34.5	
Ⅲ	3.2	3.8	3.8	3.2	4.3	2.4	1.9	4.9	2.3	7.5	28.9	34.4	
Ⅳ	3.5	4.2	4.2	3.3	6.9	2.6	2.2	6.5	11.7	3.5	29.3	34.3	
2014.Ⅰ	3.8	4.7	4.7	3.5	5.7	2.9	2.8	6.1	7.5	4.5	29.2	34.1	
Ⅱ	3.5	4.6	4.7	2.9	4.3	1.8	1.7	3.6	8.0	0.3	29.0	34.5	
Ⅲ	3.4	3.1	3.1	3.4	2.7	2.0	1.4	3.6	4.3	2.3	30.1	34.4	
Ⅳ	2.7	1.8	1.8	3.3	2.7	1.6	1.0	0.7	4.2	△1.7	28.9	35.0	
2015.Ⅰ	2.6	1.1	1.1	3.0	8.5	1.8	1.5	3.9	5.4	4.0	28.5	36.4	
Ⅱ	2.4	0.9	0.9	2.8	△3.0	2.0	1.7	3.9	4.3	4.6	28.5	35.2	
Ⅲ	3.0	2.2	2.2	2.7	0.3	2.3	2.2	6.0	6.0	7.6	29.4	36.0	
Ⅳ	3.2	2.7	2.7	2.7	△4.0	3.4	3.4	6.3	3.1	9.6	29.3	34.9	
2016 ^p .Ⅰ	2.9	2.4	2.4	2.5	△2.3	2.9	2.3	2.9	△4.6	9.0	27.9	36.3	
Ⅱ	3.4	2.6	2.7	2.8	1.0	3.7	3.5	5.2	△2.9	10.6	29.2	35.9	
Ⅲ	2.6	1.4	1.4	2.3	△4.7	3.1	2.7	5.3	△3.9	11.2	30.2	35.4	
Ⅳ	2.4	2.7	2.7	1.8	△4.7	2.0	1.5	7.1	2.0	11.6	29.9	35.8	
2017 ^p .Ⅰ	2.7	4.4	4.4	1.5	△2.0	2.1	2.0	9.5	14.3	9.7	-	-	

4. 실물경제

가. 생산과 출하

(원지수 2010 = 100, 전년동월(분기)비)

시점	생산지수 (광공업)		서비스업		출하지수 (광공업)		재고지수 (광공업)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2013	108.2	0.7	106.4	1.5	108.1	0.8	130.7	4.4
2014	108.4	0.2	108.9	2.3	108.0	△0.1	127.4	△2.5
2015	108.1	△0.3	112.1	2.9	108.2	0.2	131.6	3.3
2016	109.2	1.0	115.5	3.0	109.0	0.7	124.0	△5.8
2014.Ⅲ	105.6	1.2	108.5	2.7	104.9	0.4	129.0	3.6
Ⅳ	111.3	△1.5	113.1	2.8	111.3	△0.8	127.4	△2.5
2015.Ⅰ	105.9	△0.9	108.3	2.8	106.3	△0.3	132.7	2.4
Ⅱ	108.9	△0.8	111.6	2.8	108.6	△0.6	134.5	4.9
Ⅲ	106.0	0.4	111.7	2.9	106.3	1.3	138.2	7.1
Ⅳ	111.7	0.4	116.8	3.3	111.8	0.4	131.6	3.3
2016.Ⅰ	105.6	△0.3	111.3	2.8	105.4	△0.8	136.8	3.1
Ⅱ	109.7	0.7	115.5	3.5	109.9	1.2	131.8	△2.0
Ⅲ	106.5	0.5	115.7	3.6	106.2	△0.1	127.4	△7.8
Ⅳ	114.8	2.8	119.3	2.1	114.5	2.4	124.0	△5.8
2017.Ⅰ ^p	109.4	3.6	114.2	2.6	108.9	3.3	129.0	△5.7
2015.7	109.2	△2.9	111.9	2.8	108.0	△1.5	137.6	3.8
8	101.8	0.6	110.9	2.6	102.7	1.0	137.3	5.7
9	106.9	3.6	112.4	3.6	108.2	4.6	138.2	7.1
10	112.9	2.5	114.0	2.9	113.1	3.4	136.4	4.9
11	109.0	0.3	113.1	2.9	109.0	△0.5	136.7	5.8
12	113.1	△1.7	123.2	3.8	113.2	△1.7	131.6	3.3
2016.1	105.9	△2.2	110.1	2.8	104.2	△3.9	137.8	4.5
2	98.3	2.3	108.0	3.2	97.6	0.7	137.5	3.9
3	112.7	△0.5	115.8	2.5	114.4	0.7	136.8	3.1
4	107.2	△2.7	113.8	2.0	108.2	△1.7	133.1	△0.8
5	110.2	4.4	115.5	3.6	109.8	3.8	134.1	0.4
6	111.8	0.9	117.3	4.9	111.6	1.6	131.8	△2.0
7	110.8	1.5	115.5	3.2	108.8	0.7	130.9	△4.9
8	104.0	2.2	115.8	4.4	104.4	1.7	130.0	△5.3
9	104.8	△2.0	115.7	2.9	105.4	△2.6	127.4	△7.8
10	111.5	△1.2	116.3	2.0	111.0	△1.9	128.0	△6.2
11	114.9	5.4	116.0	2.6	114.1	4.7	127.9	△6.4
12	118.0	4.3	125.6	1.9	118.5	4.7	124.0	△5.8
2017.1	107.3	1.3	113.0	2.6	105.7	1.4	129.8	△5.8
2 ^p	104.9	6.7	110.7	2.5	104.7	7.3	129.2	△6.0
3 ^p	116.1	3.0	119.0	2.8	116.2	1.6	129.0	△5.7

주: 원계열(2014~2015년) 및 계절조정계열(~2015년) 은 연간보정이 이루어짐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나. 투 자

(전년동월(분기)비 %)

	국내건설기성(경상)			국내건설수주(경상)			건축 허가 면적	국내기계수주		설비투자 지수
		공공	민간		공공	민간			제조업	
2013	10.6	1.9	18.0	△12.9	△5.1	△14.8	△7.3	6.6	14.1	△0.8
2014	0.4	△7.1	4.5	16.3	6.8	21.9	11.2	14.8	9.1	5.2
2015	4.2	△3.1	7.9	48.4	8.0	66.1	34.3	△3.9	7.4	6.9
2016	16.9	△0.4	24.3	8.4	19.0	4.4	△5.7	3.8	2.4	△1.3
2014.Ⅲ	△0.5	△10.1	4.2	44.0	3.9	60.7	14.7	49.2	8.5	1.4
Ⅳ	△4.9	△11.6	△1.4	△6.8	△13.2	△2.4	△4.6	△6.2	3.8	5.5
2015.Ⅰ	1.1	△6.5	5.9	57.8	△22.4	110.9	11.0	△2.5	25.1	9.8
Ⅱ	△1.7	△4.9	△0.4	49.8	36.5	55.0	25.1	15.2	2.1	5.2
Ⅲ	7.7	0.0	11.7	50.6	△5.5	67.9	57.0	△28.3	3.9	10.8
Ⅳ	9.3	△1.0	14.2	39.6	15.2	49.7	40.4	6.3	△0.4	2.0
2016.Ⅰ	11.9	0.4	14.0	13.9	70.0	△0.5	19.7	△0.6	△6.3	△7.6
Ⅱ	16.5	△2.3	24.6	△6.7	△37.9	3.1	5.3	△3.0	△0.8	0.6
Ⅲ	16.3	△2.6	23.7	1.3	62.6	△11.9	△24.8	3.3	△3.3	△4.7
Ⅳ	21.5	2.6	32.2	26.0	25.1	29.2	△11.1	16.0	22.1	5.9
2017.Ⅰ ^P	24.6	3.7	36.8	2.9	△7.4	△9.5	△5.0	27.0	12.3	17.8
2015.7	2.4	△4.8	7.3	23.4	17.0	27.0	88.2	13.5	12.6	8.0
8	5.2	△4.3	9.5	△0.3	18.8	△6.0	25.2	△60.1	△9.4	17.3
9	15.4	8.8	18.5	126.4	△41.6	189.0	60.6	2.3	8.4	8.1
10	5.7	△9.5	12.5	29.8	27.6	34.0	40.9	3.3	17.5	12.9
11	6.4	△7.8	13.7	107.0	76.5	112.5	47.3	△14.7	△7.3	△4.3
12	14.3	9.6	16.0	10.8	△8.7	21.9	34.5	35.7	△10.4	△1.0
2016.1	6.4	△1.1	7.9	△2.4	103.3	△28.1	26.8	△27.9	△38.5	△6.6
2	8.1	△6.8	12.3	84.1	107.1	79.5	27.8	22.7	24.4	△8.4
3	20.0	7.8	21.1	△6.8	29.4	△16.9	9.9	8.4	6.6	△7.7
4	14.0	△7.1	23.2	19.2	△53.9	43.6	△1.5	△28.3	△19.7	△2.5
5	16.9	△1.4	24.3	△23.6	△10.2	△27.1	9.9	2.5	△7.0	2.5
6	18.1	0.6	26.0	△8.3	△44.0	8.0	7.6	23.9	25.1	2.1
7	17.8	△2.4	25.2	38.1	46.6	24.7	△27.9	0.4	△4.5	△12.6
8	21.0	5.4	27.0	52.5	77.2	44.7	△9.5	1.7	0.6	3.3
9	10.9	△9.2	19.2	△39.1	62.9	△47.3	△35.1	7.8	△5.2	△4.0
10	20.2	2.4	27.3	42.7	78.2	34.4	△14.7	△9.4	△12.5	△3.3
11	28.9	12.7	36.5	△5.1	△14.5	2.6	△3.3	16.9	19.5	10.2
12	17.0	△3.5	32.7	43.7	31.8	55.4	△14.6	35.5	70.7	10.5
2017.1	19.7	△3.6	29.9	16.5	△16.3	43.9	2.0	36.0	26.0	10.3
2 ^P	29.9	9.1	41.8	24.4	31.2	△20.6	2.7	15.3	△4.8	19.5
3 ^P	24.4	5.2	38.4	△24.0	△31.6	△26.9	△16.2	31.7	19.6	22.8

다. 소 비

(전년동월(분기)비 %)

	소매판매액				내 수 용 소비재출하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내 구 재	비내구재
2013	0.7	0.3	21	0.4	△0.3	0.6	△0.7
2014	2.0	5.1	△0.8	1.6	△0.2	△0.7	0.1
2015	4.1	10.0	△1.1	3.1	1.9	2.7	1.4
2016	4.3	4.5	2.5	4.8	1.2	△4.5	3.7
2014.Ⅲ	2.0	5.5	1.2	0.6	0.1	△1.8	0.9
Ⅳ	2.4	6.9	0.5	0.8	△0.7	1.5	△1.4
2015.Ⅰ	2.4	7.5	△2.0	1.5	0.1	△4.0	1.8
Ⅱ	3.9	8.8	△1.3	3.3	△0.6	△0.7	△0.6
Ⅲ	3.6	7.5	△3.5	4.2	2.1	4.1	1.4
Ⅳ	6.3	16.1	1.5	3.3	5.5	11.7	2.7
2016.Ⅰ	5.0	6.4	2.3	5.3	3.5	1.7	4.2
Ⅱ	5.9	11.1	4.4	3.9	4.2	3.4	4.5
Ⅲ	3.5	1.1	3.5	4.9	△1.3	△10.9	2.8
Ⅳ	2.5	0.1	0.4	5.0	△1.1	△11.3	3.6
2017.Ⅰ ^P	2.0	3.1	△1.2	2.8	-	-	-
2015.7	2.4	6.5	△3.8	2.5	△2.1	△0.7	△2.7
8	2.1	8.9	△3.7	0.8	2.2	8.5	△0.3
9	6.2	7.2	△3.2	9.5	6.5	5.0	7.3
10	9.0	20.4	5.6	4.6	6.3	15.4	2.6
11	6.2	14.1	3.3	3.1	5.7	11.2	3.3
12	4.1	14.3	△3.9	2.4	4.2	8.7	2.3
2016.1	5.4	△1.6	3.6	10.1	1.9	△4.6	4.5
2	3.3	7.4	1.5	2.0	1.4	△0.4	2.2
3	6.3	13.3	2.0	3.9	6.9	9.8	5.5
4	3.8	7.6	1.9	2.6	1.4	△0.3	2.2
5	4.9	11.7	0.7	3.0	5.5	3.7	6.2
6	9.4	13.6	12.0	6.0	5.8	7.2	5.2
7	4.2	0.4	7.2	5.4	△1.7	△13.7	3.8
8	6.2	5.9	1.4	8.0	1.3	△13.1	7.4
9	0.2	△3.1	1.7	1.3	△3.6	△5.9	△2.6
10	2.5	0.7	1.3	4.2	△6.5	△21.2	△0.1
11	3.2	1.3	0.4	5.8	1.1	△7.4	5.2
12	1.8	△1.6	△0.5	5.2	2.4	△5.2	5.9
2017.1	4.1	1.7	△0.8	7.4	△4.5	△14.8	△0.7
2 ^P	0.5	7.4	△1.0	△2.7	4.2	△4.0	7.7
3 ^P	1.6	0.8	△1.7	3.5	-	-	-

5. 대외거래

가. 국제수지(총괄)

(백만달러)

		경 상 수 지		지 서비스 수 지	본 원 소득수지	이 전 소득수지	
		상 품	수 지				
			수 출				수 입
2014	84,373	88,885	613,021	524,135	△3,679	4,151	△4,985
2015	105,940	122,269	542,881	420,612	△14,917	3,572	△4,985
2016	98,677	120,446	511,776	391,330	△17,608	1,459	△5,620
2014.Ⅲ	20,665	20,977	150,821	129,843	△460	1,399	△1,252
Ⅳ	26,451	25,137	152,724	127,587	△381	2,933	△1,239
2015.Ⅰ	23,222	24,516	131,427	106,911	△4,111	4,068	△1,251
Ⅱ	26,951	33,668	142,086	108,419	△3,037	△2,479	△1,200
Ⅲ	28,246	31,319	133,550	102,231	△3,736	1,515	△852
Ⅳ	27,520	32,766	135,818	103,051	△4,032	469	△1,683
2016.Ⅰ	25,350	28,955	118,316	89,362	△3,918	1,198	△885
Ⅱ	26,337	33,534	128,243	94,709	△3,911	△2,109	△1,178
Ⅲ	21,510	28,268	127,558	99,290	△5,660	1,263	△2,361
Ⅳ	25,481	29,689	137,658	107,969	△4,120	1,108	△1,197
2017.Ⅰ	19,610	28,160	139,121	110,961	△8,863	1,129	△816
2015.7	9,326	10,304	47,222	36,917	△1,503	713	△189
8	8,208	8,849	42,081	33,232	△982	461	△119
9	10,713	12,166	44,248	32,082	△1,251	342	△544
10	9,576	10,972	46,262	35,290	△1,491	533	△438
11	9,842	10,635	43,126	32,491	△1,219	612	△186
12	8,102	11,160	46,429	35,270	△1,322	△676	△1,059
2016.1	7,183	8,186	37,340	29,154	△1,837	1,232	△398
2	7,620	7,926	36,292	28,365	△1,158	831	21
3	10,547	12,842	44,685	31,842	△922	△866	△508
4	3,756	9,848	40,434	30,587	△1,531	△4,057	△504
5	10,495	10,857	42,546	31,688	△1,072	859	△150
6	12,086	12,829	45,263	32,434	△1,308	1,090	△524
7	8,413	10,666	42,364	31,698	△1,583	△47	△623
8	5,030	6,940	41,281	34,341	△1,499	532	△943
9	8,067	10,662	43,913	33,251	△2,578	777	△794
10	8,719	9,830	43,339	33,509	△1,595	861	△377
11	8,892	10,425	46,366	35,941	△1,737	435	△231
12	7,869	9,433	47,953	38,520	△788	△188	△588
2017.1	5,278	7,814	44,108	36,294	△3,359	1,090	△267
2	8,400	10,545	44,630	34,085	△2,229	631	△547
3	5,932	9,801	50,384	40,583	△3,274	△593	△2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주요 노동·경제 지표 분석

(백만달러)

		금 융 계 정					자본수지	오차 및 누 락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기타투자	준비자산		
2014	89,334	18,766	30,609	△3,827	25,901	17,886	△9	4,970
2015	106,299	19,656	49,530	1,791	23,269	12,053	△60	420
2016	100,386	16,448	66,334	△3,178	13,093	7,690	△37	1,745
2014.Ⅲ	21,230	2,953	4,292	△1,650	9,803	5,832	4	562
Ⅳ	28,333	5,455	9,411	811	18,794	△6,140	△6	1,888
2015.Ⅰ	22,974	4,329	7,743	△726	4,519	7,110	△22	△226
Ⅱ	25,857	6,256	7,111	△760	5,947	7,302	△26	△1,069
Ⅲ	29,806	3,695	15,560	4,731	10,107	△4,287	△26	1,586
Ⅳ	27,662	5,376	19,116	△1,454	2,696	1,927	14	128
2016.Ⅰ	28,794	5,266	16,888	2,724	5,203	△1,286	△12	3,456
Ⅱ	19,127	1,894	13,427	△1,185	4,044	949	△7	△7,203
Ⅲ	27,256	2,297	15,950	△3,798	5,850	6,957	11	5,735
Ⅳ	25,209	6,991	20,070	△919	△2,004	1,070	△29	△243
2017.Ⅰ	19,554	6,983	8,033	△3,108	6,910	736	36	△92
2015.7	10,176	△395	8,170	1,385	1,989	△973	△30	880
8	8,778	△281	2,396	1,617	8,929	△3,882	2	569
9	10,852	4,371	4,995	1,730	△811	568	2	137
10	11,149	3,453	7,118	△1,272	△380	2,230	△5	1,578
11	7,808	589	5,229	△600	978	1,613	19	△2,052
12	8,705	1,335	6,769	419	2,098	△1,915	0	603
2016.1	7,556	14	5,452	1,228	480	382	△6	379
2	9,199	1,645	5,861	757	2,502	△1,566	△2	1,582
3	12,039	3,607	5,575	740	2,221	△103	△3	1,495
4	713	△121	2,828	△1,044	△2,266	1,317	△5	△3,038
5	9,093	698	4,547	△464	3,910	402	1	△1,403
6	9,321	1,317	6,052	322	2,400	△770	△3	△2,763
7	10,151	846	254	△472	7,556	1,967	3	1,736
8	7,521	432	6,712	△1,293	△1,419	3,089	17	2,474
9	9,583	1,020	8,983	△2,034	△287	1,901	△9	1,525
10	7,044	1,358	9,869	△741	△3,662	220	△10	△1,665
11	8,899	658	6,968	100	1,690	△517	△35	42
12	9,266	4,976	3,233	△278	△31	1,367	16	1,381
2017.1	4,348	3,268	4,772	△318	△3,633	258	40	△970
2	9,206	4,247	878	△1,579	5,811	△152	△2	807
3	6,001	△532	2,383	△1,211	4,732	630	△2	71

나. 수출입(통관)

(백만달러, 전년동기비 %)

	수 출(FOB)		수 입(CIF)		수출입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금 액
2014	572,665	2.3	525,515	1.9	47,150
2015	526,756	△8.0	436,499	△16.9	90,258
2016	495,466	△5.9	406,060	△6.9	89,406
2014.Ⅲ	141,759	3.6	132,840	5.4	8,919
Ⅳ	147,697	0.9	129,351	△2.8	18,347
2015.Ⅰ	133,400	△3.0	111,767	△15.6	21,633
Ⅱ	135,104	△7.3	110,497	△15.6	24,607
Ⅲ	128,235	△9.5	107,960	△18.7	20,276
Ⅳ	130,017	△12.0	106,275	△17.8	23,742
2016.Ⅰ	115,200	△13.6	93,804	△16.1	21,396
Ⅱ	126,029	△6.7	99,214	△10.2	26,815
Ⅲ	121,878	△5.0	102,338	△5.1	19,540
Ⅳ	132,385	1.8	110,521	4.1	21,864
2017.Ⅰ	132,332	14.9	116,217	23.9	16,115
2015. 7	45,696	△5.2	38,647	△15.7	7,049
8	39,107	△15.2	34,772	△18.7	4,335
9	43,432	△8.5	34,541	△21.8	8,891
10	43,352	△16.0	36,763	△16.6	6,589
11	44,285	△5.0	34,050	△17.6	10,235
12	42,380	△14.3	35,462	△19.2	6,918
2016 ⁹ . 1	36,503	△19.6	31,351	△20.3	5,188
2	36,082	△13.4	29,084	△14.2	6,998
3	43,017	△8.2	33,237	△13.4	9,780
4	41,090	△11.1	32,243	△14.4	8,847
5	39,814	△6.1	32,825	△8.4	6,989
6	45,183	△2.9	33,797	△7.4	11,385
7	40,955	△10.5	33,396	△13.6	7,559
8	40,123	2.6	35,013	1.0	5,110
9	40,860	△6.0	33,760	△1.6	7,100
10	41,968	△3.2	34,790	△4.7	6,957
11	45,411	2.3	37,212	9.4	8,199
12	45,100	6.3	38,100	8.0	6,789
2017 ⁹ . 1	40,291	11.1	37,504	19.7	2,787
2	43,192	20.2	36,133	23.9	7,059
3	48,850	13.6	42,579	27.7	6,271
4	51,010	24.2	37,750	16.6	13,250

다. 지역별 수출입차

(통관기준, 억달러, %)

	대 미					대 일				
	수 출		수 입		수 출 입 차	수 출		수 입		수 출 입 차
	금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2013	620.5	6.0	415.1	△4.2	205.4	346.6	△10.7	600.3	△6.7	△253.7
2014	702.8	13.3	452.8	9.1	250.0	321.8	△7.2	537.7	△10.4	△215.8
2015	698.3	△0.6	440.2	△2.8	258.1	255.8	△20.5	458.5	△14.7	△202.8
2016	664.7	△4.8	432.1	△1.8	232.6	243.6	△4.8	474.5	3.5	△231.0
2014. 8	53.2	6.9	33.3	3.8	19.8	25.2	△8.7	42.2	△13.1	△17.0
9	56.7	19.7	39.7	25.0	16.9	27.0	△7.3	46.9	△4.2	△19.9
10	68.0	24.4	37.3	6.3	30.7	28.9	△3.3	46.2	△9.3	△17.3
11	63.1	20.1	35.0	2.9	28.1	25.0	△26.1	43.4	△7.7	△18.5
12	62.4	21.1	38.8	3.2	23.6	23.9	△10.2	44.6	△7.9	△20.6
2015. 1	55.6	14.5	36.2	0.2	19.4	22.5	△19.9	38.3	△4.9	△15.8
2	50.2	7.7	30.0	△23.7	20.2	20.0	△23.3	38.4	△13.7	△18.4
3	67.9	16.9	40.6	2.6	27.4	21.3	△23.6	43.8	△7.6	△22.6
4	62.1	△2.7	38.4	△7.1	23.6	23.8	△12.4	42.8	△12.5	△19.0
5	56.2	△7.2	35.3	△4.8	20.9	23.3	△13.8	35.0	△19.0	△11.7
6	65.0	6.9	38.2	4.8	26.8	22.3	△13.0	40.1	△8.2	△17.8
7	61.9	1.3	41.0	5.8	20.9	21.3	△29.0	39.5	△14.8	△18.2
8	50.6	△4.9	38.3	14.8	12.3	18.7	△25.8	34.6	△18.0	△15.9
9	54.6	△3.5	32.8	△17.5	21.9	20.4	△24.6	37.1	△21.0	△16.7
10	60.1	△11.6	40.0	7.2	20.1	21.4	△26.0	38.5	△16.6	△17.1
11	55.2	△12.5	33.6	△4.0	21.6	20.3	△19.1	33.4	△23.1	△13.2
12	58.8	△5.7	35.9	△7.4	22.9	20.6	△13.9	37.1	△16.8	△16.5
2016 ^p . 1	50.4	△9.4	33.3	△8.3	17.2	17.9	△20.4	30.9	△19.3	△13.0
2	52.2	4.0	30.5	1.8	21.7	17.0	△15.2	34.1	△11.2	△17.1
3	65.5	△3.7	37.9	△6.6	27.6	20.5	△3.5	42.0	△4.2	△21.5
4	58.1	△6.4	33.0	△14.1	25.0	17.8	△25.3	38.1	△10.8	△20.3
5	56.7	0.7	38.8	10.0	17.8	20.4	△12.6	36.3	3.7	△15.9
6	60.5	△7.0	38.3	0.2	22.1	21.5	△3.6	38.9	△2.9	△17.4
7	53.0	△14.4	34.5	△15.8	18.4	20.8	△2.3	39.7	0.7	△19.0
8	48.2	△4.7	36.4	△4.9	11.8	20.1	7.2	41.6	20.3	△21.5
9	51.3	△6.1	34.1	4.1	17.2	21.7	6.3	42.3	14.1	△20.6
10	53.9	△10.1	35.5	△11.1	18.5	21.0	△1.5	42.2	9.5	△21.1
11	57.2	3.7	37.5	11.8	19.8	22.8	12.5	42.9	28.5	△20.2
12	57.4	△2.4	41.9	16.6	15.5	22.2	7.9	45.3	22.1	△23.0
2017 ^p . 1	49.5	△1.9	39.6	19.1	9.8	21.4	19.3	37.5	21.5	△16.2
2	53.1	1.7	37.5	22.7	15.6	20.5	20.6	44.7	31.0	△24.2
3	62.2	△5.0	44.0	16.0	18.2	24.1	17.7	50.1	19.1	△27.3
4	60.5	3.9	43.7	32.3	16.8	22.0	23.8	44.0	14.9	△22.0

[부 록] 최신 노동·경제 지표

(통관기준, 억달러, %)

	대 중					대 EU				
	수 출		수 입		수 출 입 차	수 출		수 입		수 출 입 차
	금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2013	1,458.7	8.6	830.5	2.8	628.2	488.1	△1.1	562.1	11.6	△74.0
2014	1,452.9	△0.4	900.8	8.5	552.1	516.6	5.7	623.9	11.0	△107.4
2015	1,371.2	△5.6	902.5	0.2	468.7	480.8	△6.9	572.0	△8.3	△91.2
2016	1244.3	△9.3	839.6	△3.6	374.7	466.1	△3.0	519.0	△9.3	△52.9
2014. 8	119.8	△3.9	67.7	3.4	52.1	43.2	9.4	48.6	△0.9	△5.4
9	127.0	6.4	76.3	15.3	50.7	37.1	△5.2	49.4	12.0	△12.3
10	135.9	3.3	81.2	9.1	54.7	42.9	△8.6	47.4	△7.1	△4.5
11	124.7	△3.5	76.9	6.0	47.9	33.9	△8.1	52.0	20.0	△18.1
12	131.7	1.4	86.0	21.6	45.6	40.7	5.2	56.9	5.8	△16.3
2015. 1	120.8	5.2	81.4	9.0	39.4	35.7	△23.1	48.0	△8.1	△12.3
2	99.3	△7.7	69.8	20.6	29.5	29.4	△31.3	41.4	△15.2	△12.1
3	118.7	△2.6	72.3	△5.0	46.4	41.5	△9.8	50.4	0.0	△8.9
4	117.7	△5.2	76.5	△3.3	41.2	38.9	△11.9	48.9	△11.5	△10.0
5	109.3	△3.3	69.9	△7.0	39.3	45.4	△9.1	48.1	△6.8	△2.7
6	113.5	0.6	74.0	△2.0	39.5	43.6	△4.6	53.8	3.2	△10.2
7	111.8	△6.5	76.3	2.7	35.5	41.1	△6.0	49.3	△16.4	△8.2
8	108.8	△9.2	71.6	5.7	37.3	34.1	△21.0	47.0	△3.4	△12.8
9	120.5	△5.2	75.9	△0.6	44.6	44.3	19.3	43.5	△12.1	0.8
10	124.9	△8.0	83.9	3.3	41.1	37.5	△12.6	40.8	△13.8	△3.4
11	116.1	△6.9	78.6	2.2	37.6	51.6	52.2	48.5	△6.8	3.1
12	109.9	△16.5	72.4	△15.8	37.5	37.6	△7.4	52.3	△8.2	△14.6
2016 ^P . 1	94.8	△21.6	68.9	△15.4	25.9	38.3	7.2	45.6	△5.0	△7.3
2	86.5	△12.8	60.3	△13.7	26.2	30.8	5.0	37.9	△8.6	△7.0
3	104.2	△12.3	73.0	0.9	31.2	46.8	12.7	40.1	△20.5	6.7
4	96.1	△18.4	71.0	△7.2	25.0	38.1	△0.1	46.3	△5.4	△7.4
5	99.3	△9.1	70.6	0.9	28.7	39.4	△13.1	43.8	△8.9	△4.4
6	102.9	△9.4	72.1	△2.5	30.7	36.5	△16.3	44.7	△17.0	△8.1
7	101.4	△9.3	70.1	△8.1	31.3	39.4	△4.3	40.3	△18.0	△1.3
8	103.0	△5.3	73.8	3.0	29.3	32.5	△4.8	46.7	△0.4	△14.3
9	109.5	△9.1	72.3	△4.6	37.2	37.9	△14.5	38.0	△12.5	△0.1
10	110.8	△11.2	77.1	△8.1	33.7	38.9	3.8	42.5	4.1	△3.7
11	116.6	0.2	81.1	3.2	35.4	40.3	△23.0	44.7	△7.9	△4.9
12	120.5	9.7	79.5	9.8	41.0	49.2	30.8	47.7	△8.6	1.4
2017 ^P . 1	107.6	13.5	79.6	15.4	28.0	40.8	13.5	42.1	△7.9	△1.4
2	111.3	28.7	65.9	9.4	45.3	39.3	27.4	41.7	10.2	△2.4
3	116.8	12.1	88.2	20.8	28.6	42.7	△8.9	50.6	26.0	△7.9
4	105.9	10.2	79.1	11.3	26.9	64.3	64.9	42.1	△9.4	22.2

라. 외채·외환보유액·외국인투자·원유도입

(억달러)

	총외채 ¹⁾	단기외채 ²⁾	대외채권	외환 보유액 ³⁾	순채권	외국인투자 ⁴⁾ (백만달러)	원 유 도 입 ⁵⁾	
							도입량 (백만BBL)	도입단가 (달러/BBL)
2013	4,235	1,118	6,089	3,464.6	1,854	14,548	915.1	108.3
2014	4,243	1,164	6,781	3,635.9	2,538	19,003	927.5	101.25
2015	3,961	1,043	7,205	3,679.6	3,245	20,910	1,026.1	53.29
2016	3,810	1,052	7,843	3,711.0	4,034	21,299	-	-
2014. 10	-	-	-	3,637.2	-	-	74.5	93.72
11	-	-	-	3,631.0	-	-	83.0	83.01
12	4,244	1,164	6,836	3,635.9	2,592	4,185	80.8	70.85
2015. 1	-	-	-	3,621.9	-	-	84.8	54.45
2	-	-	-	3,623.7	-	-	80.0	49.57
3	4,159	1,131	6,794	3,627.5	2,635	3,555	82.2	55.91
4	-	-	-	3,699.0	-	-	78.4	57.31
5	-	-	-	3,715.1	-	-	96.6	61.95
6	4,205	1,206	7,108	3,747.5	2,903	5,316	80.1	63.39
7	-	-	-	3,708.2	-	-	93.5	60.92
8	-	-	-	3,679.4	-	-	88.7	54.66
9	4,080	1,153	7,151	3,681.1	3,071	4,401	78.1	49.04
10	-	-	-	3,696.0	-	-	83.9	46.81
11	-	-	-	3,684.6	-	-	81.7	45.39
12	3,961	1,043	7,205	3,679.6	3,245	7,639	98.3	40.17
2016. 1	-	-	-	3,672.9	-	-	82.7	33.48
2	-	-	-	3,657.6	-	-	96.7	29.26
3	3,892	1,011	7,341	3,698.4	3,449	4,241	85.9	32.13
4	-	-	-	3,724.8	-	-	89.7	36.65
5	-	-	-	3,709.0	-	-	92.7	41.15
6	3,928	1,037	7,535	3,698.9	3,607	6,313	84.0	44.97
7	-	-	-	3,713.8	-	-	90.1	46.00
8	-	-	-	3,754.6	-	-	86.1	43.47
9	4,002	1,086	7,871	3,777.7	3,870	4,495	94.2	43.79
10	-	-	-	3,751.7	-	-	84.6	45.65
11	-	-	-	3,719.9	-	-	91.6	47.53
12	3,809	1,052	7,843	3,711.0	4,034	6,250	99.8	48.02
2017. 1	-	-	-	3,740.4	-	-	93.7	52.46
2	-	-	-	3,739.1	-	-	88.6	55.10
3	-	-	-	3,753.0	-	-	95.9	54.22
4	-	-	-	3,765.7	-	-	-	-

주 : 1) IMF, World Bank 등 9개 국제기구가 마련한 새로운 편제 기준, 분기별 발표

2) 단기 : 계약만기(original maturity) 기준으로 1년(365일) 이하

3) 가용외환 보유액 기준 4) 신고기준, 분기별 발표 5) 한국석유공사 CIF 기준, 2015년부터 현재까지의 통계는 잠정치

마. 주요국가의 환율변동 비교

	한국(원/달러)			일본(¥/달러) ⁴⁾		대만(NT달러/달러) ⁴⁾		유로(달러/EUR)	
	기 말 ¹⁾	절상률 ²⁾	기간평균 ³⁾	기 말	절상률	기 말	절상률	기 말	절상률
2013	1,055.3	1.50	1,095.04	105.04	△18.26	29.92	△2.91	1.3799	4.36
2014	1,099.2	△3.99	1,053.22	119.46	△12.07	31.74	△5.73	1.2159	△11.88
2015	1,172.0	△9.96	1,131.49	120.58	△12.88	33.00	△8.75	1.0926	△20.82
2016	1,208.5	△3.02	1,160.50	116.56	3.44	32.31	1.49	1.0489	4.17
2015. I	1,105.0	△0.52	1,100.26	119.05	△11.76	30.62	△2.29	1.1113	△19.47
II	1,124.1	△2.22	1,097.77	122.57	△14.30	30.86	△3.05	1.1213	△18.74
III	1,194.5	△7.98	1,167.80	119.84	△12.35	32.82	△8.84	1.1251	△18.47
IV	1,172.0	△6.21	1,157.69	120.58	△12.88	32.79	△8.75	1.0926	△20.82
2016. I	1,153.5	1.60	1,201.44	112.43	7.24	32.18	1.90	1.1334	△3.60
II	1,164.7	0.63	1,163.30	102.88	17.20	32.41	1.17	1.1123	△1.77
III	1,096.3	6.91	1,121.37	101.17	19.18	31.39	4.46	1.1223	△2.65
IV	1,208.5	△3.02	1,157.37	116.56	3.44	32.31	1.49	1.0489	4.17
2017. I	1,116.1	8.28	1,134.77	111.78	4.28	30.31	6.60	1.0686	△1.84
2015.9	1,194.5	△7.98	1,184.76	119.84	△0.31	32.82	△3.29	1.1251	△6.58
10	1,142.3	△3.77	1,148.18	121.00	△1.27	32.43	△2.13	1.0984	△8.52
11	1,150.4	△4.45	1,151.97	122.81	△2.73	32.82	△3.29	1.0590	△11.37
12	1,172.0	△6.21	1,172.24	120.58	△0.92	32.79	△3.20	1.0926	△8.94
2016.1	1,208.4	△3.01	1,201.66	118.81	1.49	33.56	△2.29	1.0941	△0.14
2	1,235.4	△5.13	1,217.35	113.78	5.98	33.35	△1.68	1.0914	0.11
3	1,153.5	1.60	1,188.21	112.43	7.24	32.18	1.90	1.1334	△3.60
4	1,143.9	2.46	1,147.51	108.10	11.54	32.19	1.86	1.1350	△3.74
5	1,190.6	△1.56	1,171.51	110.99	8.64	32.65	0.43	1.1144	△1.96
6	1,164.7	0.63	1,170.50	102.88	17.20	32.41	1.17	1.1123	△1.77
7	1,125.7	4.11	1,144.09	104.85	15.00	31.97	2.56	1.1075	△1.35
8	1,118.5	4.78	1,111.68	102.97	17.10	31.73	3.34	1.1148	△1.99
9	1,096.3	6.91	1,107.49	101.17	19.18	31.39	4.46	1.1223	△2.65
10	1,145.2	2.34	1,125.28	104.64	15.23	31.63	3.67	1.0978	△0.47
11	1,168.5	0.30	1,161.64	112.49	7.19	31.82	3.05	1.0649	2.60
12	1,208.5	△3.02	1,182.28	116.56	3.44	32.31	1.49	1.0489	4.17
2017.1	1,157.8	4.38	1,185.10	113.75	2.47	31.38	2.96	1.0706	△2.03
2	1,132.1	6.75	1,144.92	112.76	3.37	30.66	5.38	1.0587	△0.93
3	1,116.1	8.28	1,134.77	111.78	4.28	30.31	6.60	1.0686	△1.84
4	1,130.1	6.94	1,132.73	111.24	4.78	30.16	7.13	1.0868	△3.49

주: 1) 기준환율

2) 절상률은 전년말 대비

3) 기간평균

4) 일본시장, 대만시장의 현지일 기준

6. 통화·금리

(10억원, 전년동기대비, %)

	본 원 통 화 ¹⁾				M1 ²⁾			
	말 잔 액		평균잔액		말 잔 액		평균잔액	
	10억원	증감률 (%)	10억원	증감률 (%)	10억원	증감률 (%)	10억원	증감률 (%)
2012	88,342.0	10.4	82,131.1	9.2	470,010.6	6.3	441,963.6	3.8
2013	104,262.0	18.0	91,379.4	11.3	515,643.4	9.7	484,062.9	9.5
2014	116,793.7	12.0	103,331.5	13.1	585,822.6	13.6	536,733.4	10.9
2015	131,438.8	12.5	120,691.4	16.8	708,452.9	20.9	636,639.0	18.6
2014.6	108,039.1	6.8	101,412.3	11.2	540,139.9	7.5	532,041.2	9.3
7	106,243.0	22.9	101,164.2	11.6	531,341.8	11.0	534,028.8	9.2
8	113,389.6	19.0	107,682.4	14.9	544,162.6	12.1	538,640.3	11.9
9	111,871.6	9.7	105,354.1	10.7	550,777.8	11.5	548,550.8	11.8
10	108,763.8	11.9	107,117.5	14.4	555,516.1	12.1	551,416.0	12.1
11	107,076.3	13.5	106,667.9	13.9	571,182.8	13.0	562,006.2	12.6
12	116,793.7	12.0	110,175.6	13.6	585,822.6	13.6	577,721.1	13.4
2015.1	109,753.1	6.8	113,304.2	15.0	579,077.6	11.5	579,964.2	12.5
2	116,619.1	10.1	116,502.4	15.9	602,450.3	15.9	592,737.4	14.3
3	123,252.5	17.8	115,974.9	15.3	604,857.2	16.4	600,719.9	15.5
4	123,050.9	24.4	115,132.7	16.4	611,660.8	18.5	610,803.3	17.7
5	117,151.2	16.2	117,726.3	15.7	627,818.8	18.4	621,985.5	18.9
6	125,813.1	16.5	118,688.2	17.0	648,004.5	20.0	630,546.3	18.5
7	115,093.3	8.3	122,041.0	20.6	643,940.7	21.2	645,975.4	21.0
8	127,014.2	12.0	121,854.4	13.2	655,306.4	20.4	653,105.9	21.3
9	131,033.9	17.1	126,572.2	20.1	679,698.4	23.4	665,691.1	21.4
10	127,422.3	17.2	125,616.2	17.3	677,516.4	22.0	669,737.7	21.5
11	125,515.6	17.2	126,767.1	18.8	681,244.2	19.3	677,629.2	20.6
12	131,438.8	12.5	128,117.5	16.3	708,452.9	20.9	690,772.4	19.6
2016.1	129,407.9	17.9	131,279.3	15.9	697,934.8	20.5	699,767.3	20.7
2	133,668.7	14.6	134,913.0	15.8	711,849.4	18.2	708,014.0	19.4
3	135,399.8	9.9	132,957.9	14.6	723,265.0	19.6	713,861.2	18.8
4	132,719.7	7.9	135,038.9	17.3	716,065.7	17.1	720,818.5	18.0
5	135,575.7	15.7	135,971.3	15.5	723,033.8	15.2	722,544.4	16.2
6	137,961.5	9.7	135,758.4	14.4	743,524.4	14.7	730,747.4	15.9
7	133,761.8	16.2	135,906.7	11.4	734,947.4	14.1	735,172.2	13.8
8	136,740.8	7.7	139,073.9	14.1	747,093.0	14.0	738,120.9	13.0
9	144,308.9	10.1	142,079.6	12.3	749,120.0	10.2	751,408.5	12.9
10	138,161.4	8.3	141,103.5	12.3	758,454.8	11.9	753,367.3	12.5
11	140,003.1	11.5	141,757.2	11.8	767,375.6	12.6	762,639.7	12.5
12	143,435.3	9.1	143,458.7	12.0	795,531.1	12.3	776,589.6	12.4
2017.1	149,132.9	15.2	147,380.8	12.3	780,436.1	11.8	780,995.5	11.6
2	146,930.0	9.9	150,092.9	11.3	785,333.0	10.3	776,362.5	9.7

주: 1) 본원통화 = 화폐발행액(기념화폐 제외) + 지급준비예치금

2) M1(협의통화) = 현금통화(기념화폐를 제외한 민간화폐보유액) + 요구불예금 및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투신사 MMF 포함)

[부 록] 최신 노동·경제 지표

(10억원, 전년동기대비, %)

	M2 ³⁾				Lf ⁴⁾			
	말 잔액		평균잔액		말 잔액		평균잔액	
	10억원	증감률 (%)	10억원	증감률 (%)	10억원	증감률 (%)	10억원	증감률 (%)
2012	1,835,641.6	4.8	1,798,625.7	5.2	2,456,120.5	7.8	2,379,518.7	7.8
2013	1,920,795.0	4.6	1,885,781.3	4.8	2,615,093.5	6.5	2,543,232.5	6.9
2014	2,077,234.0	8.1	2,009,576.3	6.6	2,847,987.6	8.9	2,721,747.4	7.0
2015	2,247,375.0	8.2	2,182,911.9	8.6	3,098,929.4	9.0	2,986,698.6	9.7
2014.6	2,000,102.0	5.7	1,999,376.3	6.1	2,706,704.7	6.4	2,703,088.1	6.7
7	2,016,552.1	7.4	2,013,935.1	6.5	2,725,487.1	7.4	2,725,737.6	6.9
8	2,037,820.9	7.4	2,031,777.2	7.6	2,753,036.6	7.1	2,743,972.5	7.3
9	2,036,546.5	7.2	2,037,600.8	7.1	2,758,259.9	7.2	2,759,390.8	7.1
10	2,068,136.0	8.2	2,051,149.8	7.5	2,790,980.5	7.8	2,776,968.0	7.3
11	2,093,184.0	8.5	2,083,253.5	8.3	2,832,050.8	8.4	2,817,698.0	8.1
12	2,077,234.0	8.1	2,088,729.8	8.1	2,841,785.1	8.7	2,834,968.4	8.2
2015.1	2,096,198.3	7.7	2,092,223.5	8.0	2,863,226.4	8.5	2,857,610.1	8.4
2	2,120,316.5	8.2	2,109,892.3	8.0	2,891,068.1	8.9	2,876,467.8	8.6
3	2,127,954.4	8.5	2,127,887.8	8.3	2,916,050.1	9.8	2,907,976.4	9.3
4	2,146,427.4	9.4	2,148,114.7	9.0	2,936,912.9	10.4	2,936,746.7	10.0
5	2,175,557.4	9.1	2,166,741.1	9.3	2,979,013.0	10.6	2,960,998.1	10.3
6	2,191,606.1	9.6	2,179,561.1	9.0	3,002,690.3	10.9	2,986,316.5	10.5
7	2,196,934.7	8.9	2,200,510.9	9.3	3,010,295.2	10.4	3,013,503.9	10.6
8	2,218,472.5	8.9	2,218,660.3	9.2	3,038,484.0	10.4	3,028,981.1	10.4
9	2,224,823.0	9.0	2,234,315.1	9.6	3,049,012.0	10.5	3,049,823.2	10.5
10	2,239,898.7	8.3	2,232,432.0	8.8	3,077,824.7	10.3	3,059,051.9	10.2
11	2,239,271.9	7.0	2,242,848.2	7.7	3,080,817.1	8.8	3,076,029.2	9.2
12	2,247,375.0	8.2	2,246,070.1	7.5	3,098,929.4	9.0	3,086,877.8	8.9
2016.1	2,271,577.1	8.4	2,261,356.4	8.1	3,122,262.2	9.0	3,110,535.8	8.9
2	2,285,706.4	7.8	2,285,313.5	8.3	3,141,244.6	8.7	3,133,492.2	8.9
3	2,296,468.4	7.9	2,294,544.7	7.8	3,173,801.5	8.8	3,158,687.8	8.6
4	2,295,348.0	6.9	2,299,081.3	7.0	3,174,893.3	8.1	3,170,277.9	8.0
5	2,317,399.5	6.5	2,312,801.2	6.7	3,200,286.2	7.4	3,189,899.3	7.7
6	2,337,399.5	6.7	2,334,256.2	7.1	3,234,278.5	7.7	3,223,154.5	7.9
7	2,363,007.4	7.6	2,352,245.1	6.9	3,258,637.1	8.2	3,242,338.3	7.6
8	2,380,862.0	7.3	2,377,323.1	7.2	3,281,087.6	8.0	3,270,365.6	8.0
9	2,380,204.9	7.2	2,383,040.5	6.9	3,288,026.0	8.2	3,288,026.0	7.8
10	2,393,178.0	6.8	2,391,059.2	7.1	3,314,341.2	7.7	3,305,950.4	8.1
11	2,404,426.4	7.4	2,406,939.5	7.3	3,335,271.2	8.3	3,328,489.7	8.2
12	2,407,459.1	7.1	2,414,040.9	7.5	3,344,209.8	7.9	3,335,979.6	8.1
2017.1	2,401,547.9	5.7	2,417,807.6	6.9	3,347,750.8	7.2	3,359,110.8	8.0
2	2,427,078.1	6.2	2,420,285.6	5.9	3,377,224.1	7.5	3,364,315.8	7.4

주: 3) M2(광의통화) = M1 + 기간을 예, 적금 및 부금 + 시장형금융상품(양도성예금증서, 원배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 등) + 실적배당형 상품(금전신탁, 수익증권 등) + 금융채 + 기타(부신회원저축, 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 등) 단, 장기(만기 2년 이상) 금융상품 제외

4) M3(총유동성) = 현금통화 +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예수금 + 금융채 + 상업어음매출 + 양도성예금증서 + 원배조건부채권매도 + 표지어음 (1989년 11월부터 표지어음 포함)

* M1, M2는 여금취급기관 (중앙은행, 일반은행, 특수은행, 수출입은행, 증권사, 투신사, 은행신탁,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금융, 우체국예금)을, M3은 여금취급기관, 한국증권금융 및 생명보험회사를 각각 대상금융기관으로 함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주요 노동·경제 지표 분석

(10억원, 전년동기대비, %)

	화폐발행액		회사채 유동수익률 (3年)	CD 유동수익률 (91物)	콜금리 (1日)	어음부도율(금액기준) ⁵⁾		주 식	
	발잔액	증감률 (%)				서 울	전 국	평 균 지 수	거래량 (일평균 만주)
2012	54,334.4	11.7	3.77	3.30	3.08	0.09	0.12	1,930.4	48,733
2013	63,365.9	16.6	3.19	2.72	2.59	0.12	0.14	1,960.5	32,833
2014	74,944.8	18.3	2.98	2.49	2.34	0.15	0.19	1,982.2	27,808
2015	86,757.2	15.8	2.08	1.77	1.65	0.14	0.16	2,011.9	45,526
2016	97,382.3	12.2	1.89	1.49	1.34	0.08	0.11	1,987.0	3,7677
2014.6	67,208.4	15.7	3.17	2.65	2.48	0.15	0.22	1,995.1	24,221
7	68,038.8	16.0	2.97	2.65	2.49	0.14	0.21	2,022.0	30,361
8	70,612.4	19.1	2.93	2.52	2.34	0.25	0.28	2,060.9	30,408
9	71,641.4	13.5	2.79	2.35	2.23	0.18	0.22	2,042.7	34,431
10	71,392.6	15.8	2.60	2.21	2.06	0.14	0.19	1,942.8	35,188
11	72,511.7	16.4	2.47	2.14	1.98	0.10	0.12	1,959.7	31,483
12	74,944.8	18.3	2.46	2.13	1.99	0.12	0.17	1,941.9	31,966
2015.1	75,495.3	9.9	2.36	2.13	1.99	0.14	0.19	1,921.0	32,599
2	80,502.2	21.7	2.30	2.12	1.99	0.04	0.08	1,961.0	34,784
3	78,044.2	18.7	2.13	1.95	1.82	0.43	0.41	2,012.6	38,690
4	78,699.0	18.0	1.99	1.81	1.73	0.36	0.34	2,107.3	52,649
5	79,546.1	18.7	2.12	1.80	1.74	0.05	0.08	2,114.9	41,049
6	79,502.4	18.3	2.01	1.70	1.57	0.18	0.19	2,063.7	41,703
7	80,496.1	18.3	2.00	1.65	1.48	0.04	0.09	2,058.0	58,140
8	81,415.7	15.3	1.98	1.64	1.49	0.12	0.14	1,952.6	41,844
9	86,760.8	21.1	1.95	1.60	1.48	0.07	0.14	1,939.6	50,258
10	84,589.1	18.5	1.96	1.58	1.48	0.03	0.05	2,020.6	62,793
11	85,055.8	17.3	2.12	1.59	1.49	0.07	0.11	2,006.8	42,851
12	86,757.2	15.8	2.14	1.67	1.48	0.12	0.15	1,971.5	45,277
2016.1	89,627.0	18.7	2.09	1.67	1.49	0.05	0.09	1,894.7	36,508
2	90,794.2	12.8	1.95	1.64	1.49	0.09	0.15	1,900.6	34,385
3	89,728.5	15.0	1.98	1.63	1.49	0.03	0.06	1,976.5	35,215
4	90,291.1	14.7	1.94	1.61	1.49	0.08	0.10	1,996.2	39,868
5	91,287.9	14.8	1.91	1.58	1.49	0.06	0.13	1,966.7	48,253
6	91,555.1	15.2	1.79	1.43	1.28	0.19	0.21	1,977.0	46,740
7	91,926.5	14.2	1.65	1.36	1.23	0.03	0.08	2,002.5	38,419
8	92,875.6	14.1	1.65	1.35	1.23	0.06	0.09	2,036.7	35,478
9	96,128.2	10.8	1.70	1.34	1.24	0.19	0.19	2,042.6	46,588
10	94,898.6	12.2	1.78	1.35	1.23	0.08	0.10	2,036.0	33,185
11	95,936.1	12.8	2.02	1.42	1.23	0.04	0.06	1,981.8	30,048
12	97,382.3	12.2	2.16	1.54	1.22	0.07	0.11	2,021.7	28,743
2017.1	103,510.0	15.5	2.10	1.50	1.24	0.05	0.09	2,061.7	42,122
2	100,231.7	10.4	2.13	1.49	1.23	0.18	0.18	2,082.8	35,645
3	-	-	2.21	1.48	1.23	0.05	0.08	2,136.2	40,318
4	-	-	2.20	1.43	1.23	-	-	2,160.2	38,647

주: 5) 전자결제 조정 전

7. 경 기

(2010 = 100, %)

	선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		
		전월비	순환변동치		전월비	순환변동치
2013. 10	111.4	0.5	100.3	110.8	0.5	99.6
11	111.9	0.4	100.4	111.1	0.3	99.6
12	112.5	0.5	100.6	111.5	0.4	99.8
2014. 1	112.9	0.4	100.6	112.0	0.4	100.0
2	113.2	0.3	100.5	112.3	0.3	100.0
3	113.4	0.2	100.4	112.8	0.4	100.2
4	113.8	0.4	100.4	113.0	0.2	100.1
5	114.1	0.3	100.3	113.0	0.0	99.9
6	114.4	0.3	100.3	113.2	0.2	99.8
7	114.6	0.2	100.1	113.5	0.3	99.8
8	115.2	0.5	100.2	113.9	0.4	99.9
9	115.8	0.5	100.4	114.1	0.2	99.8
10	116.2	0.3	100.4	114.0	△0.1	99.5
11	116.5	0.3	100.3	114.2	0.2	99.5
12	117.0	0.4	100.3	114.9	0.6	99.8
2015. 1	117.7	0.6	100.6	115.3	0.3	99.9
2	118.1	0.3	100.6	115.9	0.5	100.2
3	118.7	0.5	100.7	116.2	0.3	100.1
4	119.1	0.3	100.7	116.6	0.3	100.2
5	119.8	0.6	100.8	116.4	△0.2	99.8
6	120.1	0.3	100.7	116.5	0.1	99.6
7	120.5	0.3	100.7	116.8	0.3	99.6
8	121.0	0.4	100.7	117.5	0.6	99.9
9	121.6	0.5	100.7	118.4	0.8	100.4
10	122.0	0.3	100.7	119.0	0.5	100.7
11	122.4	0.3	100.6	119.0	0.0	100.4
12	122.6	0.2	100.4	119.3	0.3	100.4
2016. 1	122.7	0.1	100.1	119.3	0.0	100.1
2	122.8	0.1	99.7	119.5	0.2	100.0
3	123.1	0.2	99.7	119.6	0.1	99.9
4	123.7	0.5	99.8	119.9	0.3	99.9
5	124.2	0.4	99.8	120.5	0.5	100.1
6	124.5	0.2	99.8	121.0	0.4	100.2
7	125.0	0.4	99.9	121.6	0.5	100.5
8	125.8	0.6	100.1	122.1	0.4	100.6
9	126.5	0.6	100.3	122.2	0.1	100.4
10	127.0	0.4	100.5	122.2	0.0	100.2
11	127.5	0.4	100.5	122.6	0.3	100.3
12	128.1	0.5	100.6	123.2	0.5	100.5
2017. 1 ^P	128.6	0.4	100.7	123.8	0.5	100.7
2 ^P	129.3	0.5	100.9	124.1	0.2	100.7
3 ^P	129.6	0.2	100.8	124.7	0.5	101.0

※ p는 잠정치임

8. 재 정

(조원)

	통합재정지출 ¹ (GDP대비, %) ²	경상 지출	이자지출	자본 지출	순융자	통합재정수입 ¹ (GDP대비, %) ²	국세 수입	세외 수입	자본 수입	사회보장 기여금
1995	71.6 (16.7)	49.8	2.2	13.1	8.7	72.8 (17.0)	56.8	9.3	1.3	5.4
1996	84.4 (17.5)	56.2	2.2	17.1	11.1	85.5 (17.8)	65.0	11.9	1.4	7.4
1997	100.3 (18.9)	62.8	2.3	18.8	18.7	93.4 (17.6)	69.9	13.8	1.3	8.5
1998	115.4 (22.0)	70.6	3.4	20.4	24.4	96.7 (18.4)	67.8	17.5	0.9	10.5
1999	121.0 (21.0)	76.8	5.9	24.4	19.8	107.9 (18.7)	75.7	18.9	1.4	12.0
2000	129.3 (20.4)	87.2	6.9	22.3	19.8	135.8 (21.4)	92.9	26.7	1.4	14.8
2001	136.8 (19.9)	101.9	7.2	24.9	10.1	144.0 (20.9)	95.8	29.4	1.3	17.5
2002	136.0 (17.9)	106.3	6.8	29.4	0.4	158.7 (20.8)	104.0	33.5	1.5	19.7
2003	164.3 (20.3)	136.2	6.6	30.6	△2.5	171.9 (21.2)	114.7	35.1	1.5	20.7
2004	173.1 (19.8)	144.7	8.3	27.0	1.4	178.8 (20.4)	117.8	36.8	1.3	22.8
2005	186.6 (20.3)	158.9	8.7	24.6	3.0	191.4 (20.8)	127.5	37.8	1.3	24.9
2006	203.6 (21.1)	171.3	9.8	26.5	5.7	209.6 (21.7)	138.0	42.7	1.5	27.3
2007	206.6 (19.8)	173.3	10.2	26.2	7.1	243.6 (23.4)	161.5	50.5	1.9	29.7
2008	234.9 (21.3)	201.0	10.4	28.4	5.5	250.7 (22.7)	167.3	48.6	1.9	32.9
2009	268.4 (23.3)	215.1	11.5	35.2	18.0	250.8 (21.8)	164.5	49.8	2.5	33.9
2010	254.2 (20.1)	216.9	13.4	34.2	3.1	270.9 (21.4)	177.7	55.2	2.4	35.6
2011	273.7 (20.5)	235.5	14.6	34.3	3.9	292.3 (21.9)	192.4	58.5	2.5	38.9
2012	293.0 (21.3)	252.6	14.2	34.3	6.1	311.5 (22.6)	203.0	60.8	3.7	43.9
2013	300.2 (21.0)	268.0	13.4	34.0	△1.8	314.4 (22.0)	201.9	63.1	3.3	46.1
2014	312.4 (21.0)	280.5	14.1	31.0	0.9	320.9 (21.6)	205.5	62.9	2.7	49.8
2015	339.4 (21.8)	296.2	14.1	34.3	8.8	339.2 (21.8)	217.9	64.9	3.3	53.1
2016	354.4 (21.6)	310.0	14.0	32.6	11.7	371.3 (22.7)	242.6	68.4	3.4	56.9

	통합재정수지 (GDP대비, %) ²	관리재정수지 (GDP대비, %) ²	국가채무 (GDP대비, %) ²	조세부담률 (%)	국민부담률 (%)
1995	1.2 (0.3)	△2.2 (△0.5)	35.6 (8.3)	17.6	18.9
1996	1.1 (0.2)	△4.2 (△0.9)	45.6 (9.5)	17.9	19.5
1997	△7.0 (△1.3)	△12.8 (△2.4)	60.3 (11.4)	17.4	20.3
1998	△18.8 (△3.6)	△24.9 (△4.7)	80.4 (15.3)	17.0	20.3
1999	△13.1 (△2.3)	△20.4 (△3.5)	98.6 (17.1)	17.2	20.7
2000	6.5 (1.0)	△6.0 (△0.9)	111.2 (17.5)	17.9	21.5
2001	7.3 (1.1)	△8.2 (△1.2)	121.8 (17.7)	17.8	21.8
2002	22.7 (3.0)	5.1 (0.7)	133.8 (17.6)	17.8	21.9
2003	7.6 (0.9)	1.0 (0.1)	165.8 (20.4)	18.2	22.7
2004	5.6 (0.6)	△3.6 (△0.4)	203.7 (23.3)	17.4	22.0
2005	4.9 (0.5)	△6.7 (△0.7)	247.9 (27.0)	17.8	22.5
2006	6.0 (0.6)	△8.4 (△0.9)	282.7 (29.3)	18.6	23.6
2007	37.0 (3.6)	6.8 (0.7)	299.2 (28.7)	19.6	24.8
2008	15.8 (1.4)	△11.7 (△1.1)	309.0 (28.0)	19.3	24.6
2009	△17.6 (△1.5)	△43.2 (△3.8)	359.6 (31.2)	18.2	23.6
2010	16.7 (1.3)	△13.0 (△1.0)	392.2 (31.0)	17.9	23.2
2011	18.6 (1.4)	△13.5 (△1.0)	420.5 (31.6)	18.4	24.0
2012	18.5 (1.3)	△17.4 (△1.3)	443.1 (32.2)	18.7	24.8
2013	14.2 (1.0)	△21.1 (△1.5)	489.8 (34.3)	17.9	24.3
2014	8.5 (0.6)	△29.5 (△2.0)	533.2 (35.9)	18.0	24.6
2015	△0.2 (△0.01)	△38.0 (△2.4)	591.5 (37.8)	18.5	25.2
2016	16.9 (1.0)	△22.7 (△1.4)	627.1 (38.3)	19.4	26.3

주 : 1) 통합재정 기준 2) GDP는 신계열(08 SNA) 기준

9. 해외지표

가. 주요국의 경제지표

(미국)

연월중	GDP 성장률	1인당 GDP	무 역 ¹⁾				경상 수지	대외 준비 ²⁾ (기말)	달러화 실 환 율 ³⁾	물 가 ⁴⁾		실업률 ⁵⁾	노 동 생산성 ⁶⁾
			상품수출 (BOP)		상품수입 (BOP)					생산자	소비자		
	전기대비 연율(%)	달러	억달러	전기대비 (%)	억달러	전기대비 (%)	십억달러	1973.3 =100	전기대비(%)	%	전기대비 연율(%)		
2015	2.6	56,159	15,103	△7.5	22,729	△4.7	△463	1,188	90.95	△0.9	0.1	5.3	0.9
2016	1.6	57,420	14,597	△3.4	22,096	△2.8	△481	1,147	91.65	0.4	1.3	4.9	0.2
2016.2	0.8	-	1,193.8	2.1	1,850.0	2.2	△133.1	1,190	92.98	0.1	1.0	4.9	△0.6
3			1,170.0	△2.0	1,746.5	△5.6		1,187	91.39	△0.1	0.9	5.0	
4			1,198.6	2.4	1,786.4	2.3		1,213	89.30	0.2	1.1	5.0	
5	1.4	-	1,192.9	△0.5	1,821.1	1.9	△119.7	1,196	89.66	0.0	1.0	4.7	△0.1
6			1,202.9	0.8	1,864.8	2.4		1,204	89.51	0.2	1.0	4.9	
7			1,237.7	2.9	1,844.5	△1.1		1,206	90.90	0.0	0.8	4.9	
8	3.5	-	1,250.5	1.0	1,856.0	0.6	△116.0	1,215	89.84	0.0	1.1	4.9	3.3
9			1,263.3	1.0	1,837.4	△1.0		1,212	90.10	0.6	1.5	4.9	
10			1,227.8	△2.8	1,863.2	1.4		1,191	91.92	1.1	1.6	4.8	
11	2.1	-	1,220.9	△0.6	1,889.9	1.4	△112.4	1,157	93.66	1.3	1.7	4.6	1.3
12			1,268.5	3.9	1,925.6	1.9		1,147	95.43	1.6	2.1	4.7	
2017.1	-	-	1,281.1	1.0	1,976.5	2.6	-	1,156	94.67	1.6	2.5	4.8	-
2			1,284.6	0.3	1,934.4	△2.1		1,158	93.97	2.2	2.7	4.7	
3			-	-	-	-		1,162	94.49	2.3	2.4	4.5	
4			-	-	-	-		-	94.11	-	-	-	

연월중	통화 ⁷⁾ M2 전기 대비 (연율%)	금리(연%)					산업생산 ¹¹⁾			수요관련지표		주가지수 ¹²⁾
		Federal Funds Rate (기말)	재할인율 ⁸⁾ (기말)	프라임 레이프 (기말)	단기 국채 수익률 (기간평균)	장기 국채 수익률 (기간평균)	전산업	제조업	제조업 가동률 (%) ¹³⁾	소매 판매액	주택착공 호수	
2015	5.7	0.25-0.50	1.00	3.50	0.05	2.14	0.3	0.8	75.5	2.3	10.7	17,425.0
2016	7.1	0.50-0.75	1.25	3.64	0.32	1.84	△0.1	0.1	75.0	3.3	6.1	19,762.6
2016.2	6.8	0.25-0.50	1.00	3.50	0.31	1.78	△0.2	△0.2	75.4	0.7	7.5	16,516.5
3	7.2	0.25-0.50	1.00	3.50	0.30	1.89	△0.7	△0.2	75.2	△0.1	△8.2	17,685.1
4	8.5	0.25-0.50	1.00	3.50	0.23	1.81	0.3	0.0	75.1	0.9	3.8	17,773.6
5	7.2	0.25-0.50	1.00	3.50	0.28	1.81	△0.1	△0.2	75.0	0.2	△2.3	17,787.2
6	6.7	0.25-0.50	1.00	3.50	0.27	1.64	0.4	0.2	75.1	0.8	5.9	17,930.0
7	5.9	0.25-0.50	1.00	3.50	0.30	1.50	0.1	0.1	75.1	0.0	1.9	18,432.2
8	8.0	0.25-0.50	1.00	3.50	0.30	1.56	△0.1	△0.4	74.7	△0.1	△4.4	18,400.9
9	5.6	0.25-0.50	1.00	3.50	0.29	1.63	△0.2	0.2	74.9	1.0	△9.6	18,308.2
10	5.1	0.25-0.50	1.00	3.50	0.33	1.76	0.2	0.2	75.0	0.6	25.5	18,142.4
11	7.3	0.25-0.50	1.00	3.50	0.45	2.14	△0.2	0.2	75.1	0.1	△13.0	19,123.6
12	3.3	0.50-0.75	1.25	3.75	0.51	2.49	0.8	0.2	75.2	0.9	11.0	19,762.6
2017.1	7.5	0.50-0.75	1.25	3.75	0.52	2.43	△0.3	0.4	75.4	0.5	△2.7	19,864.1
2	3.6	0.50-0.75	1.25	3.75	0.53	2.42	0.1	0.3	75.6	△0.2	5.0	20,812.2
3	7.5	0.75-1.00	1.50	4.00	0.75	2.48	0.5	△0.4	75.3	△0.2	△6.8	20,663.2

주: 월별 및 분기별 전기대비 증감율은 계절변동조정 후 기준. 최근 수치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1) 국제수지 기준 2) 금+SDR+IMF포지션+외환 3) 캐나다, 유로지역, 일본, 영국, 스위스, 호주, 스웨덴 등 7개국 통화에 대한 가중평균환율지수 명목기준

4) 생산지출가는 최종재 기준 5) 계절변동조정 후 6) 전산업(농업부문 제외)취업자의 단위시간당 불변산출액 기준(2009=100)

7) M1 = 연외보유화폐액 + 비은행금융기관발행 여행지수표 +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 + 예금금융기관의 NOW계정 및 AST계정 + 신용조합의 출자금 계정 + 저축금융기관의 요구불예금. M2 = M1 + 예금금융기관의 익일물 RP + 미국은행 해외지점의 거주자 익일물 유로달러예금 + 예금금융기관의 저축예금 및 소액정기예금 + 일반투자자 보유 MMF - 예금금융기관 및 MMF의 IRA와 Keogh계정 예금. 평잔기준 8) 2003. 1. 9일 이후부터는 primary credit 기준

9) 3개월 만기 10) 10년 만기 11) 지수(2007=100) 증감률 12) 월별 수치는 계절변동조정 후 13) 다우존스 공업평균 주가 기말기준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주요 노동·경제 지표 분석

(중 국)

연월중	GDP 성장률	1인당 GDP	무 역				경 상 수 지	대외준비 ¹⁾ (기말)	대미달러 환 율 (Yuan/US\$) ²⁾	
			수출(FOB)		수입(CIF)					
	전년동기 대비(%)	미달러	억 미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 미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 미달러	기 말	평 균	
2015	6.9	7,998	22,735	△2.9	16,796	△14.1	3,042	33,304	6.494	6.227
2016	6.7	8,127	20,982	△7.7	15,874	△5.5	1,964	30,105	6.937	6.640
2016.1	6.7	-	1,694	△15.2	1,126	△19.9	452	32,309	6.552	6.553
2			1,217	△28.0	936	△13.8		32,023	6.545	6.531
3			1,551	7.5	1,302	△8.1		32,126	6.461	6.506
4	6.7	-	1,666	△5.3	1,268	△11.1	651	32,197	6.459	6.476
5			1,757	△6.9	1,309	△0.6		31,917	6.579	6.532
6			1,766	△6.8	1,313	△9.1		32,052	6.631	6.587
7	6.7	-	1,807	△6.5	1,323	△12.5	742	32,011	6.651	6.677
8			1,888	△3.8	1,387	1.7		31,852	6.691	6.647
9			1,835	△10.5	1,430	△1.6		31,664	6.678	6.671
10	6.8	-	1,769	△8.0	1,287	△1.7	118	31,207	6.764	6.744
11			1,936	△1.5	1,505	5.5		30,516	6.887	6.838
12			2,092	△6.3	1,695	3.6		30,105	6.937	6.918
2017.1	6.9	-	1,823	7.6	1,314	16.8	-	29,982	6.859	6.892
2			1,198	△1.5	1,291	38.0		30,051	6.875	6.871
3			1,806	16.4	1,567	20.3		30,091	6.899	6.893

연월중	물 가		통 화 ³⁾		금리(기말, 연%)		산 업 생 산		소매판매 ⁴⁾	주가지수 ⁵⁾
	생산자	소비자	M1	M2	재할인율	금융기관 대출금리 (1년)	전산업	국유기업		
							전년동기대비(%)			
	전기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기대비(%)			
2015	△5.2	1.4	15.2	13.3	2.25	4.35	6.1	1.4	10.7	3,539.18
2016	△1.4	2.0	21.4	11.3	2.25	4.35	6.0	2.0	10.4	3,103.64
2016.1	△5.3	1.8	18.6	14.0	2.25	4.35	—	—	—	2,737.60
2	△4.9	2.3	17.4	13.3	2.25	4.35	5.4	△2.0	10.2	2,687.98
3	△4.3	2.3	22.1	13.4	2.25	4.35	6.8	3.2	10.5	3,003.92
4	△3.4	2.3	22.9	12.8	2.25	4.35	6.0	△0.1	10.1	2,938.32
5	△2.8	2.0	23.7	11.8	2.25	4.35	6.0	△0.5	10.0	2,916.62
6	△2.6	1.9	24.6	11.8	2.25	4.35	6.2	△0.1	10.6	2,929.61
7	△1.7	1.8	25.4	10.2	2.25	4.35	6.0	2.9	10.2	2,979.34
8	△0.8	1.3	25.3	11.4	2.25	4.35	6.3	3.6	10.6	3,085.49
9	0.1	1.9	24.7	11.5	2.25	4.35	6.1	3.3	10.7	3,004.70
10	1.2	2.1	23.9	11.6	2.25	4.35	6.1	3.2	10.0	3,100.49
11	3.3	2.3	22.7	11.4	2.25	4.35	6.2	4.2	10.8	3,250.03
12	5.5	2.1	21.4	11.3	2.25	4.35	6.0	6.4	10.9	3,103.64
2017.1	6.9	2.5	14.5	11.3	2.25	4.35	—	—	—	3,159.17
2	7.8	0.8	21.4	11.1	2.25	4.35	6.3	5.4	9.5	3,241.73
3	7.6	0.9	18.8	10.6	2.25	4.35	7.6	7.7	10.9	3,222.51

주: 최근 수치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1) 외환보유액 2) 중국인민은행 고시환율 3) M1=현금통화+요구불예금, M2=M1+준통화(정기예금+저축예금+기타예금), 밀잔

4) 2월은 1~2월 누계치

5) 상해 종합주가지수(1990=100), 기말기준

자료: 중국인민은행, 국가통계국,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각호

[부 록] 최신 노동·경제 지표

(일 본)

연월중	GDP 성장률	1인당 GDP	무 역				경상 수지	대외 준비 ¹⁾ (기말)	대미달러 환 율 ²⁾ (¥/US\$)		물 가 ³⁾		실업률 ⁴⁾	노 동 ⁵⁾ 생산성
			수출(FOB)		수입(CIF)						생산자	소비자		
			억엔	전년동 기대비 (%)	억엔	전년동 기대비 (%)								
2015	1.2	32,479	756,139	3.4	784,055	△8.7	16,235	12,332	120.39	121.05	△2.3	(△3.5)	0.8	(0.2)
2016	1.0	37,304	700,358	△7.4	660,420	△15.8	20,342	12,169	116.96	108.77	△3.5	(△1.2)	△0.1	(0.3)
2016.2	0.5 3 4 5 6 7 8 9 10 11 12	-	57,022.6	△4.0	54,668.0	△14.1	2,380	12,541	112.92	114.86	△3.7	0.2	3.2	△1.1
3			64,567.9	△6.8	57,119.1	△14.8	2,972	12,621	112.35	112.95	△4.0	0.0	3.2	△1.6
4			58,895.5	△10.1	50,782.9	△23.1	1,816	12,625	106.50	109.54	△4.4	△0.3	3.2	△3.3
5			50,919.4	△11.3	51,392.8	△13.7	1,758	12,540	111.08	108.95	△4.6	△0.5	3.2	0.8
6			60,253.4	△7.4	53,388.7	△18.7	977	12,654	102.81	105.37	△4.5	△0.4	3.1	△2.2
7			57,284.3	△14.0	52,239.1	△24.6	1,940	12,648	102.06	103.99	△4.2	△0.4	3.0	△2.7
8			53,163.9	△9.6	53,510.2	△17.0	1,970	12,561	103.24	101.31	△3.8	△0.5	3.1	5.2
9			59,689.5	△6.9	54,823.6	△16.1	1,864	12,601	101.35	101.96	△3.3	△0.5	3.0	0.4
10			58,702.5	△10.3	53,890.9	△16.3	1,547	12,428	104.99	103.72	△2.7	0.1	3.0	△2.5
11			59,564.0	△0.4	58,098.8	△8.7	1,427	12,193	113.00	108.28	△2.3	0.5	3.1	4.5
12			66,789.2	5.4	60,430.2	△2.5	1,114	12,169	116.96	116.11	△1.2	0.3	3.1	1.4
2017.1			2 3	-	54,220.0	1.3	65,138.7	8.4	66	12,316	113.78	115.15	0.5	0.4
2	63,474.8	11.3			55,339.4	1.2	2,814	12,323	112.33	112.94	1.1	0.3	2.8	-
3	72,290.8	12.0			66,143.6	15.8	-	12,303	111.39	112.91	1.4	-	-	-

연월중	통화 ⁶⁾	금리(기말, 연%)				광 공 업 ⁷⁾				수요관련지표				주가 지수 ¹¹⁾
	M3	기 대 이	전 년 동 기 대 비	단 기 프 라 임 레 이 트	장 기 프 라 임 레 이 트	생 산	출 하	재 고	제조업 가동률	소 매 판 매	민간 기계 수주액 ⁸⁾	민간 건설 수주액 ⁹⁾		
	전년동기 대비 (%)													
2015	3.0	0.30	1.475	1.10	△1.2	△1.3	0.0	98.7	△0.4	4.1	19.4	19,034		
2016	2.9	0.30	1.475	0.95	△0.1	△0.6	△5.3	97.7	△0.5	1.7	3.6	19,114		
2016.2	2.6 3 4 5 6 7 8 9 10 11 12	0.30	1.475	1.00	△1.8	△1.6	△0.5	95.4	△0.8	△5.2	△11.8	16,027		
3					1.2	1.3	1.6	96.4	0.3	1.4	20.1	16,759		
4					0.4	0.3	△1.4	96.4	0.3	△6.4	△24.8	16,666		
5					△1.2	△0.7	0.2	95.9	△0.3	△2.2	51.9	17,235		
6					1.5	1.1	△0.4	96.6	0.0	7.1	1.9	15,576		
7					0.0	0.3	△1.7	97.2	1.6	5.6	△5.8	16,569		
8					1.3	0.2	0.0	99.2	△1.7	△5.9	9.7	16,887		
9					0.3	0.6	△0.5	97.6	0.5	0.3	△9.2	16,450		
10					0.3	1.1	△1.3	98.7	2.4	3.4	24.4	17,425		
11					1.0	1.0	△1.8	100.5	△0.7	△2.8	21.6	18,308		
12					0.7	0.0	0.7	101.1	△0.7	2.1	8.9	19,114		
2017.1					3.5 2 3	0.30	1.475	0.95	△2.1	△1.1	0.1	98.3	0.2	△3.2
2	3.2	1.4	0.7	101.4					0.3	1.5	△1.5	19,119		
3	-	-	-	-					-	-	-	18,909		

주: 최근 수치는 잠정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1) 재무성발표 외환보유액 2) 동경시장 현치종가 기준 3) ()안은 12월의 전년동월대비, 소비자물가 2010=100, 생산자물가 2010=100 생산자물가는 국내상품 기준 4) 계절변동조정 후 5) 제조업 2010년=100 6) M3 (구M2+CD) = 현금통화 + 요구불예금 + 준통화 + 양도성예금기준, 2008.6.9.개편, 평잔기준 7) 2006년 8월 11일자로 일본은행이 종전의 공정보합을 2001년 이후부터 소급하여 「기준할인을 및 기준대출이율」로 명칭 변경 8) 광공업 2010년=100 9) 선박 및 전력용 기계 제외 10) 민간건설수주는 대기업 50사 대상 11) 일경평균주가 기말기준 자료: 일본은행, 내각부, 재무성, 경제산업성, 생산성본부, IMF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주요 노동·경제 지표 분석

(유로지역)

연월중	GDP 성장률	1인당 GDP ¹⁾	무 역 ^{2) 3)}				경상수지	대외준비 (기말) ⁴⁾	다미달려 한 음 (U\$/EUR)		물 가 ⁵⁾		실업률 ³⁾ (%)
			상품수출(FOB)		상품수입(CIF)						생산자	소비자	
			전기대비 (%)	유로	억유로	전기 대비 (%)							
2015	2.0	30,900	20,360	4.8	17,977	23	3,362	7,014	1,086	1,110	△2.7	0.0	10.9
2016	1.8	31,600	20,418	0.3	17,731	△1.4	3,594	7,458	1,057	1,054	△2.3	0.2	10.0
2016.2	0.5	-	1,676	0.0	1,477	0.9	283	7,617	1,087	1,110	△4.1	△0.2	10.3
3			1,681	0.3	1,439	△2.6	308	7,688	1,138	1,114	△4.0	0.0	10.2
4			1,694	0.8	1,445	0.4	373	7,829	1,145	1,134	△4.4	△0.2	10.2
5	0.3	-	1,681	△0.7	1,431	△1.0	332	7,616	1,113	1,130	△3.8	△0.1	10.1
6			1,676	△0.3	1,453	1.5	311	8,014	1,110	1,124	△3.1	0.1	10.1
7			1,667	△0.5	1,470	1.2	281	8,052	1,117	1,106	△2.6	0.2	10.0
8	0.4	-	1,719	3.1	1,483	0.9	299	7,996	1,116	1,120	△1.9	0.2	9.9
9			1,702	△1.0	1,472	△0.7	316	8,114	1,124	1,121	△1.5	0.4	9.9
10			1,702	0.0	1,504	2.2	225	7,851	1,098	1,102	△0.5	0.5	9.8
11	0.5	-	1,756	3.2	1,535	2.1	273	7,514	1,059	1,078	0.0	0.6	9.7
12			1,788	1.8	1,558	1.5	244	7,458	1,057	1,054	1.6	1.1	9.6
2017.1	-	-	1,772	△0.9	1,615	3.7	261	7,602	1,080	1,063	3.9	1.8	9.6
2			1,779	0.4	1,587	△1.7	379	7,795	1,058	1,064	4.5	2.0	9.5
3			-	-	-	-	-	7,767	1,069	1,069	-	1.5	-

연월중	통화 M3 ⁷⁾	금 리(연%, 기말)					산업생산			수요관련지표		주가 지수 ¹¹⁾
		초단기 여신 금리	초단기 수신 금리	단기공개 시장조작 금리	EURIBOR ⁸⁾	장기 국채 수익률 ⁹⁾	전산업 ¹⁰⁾	제조업	건설업	소매 판매액	신규차량 등록수	
	전년동기 대비 (%)						전기대비(%)			전기대비 (%)	전년동기 대비(%)	
2015	4.7	0.30	△0.30	0.05	△0.13	0.77	2.1	2.2	△0.9	2.7	8.8	3,267.5
2016	5.0	0.25	△0.40	0.00	△0.32	0.26	1.3	1.5	1.6	1.9	7.2	3,290.5
2016.2	5.1	0.30	△0.30	0.05	△0.21	0.22	△1.4	△1.5	△1.6	0.4	10.5	2,945.8
3	5.2	0.25	△0.40	0.00	△0.24	0.26	△0.9	△1.2	△1.7	△0.3	7.6	3,004.9
4	4.8	0.25	△0.40	0.00	△0.25	0.34	1.5	1.6	0.0	0.3	8.4	3,028.2
5	4.9	0.25	△0.40	0.00	△0.26	0.22	△1.1	△1.1	0.2	0.3	10.5	3,063.5
6	5.1	0.25	△0.40	0.00	△0.29	△0.10	0.6	0.8	0.2	0.0	6.8	2,864.7
7	5.1	0.25	△0.40	0.00	△0.30	△0.15	△0.7	△0.7	1.5	0.3	5.5	2,990.8
8	5.0	0.25	△0.40	0.00	△0.30	△0.12	2.0	2.1	0.3	△0.1	4.0	3,023.1
9	5.1	0.25	△0.40	0.00	△0.30	△0.16	△0.8	△1.1	△0.9	△0.1	9.3	3,002.2
10	4.5	0.25	△0.40	0.00	△0.31	0.14	0.2	0.0	0.5	1.2	4.2	3,055.3
11	4.8	0.25	△0.40	0.00	△0.31	0.27	1.5	1.6	1.0	△0.2	4.5	3,051.6
12	5.0	0.25	△0.40	0.00	△0.32	0.26	△1.1	△1.1	△0.3	△0.3	3.4	3,290.5
2017.1	4.8	0.25	△0.40	0.00	△0.33	0.50	0.3	0.1	△2.4	0.1	3.7	3,230.7
2	4.7	0.25	△0.40	0.00	△0.33	0.25	△0.3	0.2	6.9	0.7	4.8	3,319.6
3	-	0.25	△0.40	0.00	△0.33	0.38	-	-	-	-	5.5	3,500.9

주: 월별 및 분기별 증감률은 계절변동조정 후 기준, 최근 수치에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1) EU통계청 자료 2) 역내교역제외 3) 계절별변동 조정후 4) 유럽중앙은행 및 회원국 중앙은행의 대외준비자산(금 + SDR + IMF포지션 + 외환) 5) 생산자물가는 건설업 제외, 소비자물가는 종합소비자물가지수(HECP) 기준 6) ILO 기준, 계절변동 조정후

7) 현금통화 + 요구불예금 + 만기 2년 이내의 정기예금 + 통지기간 3개월 이내의 통지예금 + 환매채 + 만기 2년 이내의 채무증서 + 투자신탁 + 단기금융상품, 말잔기준 8) 3개월 만기 9) 10년 만기 10) 건설업 제외 11) Dow Jones EURO STOXX 50 Index, 기말기준

자료: Monthly Bulletin(European Central Bank), Reuters

(독 일)

연월중	GDP 성장률	1인당 GDP ¹⁾	무 역 ²⁾				경상수지 ²⁾	대 외 준 비 (기말) ³⁾	물 가	
			상품수출(FOB)		상품수입(CIF)				생산자 ⁴⁾	소비자
	전기대비 (%)	유로	억유로	전기대비 (%)	억유로	전기대비 (%)	억유로	억달러	전기대비(%)	
2015	1.7	37,100	11,936	6.2	9,492	4.3	2,600	1,737	△1.9	0.2
2016	1.9	37,900	12,069	1.1	9,548	0.6	2,613	1,853	△1.7	△0.7
2016.2	0.7	-	989	0.6	793	△0.3	206	1,937	△3.0	0.0
3			1,007	1.8	776	△2.1	291	1,950	△3.1	0.3
4			1,006	△0.1	777	0.1	281	2,004	△3.1	△0.1
5			993	△1.3	777	0.0	179	1,940	△2.7	0.1
6	0.5	-	992	△0.1	782	0.6	240	2,050	△2.2	0.3
7			976	△1.6	781	△0.1	182	2,070	△2.0	0.4
8			1,010	3.5	797	2.0	170	2,048	△1.6	0.4
9			1,000	△1.0	791	△0.8	237	2,051	△1.4	0.7
10	0.4	-	1,006	0.6	800	1.1	188	1,988	△0.4	0.8
11			1,036	3.0	828	3.5	245	1,886	0.1	0.8
12			1,016	△1.9	828	0.0	248	1,853	1.0	1.7
2017.1			1,040	2.4	851	2.8	142	1,906	2.4	1.9
2	-	-	1,049	0.9	838	△1.5	204	1,957	3.1	2.2
3			-	-	-	-	-	1,945	3.1	1.6

연월중	실업률 (%) ⁵⁾	금 리(연%, 기말)		산업생산(전기대비, %)			수요관련지표(전기대비, %)			추가지수 ⁸⁾
		단기국채 수익률 ⁶⁾	장기국채 수익률 ⁷⁾	전산업	제조업	건설업	소 매 판매액	자본지 수 주	건설수주	
2015	4.6	△0.54	0.63	0.8	0.5	△2.2	2.5	1.8	4.0	10,743.0
2016	4.1	△0.99	0.21	1.0	1.3	0.8	1.3	1.5	12.9	11,481.1
2016.2	4.3	△0.60	0.11	△1.1	△1.0	2.9	0.0	△1.7	△0.8	9,495.4
3	4.3	△0.59	0.15	△0.8	△0.9	△3.6	△0.8	6.9	△1.5	9,965.5
4	4.2	△0.62	0.27	0.8	0.8	△2.2	0.0	△7.4	△0.5	10,039.0
5	4.2	△0.60	0.14	△1.2	△1.6	△0.1	0.7	2.5	2.8	10,262.7
6	4.2	△0.68	△0.13	1.2	1.6	0.1	△0.1	0.1	△1.4	9,680.1
7	4.2	△0.74	△0.12	△1.8	△2.2	0.9	0.5	△0.3	△3.7	10,337.5
8	4.1	△0.82	△0.07	3.3	3.7	△0.3	△0.2	0.3	△1.2	10,592.7
9	4.1	△0.80	△0.12	△1.4	△1.5	△0.6	△0.7	△0.1	0.7	10,511.0
10	4.0	△0.85	0.16	0.4	0.4	1.2	1.5	4.3	8.1	10,665.0
11	3.9	△0.81	0.28	0.4	0.4	2.1	△0.7	△3.6	△0.6	10,640.3
12	3.9	△0.99	0.21	△2.4	△2.7	△2.7	0.7	10.3	0.4	11,481.1
2017.1	3.9	△0.83	0.44	2.4	2.6	0.8	△1.4	△9.3	△0.3	11,535.3
2	3.9	△0.86	0.21	0.8	0.9	13.6	1.9	0.3	2.0	11,834.4
3	-	△0.82	0.33	-	-	-	-	-	-	12,312.9

주: 월별 및 분기별 증감률은 계절변동조정 후 기준, 최근 수치에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1) EU통계청 자료 2) 계절변동 조정 후, 경상수지는 조정 전 3) 연방은행의 대외준비자산(금 + 외환 + SDR + IMF포지션 + 유럽통화협력기금에 대한 출연금 및 대여금) 4) 공산품 기준 5) EU 통계청 기준, 계절변동조정 후 6) 3개월 만기 7) 10년 만기 8) DAX Index (1987.12.30 = 1,000), 기말기준

자료: Monthly Bulletin(Deutsche BundesBank),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IMF), Main Economic Indicators(OECD)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주요 노동·경제 지표 분석

(영 국)

연월중	GDP 성장률	1인당 GDP ¹⁾	무 역				경상 수지	대외 준비 ²⁾ (기말)	대미달러 환 율 (US/£) ³⁾		실업률 ⁴⁾
			상품수출(FOB)		상품수입(CIF)						
	전기대비 (%)	유로	억파운드	전기대비 (%)	억파운드	전기대비 (%)	억파운드	억달러	기말	평균	
2015	2.2	39,600	2,876	△1.8	4,073	△2.0	△802	1,296	1.4738	1.5283	5.4
2016	1.8	36,100	3,014	4.8	4,355	6.9	△845	1,350	1.2336	1.3551	4.9
2016.2	0.2 0.6 0.5 0.7	-	233	△1.1	343	4.6	△257	1,330	1.3915	1.4311	5.1
3		-	231	△0.8	353	2.7	-	1,375	1.4358	1.4252	5.1
4		-	254	9.6	363	3.0	-	1,427	1.4611	1.4311	5.0
5		-	251	△1.2	338	△6.9	△210	1,387	1.4477	1.4521	4.9
6		-	244	△2.6	356	5.3	-	1,419	1.3306	1.4208	4.9
7		-	248	1.8	363	2.1	-	1,457	1.3226	1.3146	4.9
8		-	251	0.9	386	6.3	△257	1,452	1.3137	1.3102	4.9
9		-	246	△2.0	387	0.2	-	1,455	1.2975	1.3146	4.8
10		-	267	8.6	361	△6.8	-	1,440	1.2242	1.2332	4.8
11		-	274	2.7	387	7.2	△121	1,378	1.2504	1.2439	4.8
12		-	280	2.4	389	0.7	-	1,350	1.2336	1.2470	4.8
2017.1		-	272	△2.9	392	0.6	-	1,402	1.2577	1.2350	4.7
2	-	272	△0.1	396	1.2	-	1,403	1.2380	1.2486	4.7	
3	-	-	-	-	-	-	1,419	1.2477	1.2342	-	

연월중	물 가		통 화	금리(기말, 연%)		산업생산		수요관련지표		주가지수 ¹⁰⁾
	생산자 ⁵⁾	소비자	M4 ⁷⁾	정책금리 ⁸⁾	참가국채 수익률 ⁹⁾	전산업	제조업	소 매 판	기업투자	
	전년동기대비(%)		전년동기대비 (%)			전기대비(%)				
2015	△1.7	0.1	△0.4	0.50	2.50	1.3	△0.1	4.1	5.1	6,242.3
2016	0.5	0.6	3.8	0.25	1.77	1.5	1.3	5.5	△1.5	7,142.8
2016.2	△1.1	0.3	2.2	0.50	2.12	△0.2	△0.9	△1.2	△1.1	6,097.1
3	△0.7	0.5	1.5	0.50	2.14	0.5	0.1	0.5	0.8	6,174.9
4	△0.5	0.3	1.0	0.50	2.27	2.3	2.5	1.0		6,241.9
5	△0.5	0.3	1.8	0.50	2.10	△0.6	△0.6	0.9		6,230.8
6	△0.2	0.5	3.6	0.50	1.57	0.0	△0.2	△0.7	0.4	6,504.3
7	0.2	0.6	3.9	0.50	1.39	0.1	△0.8	1.7		6,724.4
8	0.8	0.6	5.5	0.25	1.14	△0.2	0.3	0.3		6,781.5
9	1.2	1.0	6.2	0.25	1.33	△0.3	0.6	△0.1	△0.9	6,899.3
10	2.1	0.9	6.6	0.25	1.77	△1.2	△1.0	1.7		6,954.2
11	2.4	1.2	6.4	0.25	1.94	2.3	1.4	1.0		6,783.8
12	2.9	1.6	6.2	0.25	1.77	0.9	2.2	△2.9		7,142.8
2017.1	3.6	1.8	7.0	0.25	1.94	△0.3	△1.0	△1.0	-	7,099.2
2	3.7	2.3	5.7	0.25	1.68	△0.7	△0.1	2.3		7,263.4
3	3.6	2.3	-	0.25	1.65	-	-	△2.2		7,322.9

주: 월별 및 분기별 전년대비 증감률은 계절변동조정 후 기준. 최근 수치에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1) EU 통계청 2) 금+외환+SDR+IMF포지션+유럽통화협력기금에 대한 출연금 및 대여금 3) Reuters 기준환율

4) 실업수당신청자 기준, 계절변동조정후 5) 제조업 신출물가 기준 6) 화폐발행액+은행의 자금결제용 영란은행 예치금, 평잔기준

연간은 당해년도 12월의 전년동월대비 7) 민간화폐보유액+파운드화표시 민간부문요구불여금+파운드화표시 민간부문정기예금(CD 포함)+(민간보유 주택대출조합의 주식 예금 및 CD-주택대출조합보유 은행예금, CD 및 현금), 말잔기준 8) 영란은행 RP 금리

9) 20년만기 10) FTSE 100 Index(1984.1.3=1,000), 기말기준

자료: Monthly Digest of Statistics(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IMF), Main Economic Indicators(OECD)

[부 록] 최신 노동·경제 지표

(대 만)

연월중	GDP 성장률	1인당 GDP	무 역				경 상 수 지	대외준비 ¹⁾ (기말)	대미달러 환 율 ²⁾ (NT\$/US)		실업률 (%)
			수출(FOB)		수입(CIF)				기 말	평 균	
	전년동기 대비(%)	미달러	백 만 미달러	전년동기 대비(%)	백 만 미달러	전년동기 대비(%)	백만 미달러				
2015	0.7	22,384	285,320	△9.1	237,210	△13.5	75,180	426,030	32.82	31.75	3.8
2016	1.4	22,530	280,510	△1.7	230,970	△2.6	70,938	434,200	32.44	32.23	3.9
2016.2	△0.2	-	17,780	-12.0	13,630	-13.4	19,496	428,820	33.24	33.21	4.0
3			22,720	-11.4	18,220	-17.1		431,600	32.20	32.58	3.9
4			22,250	-6.6	17,450	-9.6		433,180	32.29	32.34	3.9
5	1.1	-	23,540	-9.5	20,040	-3.4	16,971	433,430	32.58	32.55	3.8
6			22,890	-2.2	19,310	-10.1		433,550	32.21	32.30	3.9
7			24,120	1.1	20,510	-0.6		434,090	31.82	32.10	4.0
8	2.1	-	24,660	0.9	20,670	-1.0	16,170	435,860	31.73	31.54	4.1
9			22,560	-1.9	18,190	0.7		436,730	31.31	31.45	4.0
10			26,750	9.3	22,370	19.2		435,260	31.52	31.57	4.0
11	2.9	-	25,340	12.1	21,070	2.8	18,301	434,350	31.88	31.75	3.9
12			25,700	14.0	20,830	13.2		434,200	32.44	32.00	3.8
2017.1			23,740	7.0	20,250	8.6		436,590	31.16	31.67	3.8
2	-		22,660	27.7	19,300	42.1	-	437,660	30.64	30.86	3.9
3			25,710	13.2	21,780	19.8		437,530	30.32	30.61	3.8

연월중	물 가 ³⁾		노 동 생산성 ⁴⁾	동 화 ⁵⁾		금리(기말, 연%)		산 업 생 산		소매 판매	주가지수 ⁷⁾
	생산자	소비자		M1B	M2	재할인율	프라임 레이트 ⁶⁾	전산업	제조업		
								전년동기대비(%)			
	전기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기대비(%)				
2015	△8.8	△0.3	△0.6	6.4	5.7	1.625	2,829	△1.5	△1.2	0.5	8,338.06
2016	△2.9	1.4	5.7	6.0	4.1	1.375	2,631	1.5	2.0	1.9	9,253.50
2016.2	△4.9	2.4	△1.8	6.1	5.2	1.625	2,760	△4.2	△5.1	0.1	8,411.16
3	△4.9	2.0	△3.5	6.2	4.8	1,500	2,760	△2.3	△2.8	1.1	8,744.83
4	△4.2	1.9	3.4	6.3	4.7	1,500	2,714	△3.6	△3.9	2.3	8,377.90
5	△2.8	1.2	1.5	6.3	4.1	1,500	2,686	2.2	2.1	0.9	8,535.59
6	△2.8	0.9	5.8	6.2	4.4	1,500	2,686	1.2	1.9	0.5	8,666.58
7	△2.5	1.2	11.9	6.2	4.7	1,375	2,681	△0.2	0.8	2.8	8,984.41
8	△4.0	0.6	4.3	6.5	4.5	1,375	2,639	7.9	8.5	0.0	9,068.85
9	△3.8	0.3	13.5	6.4	4.1	1,375	2,639	4.2	5.7	3.0	9,166.85
10	△1.8	1.7	15.8	6.4	4.0	1,375	2,631	3.3	5.2	0.4	9,290.12
11	△0.3	2.0	9.3	6.6	4.0	1,375	2,631	8.9	10.5	2.5	9,240.71
12	1.8	1.7	13.5	6.0	4.1	1,375	2,631	6.3	7.4	2.1	9,253.50
2017.1	2.7	2.2	16.9	6.1	3.7	1,375	2,631	2.5	3.5	4.3	9,447.95
2	2.4	△0.1	△0.5	5.1	3.6	1,375	2,631	10.7	14.1	△8.4	9,750.47
3	1.8	0.2	-	4.6	3.6	1,375	2,631	3.2	4.7	1.7	9,811.52

주: 최근 수치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 1) 외환보유액 2) Reuters 고시환율 3) ()안은 12월의 전년동월대비 4) 제조업 5) M1B = 현금통화 + 당좌예금 + 보통예금 + 보통저축예금, M2 = M1B + 정기예금 + 외화예금 + 우편예금 + 환매거래잔액 + 외국인보유 현금, 평잔기준
6) 대만은행 7) 가권지수(1966 = 100), 기말기준

자료: 금융통계월보(대만 중앙은행), Monthly Bulletin of Statistics(Bureau of Statistics)

대한행정원 주계처, 중화민국대만지구 국민경제동향통계계보 각호, Reuters Business Briefing

나. 주요국가의 GDP규모

(십억달러)

기간중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브라질	영국	이태리	러시아	인도	캐나다
1999	9,661	1,101	4,433	2,200	1,502	602	1,559	1,251	196	467	674
2000	10,285	1,193	4,731	1,953	1,372	657	1,552	1,146	260	477	739
2001	10,622	1,317	4,160	1,950	1,383	560	1,530	1,164	307	494	733
2002	10,978	1,456	3,981	2,084	1,506	511	1,677	1,272	345	524	753
2003	11,511	1,651	4,303	2,507	1,852	559	1,946	1,573	430	618	888
2004	12,275	1,945	4,656	2,819	2,127	670	2,299	1,802	591	722	1,018
2005	13,094	2,287	4,572	2,863	2,207	892	2,415	1,857	764	834	1,164
2006	13,856	2,793	4,357	3,001	2,327	1,108	2,587	1,945	990	949	1,311
2007	14,478	3,505	4,356	3,440	2,667	1,396	2,964	2,207	1,300	1,239	1,458
2008	14,719	4,548	4,849	3,765	2,937	1,695	2,814	2,403	1,661	1,224	1,543
2009	14,419	5,106	5,035	3,422	2,701	1,667	2,319	2,192	1,223	1,365	1,371
2010	14,964	6,005	5,499	3,423	2,652	2,209	2,403	2,129	1,627	1,708	1,613
2011	15,518	7,552	5,909	3,761	2,865	2,612	2,596	2,278	2,032	1,823	1,789
2012	16,155	8,570	5,957	3,546	2,683	2,460	2,655	2,074	2,172	1,829	1,824
2013	16,692	9,635	4,909	3,754	2,809	2,465	2,721	2,131	2,231	1,863	1,837
2014	17,393	10,558	4,596	3,885	2,844	2,417	3,002	2,142	2,031	2,043	1,784
2015	18,037	11,182	4,124	3,365	2,420	1,773	2,858	1,816	1,326	2,073	1,551
2016	18,562	11,392	4,730	3,495	2,488	1,770	2,650	1,852	1,268	2,251	1,532
기간중	스페인	호주	멕시코	한국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터키	스위스	스웨덴	사우디	폴란드
1999	634	411	579	485	441	169	250	290	271	162	168
2000	597	399	684	562	415	179	267	272	260	190	171
2001	627	377	725	533	426	175	196	279	240	184	190
2002	708	424	742	609	466	213	232	301	264	190	199
2003	909	540	713	681	572	255	303	352	331	216	218
2004	1,071	657	770	765	647	280	392	393	382	259	254
2005	1,159	733	866	898	674	311	483	408	389	328	304
2006	1,266	782	967	1,012	720	396	529	429	420	376	343
2007	1,481	949	1,043	1,123	834	470	646	478	488	416	429
2008	1,643	1,053	1,101	1,002	936	559	731	551	514	520	530
2009	1,503	996	895	902	860	578	614	540	430	429	437
2010	1,434	1,246	1,051	1,094	838	755	732	581	488	527	479
2011	1,489	1,503	1,171	1,202	895	893	775	697	563	670	528
2012	1,341	1,559	1,187	1,223	829	919	789	665	544	734	501
2013	1,370	1,506	1,262	1,306	867	915	823	685	579	744	524
2014	1,384	1,444	1,298	1,411	881	891	799	701	571	754	545
2015	1,200	1,225	1,144	1,378	751	859	718	664	493	646	475
2016	1,252	1,257	1,064	1,404	770	941	736	662	517	638	467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6.10)

다. 주요국가의 1인당 GDP

(달러)

기간중	호주	캐나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태리	스페인	그리스
1999	21,733	22,205	34,602	35,014	26,771	25,681	26,560	21,977	15,889	13,796
2000	20,846	24,128	36,433	37,304	23,741	23,318	26,352	20,125	14,831	12,171
2001	19,428	23,658	37,241	32,711	23,649	23,342	25,876	20,431	15,385	12,448
2002	21,630	24,036	38,114	31,241	25,245	25,226	28,274	22,312	17,083	13,972
2003	27,251	28,093	39,592	33,718	30,377	30,809	32,673	27,539	21,532	18,359
2004	32,765	31,925	41,838	36,444	34,173	35,154	38,422	31,334	24,989	21,741
2005	36,077	36,152	44,218	35,781	34,723	36,210	40,094	32,081	26,550	22,404
2006	37,898	40,297	46,352	34,077	36,461	37,900	42,694	33,501	28,531	24,614
2007	45,156	44,383	47,955	34,038	41,845	43,156	48,608	37,908	32,748	28,637
2008	49,026	46,465	48,302	37,865	45,909	47,273	45,840	40,973	35,725	31,863
2009	45,572	40,822	46,909	39,321	41,828	43,234	37,526	37,148	32,412	29,551
2010	56,195	47,513	48,310	43,095	41,876	42,249	38,595	35,969	30,803	26,973
2011	66,722	52,143	49,726	46,225	46,822	45,430	41,026	38,379	31,868	25,897
2012	68,003	52,575	51,385	46,705	43,982	42,333	41,432	34,919	28,668	22,172
2013	64,664	52,345	52,705	38,552	46,475	44,105	42,453	35,704	29,397	21,773
2014	61,165	50,252	54,502	36,151	47,852	44,445	46,479	35,239	29,782	21,593
2015	51,180	43,280	56,084	32,479	40,952	37,653	43,902	29,867	25,843	17,989
2016	51,593	42,319	57,294	37,304	42,326	38,537	40,412	30,294	27,012	18,078
기간중	한국	대만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	터키	남아공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1999	10,409	13,768	1,334	3,567	5,811	3,951	3,168	875	830	462
2000	11,948	14,877	1,775	3,789	6,776	4,149	3,123	941	870	463
2001	11,256	13,408	2,111	3,185	7,096	3,009	2,705	1,032	834	471
2002	12,789	13,716	2,380	2,864	7,170	3,522	2,541	1,133	1,003	492
2003	14,219	14,094	2,982	3,094	6,811	4,538	3,799	1,277	1,187	572
2004	15,922	15,361	4,111	3,661	7,270	5,802	4,899	1,496	1,281	658
2005	18,658	16,503	5,333	4,818	8,085	7,054	5,442	1,749	1,404	749
2006	20,917	16,985	6,932	5,913	8,918	7,638	5,664	2,125	1,765	840
2007	23,102	17,781	9,102	7,368	9,504	9,214	6,146	2,652	2,064	1,081
2008	20,475	18,103	11,639	8,848	9,894	10,283	5,818	3,424	2,418	1,053
2009	18,339	16,960	8,562	8,612	7,930	8,529	5,938	3,826	2,465	1,159
2010	22,151	19,262	11,383	11,298	8,861	10,002	7,389	4,478	3,178	1,430
2011	24,156	20,912	14,208	13,234	9,730	10,438	8,090	5,523	3,689	1,497
2012	24,454	21,270	15,155	12,344	9,721	10,490	7,592	6,256	3,745	1,471
2013	25,998	21,888	15,559	12,260	10,659	10,761	6,914	7,081	3,676	1,479
2014	27,989	22,619	14,160	11,921	10,844	10,329	6,503	7,719	3,532	1,601
2015	27,222	22,263	9,243	8,670	9,452	9,186	5,727	8,141	3,362	1,604
2016	27,633	22,044	8,838	8,587	8,699	9,317	5,018	8,261	3,636	1,719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6.10)

라. 국제금리, 국제원유 및 1차 상품가격

(기말)

	금 리 (%)			현물유가 (달러/BBL)		Reuter 지 수 (기간평균)
	LIBORS (3개월물)	미우대금리	T/Bill (3개월)	Dubai	Brent	
2011	0.58	3.25	0.01	104.89	106.93	3,060.7
2012	0.31	3.25	0.05	107.81	110.60	3,006.1
2013	0.25	3.25	0.07	107.88	110.55	2,774.3
2014	0.25	3.25	0.07	107.88	110.55	2,774.3
2015	0.61	3.50	0.15	32.19	37.28	2,328.3
2016	1.00	3.75	0.51	53.83	56.82	2,330.4
2014.10	0.23	3.25	0.01	84.37	85.13	2,395.2
11	0.23	3.25	0.02	69.09	70.97	2,407.4
12	0.26	3.25	0.04	53.60	57.33	2,388.3
2015.1	0.25	3.25	0.02	45.59	52.99	2,377.3
2	0.26	3.25	0.02	57.39	62.58	2,350.6
3	0.27	3.25	0.04	53.84	55.11	2,374.3
4	0.26	3.25	0.02	62.69	66.78	2,389.3
5	0.28	3.25	0.01	61.11	65.56	2,373.7
6	0.28	3.25	0.02	59.56	63.59	2,415.0
7	0.31	3.25	0.07	52.07	52.21	2,379.6
8	0.33	3.25	0.00	48.72	54.15	2,253.6
9	0.33	3.25	0.00	44.31	48.37	2,220.2
10	0.33	3.25	0.08	43.94	49.56	2,278.7
11	0.41	3.25	0.18	39.87	44.61	2,285.0
12	0.61	3.50	0.15	32.19	37.28	2,242.5
2016.1	0.61	3.50	0.32	28.37	34.74	2,146.8
2	0.63	3.50	0.32	29.99	35.97	2,067.2
3	0.63	3.50	0.21	35.05	39.60	2,132.4
4	0.64	3.50	0.21	44.26	48.13	2,161.2
5	0.67	3.50	0.34	45.90	49.69	2,221.9
6	0.65	3.50	0.26	46.46	49.68	2,361.3
7	0.76	3.50	0.27	38.64	42.46	2,374.3
8	0.84	3.50	0.33	44.79	47.04	2,443.6
9	0.85	3.50	0.28	45.11	49.06	2,422.7
10	0.89	3.50	0.35	47.44	48.30	2,493.3
11	0.93	3.50	0.49	44.12	50.47	2,543.1
12	1.00	3.75	0.51	53.83	56.82	2,573.8
2017.1	1.03	3.75	0.52	53.23	55.70	2,645.5
2	1.05	3.75	0.53	55.10	55.59	2,664.1
3	1.15	4.00	0.76	50.78	52.83	2,625.3
4	1.17	-	0.81	50.16	51.73	2,510.4

주: 2015.12.일자로 석유공사에서 WTI(현물) 통계중지

♣이 책을 만드는데 수고하여 주신 분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어수봉

상임위원 김성호

사무국장 배정대

책임편집인 정혜영

- 이 책자에 대한 문의 또는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전화(044)202-841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은 인터넷 www.minimumwage.go.kr
(최저임금위원회/자료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